2024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충 청 북 도>

2024. 10.

행 정 안 전 부

2024년 정부합동감사(충청북도) 결과

Ⅰ. 감사 개요

○ 감사 목적

-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90조 및 제191조에 따라 충청북도의 행정전반에 대해 조직·인사, 예산 편성·집행, 보조금 집행, 각종 인·허가, 국비지원 주요사업 추진실태 등을 점검·분석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 및 국정의 환류기능 수행 등에 목적을 두었다.

○ 감사 기간 및 감사 범위

- ‘24. 3. 11.부터 3. 27.(13일간)까지 9개 부·처·청 33명의 감사반원이 참여하여 충청북도 및 관할 시·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 중점

- 주요 국비사업 추진실태, 회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소극적 행정행태, 규제개혁 저해행태, 국민안전 소홀, 지방재정 비효율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전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을 통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지역 현안 해결하도록 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 총 164건을 지적하여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다.

1 처분요구 총괄

행정상(신분상 포함) 조치 (건 / 명)							재정상 조치 (백만 원)		
계	징계	기관 경고	훈계	시정	주의	통보 등	계	회수 징수	감액 반납 등
164건	8건 (경:14명)	2건	23건 (120명)	53건	53건	25건	17,813.8	4,657.3	13,156.5

2 지적사항 목록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1	행정안전부 (30건)	괴산군	근무성적평정점 임의 변경 및 평정단위별 서열 부당 변경 등	징계 훈계		경징계 1 훈계 2	
2		청주시	㉠시스템 구축 추진 부적정	징계 훈계		경징계 2 훈계 1	
3		진천군	㉡공사 부당 설계 변경 및 관련 계획 미준수 등	징계 훈계		경징계 2 훈계 3	
4		청주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	징계 통보		경징계 2	
5		제천시	면적 제한 기준을 초과한 농지전용 허가 부당 처리	징계 훈계		경징계 3 훈계 1	
6		청주시	분리발주 해야 할 전기·정보통신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포함하는 등 업무추진 부적정	징계 훈계		경징계 2 훈계 1	
7		괴산군	실시설계용역 업무 감독 소홀 및 부당 설계변경 공사추진 등	징계 훈계		경징계 1 훈계 2	
8		괴산군	괴산㉢축제 보조금 관리 부적정	기관경고 시정	회수 2.2		
9		충북도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관리 부적정	기관경고 시정			
10		옥천군	근무성적평정점 오입력 등 업무 처리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3	
11		충북도	㉣대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훈계 수사의뢰	회수 24.7	훈계 2	
12		청주시 등	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훈계 주의		훈계 10	
13		보은군	경매 개시 부동산에 대한 체납액 교부청구 부적정	훈계 통보		훈계 1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14		청주시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 현장점검 해태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통보		훈계 4	
15		충북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가설해야 할 교량을 그대로 존치하는 등 사업추진 부적정	훈계 주의		훈계 2	
16		청주시 등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통보 미실시 및 이행 관리 미흡	훈계 시정		훈계 3	
17		충주시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주의			
18		진천군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부적정	시정	추징 2,813.3		
19		청주시 등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시정	추징 138.5		
20		청주시 등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 부적정	시정	징수 89.2		
21		충북도, 제천시	법령에 근거 없이 공유재산(전세권) 사용료 감면	통보			
22		제천시	㉮ 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등	통보 주의			
23		충북도 등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통보 주의			
24		괴산군	환경보전기금 목적 외 사용	통보			
25		청주시 등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통보 주의			
26		충북도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 및 지도·감독 소홀	통보 주의			
27		충북도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하천정비사업 등 공사비 과다 계상	시정 주의	감액 432.3		
28		충북도 등	연성 방호울타리 현장지지력 시험 미실시 등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통보			
29		충북도 등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기준 부적정 운영	주의			
30		제천시 등	전자기록물 이관 업무 부적정	시정			
31	국토교통부 (7건)	청주시 등	접도구역 관리 부적정	시정 주의			
32		충북도	배수성 포장공사 설계반영 부적정	시정 주의	감액 287.8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33		충북도 등	지장물 이설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52.5		
34		충북도 등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미체결 등 부적정	시정 주의			
35		청주시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부적정	시정 주의			
36		충북도	차선도색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주의			
37		청주시 등	정기 및 종합검사 미수검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주의 통보			
38	환경부 (30건)	청주시 등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승인사항 미통보	훈계 시정	징수 1,035.4	훈계 31	
39		청주시 등	소규모환경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시정			
40		청주시 등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부적정	주의			
41		청주시 등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시정			
42		청주시 등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중과) 미부과	시정	징수 210.4		
43		충북도, 음성군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시정	징수 19.2		
44		진천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미실시	시정			
45		청주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부적정	훈계 통보		훈계 1	
46		충주시, 옥천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2	
47		제천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1	
48		청주시 등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시정			
49		청주시 등	건설폐기물배출자 실적보고 관리 부적정	시정			
50		진천군, 단양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계획의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성과 평가 미실시	주의			
51		괴산군	공장설립제한지역내 공장(제조업소등) 건축허가(신고) 부적정	징계 주의		경징계 1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52		청주시 등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7	
53		보은군 등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선계획 미보고	주의			
54		보은군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사업 준공정산 부적정	시정	환수 60.9		
55		보은군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 간접비 계상 부적정	주의			
56		청주시 등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미흡	주의			
57		증평군	건설공사(환경기초시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미실시	주의			
58		청주시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시정	감액 69.3		
59		진천군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규정 미준수	주의			
60		제천시	수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자격 규정 미준수	시정			
61		옥천군 등	상수도관망시설 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미준수	통보			
62		청주시 등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보고 미준수	주의			
63		보은군, 괴산군	수도시설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주의			
64		청주시, 영동군	마을상수도 수질기준 위반보고 및 주민공지 규정 미준수	주의			
65		음성군	전용상수도 설치 사업장 관리 부적정	훈계 시정		훈계 3	
66		청주시, 진천군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시정	반납 1,129		
67		괴산군	물의 재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시정			
68	보건복지부 (30건)	충북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업무 소홀	시정	반납 10,393		
69		청주시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 미준수	주의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70		청주시, 음성군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	시정	환수 64.1		
71		청주시 등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격 중지자에 대한 서면 통지 소홀	주의			
72		보은군 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점검 소홀	주의			
73		청주시 등	긴급의료지원사업 비급여 진료비 심사 청구 소홀	시정			
74		청주시 등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중지 지연처리	시정 주의			
75		청주시 등	의료급여수급자중 군입대자 자격 관리 소홀	시정 주의	환수 7		
76		청주시 등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심의 소홀	주의			
77		청주시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등 사후관리 소홀	시정	환수 4.3		
78		청주시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 소홀	시정			
79		청주시 등	양육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육료 지급 관리 소홀	시정	환수 1.6		
80		충북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본재산 관리 소홀	통보			
81		청주시 등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추급 143.6		
82		청주시 등	장애아동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환수 42.8		
83		충주시 등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관리 부적정	시정	환수 4.3		
84		청주시 등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등 자격관리 소홀	주의			
85		청주시 등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후점검 (모니터링) 관리 소홀	시정			
86		청주시 등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무 관리 소홀	시정			
87		증평군, 음성군	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자 조사 사후 조치 소홀	시정	환수 20.1		
88		충주시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 미준수	주의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89		충북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주의			
90		제천시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 소홀	시정			
91		청주시 등	사회복지시설 지도 · 감독 사무 소홀	시정			
92		청주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 관리 소홀	주의			
93		청주시 등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사용승인 절차 부적정	주의			
94		충북도, 제천시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리 소홀	주의 통보			
95		충북도 등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관리 소홀	주의 통보			
96		충북도	사회복지법인 재산 취득 보고 여부 관리 소홀	시정			
97		보은군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 소홀	시정			
98	농림축산식품부 (28건)	충주시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수행상황에 대한 이행점검 미흡	주의			
99		충주시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주의			
100		영동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추진 부적정	통보			
101		청주시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주의			
102		청주시, 음성군	유소년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103		청주시 등	효력상실된 건축신고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관리 부적정	시정			
104		청주시 등	불법전용농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사후관리 미흡	주의			
105		충주시 등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주의			
106		괴산군	농업진흥지역 내 공공기관의 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 부적정	통보			
107		충주시 등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소홀	통보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108		충주시 등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관리 소홀	통보			
109		제천시 등	농막 '불법 증축 등' 사후관리 미흡	통보			
110		청주시 등	농지전용으로 지급 제외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2.2		
111		청주시 등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자격 미충족 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9.1		
112		청주시 등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113		충주시 등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부적정	시정			
114		청주시 등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 관리 부적정	주의			
115		충북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미흡	시정	반납 701.5		
116		청주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주의			
117		청주시 등	시설원예 분야 사업 추진 부적정	주의 통보			
118		청주시, 음성군	시설원예분야 사업 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부적정	주의			
119		청주시 등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결과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 미흡	주의			
120		청주시 등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조치 부적정	주의			
121		충주시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관리 소홀	주의			
122		청주시 등	등록대상동물(맹견) 사후관리 부적정	주의			
123		제천시 등	소방·안전교육 미이행 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주의			
124		청주시 등	민박사업자 전기·가스 안전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미흡	주의			
125		충주시 등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시스템' 연계된 민박 시설 정보관리 소홀	통보			
126	농촌진흥청 (5건)	괴산군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훈계 주의		훈계 2	
127		진천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미이행	시정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128		제천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미이행	시정			
129		청주시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	시정	환수 36.4		
130		청주시 등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부적정	시정			
131	산림청 (9건)	충주시 등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예치 부적정	시정			
132		충주시, 제천시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시정	환수 3.3		
133		청주시 등	산림소득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주의			
134		충북도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타 지역 지원시 항공유 비용 정산방안 마련	통보			
135		충주시 등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주의			
136		충북도 등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보험 · 공제 관리 부적정	주의			
137		충북도 등	산림사업 산림기술자 관리 부적정	주의			
138		청주시, 제천시	도시숲 등 조성 · 관리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주의			
139		충북도 등	산림사업 안전관리 부실	주의			
140	식품 의약품 안전처 (5건)	영동군, 음성군	식품 등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주의 통보			
141		충북도 등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주의 통보			
142		충북도 등	축산물 생산실적 미보고 업소 행정처분 등 누락	주의 통보			
143		충북도 등	부정 ·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기간 미준수	주의			
144		괴산군, 증평군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흡	주의			
145	소방청 (20건)	소방본부	연가가산 일수 산정 부적정	시정	환수 5.3		
146		소방본부	신임소방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통보			

연번	감사기관	대상기관	지적사항	조치할 사항			비고
				행정상	재정상 (백만원)	신분상 (명)	
147		소방본부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처리 부적정	훈계 시정	환수 0.03	훈계 (주의 3)	
148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 소홀	통보			
149		소방본부	경고 처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훈계		훈계 (주의 1)	
150		소방본부	공가 사용 부적정	훈계 시정	환수 0.5	훈계 (경고 4, 주의 7)	
151		소방본부	선금 지급 및 계약변경에 따른 채권 확보 소홀	통보			
152		소방본부	수의계약 배제업체 업무처리 부적정	훈계 통보		훈계 (주의 3)	
153		소방본부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훈계 통보		훈계 (주의 5)	
154		소방본부	개인보호장비 재고관리 소홀	통보			
155		소방본부	공기충전기 등 공기공급기 안전관리 미흡	훈계 권고		훈계 (주의 3)	
156		소방본부	소방장비 불용업무 추진 소홀	권고 통보			
157		소방본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미흡	통보			
158		소방본부	자체점검 이행완료보고서 확인 등 소홀	훈계 시정		훈계 (주의 2)	
159		소방본부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정보관리 등 미흡	훈계 시정		훈계 (주의 8)	
160		소방본부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소홀	권고 통보			
161		소방본부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등 부적정	훈계 권고		훈계 (주의 2)	
162		소방본부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추진 미흡	권고 통보			
163		소방본부	다수사상자 단독 대응훈련에 따른 사전 준비 등 필요	통보			
164		소방본부	소방청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공제(보험) 가입 미흡	권고			

정부합동감사결과

징계·훈계·주의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점 임의 변경 및 평정단위별 서열 부당 변경 등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사건개요

괴산군(㉮과)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점(안)을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이하 “평정점”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등의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점이 아닌 임의의 평정점으로 변경하거나, 평정단위별 서열을 부당하게 변경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8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단위별 근무성적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 및 근무성적평정확인자

(이하 “확인자”라 한다)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한 후 근평위원회에 제출하고, 근평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되, 이 경우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평위원회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평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승진 임용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승진·임용 그 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괴산군 ㉯면 지방행정주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0. 9. 1.부터 2022. 7. 19.까지, ㉰면 지방행정사무관 B(이하 “B”라 한다)는 2021. 1. 1.부터 2022. 11. 15.까지, ㉱국 지방서기관 C(이하 “C”라 한다)는 2019. 9. 23.부터 2022. 7. 19.까지 위 관서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 및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면서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 등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의 인사 업무를 담당 또는 주관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임의 변경 및 평정단위별 서열 변경 등

A는 2021. 4. 7.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계획”(㉮과-7725, 군수 결재)을 수립하고 각 평정단위의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평정서열명부(안)을 작성[1]한 후 같은 해 5. 10. 괴산군 근평위원회[2]에 근무성적평정 심사를 의뢰[3]하였다.

그리고 2021. 5. 27. 개최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4]된 2021년 상반기 평정 서열 및 평정점에 따라 2021. 5. 28.까지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에 등록[5]하고, 2021. 5.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군수에

---

1) 평정대상 공무원의 현 직급, 경력, 성과, 기피부서 근무 여부 등을 고려하여 A가 직접 평정서열명부(안)을 작성했다고 문답시 진술함

2) 위원장(부군수), 부위원장(㉰국장) 위원(㉯국장, ㉱관, ㉮과장) 등 총 5명으로 구성

3) 근무성적평정등급 및 평정점 결정 심사 의뢰(㉮과-9988호, 2021. 5. 10.)

4) 근평위원회 심사 개최 알림 공문(2021. 5. 12., ㉮과-11360)에는 근평위원회를 대면회의(2021. 5. 27. 부군수실)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고, 해당 근평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서명일도 2021. 5. 27.로 되어 있으나, 실제 A는 해당 일자에 회의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회의 개최 안내 이후부터 개별적으로 위원장 및 위원 등 총 5명에게 평정서열명부(안)을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위원 등의 의견을 협의·조정한 후 최종 작성한 평정 서열 및 평정점에 대하여 최종 심의의결서 서명(2021. 5. 27.)을 받았으며, 근평 업무를 담당한 기간 중 대면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고 공문만 대면회의 개최로 작성했다고 문답시 진술함

5) A는 근평위원회 회의 개최일 이전인 2021. 5. 19. 인사랑에 평정 서열과 평정점을 최초 등록하고, 근평위원회 개최 다음 날인 2021. 5. 28. 평정 서열과 평정점을 최종 등록함

게 보고한 후 확정[6]하였다.

그런데 A는 임용권자(군수)의 평정점 재결정 요구[7], 승진후보자 명부의 명백한 오류 발생[8] 등의 사유가 없는데도 위 승진후보자 명부의 효력 발생일인 2021. 6. 1. <표-1>과 같이 ㉮과 지방행정서기보 AA(이하 “AA”라 한다)의 평정점을 63.9점(전체 14위)에서 70.0점(전체 1위)으로, 같은 과 지방행정서기보 BB(이하 “BB”라 한다)의 평정점을 63.5점(전체 15위)에서 69.6점(전체 2위[9])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과 CC 등 13명의 평정점을 각각 하향 조정하는 등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으로 인사랑에 등록된 지방행정서기보 15명의 평정점을 임의[10]로 변경 등록하였다.

특히 A는 평정자인 ㉮과장이 과 내의 지방행정서기보 4명에 대해서 DD를 1순위, AA를 2순위, BB를 3순위, EE를 4순위로 평정한 사실과 그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변경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11] ㉮과 평정단위 서열에 맞게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AA와 BB의 평정점을 선순위자인 DD보다 부당하게 높게 조정하는 등 평정자의 평정권한을 침해하였다.

---

6) 2021년 상반기(5. 31일자)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과-11429호, 2021. 5. 31., 군수 결재)

7) 임용권자의 평정점 재결정 요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가 변경 등록한 평정점과 같이 평정단위별 서열(㉮과)을 변경할 수 없음

8) 당초 평정단위별 서열에 맞게 심사·결정되어 인사랑에 등록된 지방행정서기보의 평정점을 평정단위별 서열에 맞지 않게 변경한 사항이므로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9) BB의 평정점을 전체 1위(70점)로 변경했더라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더 상향되지 않음

10) A는 ‘21년 상반기 근평 통보 결과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보고 당시 군수 등 상급자로부터 평정점 변경, 승진후보자 순위 변경 등과 관련하여 지시사항 등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문답시 진술함

11) A가 기안한 ‘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계획에도 “* 평정점 결정시,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내의 서열은 변경할 수 없음”으로 작성되어 있고, A가 직접 작성한 평정서열명부(안)에도 평정단위별 서열이 변경되지 않도록 부서장 평정 순위를 표기하였으며, 감사기간 중 위 관서로부터 제출받은 최종 엑셀 파일에도 부서 순위 및 평정 순위가 DD, AA, BB 순으로 되어 있음

<표-1> '21년 상반기 근평 순위·점수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경 명세 (지방행정9급)

연번	소속	성명	근평 순위 및 점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경 ('21.5.31.주))	비고 (승진 임용일)
			당초		변경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과	CC	70.0	1	69.2 (-0.8)	3 (↓2)	3 (변경없음)	'21.7.1.
2	㉯관	JJ	69.6	2	68.8 (-0.8)	4 (↓2)	5 (변경없음)	'21.7.1.
3	㉰과	DD	69.2	3	68.4 (-0.8)	5 (↓2)	4 (변경없음)	'21.7.1.
4	㉱과	FF	68.8	4	68.0 (-0.8)	6 (↓2)	명부 대상 아님	
5	㉱과	KK	68.4	5	67.6 (-0.8)	7 (↓2)	1 (변경없음)	'21.7.1.
6	㉲과	LL	68.0	6	67.2 (-0.8)	8 (↓2)	2 (변경없음)	'21.7.1.
7	㉳과	MM	67.6	7	66.8 (-0.8)	9 (↓2)	9 (변경없음)	'21.7.1.
8	㉴과	NN	67.2	8	66.4 (-0.8)	10 (↓2)	10 (변경없음)	'21.7.1.
9	㉵과	GG	66.8	9	66.0 (-0.8)	11 (↓2)	**13→14 (↓1)**	'21.7.1.
10	㉵과	OO	66.4	10	65.6 (-0.8)	12 (↓2)	**11→12 (↓1)**	'21.7.1.
11	㉶과	HH	66.0	11	65.2 (-0.8)	13 (↓2)	**14→15 (↓1)**	'21.7.1.
12	㉷면	PP	65.6	12	63.9 (-1.7)	14 (↓2)	**12→13 (↓1)**	'21.7.1.
13	㉳과	QQ	65.2	13	63.5 (-1.7)	15 (↓2)	6 (변경없음)	'21.7.1.
14	**㉰과**	**AA**	**63.9**	**14**	**70.0 (+6.1)**	**1 (↑13)**	명부 대상 아님	
15	**㉰과**	**BB**	**63.5**	**15**	**69.6 (+6.1)**	**2 (↑13)**	**15→11 (↑4)**	'21.7.1.
⋮								

주): 2020년 하반기 및 2021년 상반기의 평정점을 반영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임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및 인사랑 자료 등 재구성

이와 같이 A는 위 지방행정서기보 15명의 2021년 상반기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고 2021. 5.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하여 ㉰과 BB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15위에서 11위로 상향시키고, ㉵과 GG 등 4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각각 1순위 하향시키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부당하게 조정하였다.

그 결과 BB는 정당한 순위보다 높은 순위로, GG 등 4명의 경우 정당한 순위보다 낮은 순위로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12]를 받게 되는 등 괴산군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심사 등 인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12) '21. 6. 29. 개최된 승진심사에서 지방행정서기로의 승진규모(인원)는 14명이었고, 승진후보자 순위가 15위에서 11위로 부당하게 상향된 BB는 14명에 포함되어 승진의결 되었으며, ㉶과 HH의 경우 BB의 순위 상향으로 인해 당초 14위에서 15위로 하향되어 승진규모(인원) 1배수 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승진심사일 전일까지 승진후보 선순위자 1명(8위, II)이 승진에 필요한 교육훈련시간을 충족하지 못해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마지막 순위자로 14명에 포함되어 승진의결됨

또한 A가 임의 변경한 2021년 상반기 평정점은 2021. 11. 30.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표-2>와 같이 AA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3위에서 1위로 상향되고, ㉮과 FF 등 2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각각 1순위 하향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21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명세 (지방행정9급)

연번	소속	성명	승진후보자 명부 ('21.11.30.주)				비고
			당초(적정) 평정점 기준		변경 평정점 기준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과**	**AA**	84.85	**3**	81.8	**1 (↑2)**	
2	㉮과	FF	84.25	**1**	84.65	**2** (↓1)	
3	㉯과	II	83.14	**2**	83.14 (변경없음)	**3** (↓1)	
4	㉱과	RR	79.8	4	79.8 (변경없음)	4	
⋮							

주):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의 평정점을 반영한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임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및 인사랑 자료 등 재구성

나.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전체 평정 서열 및 평정점 결정 등(2020년 하반기, 2021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

A는 2020. 11. 25.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 및 경력평정 계획"(㉭과-24801, 군수 결재)을 수립하고 각 평정단위의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평정서열 명부(안)을 작성한 후 2021. 1. 27. 괴산군 근평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심사를 의뢰[13]하였다.

그리고 2021. 1. 29. 개최된 근평위원회에서 2020년 하반기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을 심사·결정하고, 같은 날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군수에게 보고한 후 확정[14]하였다.

13) 근무성적평정등급 및 평정점 결정 심사 의뢰(㉭과-2155호, 2021. 1. 27.)

A가 인사랑에 등록한 2020년도 하반기 평정 서열과 평정점 등을 정부합동 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붙임]과 같이 지방전산주사 SS와 TT은 평정자인 ㉮ 과장이 각각 1순위와 2순위로 평정했는데도 인사랑에는 각각 2위와 1위의 평정점이 반영되어 있는 등 총 51명의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을 각 평정단위에서 제출한 서열과 다르게 변경된 평정점으로 반영되었고, 2021. 1.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등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한편 A가 근평위원회 심사 의뢰 전날인 2021. 1. 26. 인사랑에 최초 등록한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 서열과 평정점에도 위 51명의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은 [붙임]과 같이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한 평정점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근평위원회 개최일인 2021. 1. 29. 이후 인사랑에 추가로 변경 등록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5]

또한 A는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평정단위별 서열이 변경된 지방행정주사 UU와 VV의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시에도 당초 평정단위 서열[16]과 다르게 VV(69위, 43.3점), UU(76위, 39.1점) 순으로 평정점이 부여되도록 하였고, 2021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는 평정단위(㉯면) 3위와 4위인 지방행정주사보 WW, XX를 각각 64위(37.5점), 63위(38.2점)로 처리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지속적으로 법령에 맞지 않게 처리하였고,

㉰팀장 B와 ㉮과장 C는 위 평정서열명부(안) 및 평정 결과 등에 대하여 제대로 검토하거나 확인하지 않았다.

---

14)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확정(㉮과-2579호, 2021. 1. 29.)

15) 당시 A가 작성하고 심사시 보고한 평정서열명부(안) 출력 원본과 작성 파일(엑셀) 등의 자료는 부존재 사유로 제출하지 않음(현 인사 담당자)

16) UU 2위, VV 3위임

이와 같이 위 지방전산주사 SS 등 51명의 2020년 하반기 평정점이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2021. 1. 31., 2021. 5.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등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표-3>과 같이 SS의 승진후보자 순위가 1위에서 2위로 하향되고 TT의 순위는 2위에서 1위로 상향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쳤으며, 괴산군의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인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17]

<표-3> '20년 하반기 평정단위 서열 변경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경 명세

연번	직급	성명	승진후보자 명부 ('21.1.31.)				비 고
			평정단위 서열 오적용 기준		평정단위 서열 적정 반영 기준		
			순위	점수 (근무성적+경력+가점)	순위	점수 (근무성적+경력+가점)	
1	전산6	**TT**	1	98.48 (68.48+30)	**2**	**96.95** (66.95+30)	
		SS	2	95.93 (65.43+30+0.5)	**1**	**97.45** (66.95+30+0.5)	
2	사회복지6	**YY**	1	99.1 (68.6+30+0.5)	**1**	**99.1** (68.6+30+0.5)	평정점 2위(68.6) 부여 시
					2	**97.93** (68.13+30+0.5)	평정점 3위(63.9) 부여 시
		ZZ	2	98.13 (68.13+30)	**2**	98.13 (68.13+30)	-
					1		YY 순위 하향시 1순위로 상향
		AB	3	93.9 (63.9+30)	**4**	93.9 (63.9+30)	AC 순위 상향시 4순위로 하향
					3		-
		AC	4	92.15 (62.15+30)	**3**	**94.03** (64.03+30)	평정점 1위(70) 부여 시
					4	**93.03** (63.68+30)	평정점 2위(68.6) 부여 시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및 인사랑 자료 등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계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17) <표-3>의 대상자 외에도 평정단위별 서열에 맞게 평정점이 부여될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평정점을 특정할 수 없음에 따라 순위 변경 명세는 별도 작성하지 않음

② 관련자

A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통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이후 문답 과정에서 “3-가”항의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변경 등에 대해서는 기억나는 사항이 없고, 실수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시점이나 대상자를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평정점 변경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랑에 입력을 잘못한 본인의 잘못이며,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받은 대상자에게 죄송한 마음과 본인의 실수로 기관 전체의 이미지가 안좋게 될 것에 대한 염려 및 미안한 마음이 있다는 진술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3-나”항의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2020. 9. 1 인사 업무를 담당한 이후 처음 처리한 근무성적평정이어서 업무 미숙, 업무 연찬 부족 등으로 판단되고, ㉮과 지방전산주사의 평정 서열 1위와 2위를 변경한 이유는 기억나지 않지만 변경할 이유나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받은 대상자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는 진술 및 의견을 제시했다.

5. 검토결과

(1) “3-가”항 관련

A는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점 임의 변경 등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항은 A의 진술과 같이 실수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①인사랑 평정 결과의 변경이력에 A가 2021. 6. 1. 위 15명을 포함한 지방행정서기보 63명의 평정 결과를 재등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A와의 문

답 과정에서 인사랑의 평정 관련 권한은 팀장과 과장에게는 없고 A가 직접 처리하는 사항이며 평정점 변경 등에 대해서 입력을 잘못한 본인의 책임이라고 진술하는 점, ③2021. 5. 27. 근평위원회 심사·결정 자료 원본(결과 통보 첨부자료)과 2021. 5. 31. 군수에게 보고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자료 원본(군수 결재 첨부자료)의 지방행정서기보 평정 결과가 2021. 6. 1. A가 임의로 변경한 평정 결과로 대체된 점 등으로 볼 때 A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변명에 불과하다.

그리고 시점이나 대상자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①A는 문답 과정에서 2021년 6월 당시 지방행정서기로의 정확한 승진규모는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적체가 심해서 다른 시·군에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고 휴직자 등을 결원에 반영하여 최대한 승진을 많이 하게끔 했던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최대한 확보한 2021. 6. 29. 승진심사 당시 해당 직급의 승진규모(인원)가 14명인 점, ②A의 평정점 등 임의 변경으로 2021. 5.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상향된 자는 BB 외에는 없으며 당초 15위에서 승진규모(인원) 이내인 11위로 상향을 시킨 점, ③A의 진술과 같이 승진규모를 14명으로 최대한 확보하기 전인 2021. 6. 1. 평정점 임의 변경 당시 BB의 정당 순위인 15위로는 승진을 예상하기가 더욱 어려웠으며, 실제 BB와 근무경력이 동일한 후순위자 2명은 2021. 6. 29. 승진심사에서 승진의결 되지 않은 점, ④BB보다 순위가 높은 승진후보자가 승진심사일 전일까지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으로 심사에서 제외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당시 A가 BB의 평정점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높여줄 이유 외에는 근평위원회 평정 결과대로 인사랑에 등록된 BB의 평정점 및 승진후보자명부를 임의로 조정할 이유가 없어 A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3-나”항 관련

A는 업무를 맡은 이후 처음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여 업무 미숙 등으로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평정 서열과 평정점을 반영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등에 반영되는 중요한 인사 자료인 만큼 평정단위별 서열 변경 여부, 근평위원회 평정 결과 적정 반영 여부 등에 대해서 더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평정결과가 잘못 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검토를 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여 평정자의 평정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도록 하였고, 승진후보자 명부에까지 부당한 영향을 끼친 점은 업무 담당자로서 중대한 잘못이 있다.

6. 판단

2021년 상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 등록하고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를 상향 또는 하향시키는 등 괴산군 인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평정자의 평정권한을 침해하여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2021년 상반기 및 하반기까지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을 결정하는 등 괴산군 인사 업무에 계속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끼친 A의 행위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202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의 경우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

그리고 당시 ㉰팀장 B와 ㉮과장 C는 담당팀장 및 과장으로서 실무 담당자가 평정단위별 서열을 다르게 변경하고, 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등 괴산군의 인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 및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징계] 위 A를「지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련자 B, C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평정단위별 서열에 맞지 않는 평정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심사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년 하반기 근평 순위·점수 및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경 명세: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계·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시스템 구축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사건개요

청주시(㉮과)는 노후·위험시설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종합계측기(IoT[1]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계획"(㉮과-14123호, 이하 "㉠시스템 구축 용역"이라 한다)을 2022. 6. 20. 수립하고, <표-1>과 같이 IoT 센서 등을 도입하여 ㉠시스템을 2023. 6. 26. 구축하였다.

<표-1> 사업 개요

□ 사업명: ㉠시스템 구축 용역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610,476,000원

○ 주요 사업내용

- 위험시설물(8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및 구축계획 수립(56백만 원)
- 위험시설물(85개소)에 IoT 센서(303개)를 설치하여 IoT 계측 인프라 구축(448백만 원)
- ㉠시스템 SW 개발(113백만 원)

○ 입찰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종합계측기)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등록한 업체

1) Internet of Things(사물인터넷):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 「정보통신공사 사업법」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 총 사업비 1,400,000,000원

○ 구축에 필요한 서버와 빅데이터 SW는 조달청 3자단가계약으로 구매

- 빅데이터 SW(계약상대자-㉠): 684,000,000원
- 서버(계약상대자-㉡): 72,780,000원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위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판로지원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한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자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등에 따르면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이

하 “계약 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계약 일반조건)제5절 및 제9절에 따르면 납품한 물품에는 제작자명·상표를 표시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이행 완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검사 관계규정 등에 따라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물품의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시스템 구축 용역’의 검사를 할 때 검사 관계규정 등에 따라 계약이행을 확인하여 계약상대자가 경쟁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 지방시설주사보(임기제) A(이하 “A”라 한다)는 2022. 4. 19.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홍덕구 ㉯동 지방시설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2. 1. 1부터 2023. 5. 9.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실무담당자, 실무팀장으로 위 용역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계약 의뢰, 감독,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과 지방행정사무관 C(이하 “C”라 한다)는 2022. 3. 1.부터 2023. 6.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과장의 직위에서 위 용역사업을 총괄하였다.

실무담당자 A와 팀장 B는 견적가격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기준’ 등을 적용하여 <표-2>와 같이 원가를 산출하고, 판로지원법 제7조 등에 따라 ‘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종합계측기 등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모두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계약부서(㉱과)에 ㉠시스템 구축 용역 계약을 2022. 9. 19. 의뢰[2]하였다.

<표-2> '㉠시스템 구축' 원가 산출내역서

구분	내용	산출금액(원)	비고
합계		610,476,000	천 원 이하 절사
HW 구매	· IoT 계측 센서(303개) ※ 단가 1,336,500원	404,959,500	· 3개 업체(㉠, ㉡, ㉢) 견적서
	· IoT 계측 센서(303개) 설치 ※ 단가 80,300원	24,330,900	· 2개 업체 견적서
SW 개발	· 서비스 기능 개발	123,786,230	· 기능점수 157.5
용역	· 위험시설물 현장점검(안전점검)	57,399,650	· 3개 업체 견적서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22. 10. 11. 조달청으로부터 '경쟁제품인 종합계측기(IoT 계측 센서)는 판로지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들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용역(SW개발사업)과 분리발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구매업무 협의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해 달라는 공문[3]을 받고,

A는 팀장 B와 협의하여 '종합계측기(IoT 계측 센서)를 분리발주할 경우 SW개발 요구사항 구현 시 호환의 어려움 및 개발 지연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어 분리발주가 불가하여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계약의뢰한 관련 자료를 반려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조달청에 회신[4]하고, 계약방법을 중앙조달에서 자체조달로 변경하여 계약부서(㉮과)에 다시 계약을 의뢰[5]하였다.

이후 ㉠시스템 구축 용역은 ㉡이 단독응찰하여 2022. 11. 10. 제안서 평가 후 계약부서(㉮과)에서 [붙임 1]과 같이 경쟁제품(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종합계측기)에 대한 ㉡의 직접생산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

2) ㉮과-22602(2022. 9. 19.)호
3) 조달청 ㉯과-13523(2022. 10. 11.)호
4) ㉮과-24999(2022. 10. 12.)호
5) ㉮과-25121(2022. 10. 13.)호

관이 발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확인하고 2022. 11. 29. 수의계약[6]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이 A와 B는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쟁제품인 종합계측기(IoT 계측 센서)를 도입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종합계측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였고, 조달청 구매업무 협의과정 등을 통해 경쟁제품인 종합계측기를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3. 2. 17. ㉡이 직접생산한 종합계측기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붙임 2]와 같이 제조사가 '㉢'으로 명시된 종합계측기를 구매하여 납품하겠다고 기자재 공급원 승인을 요청[7]하자, 위 사람들은 판로지원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23. 2. 21. ㉮과장 C의 결재를 받아 ㉡에 기자재 공급원 승인을 통보[8]하였다.

이에 정부합동감사 기간(2024. 3. 11.~3. 27.) 중 ㉠시스템 구축 용역의 종합계측기(IoT 센서)의 직접생산제품 납품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붙임 3]과 같이 ㉡이 자사의 직접생산물품이 아닌 다른 회사 ㉢의 종합계측기(IoT 센서 316대[9], 422,334,000원)를 완제품으로 구매하여 납품하였는데도 위 관서는 종합계측기(IoT 센서)의 인수를 거부한 후 ㉡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여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수하고 검사를 완료하였다.

---

6) 지방계약법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20.7.15.~'24.6.30.)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음

7) ㉡ 데이터 230217-001(2023. 2. 17.)호(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제출의 건)

8) ㉮과-4869(2023. 2. 21.)호

9) ㉮과-16978(2023. 6. 16.)호「㉠시스템 구축 용역」설계변경 집행 의뢰(IoT센서 수량 변경(303개→316개, 404,959,500원→422,334,000) 및 계약금액 변경(598,266,000원→616,685,000원)

그 결과 중소기업자가 대기업 제품 및 하청업체의 제품 등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도입한 직접생산확인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게 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 A

2022. 2. 21. 재해취약시설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 수행을 위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채용공고문에 없는 ㉠시스템 구축 업무를 맡게 되어 계약 및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숙지가 미흡하였고, ㉡이 기자재(종합계측기) 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고 직접 설치까지 완료하여 정부합동감사 전까지는 ㉡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다른 회사의 종합계측기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B

토목직으로 30년을 근무하면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되었고, 다른 지자체는 관련 업무 전문성이 있는 ㉮과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우리시의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공모사업을 신청한 ㉯과에서 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팀장으로 여러 현안업무가 있어 충실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종합계측기의 제조사가 ㉢이라는 사실은 정부합동감사 전까지 몰랐으며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 결과

A, B는 정부합동감사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하지 않은 종합계측기를 납품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사람들은 ㉡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하면서 경쟁제품인 종합계측기를 도입하기 위해 판로지원법에 따라 종합계측기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였고, [붙임 2]와 같이 ㉠이 요청한 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 관련 공문(승인요청 목록, 정보보호인증서, 적합등록 필증 등)에 종합계측기의 제조사가 ㉢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 직접생산한 종합계측기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의 종합계측기를 구매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판로지원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기자재 공급원 요청을 승인하였고,

[붙임 3]과 같이 ㉠이 제출한 준공계의 선금 사용내역서에도 ㉢의 센서를 구매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 직접생산한 종합계측기를 납품하지 아니하고 ㉢의 종합계측기를 구매하여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기자재 공급원에 대한 승인과 검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위 사람들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판단

판로지원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였음에도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하여 납품하는 것을 승인하고, 납품된 물품의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실무책임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승인한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당시 ㉮과장 C는 과장으로서 실무담당자와 팀장이 직접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는 경쟁제품에 대하여 다른 회사의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승인하고 검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징계] 위 A,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련자 C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검수할 때 직접생산하지 아니한 물품을 그대로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한 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구매·납품한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붙임 3]: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계 · 훈계 · 주의요구

제　　목　**㉡공사 부당 설계변경 및 관련 계획 미준수 등**

기 관 명　진천군

내　　용

1. 사건개요

진천군(㉮과[1])은 「소하천정비법」 제3조, 제3조의3, 제6조 등에 따라 ⓐ소하천의 관리청으로서 소하천구역을 결정 및 지정하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소하천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 관서는 소하천정비 시행계획[2]에 따라 홍수피해 등 자연재해로부터 해당 지역의 농경지와 주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진천군 ○○읍 ○○리 및 ○○리 일원에 ㉡공사(이하 "정비공사"라 한다)를 추진하고자 2019. 5. 7. ㉠(대표이사 AA, 이하 "㉠"이라 한다)과 공사계약(공사기간 2019. 5. 8.~2022. 10. 27.)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사업개요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	공사비	용역비	보상비		
㉡공사	7,300	6,348	102	850	- 소하천정비 1.8㎞ - 교량 5개소	2017년 ~ 2022년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2021. 1. 1. ㉯과에서 ㉮과로 조직개편

2) 「㉡공사」 시행계획 수립(2018. 10. 19.) : 소하천 정비 L=1.8㎞/ 사업비 6,900백만 원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진천군은 소하천 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계획에는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정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하천설계기준[3)]」 제3장 ‘소하천 종합계획’ 제1절 ‘소하천 종합계획’ 2.10.3 ‘국가 및 지방하천 연계’와 제7장 ‘소하천 하도시설’ 제6절 ‘소하천 교량 및 세굴보호공’ 4.1.1 ‘교량 연장’ 등에 따르면 수계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소하천 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하천과의 연계를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수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소하천과 본류 하천 합류 지점에는 단절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을 횡단하는 신설 교량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교량의 설치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량 연장은 설치지점의 계획하폭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제8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3) 소하천 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 정비의 조사·계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행안부장관이 고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이하 “설계변경 사유”라 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가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지방하천과 접속하는 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할 경우에는 그 지방하천의 연계성을 검토한 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및 소하천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정비하여야 하고, 지방계약법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일반입찰 대상 공사이며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추가적인 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설계변경으로 추진해서는 아니되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사업의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위 관서는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상위계획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추가 공사를 부당하게 설계변경 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도 다르게 하폭을 무단으로 축소하여 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소하천과 접속하는 지방하천 관련 상위계획 검토 미흡

위 관서는 실시설계용역업체로부터 실시설계용역[4] 완료 시점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소하천과 접속하는 ⓑ천의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중에 있어 “본류하천인 ⓑ천 기점홍수위[5]는 2004년 10월 고시된 진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4) 과업기간: 2017. 3. 9.~2017. 11. 3.(240일)/ 용역비: 102,259,500원/ 설계사: ㄷ

따라 EL: 58.87m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향후 ⓑ천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따라 공사착공 시 기점홍수위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접수하여 2017. 11. 3.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정비공사 발주 전인 2018. 6. 28. ⓑ천 하천기본계획(변경)이 고시[6]되었으나 이에 대한 검토 없이 2019. 4. 9. 발주계획[7]을 수립하여 당초보다 0.15m 낮아진 ⓑ천 계획홍수위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소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증가, 하천 내 교량의 형하고가 높아져 교량과 연결되는 도로의 종단경사도 증가, 공사비 과다 산정 등으로 주민불편 및 예산 낭비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다.

나. 신규 발주대상인 공사를 일반입찰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부당 추진

위 관서는 2021. 4월 정비공사 추진 중 '2020년 7~8월 집중호우로 제방 유실 및 농경지 피해가 발생하여 정비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현지 출장 이후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해복구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상류부 추가 부분(L=0.4㎞, 교량 1개소)을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상류부 추가 부분(L=0.4㎞, 교량 1개소)은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방계약법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일반입찰 대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추진해서는 아니되고 일반입찰로 추진했어야 했다.

---

5) 당해 하천의 종점에 대한 홍수위로서 배수효과가 있는 지천에서는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결정
6) ⓑ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2018. 6.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18-306호/ 기점홍수위 58.72m
7) ㉡공사(장기계속, 1차분) 집행(2019. 4. 9., ㉮과-9447)

그런데 위 관서는 2021. 4. 23. 상류부 추가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정비공사에 포함하는데 891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검토보고서[8]를 작성한 후 <표-2>와 같이 2021. 4. 27. ㉠과 4차 변경계약[9]을 체결하였다.

<표-2> ㉡공사 설계변경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증감액	공사내용	주요 변경사항
		계	도급액	관급자재대			
최초 계약	2019. 5. 7	4,640,781	2,737,981	1,902,800			
1차 변경	2019. 12.12	4,737,640	2,866,480	1,871,160	96,859	교량 2개소	폐기물 및 토공량 증가, 공사용 가도 추가 등
2차 변경	2020. 9.23	4,965,650	3,065,600	1,900,050	228,010	하천축제 (L=1.8km) 교량 2개소)	식생옹벽→역T형 옹벽
3차 변경	2020. 12.10.	5,291,860	3,282,100	2,009,760	326,210		물가변동 반영 및 배수공 추가
4차 변경	**2021. 4.27**	**6,337,720**	**3,816,230**	**2,521,490**	**1,045,860**	제방도로 (L=1.8km) 교량 1개소)	**하천정비 추가 (L=0.4㎞, 교량 1개소)**
5차 변경	2021 .12.23	6,386,128	3,940,690	2,445,438	48,408		물가변동 반영
6차 변경	**2022. 6.15**	**6,314,683**	**3,927,590**	**2,387,093**	**△71,445**	추가분 (L=0.4km, 교량 1개소)	**교량 연장 축소(13m→8m)**
7차 변경	2022. 10.24	6,347,862	3,920,180	2,427,682	33,179		농지진입로 추가 등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은 일반입찰을 거치지 않고 524백만 원 상당의 하천정비 공사를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로 계약을 하게 되었다.

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과 다르게 하폭 등을 무단으로 축소하여 시공

위 관서는 상류부 추가 부분(L=0.4㎞, 교량 1개소)을 기존의 정비공사에 포함하기 위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하천설계기준을 준수하여 소하천의 계획하폭을 13m로 하여 설계금액을 산출하고서도, 실제 시공은 보상으로 인한 공사 지연을 사유로 당초 설계와 달리 <표-3>과 같이 소하천정비종

8) ㉡공사(장기3차) 추진에 따른 실정보고(㉮과-9697, 2021. 4. 23): 기안자 A, 검토자 D, 전결권자 F

9) ㉡공사(장기3차) 변경집행(㉮과-9785, 2021. 4. 26.) : 추가구간을 향후분(사업비: 891,730,130원/ 도급액: 524,030,000원, 관급자재대: 367,700,130원)으로 분리하여 전체분을 설계 변경함

합계획과 하천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소하천의 하폭을 8~12m로 무단 축소하여 시공하였다.

<표-3> ㉡공사 계획하폭과 실제시공 현황

(단위: m)

소하천 정비종합 계획	측점	35+36 (7교)	36	37	+47 (13낙차공)	38	39	+46 (8교)	40	41	42	+08 (14낙차공)	43
	하폭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13
실제시공	측점주)	20	19	16+10	14+3	14	11+10	9+4.5	9	6+10	4	3+12	1+10
	하폭	12	12	12	12	13	11	8	9.5	9.5	9.5	9	8

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측점거리는 50m, 설계도면에서 측점거리는 20m로 하여 서로 상이함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상류부 추가 부분 중 ⓐ 8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면서 설계대로 교량 연장을 13m로 시공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양어장 훼손 등으로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교량 연장을 당초 13m에서 8m로 무단 축소하여 시공하겠다는 내용으로 <표-2>와 같이 2022. 6. 15. ㉠과 6차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 인해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원활한 물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 향후 재피해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이에 따른 재시공 등으로 예산낭비 초래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설계도서와 달리 소하천 하폭을 축소 시공하여 11,078천 원[10]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업무 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 처리

진천군 ㉰과 지방시설주사보 A(이하 “A”라 한다)는 2019. 1. 1.부터 2021. 6. 30.까지, ㉮과 지방시설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1. 7. 1.부터 정부합동감사[11] 현재까지 ㉮과 ㉯팀 실무담당자로, ㉱과 지방시설주사 C(이하 “C”라 한다)

10) ㉮과에서 하천 하폭 등을 축소 시공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자체 산정한 금액

는 2018. 7. 1.부터 2020. 6. 30.까지, ㉮과 지방시설주사 D(이하 “D”라 한다)는 2020. 7. 1.부터 2022. 6. 30.까지 ㉯과 ㉰팀장의 직위로, ㉯과 지방시설사무관 E(이하 “E”라 한다)는 2022. 1. 1.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장 직위로 위 정비공사와 소하천 관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팀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면서 정비공사 추진 중 상류부 추가 부분에 대해 D, F[12]와 함께 현지 출장 이후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해복구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상류부 추가 부분(L=0.4㎞, 교량 1개소)은 일반입찰 대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공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비공사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A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 여건에 맞는 사업 물량 변경을 사유로 2021. 4. 23. 상류부 추가 부분을 정비공사에 포함하는데 891백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를 기안하고 D의 검토와 F의 결재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상류부 추가 부분(L=0.4㎞, 교량 1개소)을 설계 변경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소하천의 하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계획하폭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11) 사전조사: 2024. 2. 15.~3. 6.(14일간) / 본감사: 2024. 3. 11.~3. 27.(13일간)

12) 당시 ㉯과장으로서 2021. 6. 30. 퇴직

그런데도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하천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표-3>과 같이 소하천의 하폭을 무단으로 8~12m로 축소하여 시공하였다.

이로 인해 “3-나”항 및 “3-다”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D의 경우

위 사람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류부 추가 부분(L=0.4㎞, 교량 1개소)은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지방계약법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일반입찰 대상 공사로서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공사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추진해서는 아니되고 일반입찰로 추진하여야 했다.

그런데 정비공사 추진 중 상류부 추가 부분에 대해 A, F와 함께 현지 출장 이후 정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수해복구 사업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정비공사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기존의 정비공사에 포함하지 않고 일반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A가 기안한 설계변경 실정보고서를 검토한 후 그대로 결재하였다.

그리고 위 사람은 상류부 추가 부분(L=0.4㎞, 교량 1개소)을 설계 변경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소하천의 하폭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계획하폭 13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표-3>과 같이 소하천의 하폭을 무단으로 8~12m로 축소 시공하였고, ⓐ 8교량은 설계대로 교량 연장을 13m로 시공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양어장 훼손 등으로 시공이 어렵다고 A의 후임인 B와 함께 판단하고 B가 교량 연장을 당초 13m에서 8m로 무단 축소 시공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설계

변경 실정보고서[13]에 검토자로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해 “3-나”항 및 “3-다”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 C의 경우

위 사람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발주 이전에 ⓐ소하천과 접속하는 상위 하천(지방하천)인 ⓑ천의 하천기본계획을 검토하여 연계성 또는 관련성을 반영하여야 했다.

그런데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14] 보고서에 본류 하천인 ⓑ천 하천기본계획(변경)[15]에 따라 기점홍수위[16]의 변동이 예상되므로 공사착공 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는 실시설계용역업체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검토하거나 검토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비공사를 발주하여 0.15m 낮아진 ⓑ천 계획홍수위의 영향을 받는 ⓐ소하천 하류부 700m 구간[17]을 정비공사에 반영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3-가”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라. B, E의 경우

소하천 교량의 연장은 소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교량의 설치로 홍수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지점의 계획하폭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으로 정비공사에 포함한 ⓐ 8교량 재가설을 추진하면서 B는 D와 함께 설계대로 교량

---

13) ㉡공사(장기4차) 추진에 따른 실정보고(㉮과-12528, 2022. 6. 9.): 기안자 B, 검토자 D, 전결권자 E

14) 과업기간: 2017. 3. 9.~2017. 11. 3.(240일)/ 용역비: 102,259,500원/ 설계사: ㉢

15) ⓑ천 하천기본계획(변경) 고시(2018. 6. 2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제2018-306호/ 기점홍수위 58.72m

16) 당해 하천의 종점에 대한 홍수위로서 배수효과가 있는 지천에서는 본류의 계획홍수위를 검토하여 결정

17) 수리 검토는 당시 진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했던 ㉣에서 검토하였으며, ⓑ천과 ⓐ소하천이 접하는 기점부터 ⓐ소하천 상류부 700m까지 배수위 영향을 받음 (붙임 참조)

연장을 13m로 시공할 경우 인근에 위치한 양어장 훼손 등으로 시공이 어렵다고 D와 함께 판단하고 교량 연장을 8m로 무단 축소 시공을 하겠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E는 D가 위와 같은 사유로 교량 연장을 당초 13m에서 8m로 축소 시키는 것이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소하천설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데도 이에 대한 재검토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검토보고서를 그대로 결재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이로 인해 “3-다”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5.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6. 판단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변경과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와 D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C는 정비공사 발주 전 ⓑ천 하천기본계획 검토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B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검토 업무에 대해 소홀히 하였고 E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는

[징계] 위 A, D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련자 C, B, E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관련 상위계획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비교

측점 (N0.)	누가거리 (m)	2014년 종합계획 (ⓐ소하천 실시설계 반영)			2021년 종합계획 (ⓑ천 하천기본계획 반영)			계획 홍수위 차 (cm)	비고
		하폭		계획홍수위 (EL. m)	하폭		계획홍수위 (EL. m)		
		기존	계획		기존	계획			
0	0	11	25	58.87	11	25	58.72	15	1교
+40	40	25	25	58.87	25	25	58.72	15	2교
1	50	24	24	58.87	24	24	58.72	15	
+17	67	22	22	58.87	22	22	58.72	15	1낙차공
2	100	21	21	58.87	21	21	58.72	15	
3	150	20	20	58.87	20	20	58.72	15	
4	200	18	18	58.87	18	18	58.72	15	
5	250	17	18	58.87	17	18	58.72	15	
6	300	17	18	58.87	17	18	58.72	15	
7	350	17	18	58.87	17	18	58.72	15	
8	400	18	18	58.87	18	18	58.72	15	
+17	417	18	18	58.87	18	18	58.72	15	2낙차공
9	450	18	18	58.87	18	18	58.72	15	
10	500	15	18	58.92	15	18	58.79	13	3교
11	550	18	18	58.92	18	18	58.79	13	
12	600	18	18	58.93	18	18	58.80	13	
13	650	17	18	59.10	17	18	59.01	9	
+29	679	18	18	59.13	18	18	59.01	12	
14	700	17	18	59.42	17	18	59.41	1	3낙차공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 협의업무 부당 처리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사건개요

청주시(㉮과)는 <그림-1>과 같이 ⓐ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차장용지(○○리 000-0번지[1])에 건축주 ㉠이 신청[2]한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과로부터 「주차장법」 등 소관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고 허가가 가능하다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였다.

<그림-1> 건축개요

- 삭제 -	- 삭제 -
토지이용계획	조감도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당초 ○○리 000번지는 전체가 주차장용지였으나 충청북도는 토지소유주로부터 위 부지의 일부를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요청을 받아 2018년 2월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공공기여와 ○○리 000-0번지에 주차 건축물(578대)을 우선하여 착공(준공)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 충북고시 2018-00)

2) ㉠은 ○○읍 ○○리 000번지에 생활숙박시설을 신축하는 사항과 함께 건축허가 신청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3]”이란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 이상인 것을 말하고,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인 경우에는 70% 이상인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단위)배를 초과하지 않도록[4]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에 관한 협의 요청을 받았을 때는 건축물 높이 등이 「주차장법」에서 규정한 건축 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주차전용건축물 높이가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허가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건축주 ㉠은 ⓐ산업단지 내 주차장용지(○○리 000-0번지)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건축물 허용용도[5]에 따라 <표-1>과 같이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됨

4)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령 해석 요청에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3항에 따른 완화 적용 대상 규정에 「주차장법」 제12조의2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도 있음(법제처 21-0926)

5)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피스텔(업무시설)을 복합용도로 하는 주차전용건축물[6]을 신축하고자 2022. 8. 11.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과는 ㉯과로부터 같은 해 8. 12.「주차장법」 및 교통영향평가 여부 등 소관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한 건축 협의 요청을 받았다.

<표-1> 주차전용건축물 건축허가 신청 개요

건축주	대지위치	연면적	층수	주용도	주차장비율
㉠	청주시 청원구 ○○읍 ○○리 000-0 (ⓐ산업단지 주차장용지)	29,948㎡	B3층~24층 (높이: 88.65m)	- 주차장(B3층~7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1층) - 오피스텔(8층~24층)	70.21%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위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하여「주차장법」에 의한 건축 제한 사항을 적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 규모의 적정 여부를 살펴보면 <그림-2>와 같이 건축물의 높이 88.65m 중 최대 37.65m[7]가 초과되고 상부 오피스텔 45실(전용면적 119㎡) 중 20실이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설계[8]되었다.

<그림-2> 주차장법에 의한 높이 제한 검토

- 삭제 -	- 삭제 -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높이 제한 기준을 초과한 건축물 부분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6)「주차장법」 제2조제1호 및 제12조의2에 따르면 주차장의 종류로 노외주차장 등을 열거하고 있고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주차전용건축물을 노외주차장의 한 유형으로 규율

7) 88.65(건축물 높이) - [17(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 36/12(도로의너비)]

8) 건축설계자가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해「주차장법」 제12조의2를 적용하여 검토한 사항

그런데도 ㉮과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전용건축물의 높이 제한 사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주차장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건축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2022. 9. 15. ㉯과에 이를 회신[9]하였다.

이로 인해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설계된 주차전용건축물이 건축허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본부 ㉱과 지방공업주사보(전 지방공업서기) A(이하 “A”라 한다)는 2021. 1. 11.부터 2023. 1. 18.까지, ㉮과 지방공업주사 B(이하 “B”라 한다)은 2022. 1. 13.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의 직위로 「주차장법」과 관련된 건축 협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고 있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주차장법」 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사항을 알고 있었고 ㉠이 ○○읍 ○○리 000-0번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항과 관련하여 ㉯과로부터 건축 협의 요청을 받아 설계개요 등을 통해 해당 건축물이 주차전용건축물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건축 협의 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건축허가 신청된 주차전용건축물이 「주차장법」에서 정한 건축 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마땅히 검토하여야 하고 이를 검토했더라면 위 주차전용건축물이 높이 제한을 초과하여 설계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

9) 이후 ㉯과는 2023. 1. 11. 위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허가 처리

그런데도 위 사람은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사용 비율의 적정성 등만을 확인한 후 높이 등을 포함한 건축 제한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2022. 9. 15.「주차장법」에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건축 협의 결과를 작성하여 실무팀장 B와 ㉮과장의 업무대행자 C[10]의 검토·최종 결재를 받아 같은 날 ㉯과에 이를 회신하였다.

이로 인해 위 3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주차장법」제12조의2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사항을 알고 있었고 위 업무를 처리하면서 건축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건축물 용도(자동차 관련 시설)와 설계개요 등을 통해 주차전용건축물 건축 협의에 관한 사항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위 사람은 담당팀장으로서「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검토하거나 실무담당자 A가 높이 제한 사항을 검토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건축허가 신청된 건축물이 일반 오피스텔(업무시설)로 임의 판단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제한 사항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실무담당자 A가「주차장법」에 “적합”하다고 작성한 건축 협의 결과 문서를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해 위 3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10) 그 당시 ㉮과장 D가 부재(연가)중인 관계로 직무대행자인 C가 대결

5.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11)]

6. 판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 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징계] 위 A, B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건축 제한 사항을 초과하여 설계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주차장법」 제12조의2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에 대해 「건축사법」 제30조의3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11) 다만 청주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서가 발부된 이후 건축주와 협의하여 2024. 3. 22. 건축허가를 취소 처리함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계·훈계·주의요구

제　　목 면적 제한 기준을 초과한 농지전용허가 부당 처리

기 관 명 제천시

내　　용

1. 사건개요

제천시(㉮과)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등의 신청을 받아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이를 처리하는 등 농지 이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5항에 따르면 시장[1]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의 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2]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

1) 「농지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진흥지역 밖 3만㎡ 미만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와 협의에 관한 사항을 시장 등에게 위임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분류에 의한 시설을 말함(농지업무편람)

연접[3]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시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농지전용허가의 제한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과는 농지전용면적을 제한받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아 이를 처리할 때는 민원인이 농지전용허가 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동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가 있는지 확인[4]하여야 하고 합산한 농지전용면적이 1,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면 ○리 00-00번지의 경우

위 관서는 민원인 G(이하 “G”라 한다)가 생산관리지역인 ○○면 ○리 00-0번지에 당초 건축신고 처리된[5] 야영장 대신 단독주택을 신축[6]하고자 건축신고를 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1. 12. 8. ㉯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

---

3) 하나의 시설 부지와 다른 또 하나의 시설 부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를 말함(농지업무편람)

4) 「농지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따르면 농지전용협의를 동의한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인적사항, 농지소재지, 전용목적·면적 등을 포함한 농지전용협의대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새올시스템에서 민원인 및 해당 농지지번을 통하여 과거 농지전용허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음

5) ㉮과는 ㉯면으로부터 야영장 개발에 관한 농지전용허가(전용면적 2,976㎡) 협의 요청을 받고 2021. 5. 31. 농지전용허가를 승인하고 이를 회신함

6) G는 ○○면 ○리 00-0번지에 2020. 7. 16. 단독주택 신축을 건축신고한 뒤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완료되었으나 같은 해 9. 9. 민원신청을 취하한 이력이 있고, ㉮과는 2021. 10. 12. 위 번지에 단독주택(12호) 신축에 관한 사전심사청구(「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의뢰받고 단독주택의 경우 농지전용면적은 1,000㎡ 이하로 가능하다는 검토의견서를 회신하기도 함

용면적 999㎡) 협의 요청을 받아 같은 해 12. 9.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승인하고 ㈏면에 이를 회신하였다.

이후 위 관서는 G가 2개월 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단독주택 부지와 연접한 농지(○○면 ○리 00-00번지[7])에 또 다른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2. 2. 16. ㈏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용면적 996㎡) 협의 요청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로 2021. 12. 9. 이미 허가된 면적을 합산할 경우 농지전용면적이 <표-1>과 같이 1,000㎡를 초과한 1,995㎡이므로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표-1> 농지전용허가 신청 명세(G)

(단위: ㎡)

건축주	지번	지목	용도지역	건축협의 요청일	농지전용 허가일	전용목적	허가면적
G	○○면 ○리 00-0	전	생산관리 지역	2021. 12. 8.	2021. 12. 9.	단독주택(2개동) 신축	999
	○○면 ○리 00-00	전	생산관리 지역	2022. 2. 16.	2022. 2. 21.	단독주택(3개동) 신축	996
합 계							1,99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도 위 관서는 2022. 2. 18. 농지전용허가가 “적합”하다는 출장결과보고서와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같은 해 2. 21.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승인하고 ㈏면에 이를 회신하였다.

그 결과 G는 「농지법」 제37조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7) ○○면 ○리 00-0번지에 분할된 농지

나. ○○면 ○○리 000-00번지의 경우

또한 위 관서는 민원인 H(이하 “H”라 한다)가 농림지역인 ○○면 ○○리 000-0번지에 당초 건축신고 처리된[8] 단독주택 부지를 확장하고자 건축신고를 변경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2. 4. 20. ㈐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용면적 793㎡) 협의 요청을 받아 같은 해 4. 21.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승인하고 ㈐면에 이를 회신하였다.

이후 위 관서는 H가 17개월 전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위 단독주택 부지와 연접한 농지(○○면 ○○리 000-00번지)에 또 다른 단독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2023. 8. 8. ㈐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용면적 835㎡) 협의 요청을 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5항에 따라 단독주택 부지로 2022. 4. 21. 이미 허가된 면적을 합산할 경우 농지전용면적이 <표-2>와 같이 1,000㎡를 초과한 1,628㎡이므로 농지전용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려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표-2> 농지전용허가 신청 명세(H)

(단위: ㎡)

건축주	지번	지목	용도지역	건축협의 요청일	농지전용 허가일	전용목적	허가면적
H	○○면 ○○리 000-0 외 1필지	과수원	농림지역	2022. 4. 20.	2022. 4. 21.	단독주택 신축	793
	○○면 ○○리 000-00	과수원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2023. 8. 8.	2023. 8. 11.	단독주택 신축	835
합 계							1,628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8) ㈎과는 ㈐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전용면적 661㎡) 협의 요청을 받고 2022. 2. 23. 농지전용허가를 승인하고 이를 회신함

그런데도 위 관서는 2023. 8. 11. 농지전용허가가 “적합”하다는 출장결과보고서와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농지전용허가(협의)를 승인하고 ㉰면에 이를 회신하였다.

그 결과 H는 「농지법」 제37조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단독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과 지방농업주사(전 지방농업주사보) A(이하 “A”라 한다)는 2019. 1. 17.부터 2022. 7. 17.까지, ㉮과 지방농업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0. 7. 14.부터 2022. 7. 17.까지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의 직위로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그리고 ㉯과 지방농업서기 C(이하 “C”라 한다)는 2023. 7. 3.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 지방농업주사 D(이하 “D”라 한다)는 2022. 7. 18.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 직위로 농지전용허가(협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고 있다.

가. A의 경우(○○면 ○리 00-00번지 관련)

위 사람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농지전용 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년간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위 사람은 2022. 2. 16. ○○면 ○리 00-00번지에 단독주택 부지 조성

에 관한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을 받은 직후 출장을 나가 사업 부지를 직접 살펴보는 과정에서 2021. 12. 9. 전용 허가된 농지(○○면 ○리 00-0번지)에서 공사 중인 단독주택 신축 현장을 확인[9]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은 이번 사업 부지(○○면 ○리 00-00번지)와 연접되어 이미 전용 허가된 농지(○○면 ○리 00-0번지) 면적을 합산하게 되면 농지전용 면적이 제한 기준인 1,000㎡를 초과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출장지에서 복귀 후 새올시스템 등에서 농지전용허가 이력을 확인하여 면적 제한 초과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2022. 2. 18.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적합"하다는 출장 결과보고서와 농지전용심사의견서를 작성한 후 ㉥팀장 B와 ㉦과장 E에게 보고하여 각각 검토·최종 결재를 받아 같은 해 2. 21. ㉡면에 농지전용허가(협의)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로 인해 위 "3-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B의 경우(○○면 ○리 00-00번지 관련)

위 사람은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농지전용 제한 면적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인이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5년간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위 사람은 G가 ○○면 ○리 00-0번지에 2021. 5. 20. 야영장 개발을

9) G가 건축신고 시 세움터에 첨부한 현장사진을 살펴보면 신고 당시 ○○면 ○리 00-0번지에서 단독주택 공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됨

위해 건축신고한 사항과, 2021. 12. 9. 건축신고사항을 변경(야영장 → 단독주택)한 사항에 대해 ㉯면으로부터 농지전용(변경)허가 협의 요청을 받고 관련 문서를 결재하는 등 담당팀장으로서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으므로 위 번지에서 분할된 ○○면 ○리 00-00번지에 새로운 단독주택 부지 조성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협의 요청을 받아 이미 전용 허가된 농지 면적을 합산하게 되면 면적 제한 기준인 1,000㎡를 초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본인이 결재한 문서 등을 통해 G가 허가 받은 농지전용 이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실무담당자 A가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적합”하다고 기안한 출장결과보고서와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을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해 위 “3-가”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C의 경우(○○면 ○○리 000-00번지 관련)

위 사람은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의 실무담당자로서 건축물 용도에 따른 농지전용 제한 면적과 동일인이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면적의 적용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농지법 시행령」제44조를 마땅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한편 위 사람은 공무원 임용 후 읍·면에서 농지전용신고 업무를 담당하면서 신고대상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경우 면적을 합산하도록 규정한「농지법 시행령」별표1(농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규모 등) 비고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농지전용허가(협의) 요건을 검토하면서 전용제한면적의 적용 방법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면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협의) 요청을 받아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새올시스템 등을 통해 G가 이번 사업 부지(○○면 ○○리 000-00번지)와 연접하여 전용 허가를 받은 농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2023. 8. 11. 농지전용허가(협의)가 “적합”하다는 출장결과보고서와 농지전용심사의견서 등을 작성한 후 ㉮팀장 D와 ㉯과장 F에게 보고하여 각각 검토・최종 결재를 받아 같은 날 ㉰면에 농지전용허가(협의) 결과를 회신하였다.

이로 인해 위 “3-나”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6. 판단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 C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D는 담당팀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실무담당자 C가 기안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그대로 결재하는 등 농지전용허가(협의) 업무가 부당하게 처리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은**

[징계] 위 A, B, C를「지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련자 D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면적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계·훈계·주의요구

제　　목 분리발주 해야 할 전기·정보통신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포함하는 등 업무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사건개요

청주시(㉮관)는 ⓐ의 위상에 걸맞은 ⓑ관 시설 및 전시콘텐츠 개편과 노후 시설 개편을 통한 전시 및 유물의 안전한 관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표-1>과 같이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2022. 6. 17. '㉮관 상설전시실 개편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이하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라 한다)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공고하여 2022. 9. 1. ㉠ 외 4개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계약금액	사업기간	계약업체
㉮관 상설전시실 개편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사업	∘ 상설전시실 개편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2,503	'22. 9. 1. ~ '23. 5. 28.	㉠ 외 4개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1]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1.1.10. 물품・용역・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 발주시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공사 관련 법령의 준수여부,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 시장의 경쟁 제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전기공사업법」 제3조 및 제11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25조에 따르면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재난의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이 유지되는 경우 등에는 분리발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제작과 전기・정보통신공사가 혼재된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을

1) 2016. 9. 13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일반 공사까지 확대되거나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 폐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통해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시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의견 제시(㉮과-1040, ‘17.4.24.)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사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전시물 제작 설치를 추진하면서 2022. 5. 23. ㉮관 상설전시실 개편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계획 보고와 2022. 6. 17. 입찰공고 시 첨부한 제안요청서의 과업 내용에 전시조명 및 전시영상하드웨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서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가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관서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물품과 공사가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사전계획 단계부터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창의성, 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전시 실물모형, 전시콘텐츠 및 쇼케이스 등 물품 제작 부분에 대해서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여야 할 전기·정보통신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포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리고 전시물 제작 설치사업에 포함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추진함으로써 해당 공사의 시공 자격이 없는 계약상대자가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도급받게 되었고, 이후 계약상대자는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자격 및 시공 능력이 없어 2023. 1월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각각 ㄴ, ㄷ과 하도급계약[2]을 체결하여 공사를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일괄 추진하여 자격이 없는 자[3]에게 466,664천원[4] 상당의 전기공사와 정보통신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계약 관계(종합건설공사→전문건설공사)가 아닌 물품제작설치에 포함된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임의 업체에 외주를 주면서 하도급계약 체결

공사를 도급받게 하였다.

4. 업무담당자의 부당한 업무처리

㉰실 학예연구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1. 8. 1.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과 지방행정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2. 1. 13.부터 2023. 1. 18.까지, 학예연구관 C(이하 “C”라 한다)는 2022. 1. 1.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실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 ㉯실장의 직위로 ㉬관 상설전시실 개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무를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가. A의 경우

위 사람은 전시물 제작 설치의 실무담당자로서 ‘㉬관 상설전시실 개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보고’와 계약의뢰 시 첨부한 입찰공고문,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요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 ㉮팀장 B와 ㉯실장 C에게 보고하여 각각 검토·최종 결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전시물 제작 설치에 조명설치와 전시영상시스템 구축 등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가 수반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집행기준과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를 검토하고,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했어야 하는데도 업무의 효율성, 하자 등에 대한 분쟁 최소화를 사유로 분리발주 검토 없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포함하여 일괄 추진하였다.

이로 인해 위 3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

3)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소지하고 있을 뿐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음

4) 제안서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산출된 전시연출조명부문 217,019천 원, 전시영상하드웨어 부문 249,645천 원에 대한 합계

나. B의 경우

위 사람은 A가 기안한 '㉮관 상설전시실 개편 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계획 보고'와 입찰공고문, 전시물 제작 설치 제안요청서를 포함한 계약의뢰 공문을 검토결재 하였다.

한편 전시물 제작 설치 계획 보고 등 결재 과정에서 전시조명설치와 전시영상하드웨어에 대한 과업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전기·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결재 과정에서 전기·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집행기준,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분리발주 및 협상에 의한 계약에 공사를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거나 확인 지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검토 결재하였다.

이로 인해 위 3항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

5. 관계기관 등 의견

ⓑ관은 인테리어적 요소와 실물모형, 영상물, 조명, 통신공사 등 다양한 요소가 어우러지기 때문에 전기 및 통신공사를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의 완성도 담보, 하자에 대한 분쟁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고, 타 사례를 참고하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노력을 하였으나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미흡함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6. 검토결과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는 타 공종과 설계·시공이 분리되어 시공 시점과

한계가 명확한 점, 건축공사 등에서도 분리발주를 통해 연계 시공이 가능한 점, 지방계약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공사를 포함할 수 없는 점,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관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판단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포함하여 일괄 발주하는 등 전시물 제작 설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 B의 행위는「지방공무원법」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C는 담당자와 담당 팀장이 위 전시물 제작 설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징계] 위 A, B를「지방공무원법」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련자 C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개별법령에 따라 분리발주 하여야 하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계·훈계·주의요구

제　　목 실시설계용역 업무 감독 소홀 및 부당 설계변경 공사추진 등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사건개요

괴산군(㉮과)은 ⓐ관광지 리모델링 및 시설을 확충하여 체험과 힐링의 중심 관광지로 탈바꿈하고 야간 및 사계절 관광객 유입을 통한 관광활성화 등을 위하여 <표-1>과 같이 괴산군 ○○읍 ○○리 일원에 ⓐ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비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	공사비	용역비		
ⓐ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	2,318	2,205	113	○ 수국정원 1식, 전망대 및 수변데크 1식 ○ ⓑ정 화계 설치 ○ 포토존 설치 1식 등	2019년 ~ 2022년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괴산군 ㉯과 지방공업주사(전 지방공업주사보) A(이하 “A”라 한다)는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과 지방시설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1. 7. 3부터 2022. 11. 15.까지, ㉰면 지방행정사무관 C(이하 “C”라 한다)는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 과장의 직위로 위 ⓐ

관광지 관광명소화 사업의 관리 · 감독 업무 등을 담당하거나 총괄하였다.

2.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 실시설계용역 감독 등 업무 부적정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 실시설계용역”(이하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과업지시서 Ⅳ.9. ‘실시설계 종합보고서’에는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사실적·기술적 작성, 경관조명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능 및 시설개요 등을 작성하여 사용자 편의 도모,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 포함, 과업의 목적 등을 수록[1]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과업지시서 Ⅰ.5.나 ‘실시설계’에 따르면 ㈜ⓐ교 및 ⓐ교 안전성 검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 과업지시서 Ⅳ.10. ‘성과품 제출’에서는 종합보고서 5부, 구조안전성 검토서(㈜ⓐ교, ⓐ교) 5부를 성과품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는 실시설계용역업

1) 1)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3) 과업의 내용, 4) 사전 조사내용 요약, 5) 설계기준, 6) 세부설계내용(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7) 도면첨부, 기타 참고자료 및 우리군의 요구사항

체에게 ㈜ⓐ교와 ⓐ교의 안전성 검토 등을 수행하도록 감독을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대로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 후 감독조서와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A의 경우

위 사람은 2020. 5. 11. ㉠(대표 D)와 실시설계용역 계약(계약금액 113,130천 원)이 체결된 이후 용역감독공무원으로서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업의 내용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그 이행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편 위 사람은 실시설계용역 감독 과정에서 ㈜ⓐ교 및 ⓐ교 안전성 검토와 실시설계 종합보고서는 용역감독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실시설계용역 과업 내용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위 사람은 실시설계용역업체가 ㈜ⓐ교 및 ⓐ교 안전성 검토와 설계의 방향과 기준이 정리되어야 하는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도록 감독해야 하는데도 안전성 검토 수행 여부와 종합보고서 등 과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2021. 7. 21.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제출한 “준공계”에 용역감독공무원으로서 결재하여 실시설계용역업체가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실시설계용역이 과업 내용과 같이 수행되었다는 내용으로 “준공검사(감독) 조서”도 작성(기안)하여 상급자인 B와 C의 결재를 받아 준공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과업지시서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교와 ⓐ교의 안전성 검

토[2]는 이행되지 않았고 실시설계용역 종합보고서는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B, C의 경우

위 사람들은 2021. 7. 21. A가 실시설계용역이 과업지시서 내용과 같이 준공이 되었다며 기안한 “준공검사(감독) 조서” 결재 요청이 있어 각각 검토자와 전결권자로 결재하였다.

한편 결재 과정에서 실시설계용역 성과품 내역 등을 확인했었다면 구조안전성 검토서와 종합보고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A로부터 ‘과업지시서 대로 납품이 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후 A의 보고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하거나 확인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해 “2-나-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3.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 부당 설계변경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등에 따르면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2) ㈜ⓐ교 정밀안전점검 및 구조안전성평가 용역 별도 실시: 용역비(19,670천 원), 용역기간(2022. 4. 28. ~2022. 6. 24.), 용역업체(㉡, 대표 E)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이하 “설계변경 사유”라 한다) 등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가목 등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교량이음장치와 교량받침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2022. 1. 1.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94호, 이하 “경쟁제품 및 직접구매 대상내역”이라 한다)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3]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괴산군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계약 목적물에 경쟁제품이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업무를 추진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A의 경우

2021. 4. 26. ㄷ(대표 F)과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 계약(최종 계약금액 1,761,670천 원)이 체결된 이후 2022년 10월경(날짜 미상) 위 사람은 B와 함께

3)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확인

㈜ⓐ교의 노후화와 신규 시설물인 미디어 파사드 설치[4]에 대한 ㈜ⓐ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신축이음 교체 및 받침 제작·설치 등 교량보수공사(이하 “교량보수공사”라 한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한편 교량보수공사를 설계변경으로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기존의 계약상대자가 교량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교량받침 등의 직접생산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사람은 교량보수공사가 기존의 ⓐ관광지 정원 조성공사와 사업의 성격이 다르고 새로운 공정의 사업으로서 계약집행기준 상의 설계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존 계약상대자는 교량 이음 및 받침을 직접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입찰을 통해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설계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으로 기존 공사에 포함하겠다고 B와 함께 결정한 후 검토보고서[5]를 작성하였고 2022. 11. 22. B의 후임자인 F와 C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 <표-2>와 같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교량보수공사 설계변경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일	계약금액	증가액	공사내용	공사내용별 증가액
최초계약	’21.4.26.	956,492	-	- 조경공사 등	-
변경계약 (4차)	’22.11.22.	1,747,270	790,778	- 조경공사 등	720,828
				- 교량보수공사	69,950

특히 기존의 계약상대자인 ㉡은 교량 이음 및 받침의 직접생산과 제작·설치의 능력이 없어 2022. 11. 23. ㉤(대표이사 G)과 교량보수공사에 대한 하도급

4)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 미디어파사드 제작 및 설치: 계약금액(1,086,260천 원)/ 설치기간(2022. 8. 8.~2022. 12. 26.)/ 납품자(㉣)

5) 설계변경시행(ⓐ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2차) 총차-4회, 2차-2회, 2022. 11. 22.)

계약(금액: 57,430천 원)을 맺어 위 교량 받침(이음장치)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 교량 이음 및 받침의 직접생산 능력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입찰로 시행되어야 할 교량보수공사를 기존의 계약상대자인 ㄷ과 설계변경으로 추진하여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

2) B의 경우

위 사람은 2022년 10월경(날짜 미상) A와 함께 ㈜ⓐ교의 노후화와 신규 시설물인 미디어 파사드 설치에 대한 ㈜ⓐ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량보수공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진하던 중 업체 선정 방식 검토과정에서 A로부터 '기존의 계약상대자인 ㄷ은 조경공사업 면허뿐만 아니라 토목공사업 면허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량보수공사를 맡겨도 문제가 없다'라는 보고를 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기존공사에 포함하겠다고 A와 함께 결정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2022. 11. 15. ㈏과로 인사 이동하였다.

한편 위 사람은 교량보수공사가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기존 계약상대자가 교량보수공사를 수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였다면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A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A의 보고가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검토하거나 추가적인 검토 지시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 인해 "3-나-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3) C의 경우

위 사람은 2022. 11. 22. A가 교량보수공사를 기존의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에 설계변경으로 포함하여 공사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기안한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 설계변경시행”건에 대해 결재 요청을 받은 후

설계변경 내용과 사유를 면밀히 살펴보았더라면 기존 사업과 무관한 교량보수공사가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설계변경 적정 여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결재하였다.

이로 인해 “3-나-1)”항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판단

ⓐ관광지 관광명소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시설계용역 감독 업무 소홀과 설계변경 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B는 실시설계용역 및 설계변경 검토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C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징계] 위 A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관련자 B, C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용역을 준공처리 하거나,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공사를 설계변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관경고 및 시정요구

제　　목 괴산㉣축제 보조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괴산군(㉮과)은 유기농의 메카 괴산군과 세계 유기농산업엑스포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2019년부터 괴산㉣축제를 매년 11월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괴산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표-1>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괴산㉣축제 보조금 교부 내역

(단위: 천원)

연도별	지원사업명	교부액			비 고(주관)
		계	도비	군비	
2019	제0회 괴산㉣축제	290,000		290,000	㉯과
2020	제0회 괴산㉣축제	350,000		350,000	㉮과
2021	제0회 괴산㉣축제	500,000		500,000	〃
2022	제0회 괴산㉣축제	500,000	15,000	485,000	〃
2023	제0회 괴산㉣축제	500,000		500,000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위 관서는 행사의 기본방향 수립과 주요 행사를 확정하기 위해 괴산㉡축제 기본계획(안)[1]을 마련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였고, 보조사업자인 위원회의 보조금

1) 괴산㉣축제 기본계획(안)에는 축제 운영 프로그램, 행사장 배치계획, 홍보계획, 축제장 안전·환경·교통관리계획, 부서별 담당 행사, 예산집행계획 등이 포함됨

신청을 받아 <표-2>와 같은 일정으로 행사를 추진해 왔다.

<표-2> 2020년~2023년 괴산㉾축제 추진 일정

연도별	기본계획 보고 (괴산군)	보조금 신청 (괴산축제위원회)	세부추진계획 보고 (괴산군)	보조금 정산 (괴산군)	비 고
2020	6. 22.	10. 8.	10. 19.	12. 2.	
2021	7. 29.	10. 14.	10. 5.	12. 24.	
2022	8. 10.	9. 15.	10. 11.	12. 29.	
2023	7. 11	9. 19.	10. 6.	12. 6.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를 보조사업으로 추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제6항 및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2. 4. 22.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금[2]”이란 괴산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 3]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여 직접 시행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위 관서에서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 등의 경우, 행사운영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직접 추진하여야 하고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여 행사 등을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보고한 기본계획의 일부를 발췌하여 괴산축제위원회 명의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전자문서시스템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괴산㉣축제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표-3>과 같이 부서별 담당 행사를 지정하고 괴산㉣축제 전반을 부서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였다.

<표-3> 괴산㉣축제 부서별 담당 프로그램 내역

부 서 별	부서별 담당 행사내용
㉰관	·㉭문화체험(주한대사) 초청 행사 추진
㉱과	·㉭체험 참여자 모집·운영, 취약계층 나눔㉭ 릴레이 추진
㉲과	·㉭축제 기업홍보, 나눔㉭ 릴레이 참여단체 모집
㉳센터	·우리동네 ㉭명인 운영, ○○○ 판매·체험 운영 지원
㉮과	·명인의 ㉭간, ○○ 전시관, 괴산㉤대회, ㉭나눔행사 등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위 관서 업무 담당자들은 축제와 관련된 각종 업체의 선정과 집행을 주도하였고, 지출결의서 작성 대신[3] 위원회 명의의 공문(내부결재)으로 결재 과정 없이[4]으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이와 같이 위 관서는 괴산㉣축제 전반을 사실상 주관하면서도 보조사업 형태로 축제를 추진하였다.

---

3)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11조제5항)에서는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

4) ㉮과 ㉯팀 직원들은 위원회 지출 공문(내부결재)을 작성한 뒤 위원회 임원들에게 구두로 추인을 받고 보조금을 집행해 왔음

3.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등을 누락한 채 보조금 교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및「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등을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교부신청서와 함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교부받으려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금액과 산출기초 등을 확인하고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위 관서는 위 관서 주관하에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등을 누락한 채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리하여 위 관서는 보조사업의 내용과 그에 따른 경비의 산출기초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게 되었고, 구체적 사업계획 및 산출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90백만 원~500백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는 보조사업 종료 후 제출된 실적보고서에 대해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었다.

4. 지방계약법령 등 위반하여 보조사업 추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6항, 「괴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및 지방보조금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위 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 체결 및 이행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업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지방재정법」제32조의6 및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와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표-4>와 같이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주도하면서,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 및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표-4> 괴산㉾축제 관련 위법한 수의계약 및 집행 현황

(단위: 원)

연도별	지출 건명	계약업체	지출일	지급액	위반내역
2020	㉾체험 행사물품 임차	㉠	11. 24.	9,880,000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이나 1인견적 분할 수의계약
	체험마을농가 캐노피천막 임차	㉠	11. 23.	15,840,000	
	개폐막식 운영 용역	㉢	11. 23.	19,459,000	·입찰대상이나 분할 수의계약
	개막공연	㉡	10. 14.	8,000,000	
	메인무대 등 음향기기 설치	㉣	11. 23.	15,730,000	
	괴산㉾축제 경비 인력	㉤	11. 24.	11,100,000	
2021	행사물품 임차비 지급	㉠	11. 16.	11,260,000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이나 1인견적 분할 수의계약
	몽고천막 임차비 지급	㉠	11. 16.	13,900,000	
	주한대사 ㉲ 행사	㉦	12. 7.	19,600,000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이나 1인견적 분할 수의계약
	주한대사 ㉲ 화보집	㉦	12. 20	4,500,000	
2022	괴산㉰대회 용역(선금)	㉧	10. 25.	2,240,000	·축제 취소(계약 파기)에도 선금 반환 미이행
	괴산사랑상품권 구입 (우리동네 ㉾명인 재료비)	㉨	10. 12.	5,500,000	·증빙자료 누락(5만원권 110매 교부처)
2023	몽골천막 임차비	㉠	11. 16.	21,780,000	·입찰대상이나 분할 수의계약
	편의물품 임차비(테이블 등)	㉠	11. 16.	19,400,000	
	편의물품 임차비(포차의자 등)	㉠	11. 16.	16,870,000	
	외부감사 용역비	㉩	10. 30	1,320,000	·행사 전 용역비 지급(미검수)
	괴산사랑상품권 구입 (우리동네 ㉾명인 재료비)	㉨	10. 11.	5,500,000	·증빙자료 누락(5만원권 110매 교부처)
	괴산사랑상품권 구입 (원스톱/드라이브스루 예약자)	㉨	11. 2.	8,300,000	·증빙자료 누락(1천원권 850매, 1만원권 747매 교부처)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는 공개경쟁 입찰 계약 대상임에도 2020년 괴산㉾축제 개·폐막식을 분할 수의계약, 2023년 편의물품 임차계약을 1인 견적서만으로 특정업체(㉠)와 분할 수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천만 원 이상의 편의물품 임차계약을 추진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업체를 선정해야

함에도 특정업체(㉠)와 1인 견적서만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22년 괴산㉤대회 용역비의 경우 2022. 10. 25. ㉦과 계약 후 선금을 지급하였으나, 2022. 10. 31. 괴산㉢축제가 취소[5]되어 기 집행[6]한 실비를 제외한 선금을 반환[7]받아야 하나 정부합동감사일(2024. 3. 27.) 현재까지 환수하지 않고 있으며,

2023년 외부감사 용역비의 경우, 위 관서는 2023. 10. 27. ㉧와 용역 계약 후, 2023년 괴산㉢축제가 2023. 11. 3.~11. 5.(3일간) 개최되어 과업이 완료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2023. 10. 30. 대금 지급을 완료하였다.

또한 2022년과 2023년의 경우, 위 관서는 우리동네 ㉢명인 재료비, 원스톱/드라이브스루 ㉣ 사전예약자 지급 등의 목적으로 총 19,300,000원의 괴산사랑상품권을 구매하였으나 상품권 지급대장 등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 구매한 상품권이 지급대상자들에게 적정하게 배부되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이 위 관서는 위원회에 교부된 보조금을 분할 수의계약, 용역 완료 전 대가 지급, 취소된 축제의 선금 반환 미이행, 지출 증빙 미흡 등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하여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정산을 완료하였다.

5.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이태원 참사(10. 29.)로 국가 애도기간이 선포되어 괴산군과 괴산축제위원회는 ⓐ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괴산㉢축제(2022. 00. 00.~00. 00.) 취소 결정함(10. 31.)

6) ㉦이 제출한 선금사용계획의 경비내역 등에 따르면 ㉤대회 개최 전 집행내역은 없음

7) ㉦에서 제출한 선금지급에 대한 확약서(제5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시 선금을 반환받도록 되어 있음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기관경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를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점, 보조금 금액의 산출기초 등을 생략한 채 보조금을 교부한 점, 지방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점 등에 대해 엄중 경고하오니,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2022년도 보조사업에서 미 집행된 선금 2,240,000원을 ㅈ으로부터 환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기관경고 및 시정요구

제　　목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 미이행 등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정보통신 보안 업무규정(훈령)」을 제정하고, 사이버 공격[1]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의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관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 등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보안 및 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등에 대하여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진단·점검 결과 취약 요소가 발견된 경우, 이를 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

1) 사이버 공격(국가사이버 안전관리규정 제2조 제2호) : 해킹·컴퓨터바이러스·논리폭탄·메일폭탄·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국가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일체의 공격행위

그리고「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및 같은 지침 제7조에 따라 제정된「충청북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제45조, 제54조, 제57조, 제59조, 제141조 등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등[2]은 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는 제거하고, 연 1회 이상의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절취 및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 취약점을 점검·보완하여야 하며,

비인가자의 서버 내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개별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하며, 비밀번호는 문자·숫자·특수문자를 혼합하여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2조 및「충청북도 정보통신 보안업무규정」제141조 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보안장비 관리자는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의 침입차단·탐지규칙의 생성 근거를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점검·갱신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발견된 취약 요소에 대해서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운영체제·소프트웨어의 취약점 및 버전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버전 유지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정원 등이 통보한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유해 IP를 정기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

2) 정보시스템(서버·통신장비·보안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 PC 단말기는 개별사용자

가. 청주시의 경우

(1) 해커 등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카드 결제 피싱 사이트로 정보시스템의 악용된 침해사고 발생

청주시 ㉮과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표-1>과 같이 2024. 1. 26. AA 해커[3]가 공개 서버에 설치된 ⓐ정보 편집용 상용 SW의 관리자페이지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악성파일을 설치하고 서버에 저장된 공개용 ⓐ정보를 탈취하여 AA 해커가 운영하는 ㉡에 게시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

<표-1> ㉠시스템 서버의 침해사고 경위

일 시	주 요 내 용
'20. 1. 2. 01:47	공개 ⓐ정보 편집용 상용SW 설치
'24. 1. 25. 13:35	해외IP(000.000.00.000)에서 ㉠시스템 홈페이지 취약점 확인 시도
'24. 1. 26. 10:04	AA 해커가 ⓐ정보 편집용 상용SW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24. 1. 26. 16:17 ~ 16:22	공개 ⓐ정보 편집용 상용SW 관리자페이지에 접속 후 ⓐ정보 자료파일 다운로드
'24. 1. 26. 16:45	AA 해커(aa) 운영 ㉡에 탈취한 자료와 접속한 관리자페이지 접속주소, ID, PWD를 게시
'24. 1. 27. 15:10	충청북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 청주시청 보안담당자를 통해 시스템 운영자에게 전달
'24. 1. 27. 16:50 ~ 20:00	네트워크 단선(16:50), 비밀번호 변경(20:00)
'24.1.28. ~ '24.1.29.	사고 신고, 로그 수집·제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24.1.28. 09:33), 국가정보원(1.29. 22:20)
'24. 2. 31. 12:00	관리자페이지 삭제 조치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또 ㉯과에서 운영하는 '㉡'의 공개 서버는 <표-2>와 같이 2023. 2. 21. 공

3) AA해커 aa가 활동하는 채널(㉠, ㉡)을 한국기업(㉢)이 범죄활동 채널로 묘사한데 대한 불쾌감으로 한국 사이트에 대한 DDos공격과 해킹 예고가 공개되고, URL·ID/PWD·탈취된 데이터 등 해킹 증거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에 게시

격자가 인터넷에 공개된 웹에디터 관리자페이지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공개 서버에 악성파일을 설치하고 가짜 카드 결제 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국내 쇼핑몰[4]에서 상품 결제시 사용된 89건의 카드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격자의 서버로 전송하는 등 피싱웹사이트[5] 운영에 악용되었다.

<표-2> ㉡ 서버의 침해사고 경위

일 시	주 요 내 용
'23. 2. 21. 18:08	한국 IP에서 '㉡'의 웹 에디터 페이지의 **관리자 계정으로 불법 접근**, 이미지 파일(.gif)로 위장한 **악성파일 설치**[6] * 공격자 서버 연결 통신, 공격자 서버에서 원격명령 실행
'23. 2. 21. 18:25	공격자가 원격 접속 후 웹서비스 설정 파일 변경 등을 하기 위한 시스템 제어 기능이 포함된 악성파일[7] 추가 업로드
'23. 2. 21. 18:39 ~ '23. 2. 24. 18:54	업로드 된 악성파일을 이용, 웹서비스 설정 파일 변경 및 변경된 설정파일과 소스코드를 이미지 파일(.png)로 위장하여 다운로드
'23. 2. 24. 21:56	'㉡' 웹서버에 가짜 카드결제 사이트*로 이용할 소스코드[8] 업로드 *사용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카드번호 입력 기능
'23. 2. 24. 21:58 ~ '23. 3. 7. 18:33	공격자가 국내 2개 사이트에서 카드 결제시 '㉡'에 설치한 가짜 카드결제사이트와 연결되도록 ㉡ 웹서버로 카드결제 피싱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89건을 탈취하고 공격자 서버(○○○○○○○○○○.com, 한국)로 전송
'23. 3. 7. 17:48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18:10), 국가정보원(18:29)을 통해 사고 사실 확인
'23. 3. 7. 18:35	㉡ 웹서버 네트워크 격리 조치(케이블 단선, IP회수 등)
'23. 3. 7	사고 신고, 로그 수집·제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18:44), 국가정보원(3.8 15:00)
'23. 5.	보안패치 조치, 보안성이 확보된 패스워드 변경 완료 ※ 충청북도 ㉰과-7432('23.5.1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4) ㉢, ㉣

5) 사용자를 속여 개인정보를 유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합법적사이트와 유사하게 제작된 기만적인 온라인플랫폼

6) aba3194620d9ac9fb1619e618b9258b31808562.gif, bbd3485b5dd511f128044f26c14f00521808542.gif

7) js_jstree.php, mysql.php, mod_rightbuilder.so, mod_backdoor.so

8) Payment.php : 사용자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 카드번호 입력 등

이에 정부합동감사 기간 동안 위 침해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과는 ㉠시스템 공개 서버에 설치된 사용하지 않는 상용SW를 정리하지 않은 채 침해사고일까지 운영하고, ㉯과는 '㉡'을 운영하는 상용플랫폼의 알려진 취약점[9]에 대한 보안패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였다.

그리고 위 관서는 <표-3>과 같이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형태로 안전하게 설정하지 않았으며, 외부에 공개된 관리자페이지에 대한 접근제한을 하지 않은 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표-3> 사이버 침해사고 시스템의 주요 보안 취약점

보안 설정 항목	주요 위협 내용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제거	윈도우 설치 시 기본 설치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 원격접근 및 파일 설치, 시스템 명령 실행 가능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보안 설정	비밀번호 미설정, 숫자·문자·특수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9자리 미만의 패스워드 설정으로 패스워드 탈취 용이
관리자페이지 접근제한	운영하는 관리자페이지
최신 보안 패치	상용 SW 보안파일 공유서비스 등의 알려진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시도 및 악성코드 실행 가능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이와 같이 위 관서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외부 공격자가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저장된 자료의 유출과 카드 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로 악용되는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초래하였다.

(2) 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점검 미실시

9) ㉰ 쇼핑몰 플랫폼 보안패치 공지('21.9.27) : ㉯몰 PLUS/All in One 다국어 버전

“3-가-(1)”항의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표-4>와 같이 2023. 1. 1.~2024. 3. 20. 기간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탐지된 청주시 61개의 운영시스템 서버 장비[10]에 대하여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점검 운영 실태[11] 등을 확인하였다.

<표-4> ’23.1.1 ~ ’24.3.20.기간 중 청주시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

(단위 : 개, 건)

구분	대상 시스템	계	비인가 접근	DDos	시스템 권한획득	악성 코드	정보 수집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청주시	61	141	18	4	61	21	5	22	10

※ 반복 공격 시도 시스템(31) : (삭제)

※ 자료: 지자체 보안관제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탐지된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이벤트에서 발췌

그 결과 청주시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는 [붙임 1]과 같이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방화벽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관리 미흡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전체 보안장비 28대의 보안 조치 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주시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표-5>와 같이 보안 설정 조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취약 항목을 보유한 채 운영하고 있는 등 보안

10) 청주시 운영 시스템 : 총 273대(‘24. 4월기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된 서버 장비 수)

11) 기관이 자체 수행한 취약점 진단보고서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보안취약점진단 시스템을 통해 진단이력과 취약점 진단결과 확인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5> 청주시 보안장비의 보안 조치 취약 주요 내용(삭제)

(4)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한 보안장비 차단규칙 미적용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국가정보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보[12] 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94,944건)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청주시의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침입차단·탐지규칙을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 94,893건에 대하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차단규칙에 적용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나. 제천시의 경우

(1) 악성코드 전파 경유지로 악용된 침해사고 발생

제천시 ㉮(㉰지소)에서 운영하는 '㉱ 장비[13]'가 <표-6>과 같이 2024. 1. 16. 외부 공격자가 내외부 시스템을 대상으로 파일 등을 공유하는 데 사용하는 윈도우 서비스(SMB)에 대한 취약점을 조회하고 악성코드를 전파하는 공격 경유지로 사용 시도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

12) 국가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국가정보원), 사이버 침해대응시스템(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23.1.~'24.2.기간 중 각급기관에 통보

13) 윈도우 임베디드7 운영체제에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 ○○내역을 ○○○에 인쇄하는 시스템

<표-6> 제천시 ㉥ 장비 침해사고 경위

일 시	주 요 내 용
’18. 11. 30. 15:21	보안업데이트가 종료된 장비의 파일공유서비스(SMB) 취약점으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인 악성코드* 설치 * SMB취약점 전파(mssecsvc.exe), 파일암호화·랜섬노트 생성(tasksche.exe), 레지스트리등록(mssecsvc2.0.reg)
’18. 11. 30. 15:21	설치된 악성코드가 자동실행 되도록 시스템 레지스트리 변경 등록
’24. 1. 16. 08:56	지자체 부문보안관제센터(KLID)에서 ㉥ 장비에서 외부 IP를 대상으로 파일 공유 서비스(SMB) 취약 공격 시도 이상 행위 탐지
’24. 1. 16. 16:01 ~ ’24. 1. 18. 14:17	피해 시스템에 설치된 SMB 취약점 전파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파일이 실행되어 국외 IP 대상 악성코드 전파를 시도하였으나 보안장비에서 차단
’24. 1. 18. 14:27	㉥ 장비 네트워크 격리 조치(케이블 단선, IP회수 등)
’24. 1. 16. ~ ’24. 1. 17	사고 신고, 로그 수집·제출 : 충청북도(1.16. 17:17), 한국지역정보개발원(1.16. 17:08), 국가정보원(1.17. 17:00)

주)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 피해 시스템의 데이터·파일 등을 암호화하여 시스템 및 서비스가 동작하지 않도록 한 후 암호화한 자료를 인질로 잡아서 몸값을 요구하는 공격행위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이에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위 침해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 장비를 운영하면서 <표-7>과 같이 윈도우 운영체제의 파일 공유서비스, USB 등의 외부 저장 장치 사용 등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14] 및 포트를 제거하지 않고,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형태로 안전하게 설정하지 않는 등의 취약점 진단・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표-7> 사이버 침해사고 시스템의 주요 보안 취약점

보안 설정 항목	주요 위협 내용
보안패치 및 백신 업데이트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및 악성코드 감염 공격에 노출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제거	사용하지 않는 윈도우 파일공유서비스(SMB) 등으로 원격접근 및 파일 설치, 시스템 명령 실행 가능

14) SMB서비스: 네트워크상에 존재하는 컴퓨터끼리 파일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디스크·프린터와 같은 자원을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서비스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보안 설정	비밀번호 미설정, 숫자·문자·특수문자를 포함하지 않고 9자리 미만의 패스워드 설정으로 패스워드 탈취 용이
인터넷 연결 차단	인터넷 연결이 불필요한 장비의 인터넷 연결은 악성코드 내외부 전파 등 공격 경유지 악용에 노출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특히 위 관서는 사고시스템 도입·운영('18년~)시 외부와의 통신이 차단된 상태로 ○ ○○을 관리하는 장비만을 연결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악성코드 감염 예방에 필요한 백신 SW를 설치하지 않은 채 인터넷 및 행정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USB 등을 통해 악성코드가 감염될 수 있는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설정·운영한 사실 등이 확인되었으며,

위 사고시스템과 동일하게 운영 중인 제천시 ㉮ 및 다른 지소[15]의 ㉰ 장비에 대하여 보안 취약점 진단·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이 위 관서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차단·악성코드 감염에 대한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외부 공격자가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악성코드 전파 경유지로 악용되는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초래하였다.

(2) 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점검 미실시

"3-나-1"항의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표-8>과 같이 2023. 1. 1.~ 2024. 3. 15. 기간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탐지된 제천시 23개의 운영시스템 서버 장비[16]에 대하여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

15) 침해사고가 발생한 ㉱지소는 제외

단・점검 운영실태[17] 등을 확인하였다.

<표-8>'23.1.1~'24.3.15 기간 중 제천시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

(단위 : 개, 건)

구분	대상 시스템	계	비인가 접근	DDos	시스템 권한획득	악성 코드	정보 수집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제천시	23	38	7	2	14	3	1	8	3

※ 반복 공격 시도 시스템(7) : (삭제)

※ 자료: 지자체 보안관제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탐지된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이벤트에서 발췌

그 결과 제천시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는 [붙임 1]과 같이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방화벽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관리 미흡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제천시에서 운영하는 보안장비 전체 22대의 보안 조치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제천시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표-9>와 같이 보안 설정 조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취약 항목을 보유한 채 운영하고 있는 등 보안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9> 제천시 보안장비의 보안 조치 취약 주요 내용(삭제)

(4)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한 보안장비 차단규칙 미적용

16) 제천시 운영시스템 : 총 104대('24. 4월기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된 서버 장비 수)

17) 기관이 자체 수행한 취약점 진단보고서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보안취약점진단 시스템을 통해 진단이력과 취약점 진단결과 확인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국가정보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94,944건)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제천시의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침입차단·탐지규칙을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 27,047건에 대하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차단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다. 증평군의 경우

(1)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 감염 및 채굴 이용 등 침해사고 발생

증평군 ㉮과에서 운영하는 'ⓐ[18]' 시스템이 <표-10>과 같이 외부 공격자가 무단으로 접속하여 2023. 9. 20.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악성코드를 감염시킨 후 Ⓐ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 이용('23. 9. 20. 17:06~17:47)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

<표-10> 증평군 'ⓐ'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경위

일 시	주 요 내 용
'23. 9. 10. 05:17	국내외[주] IP에서 공개된 관리자페이지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시도,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 획득 후 원격 무단 접속
'23. 9. 20. 17:02	원격 접속 후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XMRIG 등 2종) 및 악성코드 실행 등에 필요한 악성파일(bash 등 11종) 설치
'23. 9. 20. 17:03	설치된 악성파일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채굴 악성코드가 상시 동작하도록 시스템 예약 작업 등록
'23. 9. 20. 17:06 ~ 17:47	피해 시스템 CPU 자원을 이용하여 Ⓐ 가상화폐 채굴 수행
'23. 9. 22. 10:05	충북도청 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공격 시도 이상징후 인지 후 방화벽에 채굴된

18) ⓐ : 모바일기기에서 증평군청 ○○○○ ○○○ 정보(성명, 연락처, 소속부서 등) 검색 및 정보제공 서비스

	가상화폐를 전송받는 서버 IP* 차단 적용 *싱가포르(000.000.00.00), 미국(000.000.000.00)
‘23. 9. 26. 10:52	모바일 조직도 웹서버 네트워크 격리 조치(케이블 단선, IP회수 등)
‘23. 9. 26.	사고 신고 : 한국지역정보개발원(10:25), 국가정보원(17:24) 로그 수집·제출 : 충청북도(15:37)

주) 한국, 미국, 일본, 조지아, 독일, 베트남, 프랑스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이에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위 침해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을 운영하면서 <표-11>과 같이 관리자페이지 또는 서버 등의 시스템에 대하여 허가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원격 접속에 대한 기간 등의 제한 설정,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형태로 안전하게 설정하는 등의 취약점 진단 및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표-11> 침해사고 시스템의 주요 보안 취약점

보안 설정 항목	주요 위협 내용
원격접속 접근 제한 미설정	유지관리 전용 단말외에도 서버 등에 원격접속할 수 있도록 접근 정책 운영
기본 관리자 계정 미변경 사용	장비 설치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계정으로 비인가 접근 시도 가능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보안 설정 취약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설정으로 패스워드 탈취 용이
불필요한 서비스 및 포트 제거	윈도우 설치 시 기본 설치되는 데이터베이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 원격 접근 및 파일 설치 및 시스템 명령 실행 가능

그리고 위 정보시스템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표-12>와 같이 침해사고의 원인인 원격 접속 차단・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강화 등의 조치는 완료하였으나

일부 운영 서버에 대한 보안 취약점 진단 및 확인된 취약점을 조치하지 않

은 채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 정보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진단·점검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12> ㉦ 침해사고 후속 조치 점검 결과

증평군 보안 강화 조치	모바일 조직도의 취약점 현황[주]
◦ 방화벽 설정 : 원격 접속 정책 삭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최소정책(0000,000,00)만 유지	적정
◦ 윈도우 웹서버 원격 데스크탑 기능 차단	적정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실시간 감시	적정
◦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 강화 설정	적정
-	◦ 패스워드 변경 주기 미설정
-	◦ 공유폴더 설정
-	◦ 불필요한 서비스 미제거
-	◦ 윈도우 메신저 등 상용메신저 서비스 활성화
-	◦ 미사용 ActiveX 미제거
	◦ Eos가 종료 예정된 운영체제 사용

주) 보안취약점진단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발췌한 취약점 점검 내역

이와 같이 위 관서는 침해사고 시스템에 대하여 후속 조치로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보안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외부 공격자가 정보시스템에 무단 접근하여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데 악용되는 등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초래하였다.

(2) 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점검 미실시

“3-다-1”항의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표-13>과 같이 2023. 1. 1.~2024. 3. 15. 기간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탐지된 증평군 10개의 운영시스템 서버 장비[19]에 대하여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점

19) 증평군 운영시스템 : 총 80대(‘24. 4월기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된 서버 장비 수)

검 운영실태[20] 등을 확인하였다.

<표-13>'23.1.1 ~ '24.3.15 기간 중 증평군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

(단위 : 개, 건)

구분	대상 시스템	계	비인가 접근	DDos	시스템 권한획득	악성 코드	정보 수집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증평군	10	14	4	0	5	1	0	4	0

※ 반복 공격 시도 시스템(5) : (삭제)

※ 자료: 지자체 보안관제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탐지된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이벤트에서 발췌

그 결과 증평군은 [붙임 1]과 같이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방화벽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관리 미흡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증평군에서 운영하는 보안장비 전체 32대의 보안 조치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증평군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표-14>와 같이 보안 설정 조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취약 항목을 보유한 채 운영하고 있는 등 보안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4> 증평군 보안장비의 보안 조치 취약 주요 내용(삭제)

(4)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한 보안장비 차단규칙 미적용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국가정보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94,944건)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 등록 여부를 확인하

20) 기관이 자체 수행한 취약점 진단보고서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보안취약점진단 시스템을 통해 진단이력과 취약점 진단결과 확인

였다.

그 결과 증평군의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침입차단·탐지규칙을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 94,893건에 대하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차단 규칙에 적용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라. 음성군의 경우

(1) 홈페이지 웹서비스 시스템 파일 변조 침해사고 발생

음성군 ㈏과에서 운영하는 '◎ 홈페이지' 시스템이 <표-15>와 같이 2024. 3. 19. 불특정 공격자가 접속하여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파일을 변조하는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

<표-15> 음성군 '◎ 홈페이지'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경위

일 시	주 요 내 용
'24. 3. 6. 18:29 ~ '24. 3. 7. 12:45	국외 IP[주1)]에서 사용자 입력값에 대한 매개변수 검증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조회 등을 처리하는 ◎ 홈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관리자 계정(-) 조회
'24. 3. 7. 12:54	국외 IP[주2)]에서 업로드 파일에 대한 검증[주3)] 기능이 누락된 소스 코드를 활용하여 시스템에 원격 접속 등 제어할 수 있는 악성파일* 업로드 *17097836466329%20.php
'24. 3. 19. 18:00	일반 이용자가 ◎ 홈페이지 접속시 공격자가 유도한 홈페이지* 주소로 접속되도록 웹서비스 설정 파일 변조 *http://www.[.]-[.]-
'24. 3. 19. 18:05 ~ 22:10	패스워드 변경 및 ◎ 홈페이지 네트워크 격리 조치(케이블 단선, IP회수 등)
'24. 3. 20.	사고 신고 : 한국지역정보개발원(10:10), 국가정보원(17:31) 로그 수집·제출 : 충청북도(14:09)

주1) 미국 : 000.00.000.000, 00.000.000.00, 주2) 홍콩 : 000.00.00.000
주3) 시스템에서 제한된 확장자의 검증을 우회하기 위해 삽입하는 NULL 바이트(%20) 검증기능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이에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위 침해사고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표-16>과 같이 홈페이지 소스 코드에 대한 개발 보안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개발하고, 개발된 소스 코드와 웹서비스에 대하여 취약점과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문자・숫자・특수문자 등을 혼합한 형태로 안전하게 설정하지 않는 등의 취약점 진단・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다.

<표-16> 침해사고 시스템의 주요 보안 취약점

보안 설정 항목	주요 위협 내용
사용자 입력 기능의 매개변수 검증 기능 부재	권한과 상관없이 우회하여 全 데이터 조회·처리, 기능실행 등 가능
업로드 파일에 대한 필터링 기능 부재	서버에서 실행될 수 있는 악성파일 등이 업로드 되어 시스템 점거 가능
관리자 계정 패스워드 보안 설정 취약	유추 가능한 비밀번호(-) 또는 단조롭게(-) 설정하여 패스워드 탈취 용이

그리고 위 관서는 2023년도 ◎ 홈페이지 운영 중 3건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표-17>과 같이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안 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을 시정하지 않은 채 운영하였다.

<표-17> '23년 ◎홈페이지 사이버공격시도 현황

IP	시스템명	운영부서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00.000.000.00	◎홈페이지	㈜과	▲정보 수집 : 2023.5.7. ▲비인가 접근 : 2023.6.26. ▲시스템 권한획득 : 2023.7.23..

※ 자료: 지자체 보안관제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탐지된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이벤트에서 발췌

이와 같이 위 관서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보안 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리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불특정 공격자가 접

속하여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시스템 파일을 변조하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초래하였다.

(2) 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점검 미실시

“3-라-1”항의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표-18>과 같이 2023. 1. 1.~2024. 3. 15. 기간의 사이버 공격 시도가 탐지된 음성군 10개의 운영시스템 서버 장비[21]에 대하여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진단·점검 운영실태[22] 등을 확인하였다.

<표-18> ’23.1.1 ~ ’24.3.15 기간 중 음성군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

(단위 : 개, 건)

구분	대상 시스템	계	비인가 접근	DDos	시스템 권한획득	악성 코드	정보 수집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음성군	18	46	6	20	12	3	1	4	0

※ 반복 공격 시도 시스템(6) : (삭제)

※ 자료: 지자체 보안관제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탐지된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이벤트에서 발췌

그 결과 음성군은 [붙임 1]과 같이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방화벽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관리 미흡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보안장비 전체 17대의 보안 조치실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음성군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을 도입·운

21) 음성군 운영시스템 : 총 101대(‘24. 4월기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된 서버 장비 수)

22) 기관이 자체 수행한 취약점 진단보고서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지자체 보안취약점진단 시스템을 통해 진단이력과 취약점 진단결과 확인

영하면서 <표-19>와 같이 보안 설정 조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취약 항목을 보유한 채 운영하고 있는 등 보안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19> 음성군 보안장비의 보안 조치 취약 주요 내용(삭제)

(4)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한 보안장비 차단규칙 미적용 관련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국가정보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94,944건)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음성군의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침입차단·탐지규칙을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 94,920건에 대하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차단규칙에 적용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마.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의 경우

(1) 정보시스템 서버 장비 등에 대한 취약점 진단·점검 미실시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표-20>과 같이 2023. 1. 1.~2024. 3. 15. 기간의 충청북도 및 충주시 등 7개 시·군에서 운영[23]하는 시스템 중 사이버 공격 시도가 탐지된 153개 정보시스템 서버 장비에 대하여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진단·점검실시 여부와 취약점 조치실태를 확인하였다.

23) 운영시스템 현황('24. 4월기준 범정부 정보자원관리시스템(www.irm.go.kr)에 등록된 서버 장비 수) : 충청북도(185대), 충주시(194대), 보은군(81대), 옥천군(126대), 영동군(124대), 진천군(114대), 괴산군(158대), 단양군(89대)

<표-20>'23.1.1 ~ '24.3.15 기간 중 충청북도·7개 시군 사이버 공격시도 현황

(단위 : 개, 건)

구분	대상 시스템	계	비인가 접근	DDos	시스템 권한획득	악성 코드	정보 수집	정보 유출	홈페이지 변조
충청북도	31	99	11	9	28	4	7	27	13
충주시	21	56	1	6	19	3	10	12	5
보은군	12	31	1	4	15	0	1	7	3
옥천군	19	47	14	1	15	2	2	12	1
영동군	28	51	4	1	25	8	2	7	4
진천군	14	22	3	0	6	8	1	2	2
괴산군	9	16	4	6	0	1	1	4	0
단양군	19	97	2	4	11	2	4	73	1

※ 자료: 지자체 보안관제기관(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탐지된 방화벽 등 보안장비의 이벤트에서 발췌

그 결과 <표-21> 및 [붙임 1]과 같이 충청북도 및 충주시 등 7개 시·군은 125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사이버 공격 시도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1> 공격 시도가 탐지된 정보시스템 보안 취약점 진단·점검 실시 현황

(단위 : 대)

구분		계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공격 시도 정보시스템 수		153	31	21	12	19	28	14	9	19
진단 현황	실시	28	28	-	-	-	-	-	-	-
	미실시	125	3	21	12	19	28	14	9	19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그리고 충청북도는 취약점 진단·점검을 하였다는 도의회 누리집 등 28개 정보시스템의 공격 시도 유형에 대한 취약점 진단·점검과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공격 시도로 침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 및 충주시 등 7개 시·군의 정보시스템 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주기적인 보안취약점 진단·점검과 취약점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2) 방화벽 등의 정보보안시스템 보안 관리 미흡 관련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충청북도 및 충주시 등 7개 시·군에서 도입·운영하는 143대를 대상으로 보안장비의 보안 조치실태를 확인하였다.

<표-22> 방화벽 등 충청북도 및 7개 시군에 설치된 보안장비 현황

(단위 : 개)

계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143	24	12	19	18	15	16	20	19

※ 침해사고 지자체 미포함 : 청주(28), 제천(22), 증평(32), 음성(19)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표-23> 보안장비의 확인된 취약점 현황(삭제)

그 결과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7개 시·군의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표-19>와 같이 보안 설정 조치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확인된 취약점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취약 항목을 보유한 채 운영하고 있는 등 보안장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3)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한 보안장비 차단규칙 미적용 관련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국가정보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94,944건)의 방화벽 등 보안장비 등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충청북도 및 충주시 등 7개 시·군의 보안장비 관리부서는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침입차단·탐지규칙을 정기적으로 점검·갱신하여야 하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에서 통보한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 94,944건에 대하

여 <표-24>와 같이 방화벽 등 보안장비 차단규칙에 적용하지 않는 등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표-24> 방화벽 보안장비 유해 IP 미등록 현황

(단위 : 개)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73,435	94,944	94,935	94,913	94,918	94,925	94,935	94,93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음성군수, 증평군수는**

[기관경고]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 및 점검을 하지 않고,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오니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 등에 따라 도입·운영하는 서버·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진단·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 요소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하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차단규칙에 등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기관경고] 정보시스템을 도입·운영하면서 사이버 위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취약점 진단 및 점검을 하지 않고, 비인가자에 의한 접근에 대한 접근 차단 등 별도의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정보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침해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오니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 등에 따라 도입·운영하는 서버·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진단·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 요소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침해사고가 발생한 ㉥ 장비 시스템 외 ㉮ 및 지소에 도입된 ㉥ 장비를 인터넷 및 행정통신망의 분리, USB 등 외부저장장치의 이용 차단 설정 등의 보안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③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하여 방화벽 등 보안장비 차단규칙에 등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①「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12조 등에 따라 도입·운영하는 서버·보안장비 등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진단·점검 결과 발견된 취약 요소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

니다.

② 사이버 공격 시도 유해 IP에 대하여 보안장비 차단규칙에 등록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의 '23.1.1~'24.3.20 기간 중 공격 시도 및 시스템 현황: 정보시스템의 보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이버 공격 등의 우려가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 · 주의요구

제　　목 근무성적평정점 오입력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옥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옥천군(㉮과)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에 따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기초로 근무성적평정점(안)을 작성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이하 “근평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이하 “평정점”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작성하는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8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 제9조, 제10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1조 등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 또는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 공무원의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한 결과를 종합하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작성한 후 근평위원회에 제출하고, 근평위원회는 이를 기초로 평정대상 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

사・결정하되, 이 경우 근무성적의 평정자와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는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임용권자는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을 반영하여 승진임용예정 직급별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 근평위원회의 평정점 결정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평위원회에 재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명부에 명백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평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해 승진 임용할 때에는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심의를 거쳐 승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지방공무원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임용에 관하여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승진・임용 그 밖의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기재・보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점을 잘못 반영하거나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승진임용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옥천군 ㉮과 지방행정주사보 A(이하 “A”라 한다)는 2022. 9. 13.부터 정부

합동감사 현재일까지, 지방행정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2. 11. 7.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일까지, 지방행정사무관 C(이하 “C”라 한다)는 2023. 11. 1.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일까지 위 관서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 및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면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 인사 업무를 담당 또는 주관하였다.

가.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의 오입력 등

위 관서는 2023. 10. 5.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 시행계획”(㉮과-33435, 군수 결재)을 수립하고 각 평정단위의 서열 명부를 취합하여 옥천군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근무성적평정 심사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2023. 11. 27. 개최된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근평서열 및 평정점에 따라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이하 “인사랑”이라 한다)에 2023년 하반기 평정점을 등록하고, 2023. 11. 28.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를 군수에게 보고한 후 확정[1]하였다.

위 관서가 인사랑에 등록한 2023년도 하반기 평정 서열 및 평정점,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수 등을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붙임 1]과 같이 지방농업사무관 AA 등 134명의 평정점이 0점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과 다른 평정점으로 등록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어 있었다.

특히 지방행정서기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전체 인원인 62명의 평정점이 0점

1) 5급(지도관) 이하 공무원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행(㉮과-39458호, 2023. 11. 28.)

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근평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과 다른 평정점으로 2023. 11. 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반영되는데도 위 관서는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검토를 하지 않은 채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시행하고, 해당 승진후보자명부로 승진심사를 개최하는 등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이와 같이 2023년 하반기 평정점을 인사랑에 0점 등으로 잘못 등록하고 2023. 11. 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 결과, [붙임 2]와 같이 지방행정서기 ㉰과 BB은 승진후보자순위가 정당 순위인 15위에서 11위로 상향되고, ㉲면 CC는 정당 순위인 6위에서 20위로 하향되는 등 총 21명의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방행정서기 CC의 경우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6위에서 20위로 하향된 결과 2023. 12. 22. 개최된 승진심사에서 지방행정주사보 승진심사 대상자(7명)[2]에 포함되지 못하여 승진심사 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3]

나.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여 전체 평정 서열 및 평정점 결정 등

위 관서는 2022년 및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을 추진하면서 ㉮국 지방행정주사 평정 서열 10위인 ㉯과 DD의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을 동일 평정단위 내 후순위자인 EE, FF보다 낮게 부여하는 등 <표-1>과 같이 평정단위별 확인자가 제출한 평정단위 서열과 다르게 변경하여 평정점을 반영하고,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에 그대로 반영하는 등 근무성적평정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였다.

2) 승진예정 인원이 1명임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7위까지 승진심사 대상자에 포함됨
3) 승진심사 결과 승진후보자명부 1순위자가 승진의결됨

<표-1>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평정 서열 및 평정점을 반영한 명세

구분	평정단위	부서	성명	평정단위별 제출 서열 (확인자)	근평위원회 심사·결정		비고
					서열	평정점	
'22년 하반기	㉮국 (지방행정주사)	㉲과	GG	9	14	64.8	확인자: ㉮국장 (MM)
		㉳과	**DD**	**10**	**40**	**56.4**	
		㉴과	EE	11	24	61.2	
		㉵과	FF	12	25	60.9	
'23년 하반기	㉶관, 읍·면 (지방행정주사보)	㉷면	HH	4	10	67.3	확인자: ○○○ (NN)
		㉸면	II	5	11	67.0	
		㉹읍	**JJ**	**6**	**8**	**67.9**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및 인사랑 자료 등 재구성

이와 같이 평정단위 서열과 다르게 변경한 평정점이 승진후보자명부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 <표-2>와 같이 지방행정주사보 JJ의 2023. 11. 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9위에서 10위로 하향되고 KK의 순위가 10위에서 9위로 상향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2> '23년 하반기 근평 서열 오류 등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변경 명세

직급	소속	성명	승진후보자 명부 ('23.11.30.)				비 고
			평정단위 서열 오적용 기준		평정단위 서열 적정 반영 기준		
			순위	점수 (근무성적+경력)	순위	점수 (근무성적+경력)	
지방행정 주사보		⋮					
	㉷면	**HH**	8	95.29 (75.29+20)	**8**	95.46 (75.46+20)	67.9 반영
	㉯과	KK	9	95 (75+20)	**10 (↓1)**	**95** (75+20)	-
	㉸면	**II**	10	95 (75+20)	**9 (↑1)**	**95.09** (75.09+20)	67.3 반영
	㉹읍	**JJ**	11	94.71 (74.71+20)	**11**	94.46 (74.46+20)	67.0 반영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및 인사랑 자료 등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계기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관련자(A)

“3-가”항의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의 오적용 등과 관련하여 근평심의 완료 후 최종값을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최종 서열을 반영하지 않아 134명이 0점 등으로 입력되었으나 지방농업사무관 LL 등 23명의 공무원의 경우 인사랑에서 직전 평정점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에는 근평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평정점과 동일한 평정점으로 반영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3-나”항의 평정단위별 서열과 다르게 평정 서열 및 평정점 반영 등과 관련하여 근평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되었던 확인자 순위의 현행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서류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평정 과정상 누락된 사항이었고, 다른 의도나 고의는 절대 없었으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과 인사업무를 맡은 후 과거 실시하지 않았던 찾아가는 맞춤형 인사상담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해결한 점 등을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3-가”항의 의견과 관련하여「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7조제4항 및 제5항 등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점 산정시 평정점이 없는 경우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다른 평정 단위기간의 평정점을 해당 평정 단위연도의 평

균 평정점으로 반영하고, 평정 단위연도의 전 또는 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평정점수 만점의 60퍼센트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지방농업사무관 LL 등 23명은 위 관서가 평정점을 0점으로 잘못 등록했음에도 2023년 하반기 평정점과 2023년 상반기 평정점이 동일하여 2023. 11. 30.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0점이 아닌 2023년 상반기 평정점의 평균으로 반영됨에 따라 명부 순위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평정점을 잘못 등록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며 인사랑에 2023년 하반기 평정점이 0점으로 등록되어 있음에 따라 2024. 5.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에는 2023년 하반기의 평정점이 반영되지 않고 2024년 상반기 평정점의 평균 평정점으로 반영되어 승진후보자명부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또한 지방행정서기 CC 등과 같이 2023년 하반기 평정점이 2023년 상반기 평정점과 동일하지 않거나 평정점이 없는 경우 2023. 11.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에 전혀 다른 평정점이 반영되어 명부 순위가 상향 또는 하향되었음에 따라 A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3-나”항과 관련하여 근평위원회 의결과정에서 변경된 확인자의 순위를 현행화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평정단위별 서열은 근평위원회에서도 변경할 수 없는 사항으로서 인정할 수 없으며, 근평위원회 의결과정 중에 변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근평위원회의 회의록, 근평위원회 심의자료 등의 증빙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A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옥천군수는

[훈계] 관련자 A, B, C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평정점과 다르게 표준지방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23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점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1조 등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조정 및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사후 확인을 받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심사·결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을 0점으로 등록하는 등 다르게 반영하거나, 평정단위별 서열을 변경하여 평정점을 부여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등 인사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 하반기 근평 순위 및 평정점이 잘못 반영된 명세: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시정요구, 수사의뢰

제　　목 ㉣대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1])는 매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공모하였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심의·의결로 2018년부터 ㉮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단체로 선정해 왔다.

한편 충청북도(㉯과)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된 ㉮에 청소년 ○○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표-1>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표-1>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보조금 지원 내역

(단위: 원)

연도별	지원사업명	지원액	비 고
2018	㉤대회	15,000,000	
2019	㉥대회	15,000,000	
2020 ~ 2022	㉣대회	15,000,000	
2023	㉭리그	15,000,000	

※ 자료: 수감기관 전자문서시스템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직제개편에 따라 ㉰과('20년), ㉱과('21년), ㉲과('22)에서 현재 ㉮과('23년~)로 개편됨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4제1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그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의 총액의 5배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고,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별표]에서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재정법」 제97조제2항, 제97조제4항제3호 및 지방보조금법 제38조제1호,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거짓으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구「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6항,「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2021. 5. 20. 충청북도조례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보조금 집행 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를 발급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 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금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조작하여 보조사업이 정상 추진된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리고 위 관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심사하여 용도 외 사용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한편,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과 지방행정주사 A는 2020. 1. 17.부터 2021. 1. 22.까지, 괴산군 ㉲과 지방행정주사 B는 2021. 1. 23.부터 2022. 1. 16.까지 충청북도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로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위 관서는 충청북도 공모사업인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된 ㉠에 2019년부터 매년 15,000,000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는 국내 청소년 관계증진을 위한 친선교류와 ○○ 유망주 발굴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

년까지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는 충청북도 제천시 ○○면에 소재하는 ⓐ공원 ⓑ경기장에서 <표-2>와 같이 중등부 학년별 경기를 통해 선수를 선발하고, 선발된 선수들을 소집하여 훈련을 실시한 후 본 대회를 개최하는 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2> ㉣대회 주요 일정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사 업 내 용
선발전	7월	중등부 학년별(1학년 20명, 2학년 15명, 3학년 15명) 선수선발
소집훈련	8~10월	선발된 선수들에 대한 소집훈련 실시
대회개최	10~11월	총 9경기의 결과를 종합하여 우승, 준우승, 종합3위 시상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는 2020년, 2021년 보조사업 추진 시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유로 ㉣대회 개최가 불가능해지자 소집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선수단 숙식비 등으로 13,388,000원을 허위로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2020년 보조사업의 경우

㉮는 ㉣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계획에 따라 선수 선발전(7. 25.~7. 26.)과 소집훈련(8. 1.~8. 2.)을 마쳤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충청북도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다 코로나-19 추가 확산으로 2020. 12. 7.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확대 시행하였고, 그에 따라 각종 축제, 훈련, 대회 등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는 위 관서의 승인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대회 대신 추가 소집훈련(12. 18.~12. 22.)을 하였다며 <표-3> 및 [붙임]과 같이 ○○장 인근 식당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표-3> 2020년 ㉲대회 소집훈련(2차) 집행 내역

(단위: 원)

집행일	건 명	지출금액	지급처	비 고
	계	9,608,000		
2020. 12. 22.	선수단 숙식비	3,672,000	㉠	간이영수증
2020. 12. 22.	선수단 숙식비	3,536,000	㉡	간이영수증
2020. 12. 22.	진행위원 활동비	2,400,000	㉢ 외 2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 정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는 인근 식당 간이영수증으로 선수단이 숙식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대표자 오기)를 작성하여 선수단 숙식비[2], 진행위원 활동비 등 9,608,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나. 2021년 보조사업의 경우

㉮는 ㉲대회 개최를 위해 선수 선발전(7. 3.~7. 4.)과 소집훈련(7. 16.~7. 19.)을 마쳤으나, 코로나-19의 확산 등으로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충북도청 사회적 거리두기 분야별 담당자(숙박업소 등)에 따르면 당시 충청북도 거리두기 단계별 행정명령 발령으로 가족단위 이외의 선수단과 같은 형태의 단체 숙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각종 축제, 훈련, 대회 등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 업주에 따르면 난방 및 관리문제 등으로 겨울철에는 민박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함 (㉠ 객실 5개, ㉡ 객실 2개)

그러나 ㉮는 ㉣대회 개최가 어려워지자 위 관서의 승인 없이 2차 소집훈련(10. 9.~10. 11.)[3]을 실시하였다며 <표-4> 및 [붙임]과 같이 ○○장 인근 식당의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표-4> 2021년 ㉣대회 소집훈련(2차) 집행 내역

(단위: 원)

집행일	건 명	지출금액	지급처	비 고
	계	3,780,000		
2021. 10. 12.	선수단 숙식비	2,430,000	㉯	간이영수증
2021. 10. 11.	진행위원 활동비	1,350,000	㉰ 외 2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 정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는 인근 식당 간이영수증으로 선수단이 숙식을 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보조금 3,780,000원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

그런데도 위 관서의 실무담당자 A와 B는 ㉮가 2020년, 2021년 ㉣대회 사업비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한 것처럼 제출한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보조금이 용도 외 및 허위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2021. 1. 22., 2022. 1. 6. 각각 정산을 확정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3) ○○면 ㉡공원 사용대장에는 소집훈련(10. 9.~10. 11.) 등으로 ㉮가 ○○장을 사용한 내역 없음

[훈계] 관련자 A, B를 훈계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장에게 훈계처분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① 2020년도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9,608,000원을 구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 따라 반환 조치하시고,

② 2021년도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3,780,000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1조에 따라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제재부가금 11,340,000원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수사의뢰] 보조금 집행 증빙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실적보고서를 거짓 보고하여 보조금 총 13,388,000원을 부정수급하고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2021년 선수단숙식비 증빙서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주의요구

제　　목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등 5개 시·군은 <표-1>과 같이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물품 구매사업에 대해 경쟁입찰방식으로 ㉠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과 체결한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물품 구매사업 현황

구분	계약년도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 상대자
청주시	2021년	㉮	174,900,000	㉠
	2023년	㉯	480,000,000	
	2023년	㉰	228,000,000	
충주시	2023년	㉱	105,000,000	㉠
	2023년	㉲	380,000,000	
보은군	2021년	㉳	248,600,000	㉠
	2022년	㉴	470,448,000	
	2022년	㉵	37,829,000	

구분	계약년도	계약명	계약금액(원)	계약 상대자
영동군	2021년	㉦	156,000,000	㉠
음성군	2020년	㉧	76,800,000	㉠
	2021년	㉩	99,847,000	
	2022년	㉪	235,400,000	
	2023년	㉫	248,633,000	
	2023년	㉬	81,180,00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1] 외의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등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제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는 입찰참가의 자격제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등 5개 시·군은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경쟁입찰을 할 때에는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허가, 인가 등 입찰참가자의 자격요건에 대해 정하고 있음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과 지방전산주사보 A(이하 “A”라 한다)는 2021. 1. 11.부터 2021. 7. 14.까지 ㉯과와 2022. 8. 3.부터 2023. 7. 16.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고, 지방전산주사보 B(이하 “B”라 한다)는 2022. 9. 30.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청주시가 위 <표-1>과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과 계약을 체결한 ㉠ 등 3건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들은 물품 구매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됨에도 자격증 소지자 보유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의 경우

A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약업체의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2]’을 계약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6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3]하게 되었다.

---

2) EMC(RecoverPoint Data Replication and Recovery certificate)

이와 같이 A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B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4]'을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과업지시서에 따른 제출서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6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5]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B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의 경우

A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6]'을 계약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

---

3) 계약부서는 1순위(주식회사 ㉡)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하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2순위 업체 ㉠에 대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체결

4) EMC(RecoverPoint Data Replication and Recovery), VMware(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5), EMC(VNX Technology Architect)

5)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5, VNX Technology Architect)을 소지한 AA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6) EMC(VNX Solutions Specialist), VMware(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EMC(RecoverPoint Data Replication and Recovery)

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과업지시서 제출서류 참조)'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2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7]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A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충주시의 경우

지방기록연구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3. 1. 1.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지방전산주사보 D(이하 "D"라 한다)는 2022. 7. 18.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충주시가 위 <표-1>과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과 계약을 체결한 ㉣ 등 2건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들은 물품 구매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됨에도 자격증 소지자 보유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의 경우

7)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AA(VNX Solutions Specialist, VMware Certified Professional)와 BB(RecoverPoint Data Replication and Recovery)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C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8]'을 계약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과업지시서 제출서류 참조)'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5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9]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C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D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10]'을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과업지시서 제출서류 참조)'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4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11]하게 되었다.

---

8) EMC(VNX Solutions Specialist), EMC(RecoverPoint Data Replication and Recovery)

9)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VNX Solutions Specialist)을 소지한 AA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10) EMC(RecoverPoint Data Replication and Recovery), EMC(VNX Technology Architect)

11)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VNX Technology Architect)을 소지한 AA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이와 같이 D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다. 보은군의 경우

지방전산주사 E(이하 “E”라 한다)는 2011. 5. 1.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지방전산서기 F(이하 “F”라 한다)는 2020. 11. 16.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과 지방행정서기 G(이하 “G”라 한다)는 2021. 10. 1.부터 2023. 6. 30.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보은군이 위 <표-1>과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과 계약을 체결한 ㉰ 등 3건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들은 물품 구매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됨에도 자격증 소지자 보유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1) ㉰의 경우

E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12]’을 계약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보유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

12) HP(HP-UX 11i v3 Administrator), EMC(Implementation Engineer, VNX Solutions), EMC(VNX Technology Architect)

그 결과 7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13]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E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F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14]'을 계약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보유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4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15]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F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의 경우

G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의

13) 계약부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점수 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하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5순위 업체 ㉠에 대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HP-UX 11i v3 Administrator)을 소지한 CC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14) HP(HP-UX 11i v3 Administrator), VMware(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5), EMC(VNX Technology Architect)

15)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HP-UX 11i v3 Administrator)을 소지한 CC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16]'을 계약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보유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6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17]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G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영동군의 경우

㉮과 지방전산주사 H(이하 "H"라 한다)는 2018. 7. 1.부터 2022. 7. 25.까지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였다.

영동군은 위 <표-1>과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과 계약을 체결한 ㉷ 사업은 물품 구매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됨에도 계약 시 제출서류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H는 2021년 ㉷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에 3개월 이전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18]'을 계약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16) EMC(Data Domain Deduplication, Backup and Recovery), EMC(NetWorker Specialist Version 6.0)

17)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입찰참가자격으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Data Domain Deduplication, Backup and Recovery)을 소지한 DD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계약 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7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19]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H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마. 음성군의 경우

지방전산주사보 I(이하 "I"라 한다)는 2019. 1. 1.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지방전산서기 J(이하 "J"라 한다)는 2020. 11. 11.부터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실(전 ㉮과)에서 근무하면서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음성군은 위 <표-1>과 같이 경쟁입찰방식으로 ㉠과 계약을 체결한 ㉣ 등 5건의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들은 물품 구매 사업에 해당하므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됨에도 자격증 소지자 보유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적격심사 제출서류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18) VMware(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19) 계약부서는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업체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미보유 등의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하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5순위 업체 ㉠에 대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계약 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VMware Certified Professional)을 소지한 AA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1) ㉦의 경우

I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의 백업시스템에 대한 제조사 자격증[20]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참여 자격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적격심사 시 제출(미제출시 적격심사 자격미달로 낙찰 제외)하도록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3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21]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I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의 경우

I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의 납품물품(EMC)에 대한 제조사 자격증[22]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로 입찰참여 자격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납품물품(EMC)에 대한 제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6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

20) EMC(TA, Technology Architect), EMC(Data Domain, Data Domain Deduplication, Backup and Recovery)

21)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적격심사 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EE(Technology Architect)와 DD(Data Domain Deduplication, Backup and Recovery)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22) EMC(TA, Technology Architect)

지자를 보유한 ㄱ과 계약을 체결[23]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I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의 경우

J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자가 납품물품에 대한 제조사 자격증[24]을 소지한 업체'로 입찰참여 자격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입찰참가자격을 '납품물품에 대한 제조사 자격증을 소지한 업체'로 제한하여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7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ㄱ과 계약을 체결[25]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J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의 경우

I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에 3개월 이전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26]'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

---

23) 계약부서는 1순위(ㄴ)가 입찰참가자격인 제조사 자격증을 미소지 하였다는 사유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2순위 업체 ㄱ에 대해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체결

24) EMC(Technology Architect, VNX Solutions Specialist), VMware(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25) 계약부서는 1순위(ㅇ), 2순위(ㅈ)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인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3순위 업체 ㄱ에 대해 적격심사를 완료하고 계약 체결

26) VMWare(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EMC(Data Domain), EMC(NetWorker)

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적격심사 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3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27]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I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의 경우

I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여업체에 3개월 이전 근무한 자의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28]'을 적격심사 시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부서는 적격심사 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입찰공고하였다.

그 결과 6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되었고, 입찰참가업체 중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한 ㉠과 계약을 체결[29]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I는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이 공정한 입찰 참가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27) 1순위 업체 ㉠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적격심사 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VMWare Certified Professional, NetWorker)을 소지한 AA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28) EMC(VNX IE(Implementation Engineer) 이상)

29) 계약부서는 1순위(㉢), 2순위(㉡) 업체가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이 없다'는 사유로 포기서를 제출하자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3순위 업체 ㉠에 대해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적격심사 시 제출한 제조사 인증 기술 자격증(VNX IE(Implementation Engineer))을 소지한 AA는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포함되지 않음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 청주시의 경우

사업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자 기술지원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충주시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여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제조사 기술 자격증을 요구하게 되었고, 향후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계약 추진 시에는 관계 법령을 철저히 숙지하여 공정한 계약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보은군의 경우

신속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매 물품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제조사 자격증을 요구하게 되었고, 자격증 요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영동군의 경우

사업 수행능력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업무 수행을 할 수 없어 자격증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였고, 향후 시스템 구축 시에는 입찰참가제한에 위배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음성군의 경우

ⓐ시스템과 관련된 대민서비스 장애, 데이터 소실과 같은 중대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납품업체의 기술력을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품대상 물품의 제조사 기술 자격증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 결과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등 5개 시·군은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물품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의 기술지원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 기술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기술인력 보유 항목(5점)에 대해 입찰자 모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물품 구매 사업으로 제조사(공급사)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계약 이행 시 제조사(공급사)가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납품업체의 기술지원 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제조사 기술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게 되었다는 위 기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을 '제조사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제한하지 않은 'Ⓐ' 사업의 경우 1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였고, 'Ⓑ'의 경우 39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다수의 업체가 정보시스템 물품 구매 사업 입찰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영동군, 음성군 등 5개 시·군이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물품 구매사업 계약에 대해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법령에 근거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정당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들의 공정한 입찰 참여의 기회를 제한한 사실이 인정

된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A, B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C, D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는

[훈계] 관련자 E, F, G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훈계] 관련자 H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음성군수는

[훈계] 관련자 I, J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법령에 근거 없이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여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요구 및 통보

제　　목 경매 개시 부동산에 대한 체납액 교부청구 부적정

기 관 명 보은군

내　　용

1. 업무개요

보은군(㉮과)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경매한 법원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시작된 때에는 집행법원 등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84조제4항에 따르면 법원사무관 등은 채권자 및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48조에서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를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집행법」 제145조에 따르면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도록 되어있고,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1)]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경매가 시작된 때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관할법원이 최고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경매 배당금 교부를 청구하여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가능한 지방세가 배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은군은 2020. 8. 6. 청주지방법원(이하 “관할법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방세를 체납한 ㉠(이하 “체납자”라 한다) 소유의 부동산[2)]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사건번호 0000○○0000 부동산강제경매)을 하였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접수하였다. 위 최고서에 따르면 보은군은 위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조세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 세목, 금액, 법정기일을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20. 10. 22. 까지 관할법원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보은군은 배당요구의 종기일인 2020. 10. 22.이 지나도록 관할법원에 배당금의 교부를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경매 부동산이 271,000,000원에 매각되어 2022. 2. 16. 관할법원이 발송한 배당기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인 2022. 2. 28. 배당금의 교부를 청구하였다.

---

1) 다만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경매집행 비용,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전세권·질권·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등은 우선 징수할 수 없음

2) 충청북도 보은군 ○○면 ○○리 000 ○0동, ○0동

그 결과 보은군이 관할법원에 적기에 배당금의 교부를 청구하였다면 <표> “배당요구의 종기 내 교부청구 시 배당 순위”와 같이 전체 배당금액이 265,572,430원[3]이므로 배당순위가 4순위인 ㄴ공단 등 다른 채권자보다 배당순위가 앞서 체납액 전액을 교부받을 수 있었는데도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체납액 계 119,978,540원[4] 만큼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표> 배당요구의 종기 내 교부청구 시 배당 순위

(단위: 원)

배당 순위	채권자	배당액	잔여액	배당비율	이유
전체 배당금액			**265,572,430**	-	-
1	**보은군(당해세)**	**6,137,910**	**259,434,520**	100%	교부권자(당해세)
2	ㄷ세무서	15,008,520	244,426,000	100%	교부권자(조세)
3	**보은군**	**113,840,630**	**130,585,370**	100%	교부권자(조세)
4	ㄴ공단	16,577,460	114,007,910	100%	교부권자(공과금)
5	ㄹ	114,007,910 (동순위자 동일 채권비율 안분)	0	1.88%	신청채권자
	ㅁ기금			1.88%	가압류권자
	ㅂ			1.88%	가압류권자
	ㅅ			1.88%	가압류권자
	ㅇ공단			1.88%	가압류권자

주) 경매 재산에 부과된 조세(당해세)는 지방세기본법 제71조에 따라 다른 조세, 담보채권보다 우선징수 함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가. A의 경우

3) 매각대금 271,000,000원에서 이자 및 집행비용 등을 가감한 금액임

4) 당초 교부청구하였어야 할 체납액 103,609,840원 및 가산금 3,936,060원 합계 107,545,900원과 배당요구 종기일로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 12,432,640원을 더한 금액임

㉮과 지방세무주사 A는 2017. 1. 1.부터 2022. 7. 17.까지 ㉮과에서 법원 최고서 관리 및 교부청구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사람은 지방세를 체납한 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경매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일까지 관할법원에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간 교부청구 업무를 하면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여 기한 내 교부청구를 처리하였다.

그리고 2020. 8. 6. 관할법원이 송부한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를 결정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접수하여 배당금 교부청구 업무를 처리하면서 배당요구종기일 전인 2020. 10. 16. 팀장과 과장에게 교부청구서의 결재를 상신하였고 팀장과 과장은 같은 날 결재를 완료하였다.

그런데 결재가 완료된 이후 위 사람은 해당 교부청구서의 우편발송을 누락하였고 관할법원에 교부청구서가 발송되지 않은 채로 배당요구종기일이 경과하였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금을 교부청구하지 않은 사유로 경매 배당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자격이 상실되었고,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교부청구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체납액을 배당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119,978,540원만큼의 재정상 손해를 입었다.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 사람의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현저하여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① 관계기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관련자

A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당시 개인적인 여러 사정으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교부청구를 하려고 결재를 받은 것을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착각을 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는

[훈계] 관련자 A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재정상 손해액인 119,978,540원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변상명령 등 손해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해태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 등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시,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증평군은 도로개설 및 하천정비공사 등 대형 공사를 추진하면서 위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등[1]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7항에 따라 고시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발주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및 그 밖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2]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기술지원기술인은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와 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현장시공 상태를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 분기별 각 1회 현장시공 상태 점검 시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현장대리인, 기술지원기술인 전원이 합동으로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기술지도를 실시한 후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3]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및 [별표 8]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시공실태 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벌점 부과 대상[4]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기술지원기술인은 월 1회 현장점검 및 분기별 1회 합동점검 등 현장시공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확인・기술지도 등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들이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지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분기별 합동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지시서 상의 업무범위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조에 따른 기술지원기술인의 근무수칙 등이 기술되어 있음

3)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이 제출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4)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횟수가 2회 이상 부족한 경우에는 벌점 1점 부과, 1회 부족한 경우에는 벌점 0.5점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부과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최근 3년간 충청북도 및 각 시·군에서 추진한 대형건설사업을 표본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과 공사관리관에 대한 현장점검 참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일부 현장에서 현장점검을 참석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 ㉮과는 ⓐ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류의 흐름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표-1>과 같이 '㉠사업' 및 위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용역사
㉠사업	• 도로신설 L=3.0km, B=17~18.5m	23,072	'20. 12. 28. ~ '25. 8. 22.	㉰ 외 1개사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161	'21. 3. 5.~ '25. 6. 23.	㉯ 외 1개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과 지방시설주사보 A(이하 "A"라 한다)는 2023. 7. 17.부터 2024. 1. 29.까지 ㉮과에서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관리관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A는 2021. 3. 3. ㉯ 외 1개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비 1,161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5. 6. 23.까지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2021. 3. 5. 착

공서류와 함께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대로 도로 및 공항 분야 등 4명의 기술지원기술인이 월별·분기별 현장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고 분기별 현장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월별 및 분기별 현장시공 상태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21. 3월부터 2024. 2월까지 <표-2>와 같이 기술지원기술인 4명이 참여해야 할 분기별 현장점검 총 16회 중 토목구조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AA 2회, 토목시공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BB 1회,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CC 1회 등 총 4회를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표-2>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단위 : 회)

연번	기술지원기술인			계획			미참여 내역			미참여 시기
	소속	성명	분야	계	분기	월별	계	분기	월별	
	4명			52	16	36	18	4	14	
1	ㄷ	DD	도로 및 공항	13	4	9	3	-	3	월별 '23년 5월, 7월, 11월
2	ㄷ	AA	토목 구조	13	4	9	7	2	5	분기 '22년 4분기, '23년 4분기 월별 '23년 5월, 7월, 8월, 10월, 11월
3	ㄷ	BB	토목 시공	13	4	9	3	1	2	분기 '22년 4분기 월별 '23년 5월, 8월
4	ㄷ	CC	토질 및 기초	13	4	9	5	1	4	분기 '22년 4분기 월별 '23년 5월, 7월, 10월, 11월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월별 현장점검 36회 중 도로 및 공항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DD 3회, 토목

구조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AA 5회, 토목시공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BB 2회,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CC 4회 등 총 14회를 현장점검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리관으로서 참여해야 할 분기별 현장점검에 <표-3>과 같이 총 2회 중 2회를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3> 공사관리관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단위 : 회)

구분	계획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미참여 시기
	계	분기	계	분기별	
A	2	2	2	2	'23년 3분기, 4분기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위 관서 ㉯과는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및 관로 정비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표-4>와 같이 '㉡사업' 및 위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4>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회사
㉡사업	• 관로교체 L=11.0㎞	34,480	'21. 6. 28. ~ '25. 12. 31.	㉣ 외 1개사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139	'21. 11. 8.~ '25. 11. 6.	㉤ 외 1개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면 지방시설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0. 3. 9.부터 2022. 12. 31.까

지, ㉮과 지방시설주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3. 1. 1.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관리관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다.

B와 C는 2021. 10. 28. ㉤ 외 1개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139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5. 11. 6.까지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공사관리관으로서 분기별 현장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관리관으로서 참여해야 할 분기별 현장점검에 <표-5>와 같이 총 15회 중 B 4회, C 4회 등 총 8회를 참석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5> 공사관리관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단위 : 회)

구 분	계획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미참여 시기
	계	분기	계	분기별	
합 계	15	15	8	8	
B	4	4	4	4	‘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C	11	11	4	4	‘23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 ㉰과는 집중호우 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방지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표-6>과 같이 ‘㉢사업 외 4건’ 및 위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였다.

<표-6>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회사
㉥사업	• 전석붙임 3,458㎡, 교량 5개소	30,666	'20. 12. 23. ~ '23. 6. 26.	㉥
㉲사업	• 소하천정비 L=2.37㎞, 교량 7개소	4,077	'22. 9. 16. ~ '23. 12. 23.	㉲
㉤사업	• 소하천정비 L=1.42㎞, 교량 7개소	3,241	'20. 12. 8. ~ '22. 12. 23.	㉤
㉣사업	• 소하천정비 L=0.9㎞, 교량 4개소	6,778	'19. 1. 7. ~ '21. 11. 22.	㉣
㉡사업	• 소하천정비 L=3.81㎞, 교량 1개소	3,090	'19. 3. 18. ~ '22. 12. 23.	㉡
㉢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1,115	'20. 5. 11. ~ '22. 12. 26.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20. 5. 7. ㉦과 건설사업관리용역비 1,115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2. 12. 26.까지 ㉢사업 외 4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2020. 5. 11.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대로 수자원개발 분야 등 3명의 기술지원기술인이 월별·분기별 현장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월별 및 분기별 현장시공 상태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20. 5월부터 2022. 12월 준공까지 <표-7>과 같이 기술지원기술인 4명이 참여해야 할 분기별 현장점검 총 27회 중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EE이 3회를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표-7>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단위 : 회)

연번	기술지원기술인			계획			미참여 내역			미참여 시기
	소속	성명	분야	계	분기	월별	계	분기	월별	
	4명			73	27	46	20	3	17	
1-1	㈜	FF	수자원개발	15	6	9	2	-	2	월별 '21년 1월, 2월
1-2	㈜	GG	수자원개발	11	4	7	3	-	3	월별 '21년 10월 '22년 1월, 2월
2	㈜	EE	토질및기초	20	7	13	11	3	8	분기 '21년 4분기 '22년 2분기, 3분기 월별 '21년 1월, 2월, 7월,11월 '22년 1월 2월, 7월, 10월
3	㈜	HH	토목구조	27	10	17	4	-	4	월별 '21. 1월, 2월 '22. 1월, 2월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월별 현장점검 46회 중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FF 2회, GG 3회, 토질 및 기초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EE 8회, 토목구조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HH 4회 등 총 17회를 현장점검에 참여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라. 음성군의 경우

음성군 ㈐과는 집중호우 시 제방유실 및 농경지 침수 방지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표-8>과 같이 '◎사업 외 1개소' 및 위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8>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회사
㉮사업	• 하천정비 L=3.0㎞, 교량 5개소	15,846	'21. 7. 15. ~ '24. 10. 22.	㉦
㉲사업	• 하천정비 L=1.24㎞, 교량 3개소	16,306	'21. 5. 10. ~ '24. 8. 14.	㉤ 외 1개사
㉮·㉲사업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165	'21. 5. 10.~ '24. 7. 21.	㉡ 외 1개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021. 1. 22. ㉡ 외 1개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165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4. 7. 21.까지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2021. 5. 10.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대로 수자원개발 분야 등 4명의 기술지원기술인이 월별・분기별 현장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월별 및 분기별 현장시공 상태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21. 5월부터 2024. 2월까지 <표-9>와 같이 기술지원기술인 4명이 참여해야 할 월별 현장점검 총 84회 중 수자원개발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II 4회, 기계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JJ 3회 등 총 7회를 참여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표-9>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단위 : 회)

연번	기술지원기술인			계획			미참여 내역			미참여 시기
	소속	성명	분야	계	분기	월별	계	분기	월별	
	4명			126	42	84	7	-	7	
1	㉲	II	수자원 개발	38	13	25	4	-	4	월별 - 21. 5월, 7월 22. 1월 24. 1월
2	㉲	KK	토목 시공	38	13	25	-	-	-	
3	ⓐ	LL	토질및 기초	38	13	25	-	-	-	
4	ⓐ	JJ	기계	12	3	9	3	-	3	월별 - 21. 11월 22. 1월 24. 1월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마. 증평군의 경우

증평군 ㉮과는 스포츠 인프라 확충을 통한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군민의 체육·여가활동 증진을 위하여 <표-10>과 같이 '㉳사업' 및 위 사업의 공정관리 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10>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시공회사
㉳사업	• 대지면적 78,232㎡, 건축면적 7,059㎡, 관람석 5,600석	17,876	'20. 8. 31. ~ '24. 5. 18.	ⓑ 외 1개사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514	'20. 7. 1.~ '24. 4. 5.	ⓒ 외 1개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과 지방시설주사보 D(이하 "D"라 한다)는 2023. 7. 1.부터 2024. 3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과에서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공사관리관 및 실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D는 2020. 6. 16. ⓒ 외 1개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비 2,514백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2024. 4. 5.까지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면서 2020. 7. 1. 착공서류와 함께 제출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대로 건축 분야 등 4명의 기술지원기술인이 월별·분기별 현장점검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이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월별 및 분기별 현장시공 상태 점검·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2020. 7월부터 2024. 2월까지 <표-11>과 같이 기술지원기술인 12명이 참여해야 할 분기별 현장점검 총 56회 중 건축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MM 1회, NN 1회, OO 1회, 토목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PP 1회, 기계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QQ 1회, RR 1회, 조경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SS 1회, TT 1회 등 총 8회를 참여하지 아니하였고,

<표-11> 기술지원기술인의 현장점검 미참여 내역

(단위 : 회)

연번	기술지원기술인			계획			미참여 내역			미참여 시기
	소속	성명	분야	계	분기	월별	계	분기	월별	
	12명			172	56	116	35	8	27	
1-1	ⓒ	UU	건축	2	1	1	-	-	-	
1-2		MM		6	2	4	2	1	1	분기 '20년 4분기 월별 '20년 10월
1-3		VV		8	2	6	2	-	2	월별 '21년 9월, 10월
1-4		NN		11	3	8	4	1	3	분기 '21년 4분기 월별 '21년 11월, 12월 '22년 9월
1-5		OO		16	5	11	7	1	6	분기 '23년 4분기 월별 '21년 11월 '2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1	ⓒ	PP	토목	8	2	6	2	1	1	분기 '20년 4분기 월별 '20년 10월
2-2		WW		35	12	23	4	-	4	월별 '23년 8월, 9월, 10월, 11월
3-1	ⓒ	QQ	기계	8	2	6	1	1	-	분기 '20년 4분기
3-2		RR		33	12	21	7	1	6	분기 '23년 4분기 월별 '21년 9월, 11월 '23년 8월, 9월, 10월, 11월
3-3		XX		2	1	1	1	-	1	월별 '23년 12월
4-1	ⓒ	SS	조경	8	2	6	1	1	-	분기 '20년 4분기
4-2		TT		35	12	23	4	1	3	분기 '23년 4분기 월별 '23년 10월, 11월, 12월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월별 현장점검 116회 중 건축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MM 1회, VV 2회, NN 3회, OO 6회, 토목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PP 1회, WW 4회, 기계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RR 6회, XX 1회, 조경 분야 기술지원기술인 TT 3회 등 총 27회를 참여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A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사관리관과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점검에 미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

에 대한 관리·감독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등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B, C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사관리관과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점검에 미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수는

[주의]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점검에 미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등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주의]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점검에 미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등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는

[훈계] 관련자 D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공사관리관과 기술지원기술인이 현장점검에 미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현장점검 등 건설사업관리를 소홀히 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기술지원기술인에 대해「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등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가설해야 할 교량을 그대로 존치하는 등 사업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는 ⓐ천 하천정비를 통해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공사를 추진하였다.

<표-1> 사업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총공사비	사업기간	시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사
㉠공사	• 하천정비 L=5.97㎞ 제방연장 L=7.89㎞ 교량 8개소	36,008	'19. 2. 25. ~ '23. 4. 19.	㉠ 외 1개사	㉡ 외 1개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실 지방시설주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1. 1. 17.부터 2023년 3. 2.까지, ㉰과 지방시설사무관 B(이하 “B”라 한다)는 2021. 5. 20.부터 2022. 7. 11.까지 ㉮과에서 각각 실무담당자, ㉱팀장의 직위로 ⓐ천 하천정비 업무를 담당하거나 주관하였다.

2.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가설해야 할 교량을 그대로 존치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하천법」 제25조, 제27조 및 「하천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에 대하여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자연친화적 관리·보전 및 기후변화에 따른 하천관리 취약성 대응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기본계획에는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기본홍수량 및 홍수량의 배분에 관한 사항,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 하폭 및 그 경계, 하도와 유황의 개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도록 되어있으며,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한 후 공사를 추진하여야 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통수단면이 부족하여 재가설하도록 설계에 반영된 교량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 청취, 재해 가능성 및 안전대책, 향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존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2018. 8월 설계 당시 ⓐ천 지방하천정비공사에 포함된 Ⓐ교와 Ⓑ교의 형하여유고[1]가 각각 0.46m, 0.03m로 기준여유고 1m 대비 0.54m, 0.97m가 부족하고, 경간장도 2개소가 13m로 기준경간장 20m에 미달되어 하천기본계

1) 교량의 안전을 위해 교량 상판의 하부와 계획홍수위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높이

획(2018. 11.)에 따라 재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고, Ⓐ교와 Ⓑ교의 재가설을 포함한 ⓐ천 정비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2019. 6. 14. 하천공사시행계획을 고시[2]하였다.

이후 2019. 6월 설계대로 교량을 설치할 경우 교량 상승으로 인한 교량과 제내지[3]와의 단차가 커져 급경사로 인해 차량통행 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군 건의사항이 접수[4]됨에 따라 위 관서는 하상준설을 통해 교량높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교와 Ⓑ교의 형하여유고 부족분을 각각 0.54m, 0.97m에서 0.06m, 0.34m로 완화하여 2019. 10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다.

하지만 Ⓐ교와 Ⓑ교의 형하여유고는 기준여유고 1m 대비 여전히 0.06m, 0.34m가 부족한 채로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22. 3월 교량 재가설을 위한 철거과정에서 공사 현장의 소음 등 주민 민원을 이유로 재가설 대상인 Ⓐ교와 Ⓑ교 중 Ⓐ교는 존치하고, Ⓑ교만 재가설하는 것으로 결정[5]하면서 존치하기로 결정한 Ⓐ교에 대하여 형하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으로 인한 재해 위험성 및 안전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검토 없이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고시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공사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재가설 되어야 하는 Ⓐ교를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사유로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하천의 체계

---

2) 충청북도 고시 제2019-208호

3) 하천 제방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으로 제방으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마을까지를 의미함

4) ⓐ천 지방하천정비사업 공사시행에 따른 도심지구간 군 의견 반영 요청(㉮군 ㉰과-10661)

5) Ⓐ교의 거더제작이 완료되어 교량 1개소는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와 Ⓑ교 중 안전등급(Ⓐ교 B등급, Ⓑ교 C등급)이 높고 여유고가 기준에 조금더 적합(기준대비 0.06m부족)한 Ⓐ교를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사의 의견 들어 검토 후 결정

적 관리와 배치되고, 이로 인해 향후 Ⓐ교 재가설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집중호우 시 나뭇가지 등이 하천 내 교각 사이에 걸릴 경우 일시적 홍수위 상승으로 인한 월류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3. 특허공법 변경 적용에 대한 검토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2018. 1. 22. 행정안전부예규 제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장 제3절 2. 제한요령에 따르면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특허공법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 체결 등 공법 선정을 위하여 2017. 12월 ⓐ천 지방하천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교량, 가동보, 자연형 여울에 대한 특허공법 선정심의회를 구성·운영[6]하고, 하천기본계획 및 현지여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특허공법 선정을 위하여 「ⓐ천 교량 및 가동보, 자연형여울공법 선정심의회 구성 및 계획」(이하 “공법선정 심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공법선정 심의계획에 따라 공법선정 심의를 완료한 후 영동천 지방하천정비공사 설계에 특허공법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공법선정 심의계획에 작성된 교량에 대한 공법 주요 검토사항에 따르면 교량공법은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홍수위에 대한 여유고 및 경간장을 검토하고, 주민의견 사항(교량 접속도로 구배 최소화)을 반영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 현장 여건을 고려한 공법 검토를 통해 심의위원별 평가를 거쳐 공법을 선정하도

6) 특허공법 선정 심의회를 구성하면서 내부 3명, 외부 2명 등 총 5명으로 심의회 구성

록 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는 공법선정 심의계획에 따라 특허공법 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공법이므로 현장여건 변경 등에 따라 새로운 공법으로 변경하여 적용할 경우에는 특허공법 선정심의회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공법 변경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면밀히 하여야 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표-2>와 같이 2018. 1월 공법선정위원회를 거쳐 Ⓐ교와 Ⓑ교 거더를 특허공법으로 각각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였고, 선정된 ㄷ과 ㄹ의 공법을 적용하여 Ⓐ교와 Ⓑ교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편 ⓐ천 지방하천정비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써 Ⓐ교는 3차분 공사(2021. 2. 25.~2021. 12. 21.)에 계획되어 있고, Ⓑ교는 4차분 공사(2022. 2. 25.~2022. 12. 21.)에 계획되어 있어 Ⓐ교에 사용 예정인 ㄷ의 거더는 2021. 6월 제작을 완료하였다.

<표-2> 특허공법 선정 현황

(단위: 천 원)

교량명	공법사	공법명	특허금액	공법선정심의회 개최일
Ⓐ교	ㄷ	하부플랜지가 배제된 강합성빔과 그 시공방법	797,354	2018. 1. 4.
Ⓑ교	ㄹ	거더의 형식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는 거더고정장치 및 이를 이용한 라멘교의 시공방법	849,900	2018. 1. 4.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공사추진 과정에서 공사소음 및 영업방해에 따른 교량존치 요구 민원[7]

7) 2022. 3월 교량철거 및 재가설에 따른 민원과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군은 설계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문제가 없다면 존치도 가능하다는 의견 제시

의 대책으로 「Ⓐ교, Ⓑ교 철거 및 재설치 추진계획 보고」(㉮과-5167, 2022.3.30.)에 따라 결정된 Ⓐ교 존치로 인해 이미 제작되어 Ⓐ교에 사용될 거더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여 Ⓐ교에 설치 예정이었던 거더를 Ⓑ교 재가설공사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관서는 특허공법 선정심의회에서 결정한 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특허공법 선정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공법을 변경했어야 했으나 설계사의 구조검토를 근거로 판단하는 등 특허공법 변경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교 존치는 시공사, 감리단, 설계사의 검토를 통해 결정하였고, Ⓐ교 재가설은 향후 하천기본계획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과 특허공법 선정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다른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변경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나 기존에 제작된 거더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주민 의견 청취,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형하여유고 및 경간장 등이 부족하여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반영된 Ⓐ교를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절차 없이 존치한 점, 교량 존치에 따른 재해 위험성과 그에 대한 대책 등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점, 향후 재가설 계획이 불투명한 점, 매몰비용 발생 등 사정에 의해 공법을 변경하더라도 공법 심의회에 준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변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관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훈계] 관련자 A, B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하천공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하천공사 시행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추진하고, 특허공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법 선정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공법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교 존치에 따른 재해 가능성 및 안전대책 등을 검토하여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통보 미실시 및 이행관리 미흡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영동군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시(㉮과, ㉯과[1]), 충주시(㉰과), 제천시(㉱과), 음성군(㉲과[2]), 영동군(㉳과[3])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이행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 <표-1>에 해당하는 건축물[4](이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화재안전, 건축설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정기점검(이하 “최초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점검을

---

1) 2천㎡ 이상 일반건축물은 ㉮과에서 공동주택은 ㉯과에서 정기점검 이행 관리

2) 일반건축물은 ㉴팀에서 공동주택은 ㉵팀에서 정기점검 이행 관리

3) 일반건축물 업무는 ㉶팀에서, 공동주택 업무는 ㉷팀에서 담당하던 것을 2021. 7. 1. 조직 개편으로 ㉶팀에서 일괄 담당하게 되었고, 이후 공동주택 업무는 2023. 7. 1. 조직개편으로 ㉮과로 이관하였으나 2024. 2. 1. 다시 이관 받게 됨

4) 다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제2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실시한 공동주택은 제외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점검(이하 “재점검”이라 한다)을 실시[5]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 이상인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2에 따른 준다중이용 건축물로서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 자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재구성

아울러 같은 법 제18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6]을 지정하여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한편 건축물의 관리자는 통지받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점검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정기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와 시장·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5]에 따르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년 이내 1차 위반의 경우 500만 원, 2차 위반의 경우 750만 원, 3차 위반 이상의 경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5) 다만, 해당 연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이 실시된 경우에는 정기점검 중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

따라서 위 관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등을 통보하여야 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기한을 다시 정해[7] 정기점검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재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이번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기간(2024. 3. 11. ~ 3. 27.) 중 건축물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관리법」 시행(2020. 5. 1.) 이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현황을 추출하여 정기점검 대상 통보 여부와 정기점검 미이행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 등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관리 실태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영동군의 경우

㉮과 지방시설주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8. 1. 1.부터 2021. 6. 30.까지 ㉮과 ㉯팀에서, 다시 2024. 1. 10.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 ㉰팀에서 담당팀장의 직위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업무를 주관하였고,

㉱면 지방시설주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8. 7. 1.부터 2021. 6. 30.까지, 다시 2023. 7. 1.부터 2024. 1. 9.까지 ㉮과 ㉯팀에서 담당팀장의 직위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과 지방시설사무관(전 지방시설주사) C(이하 “C”라 한다)는 2021. 7. 1.부

7) 건축물 정기점검은 법령으로 정한 의무 사항에 해당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므로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을 다시 정해 재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토교통부(국토관리원) 의견임

터 2023. 6. 30.까지 ㉯과 ㉵팀에서 담당팀장의 직위로, 2023. 7. 1.부터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 현재까지 ㉯과에서 과장의 직위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한 정기점검 업무를 주관하거나 총괄하였다.

위 사람들은 충청북도로부터 2019. 5. 7.「건축물관리법」 제정(2019. 4. 30.)과 2020. 5. 14. 법령이 시행(2020. 5. 1.)되었음을 안내[8]받거나 법령 시행 이후 정기점검 이행 관리와 정기점검 대상 선정 촉구에 관하여 도시건축과에 접수된 공문(11차례[9])을 선람하는 과정에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런데도 위 사람들은 담당팀장(과장)으로서 도시건축과의 업무분장을 조정하여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가 추진되도록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정기점검에 관한 업무가 이행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영동군(㉯과)은 2024년 3월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조차 선정하지 않은 채 사실상 관련된 업무를 방치[10]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붙임-1>과 같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27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 등이 통보되지 못함으로써 정기점검이 제때 이행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청주시의 경우

---

8) ㉯과는 2019. 5. 7.「건축물관리법」이 공포되었음을 안내받으면서 2020. 5. 1. 법령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인력배치 등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요청받기도 함

9)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정기점검 등 업무 철저(충청북도 ㉱과-12252호, 2020. 7. 14.),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대상 선정 촉구 요청(충청북도 ㉱과-20736호, 2021. 10. 20.), 건축물관리법령 상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기준 알림(충청북도 ㉱과-17922호, 2023. 8. 23.) 등

10) ㉯과는 「건축물관리법」에 관한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담당자가 지정되지 못한 채 정기점검 업무가 처리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

청주시(㉮과, ㉯과)는 <붙임-2>와 같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한 이후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총 61건[11]에 대하여 점검기한으로부터 최대 40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중 17건은 정기점검 이행 촉구(재통보)조차 하지 않는[12] 등 정기점검 이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다.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과)는 <붙임-2>와 같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한 이후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총 21건에 대하여 점검기한으로부터 최대 43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중 1건은 정기점검 이행 촉구(재통보)조차 하지 않는 등 정기점검 이행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라. 제천시의 경우

제천시(㉱과)는 <붙임-2>와 같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임을 통보한 이후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총 3건에 대하여 점검기한으로부터 최대 40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 부과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점검 이행 촉구에 관한 공문만을 재발송하는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음성군의 경우

음성군(㉲과)은 <붙임-2>와 같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11) ㉮과 소관 일반건축물 53건, ㉯과 소관 공동주택 8건

12) 다만, 감사 기간 중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정기점검을 이행하도록 촉구

대상임을 통보한 이후 해당 건축물 관리자가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총 11건에 대하여 점검기한으로부터 최대 25개월이 지났는데도 과태료 부과없이 형식적으로 정기점검 이행 촉구에 관한 공문만을 재발송하는 등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 영동군의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업무의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의 누락이 발생하였고 향후 체계적인 업무 분담을 실시하는 한편 담당자 업무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청주시의 경우

㉮과는 집합건축물의 경우 관리인 대표가 불분명하여 정기점검 통지가 어렵고 분쟁·소송 중인 건축물이 많아 과태료 부과가 쉽지 않은 사정 등을 감안하여 달라는 의견과 현재 상반기 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재통보 한 상태로 기간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후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과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대부분 관리사무소가 부재한 오래된 공동주택들로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여 점검을 독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고 점검 비용 마련이 쉽지 않은 영세민들과 체납 우려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으나 촉구 기간 이후에도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의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5. 검토결과(청주시 의견에 대해)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통보 이후 건축물 관리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행촉구 등의 조치가 없었던 점, 점검기한으로부터 최대 40개월이 지나도록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청주시(㉮과, ㉯과)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훈계] 관련자 A, B, C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건축물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점검 실시절차 등을 조속히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는

[통보]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2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건축물 정기점검 미통보 현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붙임2] 건축물 정기점검 미이행 현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자격증 가산점 평정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주시(㉮과)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하면서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소속 공무원에게 0.25점 또는 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자격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자격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인자격증 중 임용권자가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과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

점이 반영된 자격증(해당 자격증 종목의 하위 등급의 자격증 포함)[1]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을 할 때에는 평정대상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와 자격증 보유 현황 등을 확인하여 규칙[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승진임용 시 반영된 자격증 등에 대해 가산점 부여

위 관서는 승진임용 시 이미 가산점이 반영된 자격증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면 안되는데도 <표-1>과 같이 지방공업서기 AA 등 15명이 2022. 1. 13. 승진임용시 반영한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제외하지 않고 2024. 1. 18. 승진후보자 명부[3]에 그대로 반영하였다.

<표-1> 승진임용 시 이미 반영한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명세

성 명	현 직급	승진임용시('22.1.13.) 반영 자격증 및 가산점		승진후보자 명부('24.1.18.) 기준 가산점 재반영 여부
AA	지방공업서기(일반기계)	일반기계기사	0.5점	반영(0.5점)
AB	지방공업서기(일반전기)	전기기사	0.5점	반영(0.5점)
AC	지방농업서기	식물보호기사	0.5점	반영(0.5점)
AD	지방녹지서기(산림자원)	조경기사	0.5점	반영(0.5점)
AE	지방보건서기	치과위생사	0.5점	반영(0.5점)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 개정(행정안전부령 제199호, 2020. 9. 10.)에 따라 2022. 1. 1.부터 시행, 부칙 제5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

2)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 [별표 21]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및 언어능력 시험 구분표"

3) 2023년도 하반기 승진후보자 명부 조정(2024. 1. 18.), ㉮과-2286(2024. 1. 19.)

AF	지방환경서기	대기환경기사	0.5점	반영(0.5점)
AG	지방시설서기(토목)	토목기사	0.5점	반영(0.5점)
AH	지방시설서기(토목)	토목기사	0.5점	반영(0.5점)
AI	지방시설서기(토목)	토목기사	0.5점	반영(0.5점)
AJ	지방시설서기(토목)	건설재료시험기사	0.5점	반영(0.5점)
AK	지방시설서기(토목)	토목기사	0.5점	반영(0.5점)
AL	지방시설서기(토목)	토목산업기사	0.5점	반영(0.5점)
AN	지방시설서기(토목)	토목기사	0.5점	반영(0.5점)
AM	지방방송통신서기	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점	반영(0.5점)
AO	지방사서서기	정사서2급	0.5점	반영(0.5점)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이와 같이 승진임용시 반영된 자격증 가산점이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된 결과, 지방공업서기 AA, AE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표-2>, <표-3>과 같이 정당 순위보다 상향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

<표-2> 2024. 1. 18. 기준 지방공업서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명세

순위	성명	소속	평정점수 상세(당초)		평정점수 상세(정당)		정당 순위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						
3	AA	-	**81.54**	**0.5**	**81.04**	**0 (-0.5)**	**4 (↓1)**
4	AP	-	**81.45**	0.5	**81.45**	0.5	**3 (↑1)**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총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경력, 실적가산점, 자격가산점 등을 합한 점수임

<표-3> 2024. 1. 18. 기준 지방보건서기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명세

순위	성명	소속	평정점수 상세(당초)		평정점수 상세(정당)		정당 순위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반영	총 점수	자격증 가산점	
	⋮						
3	AE	-	**75.07**	**0.5**	**74.57**	**0 (-0.5)**	**4 (↓1)**
4	AQ	-	**74.99**	0.5	**74.99**	0.5	**3 (↑1)**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총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경력, 실적가산점, 자격가산점 등을 합한 점수임

나. 특수직급 임용자 등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 부여 등

위 관서는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표-4>와 같이 지방사회복지서기보 AR 등 9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반영하여 2022. 11. 30.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표-4> 2022. 11. 30. 기준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명세

순위	성명	소속	평정점수 상세(당초)		평정점수 상세(정당)		정당 순위	비고 (채용반영 자격증)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1	AS	-	85.86	0	85.86	0	1	사회복지 1급
2	AR	-	85.15	**0.5**	**84.65**	**0 (-0.5)**	**3 (↓1)**	사회복지 2급
3	AT	-	85.01	0	85.01	0	**2 (↑1)**	사회복지 1급
4	AU	-	77.7	**0.5**	**77.2**	**0 (-0.5)**	4	사회복지 2급
5	AV	-	77.01	0	77.01	0	5	사회복지 2급
6	AW	-	75.76	0	75.76	0	6	사회복지 2급
7	AX	-	73.26	0	73.26	0	7	사회복지 2급
8	AY	-	73.11	0	73.11	0	8	사회복지 2급
9	AZ	-	72.06	0	72.06	0	9	사회복지 2급
10	BA	-	70.86	0	70.86	0	10	사회복지 2급
11	BB	-	69.66	0	69.66	0	11	사회복지 1급
12	BC	-	69.21	**0.5**	**68.71**	**0 (-0.5)**	12	사회복지 2급
13	BD	-	66.96	0	66.96	0	13	사회복지 1급
14	BE	-	66.72	**0.5**	**66.22**	**0 (-0.5)**	**15 (↓1)**	사회복지 1급
15	BF	-	66.41	0	66.41	0	**14 (↑1)**	사회복지 1급
16	BG	-	65.86	0	65.86	0	16	사회복지 1급
17	BH	-	65.62	**0.5**	**65.12**	**0 (-0.5)**	17	사회복지 2급
18	BI	-	65.55	**0.5**	**65.05**	**0 (-0.5)**	18	사회복지 2급

19	BJ	-	64.81	0	64.81	0	19	사회복지 2급
20	BK	-	63.67	0	63.67	0	20	사회복지 2급
21	BL	-	63.52	0	63.52	0	21	사회복지 2급
22	BM	-	62.83	**0.5**	**62.33**	**0 (-0.5)**	22	사회복지 2급
23	BN	-	62.48	**0.5**	**61.98**	**0 (-0.5)**	23	사회복지 2급
24	BO	-	61.93	**0.5**	**61.43**	**0 (-0.5)**	24	사회복지 1급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총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경력, 실적가산점, 자격가산점 등을 합한 점수임

이와 같이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하는 지방사회복지직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여 임용된 사람의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을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한 결과, AR과 AT, BE와 BF 4명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가 각각 상향 또는 하향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4].

그리고 2023. 5.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도 위 <표-4>의 BC, BH, BE, BN, BM, BO, BI 등 7명과 BP 등 총 8명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해서 가산점을 반영하였고, BE의 경우 2023. 11. 30.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에도 <표-5>와 같이 해당 자격증 가산점을 그대로 반영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5].

<표-5> 2023. 11. 30. 기준 지방사회복지서기보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명세

순위	성명	소속	평정점수 상세(당초)		평정점수 상세(정당)		정당 순위	비고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							
6	**BE**	-	**73.75**	**0.5**	**73.25**	**0 (-0.5)**	**7 (↓1)**	하위 자격증(2급 보유) 가산점
7	BN	-	**73.26**	0	**73.26**	0	**6 (↑1)**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총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경력, 실적가산점, 자격가산점 등을 합한 점수임

4) AR과 AT은 '23.1.1. 승진임용됨

5) BE, BN의 경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승진임용 되지 않음

또한 위 관서는 <표-6>과 같이 지방사서서기 BR의 소지의무 자격증인 2급 정사서 자격증에 대해서 2023. 5. 31.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에 해당 자격증 가산점을 반영하였고, 지방의료기술서기보 BS의 소지 의무 자격증인 방사선사 자격증에 대해서 2022. 11. 30.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에 해당 자격증 가산점을 반영하였으며,

<표-6> 사서직 및 의료기술직 자격증 가산점 반영 명세

구 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성명	소속	보유 자격증 (가산점)	가산점 반영	비고
지방사서 서기	'23.5.31.	1	BQ	-	2급 정사서 (0.5)	0	
		2	**BR**	-	2급 정사서 (0.5)	**0.5**	
지방의료기술 서기보	'22.11.30.	1	**BS**	-	방사선사 (0.5)	**0.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총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경력, 실적가산점, 자격가산점 등을 합한 점수임

<표-7>과 같이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등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 2014년 및 2015년도 전직을 위한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2015. 1. 15., 2016. 1. 13. 각각 전직 임용된 공무원 중 지방공업주사 BT 등 9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고, 지방공업주사 BU 등 6명에 대해서는 해당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표-7> 자격증 소지 전직 임용자의 해당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 부여 명세

성명	소속	현 직급	해당 자격증	가산점 부여 여부
BT	-	지방공업주사(일반기계)	산업안전기사	'23.11.30.까지 0.5점 부여
BV	-	지방공업주사(일반기계)	농업기계산업기사	6급 승진('20.5.1.) 시 0.25점 부여
BU	-	지방공업주사(일반화공)	위험물산업기사	6급 승진('19.5.1.) 시 **가점 미부여**

BW	-	지방시설주사(일반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6급 승진('22.5.1.) 시 0.25점 부여
BX	-	지방공업주사보(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기사	현재 0.5점 부여 중
BY	-	지방공업주사보(일반전기)	전기공사기사	7급 승진('17.7.13.) 시 **가점 미부여**
BZ	-	지방공업주사(일반기계)	산업안전기사 2급	6급 승진('21.7.1.) 시 **가점 미부여**
CA	-	지방공업주사(일반화공)	가스산업기사	7급 승진('18.5.1.) 시 0.25점 부여
CB	-	지방공업주사(일반전기)	산업안전산업기사	6급 승진('20.5.1.) 시 0.25점 부여
CC	-	지방공업주사(일반화공)	위험물산업기사	6급 승진('21.1.8.) 시 **가점 미부여**
CD	-	지방공업주사(일반화공)	위험물관리산업기사	6급 승진('21.5.1.) 시 **가점 미부여**
CE	-	지방공업주사보(일반기계)	용접산업기사	현재 0.25점 부여 중
CF	-	지방공업주사(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6급 승진('22.1.13.) 시 **가점 미부여**
CG	-	지방공업주사보(일반기계)	일반기계기사	현재 0.5점 부여 중
CH	-	지방공업주사(일반화공)	가스기사	현재 0.5점 부여 중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다. 가산점 자격증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 누락 등

위 관서는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표-8>과 같이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소속 공무원 일부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등 자격증 가산점을 각각 다르게 반영한 채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였다.

<표-8> 가산점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명세

구 분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성명	소속	보유 자격증 (가산점)	가산점 반영	비고
지방시설 (일반토목) 주사보	'24.1.18	1	CI	-	토목기사 (0.5)	0.5	
		2	**CJ**	-	토목기사 (0.5)	**0**	
		3	**CK**	-	토목기사 (0.5)	**0**	
		4	**CL**	-	토목기사 (0.5)	**0**	

		5	**CM**	-	토목기사 (0.5)	**0**	
		6	**CN**	-	토목산업기사 (0.25)	**0**	
		7	CO	-	토목, 지적기사 (0.5)	0.5	
			⋮				
지방시설 (일반토목) 서기	'23.5.31.	1	CP	-	토목, 건설재료 시험기사(0.5)	0.5	
		⋮					
		4	CQ	-	-	0	
		5	**CR**	-	토목기사 (0.5)	**0**	
		⋮					
지방방송통신 주사보	'23.11.30.	**1**	**CS**	-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0.5)	**0**	
		2	CT	-	정보처리, 정보통신기사 등(0.5)	0.5	
		3	CU	-	토목기사 (0.5)	0.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총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경력, 실적가산점, 자격가산점 등을 합한 점수임

이와 같이 동일한 가산점 자격증을 소지한 일부 공무원에 대해서 가산점 부여가 누락된 결과, <표-9>와 같이 지방시설서기 CR의 2023. 5. 31.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가 정당 순위보다 하향되는 등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6].

<표-9> 2023. 5. 31. 기준 지방시설서기(일반토목)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명세

순위	성명	소속	평정점수 상세(당초)		평정점수 상세(정당)		정당 순위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총 평정점수	자격증 가산점	
	⋮						
4	CQ	-	**81.15**	0	**81.15**	0	**5(↓1)**
5	**CR**	-	**80.69**	**0**	**81.19**	**0.5**	**4(↑1)**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 총 평정점수는 근무성적, 경력, 실적가산점, 자격가산점 등을 합한 점수임

6) CQ와 CR은 '24.1.1. 승진임용됨

그리고 위 관서는 <표-10>과 같이 가산점 자격증의 명칭이 변경 또는 통합되었는데도 「충주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의 가산점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하지 않아 지방공업서기 CV 등 8명에 대하여 자격증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는 등 자격증 가산점 평정 업무를 소홀히 처리하였다.

<표-10> 자격증 명칭이 변경·통합된 동일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잘못 부여한 명세

자격증 명칭 (인사규칙 반영)	직급	소속	성명	보유 자격증 명칭	자격증 가산점 반영 여부	비고
전산응용가공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로 변경**	지방공업서기 (일반기계)	-	CV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미반영 (0.5)**	
		-	CW	**컴퓨터응용가공 산업기사**	**미반영 (0.5)**	
	지방공업주사보 (일반기계)	-	CX	전산응용가공산업 기사, 일반기계기사	반영 (0.5-8급 당시)	**전직**
위험물관리 산업기사 **※ 위험물산업기사로 변경**	지방공업주사보 (일반화공)	-	CY	**위험물 산업기사**	**미반영 (0.5-8급 당시)**	
		-	CZ	**위험물 산업기사**	**미반영 (0.25)**	
	지방공업주사 (일반화공)	-	DA	**위험물 산업기사**	**미반영 (0.25-7급 당시)**	**전직**
		-	DB	**위험물 산업기사**	**미반영 (0.25-7급 당시)**	**전직**
		-	DC	**위험물 산업기사**	**미반영 (0.25-7급 당시)**	**전직**
보일러산업기사 **※ 에너지관리산업 기사로 통합**	지방공업주사보 (일반기계)	-	DD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미반영 (0.5-8급 당시, 0.25-현재)**	**전직**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등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자격증 가산점 부여와 관련된 사항을 일괄 확인하고 점검하여 추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주의] 앞으로 담당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에 대하여 가산점 부여를 하지 않거나,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한 특수직급 임용자 등의 해당 자격증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부적정

기 관 명 진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진천군(㉮과)은 「지방세법」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지방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납세자가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의 적격요건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 따르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는 감면 대상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 판례[1]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는 “새

1)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두41948 판결

로운 중소기업이 설립되었더라도, 해당 중소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고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으로 취득세를 감면하여서는 안되고, 납세의무자가가 감면 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면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은 2019. 1. 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00번길 00, 000호'에 건설업 및 PC[2]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이다. 위 법인은 2020. 7. 16. 진천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토지 220,898㎡를 매입하여 2020. 11. 12. PC제조공장을 신축하였다.

이후 2020. 12. 4. ㉠은 위 토지와 공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창업중소기업

2) 공장 등에서 미리 제작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총칭(Precast Concrete)

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 금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가. 감면대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립된 중소기업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중소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3)]

아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ㄱ은 법인격을 달리하여 외관상 창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은 ㅁ 또는 그 연관법인이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① ㄱ그룹은 <표-1> “ㄱ그룹 주요 법인 현황”과 같이 회장 A가 처음 설립한 ㄴ을 시작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건설, 부동산 개발, PC 제조, 인허가 설계, 물류센터 등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배주주인 A와 배우자 B, 자녀인 C, D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ㄱ그룹은 2015. 7. 1. 건설업을 업종으로하여 ㅁ을 설립하였고, 2019. 1. 4. 건설업, PC제조업을 업종으로 하여 ㄱ을 설립하고 PC제조공장을 2020년에 신축하였다.

3) 대법원 2020.10.15. 선고 2020두41948 판결, 대법원 2024.1.11.선고 2023두54358 판결 참조

<표-1> ㉮그룹 주요 법인 현황

(단위: ㎡, 원)

법인명 (설립일자)	주요목적사업	임원	주주
㉰ (99.11.10.)	건설업, 창고업, 운송업 및 물류산업 관련 일체	(대표) E (감사) F (사내이사) A, G, E, H	A, B 등
㉱ (12.12.3.)	일반창고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	(대표) A (사내이사) A, I, C (감사) J	A (100%소유)
㉲ (14.7.7.)	일반창고업, 복합운송 주선업 등	(대표) A (사내이사) I, K, A (감사) J	A (100%소유)
㉳ (15.7.1.)	건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등	(대표) K (사내이사) A, K (감사) J	A, C, D
㉴ (16.3.21.)	보관 및 창고업, 복합운송 주선업, 물류터미널 사업 등	(대표) A (사내이사) K, O (감사) J	A, C, D
㉵ (16.5.16.)	화물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부동산 개발업 등	(대표) K ※ 설립 시 A ⇒ L ⇒ K (사내이사) K, A, D (감사) I	A, C, D
㉶ (16.8.22.)	보관 및 창고업, 운수업 등	(대표) K (사내이사) G, K, C (감사) J	A, C, D
㉷ (17.12.13.)	보관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대표) M (사내이사) K, M, G (감사) J	A, C, D
㉠ **(19.1.4.)**	**종합건설업,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등**	**(대표) G (사내이사) G, N, C (감사) D**	**C, D**

※ 자료: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공시시스템 재구성

② ㉠은 A의 자녀인 C, D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의 대표자 G은 ㉮그룹 중 ㉰의 사내이사, ㉶의 사내이사, ㉷의 사내이사이다.

③ ㉠의 최초 창업 소재지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로00번길 00' 건물은 ㉮그룹 회장 A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고, ㉮그룹의 본사 역할을 하는 ㉳도 사용하고 있다. 건물 외관에는 '㉮'로 표기되어 있다.

④ 창업당시부터 ㉠의 주요 매출 및 매입 거래는 ㉳ 및 ㉮그룹 간의 내부

거래이다. 먼저 ㅁ은 같은 ㄱ그룹인 ㅅ으로부터 '용인 ○○ 냉동창고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ㅁ은 이를 ㄱ에 'ㅅ 신축공사 마감공사'로 다시 도급하였다. 반대로 ㄱ이 진천에 신축한 PC제조공장의 공사는 ㄱ로부터 ㅁ이 도급받았다.

⑤ 충청북도, 진천군, ㄱ그룹은 2019. 7. 15.에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는데, ㄱ그룹이 투자비 800억을 투자하여 진천군에 PC제조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으로 ㄱ그룹 회장 A이 충청북도지사 및 진천군수와 함께 협약서에 서명하였다.

⑥ ㄱ이 PC제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한 진천군 ○○면 일대 토지는 ㅁ의 대표자인 K이 ㄱ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은 ㄱ그룹의 ㅁ으로부터 4억 원, ㄴ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여 지불하였다. 또한 잔금 90억 원은 ㄱ그룹인 ㄹ로부터 차입하여 잔금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ㄱ이 PC제조공장 신축공사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PF대출 630억 원은 ㅁ이 연대보증(담보한도 756억 원)을 서고 ㄱ그룹의 ㅂ과 ㄷ이 물적담보(용인시 처인구 소재 토지 34,100㎡)를 제공하였다.

⑦ ㄱ의 토지 취득 및 공장신축에 대한 취득세 신고는 ㅁ 및 ㅇ의 감사인 J가 신고를 하였다.

나. 취득세 감면 부적정

그런데 진천군은 <표-2>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미추징 내역"과 같이 ㄱ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데도 과소신고된 취득세 및 가산세 총 2,813,280,840원을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추징하지 않고 있었다.

<표-2>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미추징 내역

(단위: ㎡, 원)

연번	과세물건	취득일자	추징할세액		
			본세	가산세	합계
합계			2,081,505,920	731,774,920	**2,813,280,840**
1	시설물 ○○면 ○○리 산 00번지,공작물(배치플랜트,사이로,저장소)	2020-02-11	37,007,120	15,543,310	52,550,430
2	토지 ○○면 ○○리 산 00번지외 7필지 215395.0000㎡ 매매	2020-07-16	376,493,330	142,147,500	518,640,830
3	토지 ○○면 ○○리 000번지외 4필지 43153.0000㎡ 매매	2020-07-16	75,041,300	28,332,320	103,373,620
4	토지 ○○면 ○○리 000번지 1150.0000㎡ 매매	2020-07-16	7,473,390	2,821,610	10,295,000
5	건물 ○○면 ○○리 000-0번지 외 13필지 건물 33084.44㎡	2020-11-12	1,486,095,530	519,327,350	2,005,422,880
6	토지 ○○면 ○○리 000번지외 9필지 전 -> 공장용지 47125.0000㎡ 지목변경	2020-11-30	25,235,990	8,763,420	33,999,410
7	건물 ○○면 ○○리 000-0번지 건물 1367.03㎡ 신규(축)	2022-07-13	68,527,180	13,700,460	82,227,640
8	토지 ○○면 ○○리 000-0번지 4307.0000㎡ 지목변경	2022-07-13	5,632,080	1,138,950	6,771,03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시스템상으로 감면신청 법인 주주의 타 법인 주식 보유 현황이나 대표자의 타 법인 사내이사 여부 등까지 확인하기에는 자료적 한계가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과세예고통지 등 추징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라 감면 대상이 아닌 납세의무자에게 감면하여 과소신고된 취득세 등 계 2,813,280,840원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이하 “청주시 등”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산출한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소유 토지는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2부터 1천분의 5까지의 누진세율[1]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소유자의 공모부동산투자회사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소유자가 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면 안되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충청북도 각 시·군의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토지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은 ○○읍 ○○리 산0-0번지 일원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한 자산을 취득하고, 해당 자산을 관리, 개량, 임대, 운영하는 방법으로 운용 및 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모부동산투자회사이다.

위 회사는 목적사업에 따라 골프장을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골프장 사업자였던 ㉡으로부터 2021. 10. 15. ○○리 산0-0번지 일원 토지 총 954,842.2㎡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보은군(㉮과)은 <표-1>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사모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야 하는데도 ㉠이 취득한 전체 토지 954,842.2㎡ 중 2022년 719,798.55

1)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5천만원 이하(1천분의2), 5천만원~1억원(1천분의 3), 1억원 초과(1천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2억원 이하(1천분의2), 2억원~10억원(1천분의 3), 10억원 초과(1천분의 4)

㎡, 2023년 539.933.25㎡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였어야 할 재산세 세액인 307,134,308원 보다 109,575,000원을 과소부과하였다.

<표-1>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원)

납세의무자	납세자번호	대상년도	면적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정당세액	실제 부과세액	과소부과액
㉠	000000-0000000	합계		307,134,380	197,559,380	**109,575,000**
		2022	719,798.55	156,709,950	92,895900	63,814,050
		2023	539,933.25	150,424,430	104,663,480	45,760,95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또는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르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인 농지는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천분의 2부터 1천분의 5까지의 누진세율[2]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목이 임야인

2)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함
·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5천만원 이하(1천분의2), 5천만원 ~ 1억원(1천분의 3), 1억원 초과(1천분의 5)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2억원 이하(1천분의2), 2억원 ~ 10억원(1천분의 3), 10억원 초과(1천분의 4)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목이 임야인 토지의 경우 농작물 경작지 또는 작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산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율을 적용하면 안되고 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충청북도 각 시·군에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한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① 청주시(상당구 ㉮과)

위 관서는 <표-2>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관내 ○○리 00-0번지 8,226㎡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였어야 할 재산세 세액 1,789,560원 보다 1,387,760원을 과소부과하였다.

<표-2>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토지소재지				토지 내역		대상 연도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법정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공부상 지목	면적		정당세액	실제 부과세액	과소부과액
합계(총1건)								1,789,560	401,800	**1,387,760**
1	-	-	-	-	임야	8,226	2022 ~2023	1,789,560	401,800	1,387,76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② 충주시(㉯과)

위 관서는 <표-3>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관내 ○○동 000-0번지 2,311㎡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였어야할 재산세 세액 1,860,260원 보다 1,712,950원을 과소부과하였다.

<표-3>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토지소재지				토지 내역		대상 연도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법정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공부상 지목	면적		정당세액	실제 부과세액	과소부과액
합계(총1건)								1,860,260	147,310	**1,712,950**
1	-	-	-	-	임야	2,311	2022 ~2023	1,860,260	147,310	1,712,95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③ 보은군(㉮과)

위 관서는 <표-4>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관내 ○○리 000번지 등 2필지 총 44,079㎡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였어야 할 재산세 세액 4,283,030원 보다 3,043,720원을 과소부과하였다.

<표-4>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토지소재지				토지 내역		대상 연도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법정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공부상 지목	면적		정당세액	실제 부과세액	과소부과액
합계(총2건)								4,283,030	1,239,310	**3,043,720**
1	-	-	-	-	임야	19,385	2022 ~2023	1,304,770	294,340	1,010,430
2	-	-	-	-	임야	24,694	2022 ~2023	2,978,260	944,970	2,033,29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④ 진천군(㉯과)

위 관서는 <표-5>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관내 ○○리 000-0번지 등 3필지 총 19,507㎡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였어야 할 재산세 세액 12,541,130원 보다 3,747,590원을 과소부과하였다.

<표-5>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토지소재지				토지 내역		대상 연도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법정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공부상 지목	면적		정당세액	실제 부과세액	과소부과액
합계(총3건)								12,541,130	8,793,540	**3,747,590**
1	-	-	-	-	임야	6,674	2022 ~2023	4,227,240	2,944,860	1,282,380
2	-	-	-	-	임야	5,891	2022 ~2023	6,023,140	4,603,880	1,419,260
3	-	-	-	-	임야	6,942	2022 ~2023	2,290,750	1,244,800	1,045,95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⑤ 음성군(㉯과)

위 관서는 <표-6>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산지전용허가 없이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관내 ○○리 000-0번지 등 11필지 총 110,508㎡ 임야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과세하여 정당하게 부과하였어야 할 재산세 세액 23,237,170원 보다 19,060,140원을 과소부과하였다.

<표-6> 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토지소재지				토지 내역		대상 연도	재산세 과소부과 내역		
	법정동	법정리	본번	부번	공부상 지목	면적		정당세액	실제 부과세액	과소부과액
합계(총11건)								23,237,170	4,177,030	**19,060,140**
1	-	-	-	-	임야	11,554	2022 ~2023	2,918,660	492,610	2,426,050
2	-	-	-	-	임야	5,705	2022 ~2023	1,558,870	302,220	1,256,650
3	-	-	-	-	임야	398	2022 ~2023	1,357,590	274,050	1,083,540
4	-	-	-	-	임야	478	2022 ~2023	1,843,230	342,030	1,501,200
5	-	-	-	-	임야	8,778	2022 ~2023	1,387,380	278,230	1,109,150
6	-	-	-	-	임야	10,241	2022 ~2023	1,406,600	280,910	1,125,690
7	-	-	-	-	임야	15,383	2022 ~2023	2,340,040	411,580	1,928,460
8	-	-	-	-	임야	9,553	2022 ~2023	2,062,420	372,730	1,689,690
9	-	-	-	-	임야	10,076	2022 ~2023	2,076,690	374,710	1,701,980
10	-	-	-	-	임야	28,959	2022 ~2023	4,745,820	748,400	3,997,420
11	-	-	-	-	임야	9,383	2022 ~2023	1,539,870	299,560	1,240,31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임야에 대해 과소 부과한 재산세 1건 총 1,387,76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시정]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임야에 대해 과소 부과한 재산세 1건 총 1,712,95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는

[시정] ①「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모부동산투자회사 소유 토지에 대해 과소 부과한 재산세 1건 총 109,575,00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②「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임야에 대해 과소 부과한 재산세 2건 총 3,043,72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임야에 대해 과소 부과한 재산세 3건 총 3,747,59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임야에 대해 과소 부과한 재산세 11건 총 19,060,140원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이하 “청주시 등”이라 한다)은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관내에 소재하는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에게 「지방세법」 등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 및 제14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용 건축물이 주거지역 등[1]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 세율은 1천분의 5[2]를 적용하여야 하고, 공장용 건축물은 화재위험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중과세율[3](표준세율의 2배)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조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정함), 단 읍·면 지역은 제외

2) 일반 건축물의 세율은 1천분의 2.5

3)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0,000분의 4부터 10,000분의 12까지로 정하고 있고 공장용 건축물의 경우 표준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으로 중과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2] 제29호 본문 및 아목에서는 전기업(변전소)용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변전소의 재산세 세율은 변전소가 주거지역 등 내에 소재하는 경우 일반 건축물의 세율 1천분의 2.5가 아닌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의 세율 1천분의 5를 적용하여야 하며, 변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아닌 화재위험건축물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충청북도 각 시·군에 소재하는 변전소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부과한 지방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율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다.

가. 청주시(상당구 ㉮과)

위 관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보아 주거지역 등 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였고, 해당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20,954,970원보다 8,277,71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나. 충주시(㉯과)

위 관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5개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45,030,380원보다 22,515,18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다. 제천시(㉰과)

위 관서는 변전소를 공장용 건축물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 보아 주거지역 등 내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재산세 세율을 1천분의 2.5로 적용하였고, 해당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4개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60,639,140원보다 30,319,57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라. 영동군(㉱과)

위 관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1,989,180원보다 994,60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마. 진천군(㉲과)

위 관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3개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16,089,960원보다 8,044,98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바. 괴산군(㉥과)

위 관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3개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11,924,410원보다 5,132,40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사. 음성군(㉦과)

위 관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3개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25,745,540원보다 13,062,31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아. 단양군(㉧과)

위 관서는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가 공장용 건축물로서 화재위험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과 같이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한 정당한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 세액인 2,595,560원보다 862,06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청주시 등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8,277,710원(<별표> 청주시 1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시정]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22,515,180원(<별표> 충주시 5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시정]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30,319,570원(<별표> 제천시 4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994,600원(<별표> 영동군 1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8,044,980원(<별표> 진천군 3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5,132,400원(<별표> 괴산군 3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13,062,310원(<별표> 음성군 3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수는

[시정] 「지방세법」 제146조에 따라 관내에 소재하는 변전소에 대해 과소 부과한 지방세 계 862,060원(<별표> 단양군 1건)을 부과·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변전소에 대한 지방세 과소부과 내역

(단위: ㎡, 원)

연번	시군	과세물건	용도지역	면적	추징년도	지방세 추징세액		
						정당세액	부과한세액	추징할세액
시·군 총계(21건)						**184,969,120**	**95,760,310**	**89,208,810**
1	청주	-	자연녹지	1,783	2020 ~2023	20,954,970	12,677,260	8,277,710
청주시 계(1건)						**20,954,970**	**12,677,260**	**8,277,710**
2	충주	-	보전관리	4,165.39	2020 ~2023	11,919,640	5,959,820	5,959,820
3	충주	-	준공업	1,566.19	2020 ~2023	4,560,300	2,280,150	2,280,150
4	충주	-	일반공업	3,996.38	2020 ~2023	16,851,640	8,425,820	8,425,820
5	충주	-	계획관리	2,455.29	2020 ~2023	9,789,500	4,894,750	4,894,750
6	충주	-	보전관리	510.83	2020 ~2023	1,909,280	954,640	954,640
충주시 계(5건)						**45,030,360**	**22,515,180**	**22,515,180**
7	제천	-	자연녹지	2,468.27	2020 ~2023	36,971,320	18,485,660	18,485,660
8	제천	-	자연녹지	1,390.8	2020 ~2023	8,081,380	4,040,690	4,040,690
9	제천	-	계획관리	1,505.2	2020 ~2023	6,689,380	3,344,690	3,344,690
10	제천	-	계획관리	1,735.01	2020 ~2023	8,897,060	4,448,530	4,448,530
제천시 계(4건)						**60,639,140**	**30,319,570**	**30,319,570**
11	영동		자연녹지	1,269	2020 ~2023	1,989,180	994,580	994,600
영동군 계(1건)						**1,989,180**	**994,580**	**994,600**
12	진천	-	계획관리	2,037.91	2020 ~2023	6,622,740	3,311,370	3,311,370
13	진천	-	계획관리	1,908.7	2020 ~2023	2,844,480	1,422,240	1,422,240
14	진천	-	일반공업	2071.41	2020 ~2023	6,622,740	3,311,370	3,311,370
진천군 계(3건)						**16,089,960**	**8,044,980**	**8,044,980**
15	괴산	-	보전관리	1651.85	2020 ~2023	4,856,420	2,227,550	2,628,870

16	괴산	-	계획관리	2219.36	2020 ~2023	3,894,110	2,525,240	1,368,870
17	괴산	-	계획관리	777.96	2020 ~2023	3,173,880	2,039,220	1,134,660
괴산군 계(3건)						**11,924,410**	**6,792,010**	**5,132,400**
18	음성	-	계획관리	2,474.47	2020 ~2023	6,654,220	3,327,090	3,327,130
19	음성	-	2종일주	2,543.7	2020 ~2023	12,695,780	6,347,890	6,347,890
20	음성	-	계획관리	2446.47	2020 ~2023	6,395,540	3,008,250	3,387,290
음성군 계(3건)						**25,745,540**	**12,683,230**	**13,062,310**
21	단양	-	자연녹지	927.2	2020 ~2023	2,595,560	1,733,500	862,060
단양군 계(1건)						**2,595,560**	**1,733,500**	**862,06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법령에 근거 없이 공유재산(전세권) 사용료 감면

기 관 명 충청북도,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및 제28조에 근거하여 아래 <표>와 같이 충청북도 소재 건물 일부를 임차(전세권자: 충청북도, 제천시)하여 ㉮ 및 ㉯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표> ㉮본부 등 사무실 임차보증금 지원 현황

기관명	물건지 주소(면적)	보증금 (월세)	취득일자	지원단체	지원근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동 0000 ⓐ빌딩 0층 0,0,0호 (961.58㎡)	1억 원 (690만 원)	'18. 10. 25.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28조 「충청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조례」 제6조
	청주시 서원구 ○○동 0000 ⓐ빌딩 0층 0호 (377.64㎡)	0.5억 원 (230만 원)	'19. 11. 1.		
제천시	제천시 ○○동 000-00 (479.22㎡)	3억 원	'19. 5. 22.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따르면 전세권도 공유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

람(제1절 1. 정의 및 범위)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민법」 제303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 제2조의2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법 제2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 위탁료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산출한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는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경우 그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수입항목으로 계상하게 되어 있어 공유재산을 관리위탁할 경우에도 수탁자에 대한 사용료가 면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공유재산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면제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행정재산인 전세권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을 인건비, 사무관리비, 임차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만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임차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위 <표>와 같이 ㉮본부 및 ㉯지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의 지원 근거로 「근로복지기본법」을 제시하고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제4항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노동조합 사무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임차 취득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근로복지시설을 운영할 경우 공유재산법에 따른 관리위탁 계약을 맺어야 하나 이 경우에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 신규사무실 임차계획안'(㉮과-4987호, 2018.6.8.), '㉮ 신규사무실 임차계획 변경안'(㉯과-223호, 2018.10.8.) 등 내부보고를 거쳐 위 <표>와 같이 보증금 총 1억 5천만 원과 매월 9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제천시는 ‘○○○○ 사무실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사무실 임차 계획보고’(㉮과-15349호, 2019.3.20.)를 거쳐 위 <표>와 같이 보증금 3억 원의 현재 임차건물을 ㉯에 무상사용허가(2019.6.28., 2022.5.17.)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제천시장은**

[통보] 근로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임차한 공유재산을 노동조합 등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원가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산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을 맺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근로복지시설이 아닌 임차 건물을 ○○○○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상으로 허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 위탁사업 관리 부적정 등

기 관 명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제천시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및「사단법인 ㉱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표-1>과 같이 ㉱을 민간위탁사업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표-1> 제00회 및 제00회 ㉱ 추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일시	수 탁 사업자	예산액(계획기준)				
			합계	국비 (ⓒ기금)	도비 (보조금)	시비 (위탁사업비)	수탁자 자부담
제00회	'22.00.00. ~ 00.00.	㉠	**3,941**	700	500	2,150	591
제00회	'23.00.00. ~ 00.00.		**3,081**	270	500	2,200	111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제천시와 채권·채무 관계가 없는 자에게 예비비 지출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

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지방회계법」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제천시와 ㉠(이하 “수탁법인”이라 한다)이 제00회 ㉡을 추진하기 위하여 맺은 위수탁협약서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을(수탁법인)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고 또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업비 초과집행 등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을(수탁법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다.

참고로「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르면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제천시가 민간위탁의 방법으로 ㉡을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의 사전 변경 승인이 없는 한 수탁자가 사업비를 초과로 집행했다고 하여 제천시에 대하여 채권을 갖고 있지도 않은 수탁자의 계약상대방에게 그 계약대금을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천시와 민간위탁 협약(2021년 12월)을 맺은 수탁법인이 제00회 ㉱을 개최하면서 제천시의 승인 없이 아래 <표-2>와 같이 세입예산이 감소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최종 세입예산 대비 약 5억 원이 부족하게 되어 수탁법인과 계약을 맺은 일부 계약상대방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표-2> 제00회 ㉱ 계획 대비 실제 추진 결과

□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 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족액 (B-A)
구분	당초 계획	정산 결과(A)	구분	당초 계획	정산 결과(B)	
합계	**3,941**	**3,889**	**합계**	**3,941**	**4,411**	**522**
국고보조금	700	355	사업비	2,535	3,022	
도비보조금	500	500				
시비	2,150	2,150	인건비	1,406	1,389	
수탁자자부담	591	884				

□ **수탁법인 사업 부서별 세출예산 계획대비 추진내역(인건비 제외)**

(단위: 천 원)

구분	당초계획(a)	실제추진결과(b)	증감(b-a)	특이사항
총계	**2,534,585**	**3,021,591**	**+487,006**	○ 당초 계획에 없던 공연 추가 - 스페셜 콘서트(266백만 원), - 필름콘서트 ET(104백만 원), - 원썸머나잇(296백만 원), - 기타 공연(55백만 원) ○ 행사장 규모 확장 등으로 무대시스템 비용 증가 - 215백만 원 → 417백만 원 ○ ⓐ리조트 숙박비 과다 계상 - 총 계약 : 858박 - 실제이용 : 704박 ⇒ 공실률 18%(154박)
공통사업비	147,200	155,181	+7,981	
-	127,840	175,602	+47,762	
-	782,700	1,312,084	+529,384	
-	204,800	402,619	+197,819	
-	235,500	108,419	-127,081	
-	17,200	21,968	+4,768	
-	117,920	17,313	-100,607	
-	-	534	+534	
-	-	33,769	+33,769	
-	184,000	141,179	-42,821	
-	69,000	107,460	+38,460	
-	648,425	545,466	-102,959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제천시는 수탁자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민간위탁의 취지, 사업비 초과집행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가 책임지도록 한 위 민간

위탁 협약 내용과는 다르게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업체 등이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를 근거로 수탁법인과 공동하여 제천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표-3>과 같이 법률상 근거 없이 제천시와 채권·채무관계에 있지 않은 수탁법인의 계약상대방 등 21명에게 예비비를 사용[1]하여 2023. 2. 27. 대금 522백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표-3> 제00회 ㉱ 관련 예비비 집행내역

(단위: 천 원, 천 원 미만 절사)

지급처	금액	비고
총계	**522,200**	
-	15,825	전자기기 대여료
-	93,565	청풍권 게스트 숙박비
-	87,500	비행장무대 시스템 운영 용역비
-	127,556	의림지무대 시스템 운영 용역비
-	49,048	자원활동가 및 스태프 숙박비
-	50,000	음악영화 제작지원금
-	30,000	음악영화 제작지원금
-	10,000	제작지원금
-	9,528	기타
-	143	기타
-	49,035	수탁법인 직원 급여 등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면서 수탁법인이 자체적으로 예산초과집행 문제의 책임을 물어 집행위원장 등에게 미지급 금액에 대한 변상을 명령하고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2]을 수령하면 그 보험금을 제천시가 회수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그런데 수탁법인이 제00회 ㉱ 초과집행의 책임을 물어 변상을 명령하고 해임 처분한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수탁법인을 피고로 하여 징계해임처분 등

1) ○○○ 운영 미지급액 발생에 따른 예비비 사용 계획(㉮과-3750호, 2023. 2. 21.), 예비비 지출결정 및 알림(㉯과-2676호, 2023. 2. 23.)

2) 수탁법인은 2022. 1. 28. 서울보증보험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수탁법인, 피보증인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회계담당자로 하여 피보증인이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행위를 함으로써 수탁법인이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경우 직위당 10억 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 체결

무효확인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0000○○00000)를 제기하여 변상명령이 무효임을 확인(2024. 1. 25.)받았는데 수탁법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감사일 현재 제천시가 계획했던 수탁법인으로부터의 채권 회수 방안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3.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조건 및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 미이행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시·군·구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과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37조제4항에 따르면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하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조건부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이행 및 재원조달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거쳐 조건부 승인된 행사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승인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지방보조사

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제천시가 지방보조사업자로서 충청북도로부터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을 추진할 경우 국·도·시비 및 자부담 등의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 후 실적보고서 제출시에는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행정안전부는 제천시가 의뢰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3]를 거쳐 '국비 지원규모 확정 후 가용 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조정'하라는 조건부 승인(2022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사항을 통보('22.3.3.) 하였다.

그리고 충청북도는 제00회 ㉱ 도비 보조금과 제00회 ㉱ 도비 보조금을 제천시로 교부[4]하면서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교부조건을 붙였다.

그런데 제천시는 제00회 ㉱의 경우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국비 재원인 �c 기금이 7억 원에서 3.1억 원으로 감액되고 제00회 ㉱의 경우 당초 계획에 없던 농어촌상생협력기금 4.75억 원이 추가 지원되었는데도 재원에 맞춰 사업계획을

3)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제천시는 '22~'24년 사업에 대해 '22년에 심사를 받음

4) 충청북도 ㉮과-9740(2022.6. 3.)호, ㉮과-12455(2023.7.3.)호

변경하지 않고 추진하는 등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조건 및 충청북도의 보조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제00회 ㉤의 경우 수탁법인으로부터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누락된 정산보고서를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4. 후원 등 기부금품 모집 관련 수탁사업자 지도·감독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1천만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자의 인적사항, 모집목적 및 방법, 모집금품의 사용방법 등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모집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결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시장은 ○○○ 운영과 관련하여 ○○○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제천시가 ㉱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기부금품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도록 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게 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천시는 ㉱을 추진하면서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으면 일부기업과는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그 사실을 제천시 홈페이지(제천소식-오늘의 뉴스)에 게시하는 등으로 ㉱을 홍보하고 있으며, 수탁법인은 ㉱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후원사 모집공고를 하고 후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등 제00회 및 제00회 후원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제00회 및 제00회 ㉱ 후원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후원일	후원자	금액	기부영수증 발급여부	광고여부 (홍보물노출)
2022년 제00회 ㉱	소계		**192,000**		
	2022-07-11	-	50,000	○	○
	2022-07-15	-	3,000	○	○
	2022-07-15	-	1,000	○	X
	2022-07-15	-	20,000	○	○
	2022-07-18	-	3,000	○	○
	2022-07-19	-	20,000	○	○
	2022-07-20	-	10,000	○	○
	2022-07-23	-	500	○	X
	2022-07-25	-	5,000	○	○
	2022-07-27	-	5,000	○	X
	2022-07-28	-	5,000	○	X
	2022-07-29	-	500	○	X
	2022-08-02	-	500	○	X

구분	후원일	후원자	금액	기부영수증 발급여부	광고여부 (홍보물노출)
	2022-08-04	-	10,000	X	X
	2022-08-04	-	50,000	○	○
	2022-08-05	-	3,000	○	X
	2022-08-08	-	500	○	X
	2022-08-17	-	5,000	○	X
2023년 제00회 ㉤	**소계**		**163,800**		
	2023-06-26	-	300	○	○
	2023-06-26	-	3,000	○	○
	2023-07-13	-	10,000	○	○
	2023-07-13	-	1,000	○	X
	2023-07-13	-	20,000	○	○
	2023-07-21	-	50,000	○	○
	2023-07-28	-	1,000	○	X
	2023-08-01	-	2,000	○	X
	2023-08-08	-	5,000	○	X
	2023-08-09	-	500	○	X
	2023-08-12	-	20,000	○	○
	2023-08-16	-	3,000	○	X
	2023-08-22	-	20,000	○	○
	2023-08-31	-	20,000	○	○
	2023-09-19	-	5,000	X	○
	2023-09-25	-	2,000	X	X
	2023-12-21	-	1,000	○	X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제출한 후원자 중 멤버십 회비에 해당하는 30명 2백만 원 제외)

그런데 위 ㉤ 추진을 위해 후원금을 모집하면서도 수탁법인은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도 하지 않았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받지도 않은 채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제천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없이 수탁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한편, 수탁법인의 2023년 제00회 ㉤ 후원사 모집공고문을 살펴보면 아래 <표-5>와 같이 후원 금액에 따라 후원사 명칭 등을 ○○○ 광고 및 홍보에 노출되는 방식에 차등을 두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후원금은 일종의 광고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5> 제00회 ㉤ 후원사 모집 공고문(협찬 제안서)

구분	금액	지원내용
Title Sponsor	1억 원 이상	모든 내용 별도 협의,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가능(조인식 진행) ○○○ 전체 광고/홍보에 노출, 협찬사 프로그램 기획/진행 지원 개/폐막식 및 상영관 기업광고 상영 가능
Official Sponsor	1억 원	공식 후원사 명칭 사용 가능 ㉣ 주요 행사 공동 호스트 가능 기업광고 상영 제외한 ○○○ 전체 광고/홍보 노출
Major Sponsor	5천만 원	㉣ 주요 행사 공동 호스트 제외한 ○○○ 광고/홍보물에 노출 개막식 포토월 및 공동 프로모션 진행 가능
Leadership Sponsor	3천만 원	개막식 포토월 제외한 ○○○ 광고/홍보물 노출 트레일러 및 로고 노출
Festival Sponsor	1천만 원	트레일러 및 포스터를 제외한 광고/홍보물에 노출 기자회견 로고 노출 및 ○○○ 카탈로그 광고, 공식 SNS 홍보 노출

※ 자료: ㉤ 홈페이지(www.○○○○○.org) 공지사항(2023. 6. 20.) 발췌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기부금품법 제2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법인세법」 제24조제1항),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소득세법」 제34조제1항)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기업광고 방식를 통해 후원의 반대급부를 제공한다면 기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후원금에 대한 기부영수증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설립 사단법인 기본재산을 정관 변경 등 절차 없이 처분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제1항)하였다.

제천시가 설립한 수탁법인 정관 제34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은 본 법인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탁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북도지사의 정관 변경 허가를 받고 연 1회 그 목록을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충청북도의 법인설립 및 정관변경 허가 등의 서류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최초 설립일('07. 7. 6.)에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1천만 원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실제 계좌 등 확인결과 2010년에 전부 처분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록만 있을 뿐 현재 기본재산은 남아 있지 않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충청북도지사에게 기본재산 목록을 한번도 보고하지 않았으며,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 등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6. 관계기관 등 의견

제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은**

[통보] ① 제천시와 채권·채무 관계에 있지 않은 자에게 지급한 522백만 원을 ㉠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② ㉢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수탁자가 사전에 기부금품법에 따른 모집등록을 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 받은 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① 앞으로 보조사업으로 ㉣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규모가 변경되거나 경비의 배분이 변경될 때에는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보조금 교부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하여 정산하는 등 투자심사 승인조건 및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② 앞으로 제천시가 설립한 사단법인이 주무관청의 정관 변경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법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와 관할 11개 시·군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 손실부담,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를 <표-1>과 같이 공공예금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표-1>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현황

(단위: 원)

기관명	금액	기관명	금액
총계	**42,530,214,987**		
충청북도	25,460,612,558	영동군	1,002,421,220
청주시	4,171,546,452	증평군	139,597,193
충주시	4,896,688,051	진천군	174,898,586
제천시	1,165,005,579	괴산군	226,979,537
보은군	336,275,555	음성군	3,844,398,696
옥천군	746,495,360	단양군	365,296,20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2024. 2. 22.기준, 2023. 12. 31.까지 공공예금계좌로 수납된 세입세출외현금)

2. 지방자치단체 귀속대상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보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회계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수입금출납원이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을 금고의 소재지에서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 그 밖의 경우에는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까지 그 수납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기한의 경과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1개월 전까지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 및 귀속예정일 등을 미리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훈령 제64조제4항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이외의 보관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금고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행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이행보증금 등) 및 하자보수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은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계약 미이행 등 해당 자치단체로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세입처리를 하여야 하고, 각종 행위허가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 등은 복구가 완료되면 즉시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허가청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고 그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소속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의 4대 보험료, 소득세 등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일까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는 납부한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즉시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세출예산 반납, 세입처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반환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각종 수수료, 사용료 등 지방세외수입을 일시적으로 보통예금계좌 등으로 징수한 현금은 그때마다 즉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로 수납하여야 한다.

이렇듯 일시적으로 징수한 지방세외수입은 징수 즉시 금고로 수납처리하고 보관사유가 없어진 현금은 해당 채권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 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금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는 등 지방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세입세출외현금을 장기간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충청북도와 관할 11개 시·군이 보유 중인 <표-1>의 세입세출외현금의 보관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2016년에 수납된 지적면적 증가에 따른 지적재조사조정금 27건 544백만 원(음성군) 등 즉시 세입처리를 했어야 하는 보관금,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더 이상 보관할 사유가 없어 지방자치단체로 즉시 귀속시켜야하는 보관금 등 세입조치하여야 할 현금이 <표-2>와 같이 총 2,433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표-2> 공공예금계좌에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 점검 결과

(단위: 건, 천 원)

구분	공공예금계좌 잔고액 (표-1)	점검결과					
		지자체 귀속대상		반환대상		계속보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42,530,215**	**3,859**	**2,432,509**	**3,344**	**26,904,293**	**2,655**	**13,193,414**
충청북도	25,460,613	109	20,459	1,600	25,428,207	6	11,946
청주시	4,171,546	472	466,963	637	617,827	416	3,086,756
충주시	4,896,688	215	103,254	109	151,338	215	4,642,096
제천시	1,165,006	1,193	461,540	159	204,959	625	498,506
보은군	336,276	94	76,914	37	17,553	153	241,809
옥천군	746,495	33	5,736	13	14,759	140	726,000
영동군	1,002,421	84	147,513	123	49,209	68	805,699
증평군	139,597	773	56,215	2	1,683	438	81,699
진천군	174,899	683	41,005	324	85,851	12	48,042
괴산군	226,980	38	3,687	19	7,989	60	215,304
음성군	3,844,399	110	1,026,940	73	196,911	427	2,620,548
단양군	365,296	55	22,282	248	128,007	95	215,007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세입세출외현금의 직접 사용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은 이영 또는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따라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경비의 기준액이 정해져 있다.

따라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을 위한 경비는 위 기준액을 준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그 제도시행에 따라 부수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직접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에 따라 발생한 카드포인트 적립액 등의 수입을 충청북도의 경우 감사대상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으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52,502,62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 직원 독감예방 접종비, 책상 및 안마의자 구입비 등으로 145,046,000원[1]을 직접 사용하였으며, 청주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9,232,311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같은 기간 동안 지급 받은 금액 전부를 청주시상조회로 이체하여 사용하게 하였고, 영동군 또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 영동군지부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245,600원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출산하거나 결혼한 직원에게 19,2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직접 사용하였다.

4. 보통예금계좌 개설·운영 관련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1) 소방본부 전출금 89,861,000원(3개년) 포함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은 원칙적으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7조의2제1항 단서 및 제62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운영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를 포함한다)를 개설하여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납입 받을 수 있으나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훈령 제37조의2제2항 “별표 3”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따르면 보통예금계좌는 회계부서에서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최소한으로 승인·관리하고,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예금계좌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개설·운영하되 그 계좌로 납입된 현금은 즉시 공공예금계좌로 이체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감사기간 동안 충청북도가 2023. 11. 22.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11개 시·군을 포함하여 개설·운영중인 보통예금계좌에 대해 운영목적 등의 적정성

을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실제 소유주인데도 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 포함)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실소유주 명의로 변경이 필요한 계좌 83개, 사업이 완료되어 더 이상 필요 없는 계좌 128개, 장기 미사용 계좌 23개, 공공예금계좌 활용이 가능하거나 세외수입전산망 활용이 가능하여 보통예금계좌 운영이 불필요한 계좌 29개 등 <표-3>과 같이 총 302개의 보통예금계좌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보통예금계좌 운영목적 등 적정성 점검 결과

(단위: 개)

구분	보유 계좌수	점검결과 해지필요						
		합계	실소유주로 명의변경	공공예금 계좌 활용 가능	세외수입 전산망 활용 가능	장기 미사용	목적달성 (사업완료)	기타
합계	2,406	**302**	**83**	**22**	**7**	**23**	**128**	**39**
충청북도	395	**38**	17	2	0	0	17	2
청주시	401	**47**	5	4	3	2	4	29
충주시	367	**20**	5	0	4	7	3	1
제천시	189	**6**	1	2	0	1	0	2
보은군	118	**34**	0	1	0	0	33	0
옥천군	178	**54**	48	1	0	1	2	2
영동군	157	**9**	4	0	0	0	5	0
증평군	95	**11**	0	11	0	0	0	0
진천군	55	**2**	0	1	0	0	1	0
괴산군*	137	**59**	0	0	0	0	59	0
음성군	150	**1**	0	0	0	1	0	0
단양군	164	**21**	3	0	0	11	4	3

* 괴산군의 경우 46건은 회계연도가 2023년에서 2024년으로 변경됨으로써 2024년 1월에 해지 후 신규 개설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일부 계좌는 기준일 이후 감사기간 중 해지 완료)

5.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통보] ① 일시적으로 징수한 지방세외수입과 반환 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현금 등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시키고 보관사유가 소멸한 현금은 해당 채권자에게 반환하는 등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② 실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인 계좌, 직접 금고로 수납이 가능한 지방세외수입 보조계좌, 공공예금계좌 활용이 가능한 계좌, 사업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 없는 계좌는 해지하는 등 보통예금계좌 일제 정비계획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영동군수는

[주의] 앞으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입을 직접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복지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환경보전기금 목적 외 사용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괴산군은 2022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생태계보전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교부 받아 실시설계 용역, 농지전용협의 등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사업 개요

(단위: 원)

사업장	사업기간주1)	사업내용	사업비주2)
괴산군 ○○면 ○○리 000-0번지 외 1필지 (사업면적: 3,000㎡)	'24. 2. 26. ~'24. 6. 26.	벌목, 교목 등 식재, 생태습지, 야외운동시설 설치, 포장 등	- 도급계약1): 304,700,000 - 관급자재: 71,683,500

주1)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조정(당초 '23. 12. 11.~'24. 5. 8.)
주2) 사업예산은 총 5억 원(도비 2억 원, 군비 3억 원)
※ 자료: 괴산군(㉮과)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제46조제5항2)에

1) 계약상대자: ㉡(괴산군 ○○읍 소재)

2) 환경부장관은 제61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생태계보전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가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교부할 수 있음

따라 교부된 금액은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3] 및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 「2022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생태계보전부담금) 지원 대상사업 신청 알림」(㈏과-1527, 2022. 1. 27.)에 따르면 지원대상 사업은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되어 있으며, 도로 건설, 하수관거 설치 등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부한 기금을 환수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제34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법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에 위배 여부 등 9개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기간(2024. 3. 11.~3. 27.) 중 농업보호구역에서 인공습지 조성 목적의 농지전용이 가능한지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과)에 문의한 결과, 「농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인공습지 조성은 농업보호구역에서 그 행위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농지전용은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

3) ①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②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③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④ 자연보전관·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이용하기 위한 교육·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⑤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따라서 괴산군은 환경보전기금(생태계보전부담금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등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서 정한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자연환경복원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괴산군 ㉮과(이하 "㉮과"라 한다)는 위 ㉠사업 주관부서로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면 ○○리 000-0번지)에 인공습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2022. 10. 4. 같은 관서 ㉱과에 농지전용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과는 같은 해 12. 5. 위 ㉠사업은 공원 부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사업부지의 농지전용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과는 2023. 1. 26. ㉠사업 부지의 농지전용이 불가하여 설계변경, 부지 이전 등을 검토한다는 사유로 충청북도(㉯과)에 사업기간을 변경[4]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해 2. 9. 요청한 내용대로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과는 ㉠사업 이전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에서 ㉠사업은 「농지법」상 농지전용협의가 불가하여 농업보호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한 '농업인 편의시설(정자) 및 운동시설'로 사업명 변경을 요구하자, 2023. 7. 11. 농지전용신청 시에는 '농업인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로 전용을 받고, 사업시행 시에는 '㉠사업(부제: 농업인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 조성)'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리 ㉠사업 문제점 및 대책보고」(㉮과-35119)를 작성하여 ㉱과장 A의 협조

4) 당초: 2022. 3.~2022. 12. / 변경: 2022. 3.~2023. 12.

결재와 ㉮과장 B, ㉯국장 C 및 부군수 D의 중간 결재를 거쳐 최종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였다.

그런 다음 ㉮과는 2023. 8. 8.「농지전용 협의 요청(㉡사업)」(㉮과-40366)에 사업면적을 7,295㎡에서 3,000㎡로 축소한 채 농지전용 협의 목적을 당초 "㉠사업"에서 "㉡사업"으로 변경하고 데크로드 설치는 제외하는 한편, 농업인 편의시설 및 운동시설인 사각정자, 웨이스트터닝 등 6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등 공사내용을 변경하여 ㉰과에 다시 농지전용협의를 요청하여 협의[5](허가)를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러한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 충청북도(�bb과)의 승인을 받거나 의견[6]을 듣지 않은 채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괴산군은 환경보전기금(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농업인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기금 사용 용도와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괴산군은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여름철 해충이 발생하는 등 마을주민 건의에 따라 방치된 부지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지전용협의가 되지 않아「농지법」과 환경보전기금 용도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로 다시 설계하였으나, 충청북도(㉬과)의 승인이나 의견을 듣는 과정을 소홀히 하여 사업내용이 환경보전기금 지원 취지와 다르게 되었다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고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5) ㉮과는 농지보전부담금(6,749,430원) 납부(수납일: 2023. 10. 4.)와 동시에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사실을 ㉰과에 알리지 않고 있다가, 2024. 2. 26. 농지전용협의 요청을 하였고, 그 다음날(2. 27.) 허가(협의)를 받음

6) 충청북도(㉬과)는 괴산군의 변경된 사업계획은 환경보전기금 용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 제시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통보] ㉠사업이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환경보전기금(생태계보전부담금) 용도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등의 관련 방안을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공장 설립승인을 받은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시(㉮과, ㉯과), 충주시(㉰과), 제천시(㉱과), 옥천군(㉲과, ㉳과), 증평군(㉴과, ㉵과), 진천군(㉶과, ㉷과, ㉸과), 괴산군(㉹과, ㉺과), 음성군(㉻과, ㉼과, ㉽과)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45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창업사업계획의 신청 시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등 인허가를 일괄 의제 처리하여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이행관리 업무 및 이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중소기업창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1]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각종 부담금[2]을 7년 동안 면제하도록

1)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및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시장·군수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음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되어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창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제21조에 따르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취소사유[3]에 해당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한 경우 동 사실을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공장 설립계획 승인일부터 공장설립 완료신고를 하는 시점까지 창업자가 실제 사업계획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취소[4], 원상회복 명령 등을 하고 그 사실을 관계 부서에 알려 원상회복 명령[5], 면제된 각종 부담금 부과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동안 청주시 등 11개 시·군의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대장 자료를 제출받아 공장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이 공장설립을 완료하였는지 점검한 결과, 8개 시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

3) ①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후 3년 내 착공을 하지 아니하거나 ②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③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완료신고 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④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장 설립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위의 취소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3개월(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초 공장설립계획의 이행 또는 변경계획을 문서로써 권고하여야 함

5) 해당 부지가 농지인 경우「농지법」제42조(원상회복 등), 임야인 경우「산지관리법」제20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가 근거가 됨

가.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과)는 <표-1>과 같이 창업기업 공장 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 설립을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사유가 발생한 ㄱㄱ 등 2개 업체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1> 청주시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명)	실제 건축행위 여부	공장설립계획 승인일 (공장설립 완료 기한)	부담금 감면 내역
청주시	ㄱㄱ (A)	여	2020. 1. 22. (2024. 1. 22.)	농지보전부담금 58,391,640
청주시	ㄱㄴ (B)	부	2020. 3. 3. (2024. 3. 3.)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청주시(㉯과)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58,391,640원 부과[6]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과)는 <표-2>와 같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사유가 발생한 ㄱㄷ 등 6개 업체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6) 농지보전부담금은 실제 건축행위를 한 ㄱㄱ에 대한 산정 금액이고 이외에는 취소대상임

<표-2> 충주시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명)	실제 건축행위 여부	공장설립계획 승인일 (공장설립 완료 기한)	부담금 감면 내역
충주시	ㄱㄷ (C)	부	2016. 5. 10. (2020. 5. 1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002,300
충주시	ㄱㄹ (D)	부	2017. 1. 13. (2021. 1. 13.)	농지보전부담금 12,283,200
충주시	ㄱㅁ (E)	부	2018. 3. 2. (2022. 3. 2.)	농지보전부담금 17,245,500
충주시	ㄱㅂ (F)	여	2018. 9. 28. (2022. 9. 28.)	- (목장용지)
충주시	ㄱㅅ (G)	부	2020. 2. 5. (2024. 2. 5.)	농지보전부담금 18,222,400
충주시	ㄱㅇ (H)	부	2020. 2. 20. (2024. 2. 20.)	농지보전부담금 37,727,20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제천시의 경우

제천시(㉲과)는 <표-3>과 같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사유가 발생한 ㄱㅈ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3> 제천시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명)	실제 건축행위 여부	공장설립계획 승인일 (공장설립 완료 기한)	부담금 감면 내역
제천시	ㄱㅈ (I)	여	최초2016.5.20. 변경2018.7.6. (2022.7.6.)	농지보전부담금 2,911,26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237,850
제천시	ㄱㅊ (J)	부	2020. 2. 3. (2024. 2. 3.)	농지보전부담금 2,697,30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3,739,400
제천시	ㄱㅋ (K)	부	2019. 1. 23. (2023. 1. 23.)	농지보전부담금 7,773,75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9,935,71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위 관서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2,911,26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237,850원 부과[7]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라. 옥천군의 경우

옥천군(㉮과)은 <표-4>와 같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사유가 발생한 ㄱㅍ 등 4개 업체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4> 옥천군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명)	실제 건축행위 여부	공장설립계획 승인일 (공장설립 완료 기한)	부담금 감면 내역
옥천군	ㄱㅌ (L)	부	2019. 7. 18. (2023. 7. 1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3,731,390
옥천군	ㄱㅍ (M)	여	2017. 4. 24. (2021. 4. 24.)	농지보전부담금 21,930,390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10,590
옥천군	ㄱㅎ (N)	부	2016. 10. 14. (2020. 10. 1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2,598,540
옥천군	ㄴㄱ (O)	부	2017. 2. 15. (2021. 2. 1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4,819,48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옥천군(㉯과)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21,930,39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10,590원 부과[8]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7)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실제 건축행위를 한 ㄱㅈ에 대한 산정 금액이고 이외에는 취소대상임

8)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실제 건축행위를 한 ㄱㅍ에 대한 산정 금액이고 이외에는 취소대상임

마. 증평군의 경우

증평군(㉮과)은 <표-5>와 같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지 않아 취소사유가 발생한 ㄴㄴ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5> 증평군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명)	실제 건축행위 여부	공장설립계획 승인일 (공장설립 완료 기한)	부담금 감면 내역
증평군	ㄴㄴ (P)	여	2016. 5. 30. (2020. 5. 30.)	농지보전부담금 12,236,94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증평군(㉮과)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12,236,940원 부과[9]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바. 진천군의 경우

진천군(㉯과)은 <표-6>과 같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사유가 발생한 ㄴㄷ 등 3개 업체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9) 농지보전부담금은 ㄴㄴ이 실제 건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산정 금액임

<표-6> 진천군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명)	실제 건축행위 여부	공장설립계획 승인일 (공장설립 완료 기한)	부담금 감면 내역
진천군	ㄴㄷ (Q)	부	2019. 2. 1. (2023. 2. 1.)	농지보전부담금 40,468,470
진천군	ㄴㄹ (R)	여	2020. 2. 11. (2024. 2. 29.)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241,840
진천군	ㄴㅁ→ㄴㅂ (S)	여	2020. 2. 13. (2023. 12. 30.)	농지보전부담금 30,596,43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진천군(㉦과 및 ㉧과)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30,596,43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241,840원 부과[10]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 괴산군의 경우

괴산군(㉩과)은 <표-7>과 같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사유가 발생한 ㄴㅅ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7> 괴산군 창업기업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단위: 원)

시군	업체명 (대표자명)	실제 건축행위 여부	공장설립계획 승인일 (공장설립 완료 기한)	부담금 감면 내역
괴산군	ㄴㅅ (T)	여	2018. 2. 13. (2022. 2. 13.)	농지보전부담금 9,472,68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괴산군(㉪과)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해당업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10)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실제 건축행위를 한 ㄴㄹ과 ㄴㅂ에 대한 산정 금액이고 이외에는 취소대상임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9,472,680원 부과[11]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 음성군의 경우

음성군(㉲과)은 <별표>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과 같이 창업기업 공장설립계획 승인 후 법정기한 내 공장설립 신고를 완료하지 않거나 착공을 하지 않는 등 창업기업 취소사유가 발생한 ㄴㅇ 등 67개 업체에 대하여 이행권고, 창업기업 설립계획 승인 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음성군(㉮과 및 ㉯과)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해당 업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1,412,482,78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12,338,660원 부과[12] 등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위 관서들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통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2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

11) 농지보전부담금은 실제 건축행위한 ㄴㅅ에 대한 산정 금액임

12) 농지보전부담금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실제 건축행위를 한 ㄴㅇ 등 22개 업체에 대한 산정 금액이고 이외에는 취소대상임

②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58,391,640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면제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통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6건)에 대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은

[통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3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2,911,26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237,850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

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면제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옥천군수는

[통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4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21,930,39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710,590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면제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증평군수는

[통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1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12,236,940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면제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는

[통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3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30,596,43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3,241,840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면제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통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1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9,472,680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면제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할 사항　　음성군수는

[통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9조 등을 위반한 창업기업(67건)에 대해

이행권고, 승인취소, 원상회복 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② 이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또는 면제한 농지보전부담금 1,412,482,780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12,338,660원 상당액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기한 내 공장설립을 완료하지 않는 등 공장 설립계획 승인 조건을 위반한 창업기업에 대하여 이행권고, 승인 취소, 면제된 부담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창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부적정 현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보 및 주의요구

제　　목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 및 지도·감독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공단과 2014. 3. 11.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표-1>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1] 관리 위탁 현황”과 같이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체와 입주계약 체결 등 관리 업무[2]를 ㉮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3]하고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

1)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산업집적법 제2조)

2) 1.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3.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등

3) 충청북도는 2014. 3. 11.부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단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중

<표-1>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관리위탁 현황

(단위: 억 원, ㎡)

지식산업센터명	위치	사업개요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 000-0	· 시행사: Ⓐ · 사업비/기간: 360/2009. 7. 29.~2011. 2. 28. · 건물연면적/층수: 39,896,59/지하2, 지상1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 000	· 시행사: Ⓑ · 사업비/기간: 620/2010. 6. 8.~2016. 5. 13. · 건물연면적/층수: 26,129.38/지하1, 지상8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 00-00	· 시행사: Ⓒ · 사업비/기간: 131/2017. 4. 18.~2018. 12. 4. · 건물연면적/층수: 9,982.28/지하2, 지상10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 000-0	· 시행사: Ⓓ · 사업비/기간: 712/2017. 12. 22.~2019. 12. 31. · 건물연면적/층수: 40,763.33/지하1, 지상15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동 00-00	· 시행사: Ⓔ · 사업비/기간: 839/2018. 8. 1.~2020. 8. 31. · 건물연면적/층수: 62,534.01/지하2, 지상16

※ 자료: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집적법 제38조제1항・제3항에 따르면 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및 제조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집적법 제40조의2, 제52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르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3개월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제38조의2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이하 “사업개시 신고”라 한다)를 한 후에 임대사업자로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산업집적법 제5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3제4항, 제60조 [별표 6]에 따르면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 및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수탁협약서” 제16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는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과)는 공단이 ⓐ 등 5개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와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함으로써 수분양자가 기한 내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신고와 임대사업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에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 동안 공단이 입주계약 체결, 공장등록 신고

수리 등 지식산업센터 관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산업집적법과 다르게 수분양자 및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도 공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

이를 살펴보면 ⓐ B000호의 소유자 ㉠은 해당 호실의 소유권을 취득(2015. 5. 4.)한 후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27.)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는 등 <표-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미체결 현황"과 같이 5개 지식산업센터에서 총 13개 호실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8개 호실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었다.

<표-2>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입주계약 미체결 현황

지식산업센터명	분양호실 수	입주계약 미체결	미체결 호실 중 사업중인 호실수
합계	750	13	8
ⓐ	207	7	5
ⓑ	121	3	확인불가 (현장 확인결과, 호실 잠겨있음)
ⓒ	15	-	-
ⓓ	180	1	1
ⓔ	227	2	2

※ 자료: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표-3>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미신고 임대 현황"과 같이 ⓔ 000·000호의 소유권을 취득(2020. 5. 14.)한 ㉡이 임대사업자로서 위 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호실을 관리기관에 신고 없이 임대(000호만 해당)하고 있었고,

ⓓ 000·000호의 소유권을 취득(2018. 8. 24.)한 ㉢은 임대사업자로서 입주

계약을 체결한 호실을 관리기관에 신고없이 임대(000호만 해당)하고 있었다.

<표-3>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미신고 임대 현황

(단위: ㎡, 원)

연번	수분양자명	호실 위치	취득일	건물 면적	임대 면적	입주 계약	임대사업 신고	취득가액
1	ㄴ	ⓔ 000·000호	2020. 5. 14.	108.29	38.78 (000호)	체결	미신고	186,946,800(000호) 104,407,000(000호)
2	ㄹ	ⓔ 000호	2019. 8. 9.	71.76	71.76	체결	미신고	48,919,064
3	ㅁ	ⓓ 000호	2018. 12. 31.	107.1	107.1	체결	미신고	2,495,820
4	ㄷ	ⓓ 000·000호	2018. 8. 24.	163.8	81.9 (000호)	체결	미신고	212,920,000(000호) 212,920,000(000호)
5	ㅂ	ⓓ 0000호	2019. 2. 21.	63.18	9.91	체결	미신고	160,760,000
6	ㅅ	ⓑ 000호	2016. 3. 3.	216.94	54	체결	미신고	107,159,913
7	ㅇ	ⓑ 000호	2016. 3. 17.	165.96	66	체결	미신고	130,265,691

※ 자료: 수감부서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 등 5개 지식산업센터 관리업무를 수탁한 공단이 분양일 이후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수분양자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수분양자 등이 기한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분양받은 호실을 임의로 임대하고 있었지만, 위 관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통보] ① ⓐ 등 5개 지식산업센터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라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하거나, ②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수분양자에 대해서(ⓑ의 확인불가한 호실은 제조업 영위 여부 등을 확인 후) 같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③ 같은 법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미신고 수분양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자 또는 입주기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조업 또는 임대사업을 하는 등의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 관리업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요구

제　　목 지방도 확포장공사 및 하천정비사업 등 공사비 과다계상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 ㉯과, ㉰소)는 ⓐIC와 ⓑ산업단지 연계도로망 구축, 집중호우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의 선형개량을 위해 <표-1>과 같이 ㉠공사’ 등 5건의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건설사업 현황

(단위: 백만 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량	총공사비	사업기간	시공사
㉮과	㉠공사	도로신설 L=4.25km, B=20m	61,515	’22. 5. 16.~ ’29. 7. 10.	㉠
	㉡공사	도로신설 및 개량 L=2.5㎞, B=20m	17,385	’21. 7. 28.~ ’26. 12. 17.	㉡
㉯과	㉢사업	하천정비 L=6.6㎞, 교량 12개소	23,320	’22. 11. 28.~ ’27. 1. 22.	㉢ 외 2개사
	㉣사업	제방 L=11.98㎞ 교량재가설 4개소	38,525	’22. 10. 28.~ ’26. 11. 6.	㉣ 외 2개사
㉰소	㉤공사	도로선형개량 L=1.48km	4,978	’22. 10. 5.~ ’24. 12. 5.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리고 위 사업의 품질관리와 효율적인 공정관리 등을 위하여 <표-2>와

같이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표-2> 건설사업관리용역 현황[1)]

(단위: 백만 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량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사
㉮과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3,507	'22. 1. 17.~ '29. 4. 3.	㉥ 외 3개사
	㉡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4,825	'22. 8. 8.~ '27. 10. 27.	㉦ 외 1개사
㉯과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831	'22. 9. 20.~ '27. 3. 2.	㉧ 외 2개사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2,769	22. 11. 1.~ '26. 11. 3.	㉨ 외 1개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9장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담당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도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

1)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없이 충청북도 ㉩소에서 직접 감독으로 추진하고 있음

시) 제10조, 제51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2]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경우, 현장 여건 변경, 공사비 절감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고,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과의 경우

1) ㉠공사

위 관서는 2022. 4. 26. ㉠(대표 A) 외 2개사와 도급액 43,251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9. 7. 10.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22. 1. 7. ㉡(대표 F) 외 3개사와 용역비 3,507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9. 4. 3. 준공예정으로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위 관서는 하천의 석축공사를 위해 필요한 뒷채움잡석 4,483㎥이 사급자재

2) ①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②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③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부합 여부, ④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⑤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⑥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⑦ 시공 시 예상 문제점, ⑧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등을 포함

와 관급자재에 중복으로 반영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비 134,963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고,

설계상 방음벽 지주의 수량이 1,135m이나 자재 구입수량을 1,378m로 계상하는 등 243m가 과다하게 계상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 공사비 50,787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과다 계상하였다.

이에 따라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배수공, 부대공 등에서 총 185,75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표-3> 공사비 과다 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종	수량	내용	금액
계			1식	185,750
㉠공사	· 배수공	1식	· 뒷채움잡석에 대하여 관급자재와 중복으로 계상된 사급자재분 삭제	134,963
	· 부대공	1식	· 설계수량 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방음벽 지주구입수량 조정	50,787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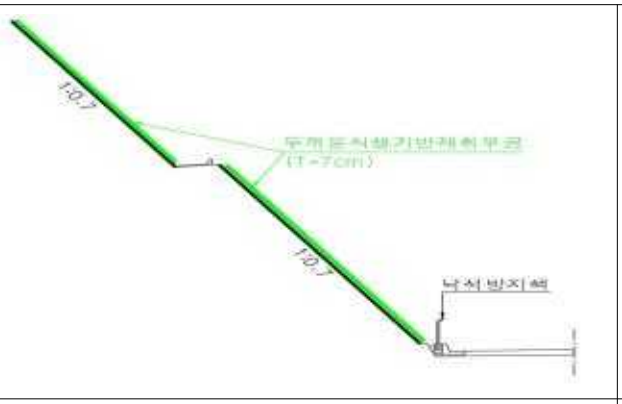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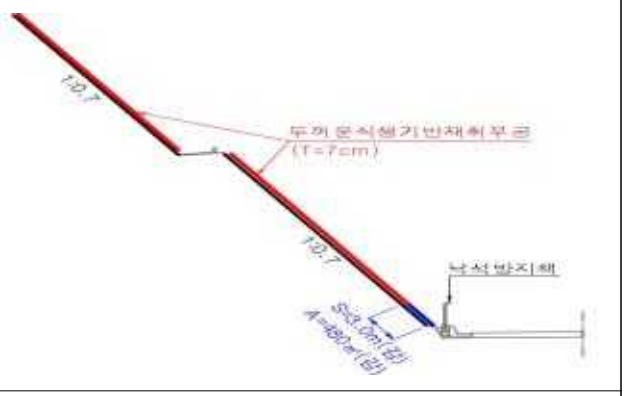
2) ㉡공사

위 관서는 2021. 7. 16. ㄴ(대표 B) 외 1개사와 도급액 11,931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6. 12. 17.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2022. 8. 4. ㅅ(대표 G) 외 1개사와 용역비 4,825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4. 5. 13. 준공예정으로 '㉡공사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위 관서는 아래 <표-4>와 같이 낙석방지 등 도로의 법면을 보호하기 위해 두꺼운 식생기반재취부공 3,940㎡를 반영하였으나 낙석방지책 구간(STA. 1+20 ~ STA. 1+180좌) 480㎡는 낙석방지책으로 낙석대비가 가능하여 식생기반재취

부공이 불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표-4> 두꺼운식생기반재취부공 설계현황

횡단면도	
	
당초	변경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아래 <표-5>와 같이 법면보호공에서 35,17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표-5> 공사비 과다 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종	수량	내용	금액
계			1식	35,170
㉡공사	· 법면보호공	1식	· 낙석방지책 중복구간 식생기반재취부공 삭제	35,17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관서는 2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총 220,920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할 수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나. ㉮과의 경우

1) ㉢사업

위 관서는 2022. 11. 23. ㉣㈜(대표 C) 외 2개사와 도급액 11,686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7. 1. 22.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 8. 29. ㅇ(대표 H) 외 2개사와 용역비 2,831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7. 3. 2. 준공예정으로 '㉣사업 등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설계도면에는 콘크리트포장깨기 693㎥만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역서에는 콘크리트포장깨기 693㎥, 무근콘크리트깨기 693㎥가 각각 적용되어 있는 등 중복 적용된 무근콘크리트깨기 수량을 삭제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6>과 같이 구조물공에서 90,433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표-6> 공사비 과다 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종	수량	내용	금액
계			1식	90,433
㉣사업	· 구조물공	1식	· 중복계상된 콘크리트포장 수량 삭제	90,433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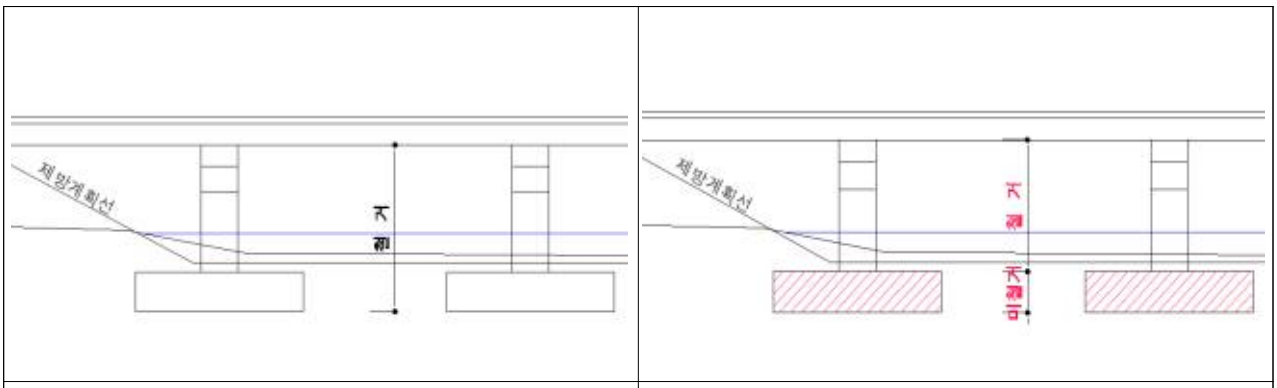
2) ㉤사업

위 관서는 2020. 10. 20. ㄹ(대표 D) 외 2개사와 도급액 23,542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6. 11. 6.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 8. 3. ㅈ(대표 I) 외 1개사와 용역비 2,769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6. 11. 3. 준공예정으로 '㉤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 1.02 설계요령(공종별 설계요령)에 따르면

기존 구조물깨기 시 유수부는 하상면까지만 제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아래 <표-7>과 같이 유수의 하상면인 제방계획선 아래로는 기존 구조물깨기가 필요하지 않아 구조물깨기 및 폐기물처리가 불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표-7> 유수부 구조물깨기 설계현황



당초	변경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따라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표-8>과 같이 구조물공 에서 74,465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표-8> 공사비 과다 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종	수량	내용	금액
계			1식	74,465
㉣사업	· 구조물공	1식	· 설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기존구조물깨기 및 폐기물처리 삭제	74,46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위 관서는 2건의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총 164,898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할 수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다. ㉱소의 경우

위 관서는 2022. 9. 27. ㉤(대표 E)와 도급액 3,052백만 원에 계약하여 2024. 12. 5. 준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위 관서는 국도설계실무요령 토공설계 부분에 따르면 1m 이상의 성토구간은 기존도로의 포장깨기가 불필요하다고 되어있어 공사구간 중 기존도로보다 1m 이상 성토되는 구간은 기존 아스콘포장깨기 및 폐기물처리비를 반영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9>와 같이 토공에서 46,437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통해 감액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

<표-9> 공사비 과다 계상 현황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종	수량	내용	금액
계			1식	46,437
㉮공사	· 토공	1식	· 1m 이상 성토구간 아스콘포장깨기 및 폐기물처리비 삭제	46,437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시정] ‘㈜공사’ 등 5건의 건설공사에 과다 계상된 432,255천 원(제경비 포함) 상당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등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공사비가 과다 계상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연성 방호울타리 현장지지력 시험 미실시 등 업무 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단양군은 교통의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와 그 부속시설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도로안전시설지침 등에 따라 도로상에 차량 방호울타리를 설치·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2조,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측도 등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를 말하며 도로관리청이 설치한 방호울타리 등 도로의 부속물도 도로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도로안전시설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지침인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1]」(이하 “도로안전시설 지침”이라 한다) 제3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에 따르면 방호울타리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나 도로 밖, 반대 방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

1) 이 지침은 「도로법」 제10조에 열거된 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도로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는 것을 방지하고, 차량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 연성 방호울타리(철제 가드레일)와 강성 방호울타리(콘크리트 방호울타리)로 나뉘는데 이중 연성 방호울타리를 성토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토부 시작점 부근에 설치하는 지주의 수평지지력(현장지지력)을 측정하여야 하고, 그 값은 실물충돌시험장에서 측정한 수평지지력의 90%이상이어야 하며, 현장지지력이 시험장지지력의 90%이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지주의 매입깊이 증대나 기타 보강시설 추가 등의 보강방안을 세워야 한다.

따라서 성토부에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장지지력을 측정하고, 그 측정값이 시험장지지력의 9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방호울타리에 대한 보강방안을 수립하여 수평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최근 3년(2021. 1.~2024. 3월 현재)간 성토부에 설치한 연성 방호울타리에 대해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10개 시·군 총 111개 현장을 대상[2]으로 현장지지력 시험의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1>과 같이 충청북도 등 7개 기관에서 '㉠공사[3]' 등 24건의 도로공사의 성토부에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서 현장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 지지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연성 방호울타리 15,950m 시공을 완료하였다.

---

2) 국도, 지방도, 시·군도,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에 설치된 연성 방호울타리를 대상으로 점검

3) 충청북도에서 추진한 '㉠공사' 등 2개소는 정부합동감사기간 중 표본으로 현장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였음

<표-1> 현장지지력 시험 없이 방호울타리 시공한 현황

기관명	사 업 명	방호울타리 시공 현황	비고
충청북도	㉠공사 등 5건	SB2, SB4 L=5,096m	
충주시	㉡공사 등 7건	SB2, SB4 L=2,786m	
괴산군	㉢공사	SB2 L=1,176m	
음성군	㉣사업	SB2 L=1,217m	
진천군	㉤공사 등 3건	SB2, SB4 L=3,124m	
증평군	㉥공사 등 2건	SB2 L=1,496m	
단양군	㉦사업 등 5건	SB2 L=1,055m	
합 계		**L=15,950m**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2개 현장을 표본으로 현장지지력 시험을 실시한 결과[4] <표-2>와 같이 '㉠공사'는 현장지지력을 확보하였으나 '㉧공사'의 일부 구간은 현장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해 보강방안 수립이 필요하였다.

<표-2> 연성 방호울타리 현장지지력 시험 표본 실시 결과

(단위: m, KN)

사 업 명	방호울타리 현황	수평지지력		
		시험장	현장	확보여부
㉠공사	SB4 등 2종 L=1,174m	25.69	26.48	여
㉧공사	SB4 등 2종 L=1,666m	22.26	12.36	부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위와 같이 현장지지력을 확인하지 않고 시공을 완료한 연성 방호울타리에서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주의 수평지지력 부족으로 추락위험 증가 등 도로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4) 〈별첨 2〉 연성 방호울타리 현장지지력 시험 결과 참조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충주시장, 괴산군수,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연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현장지지력 시험을 통해 방호울타리가 적정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도로안전 시설지침에 따른 현장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 현장지지력 시험을 통해 수평지지력이 미달되는 경우 보강방안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기준 부적정 운영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 ㉯소), 청주시(청원구 ㉰과, ㉱과), 충주시(㉲과), 보은군(㉳과), 옥천군(㉴과, ㉵과), 영동군(㉶과, ㉷과, ㉸과), 증평군(㉹과), 진천군(㉺과, ㉻과, ㉼실, ㉽과), 괴산군(㉾과), 음성군(㉿과, ㊀과, ㊁과), 단양군(㊂과)은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우수한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공사 시행과 예산절감 등을 목적으로 공사설계에 신기술·특허공법을 반영하기로 하고 공법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기준을 마련한 후 공고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기술보유현황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1]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 다만 해당 공사에 신기술·특허공법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기본설계·실시설계 완료전에 기술보유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입찰을 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하 “계약집행기준”이라 한다)」 제4장 제3절 2-다 2)-마에 따르면 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을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부서에서 신기술·특허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장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2)]”에 따라 공법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2절.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기준을 보면 공법 제안서는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정량적 평가와 시공성, 안전성, 유지관리, 경관성 등 정성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 한도는 <표-1>과 같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을 해당 계약목적물의 성질·규모·기술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하며 공사의 특성에 따라 정량적 평가 분야와 정성적 평가 분야의 배점 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성에 따라 위 예시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및 세부 배점을 가감 조정하여 평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동 기준과 달리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2) 자치단체 공사에 반영하는 신기술·특허공법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절차 마련을 목적으로 2021. 4. 1. 시행됨. 주요내용은 ①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당 공사의 신기술 등 적용 필요성 및 평가항목, 평가방법 검토하여 결과 반영, ② 공사비, 공사기간, 경영상태 등 예시항목을 예규에 명시하고 자치단체가 세부평가기준 선택·적용하도록 재량권 부여, ③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7일(긴급 5일) 이상 공법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④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공법선정 안내공고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⑤ 공법 평가 후 위원별 항목 평가점수 공개

<표-1>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평가항목(예시)	평가기준(예시)	배점한도	비고
계			100	
정량적 (객관적) 평가분야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주관적) 평가분야	시공성	- 공사기간 -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80	■ 평가위원이 평가
	안전성	- 구조적 안전성 - 내구·내진·내화·내습성 -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유지관리	- 하자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용이성 -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경관성	- 색상, 모양 등 디자인 - 외부 마감 상태 -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1절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 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법인, 민자・민간 또는 해외 발주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해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설계에 반영할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할 때는 공사의 특성에 따라 공법의 장・단점 등이 비교・검토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정할 수 있으나 공법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평가항목에 포함[3] 해서는 아니 되며 공사에 적용될 공법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협의하여 제안서 평가 기준과 달리 정하여야 하고 공사실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라북도 ㉮㉮과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정량적 평가분야의 세부기준을 정함에 있어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포함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에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지역업체라는 사유만으로 가점을 부여하도록 평가항목을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2021. 9. 15.)하기도 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기간(2024. 3. 11.~3. 27) 중 계약집행기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기준” 시행(2021. 4. 1.) 이후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심의위원회 운영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법 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반영하여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충청북도 ㉮과의 경우

위 관서(㉮과)는 “㉠㉠공사” 등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 선정을 위해 <표-2>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공사	2024.~ 2029.	교량(강합성 거더)	542	2023.7.5	2023.8.29
	㉠㉡공사	2025.~ 2027.	교량(강합성 거더)	377	2023.9.22.	2023.11.1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3>과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포함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3>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과)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2">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3">㉮과</td><td>제안액</td><td>- 비율=(해당공법의 직접공사비/제안공법 평균 직접공사비)*100</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3</td></tr>
<tr><td>지역업체</td><td>- 충청북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등 충청북도 정책 부합
<table>
<tr><th>신기술 및 특허 보유 등 제안사 조건</th><th>점수</th></tr>
<tr><td>-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가 충청북도에 본사 및 공장을 둔 업체</td><td>7.0</td></tr>
<tr><td>-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가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td><td>6.0</td></tr>
<tr><td>- 전용실시권자가 충청북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업체</td><td>4.0</td></tr>
<tr><td>- 특허권자(신기술보유자)가 충청북도에 공장을 둔 업체</td><td>3.0</td></tr>
<tr><td>- 그 외</td><td>0.0</td></tr>
</table></td><td>7</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충청북도 ㉯소(Ⓐ, Ⓑ)의 경우

위 관서(㉯소)는 “㉠㉡사업” 등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4>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4>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소 (Ⓐ)	㉠㉡사업	2024.01..~ 2025.07.	영구앵커공법	1,830	2023.4.27.	2023.5.16.
	㉠㉢공사	2022.12.~ 2023.04.	교면 방수(도막식)	327	2022.11.14.	2022.11.25.
㉯소 (Ⓑ)	㉠㉣공사	2023.07.~ 2023.12.	개질아스콘 (SMA, PSAM)	2,520	2023.6.1.	2023.6.20.
	㉠㉤사업	2023.10.~ 2024.06.	경관옹벽 1,818㎡	1,410	2023.9.11.	2023.9.25.
	㉠㉥공사	2024.03.~ 2024.08.	표면 및 단면보수, 방청+단면보수	192	2023.10.26.	2023.11.21.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소)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5>와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해당 공법 평가와 관련 없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반영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공

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5>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소)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점수
계약집행기준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소 (Ⓐ·Ⓑ)	경제성	- 비율=(해당공법의 직접공사비/제안공법 평균 직접공사비)*100	10
	경영상태	-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3
	지역업체	- 시공상의 편의를 위해 지역업체 유무를 평가	7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청원구 ㉰과, ㉱과)는 “㉠㉧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6>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6>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청원구 ㉰과	㉠㉧공사	2023.08.~ 2023.10.. (중지중)	배수성 저소음 포장 (나노페이브)	300	2023.5.8.	2023.5.24.
	㉠㉲공사	2022.11.~ 2022.12.	HPT 비굴착 보수 → S.C 비굴착 보수	150	2022.8.23	2022.9.5.
	㉠㉳공사	2022.07.~ 2022.09.	교면포장	570	2022.3.22.	2022.4.08.
	㉠㉶공사	2022.07.~ 2022.12..	단면보수 및 방청단면보수	500	2022.4.22.	2022.4.29.
㉱과	㉠㉥사업	2023.12.~ 2025.12.	압입추진공법	824	2022.8.10.	2022.8.26.
	㉠㉦사업	2023.12.~ 2025.12.	게이트펌프	1,034	2022.8.10.	2022.8.26.
	㉠㉧사업	2023.12.~ 2025.12.	제진기	311	2022.8.10.	2022.8.26.
	㉡㉠사업	2024.02.~ 2024.06.	가동보(유압전도식)	183	2023.11.14.	2023.11.23.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청원구 ㉰과, ㉱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

-7>과 같이 최근 3~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7>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청주시)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 colspan="2">점수</th></tr>
<tr><td>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colspan="2"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3">㉱과</td><td>가격
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직접공사비/제안공법 평균 직접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
</table></td><td colspan="2">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 colspan="2">10</td></tr>
<tr><td>실 적</td><td>-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특정공법을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td><td colspan="2">5</td></tr>
<tr><td rowspan="3">청원구
㉲과</td><td>가격
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직접공사비/제안공법 평균 직접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
</table></td><td>10</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10</td><td>5</td></tr>
<tr><td>실 적</td><td>- 공고일 기준 최근 3(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면보수공사(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td><td>5</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라. 충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8>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8>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공사	(착공 전) ~ 2026.	교량상부공법 또는 시공방법	346	2022.3.21.	2022.4.7.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9>와 같이 정

량평가 과정에서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반영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반영하였고 또한 공공기관 등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9>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충주시)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4">㈐과</td><td>경제성
(공사비)</td><td>- 비율=(해당 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배점</th></tr>
<tr><th>90% 미만</th><th>90% 이상 ~
95% 미만</th><th>95% 이상 ~
100% 미만</th><th>100% 이상 ~
105% 미만</th><th>105% 이상</th></tr>
<tr><th></th><th>A</th><th>B</th><th>C</th><th>D</th><th>E</th></tr>
<tr><td>점수</td><td>10.0</td><td>9.0</td><td>8.0</td><td>7.0</td><td>6.0</td></tr>
</table></td><td>10</td></tr>
<tr><td>지역업체</td><td>- 지역업체 기준은 본사 및 공장에 한함(전문건설업 등록된 업체)
<table>
<tr><th>구분</th><th>충청북도 내</th><th>그 외 지역</th><th>비고</th></tr>
<tr><td>특허권자 ·
신기술</td><td>5</td><td>0</td><td>전용,통상실시권
제외</td></tr>
</table></td><td>5</td></tr>
<tr><td>시공실적</td><td>- 공고일 기준 경간장 30m 이상,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것으로 합성형 라멘 형식 교량의 시공실적
<table>
<tr><th>구분</th><th>5건 이상</th><th>5건 미만
~3건 이상</th><th>3건 미만</th><th>곡선교 가점
(30m 이상,
R-60 이상)</th><th>비 고</th></tr>
<tr><td>점수</td><td>7</td><td>4</td><td>1</td><td>3</td><td></td></tr>
</table></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마. 보은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사업” 등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10>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10>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사업	2023.8. ~ 2025.12.	PC 암거(BOX)	537	2022.7.25.	2022.8.29.
	㉡㉣공사	2023.07.~ 2024.09.	SPA 라멘교 공법	850	2023.10.04.	2023.11.07.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11>과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단경간 PC박스 1억 원이상 준공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11>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보은군)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 colspan="2">점수</th></tr>
<tr><td rowspan="2">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colspan="2"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3">㉯과</td><td>가 격
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
</table></td><td>10</td><td>5</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5</td><td>10</td></tr>
<tr><td>실적</td><t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 단경간 PC박스교, 교량 1건당 1억원 이상 준공한 실적</td><td>5</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바. 옥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 ㉬과)는 “㉡㉤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12>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1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ㄴㅁ사업	2021.01. ~2024.12.	콘크리트 거더교	828	2023.6.08.	2023.6.29.
	ㄴㅂ사업	2022.01. ~2025.12.	보행용 현수교	8,410	2022.11.21.	2022.12.27.
㉯과	ㄴㅅ사업	2022.01.~ 2026.12.	교량(합성형라멘교) 가동보	394	2023.9.21	2023.10.19
	ㄴㅇ사업	2021.01.~ 2026.12.	교량(합성형라멘교)	180	2023.11.6	2023.11.24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과, ㉯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13>과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최근 5년(10년)간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13>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옥천군)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3">㉮과</td><td>공사비</td><td>- 비율=(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공법 제안 평균 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
</table></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td><td>5</td></tr>
<tr><td>시공실적</td><td>-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 실적
※ 경간장 10m이상 콘크리트 거더교 시공실적, 경간장 100m이상 보행용 현수교 및 출렁다리 시공실적</td><td>5</td></tr>
<tr><td rowspan="3">㉯과</td><td>공사비</td><td>- 비율=(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공법 제안 평균 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
</table></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5</td></tr>
<tr><td>시공실적</td><td>-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사. 영동군의 경우

위 관서(㉮과, ㉯과, ㉰과)는 “ㄴㅈ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 선정을 위해 <표-14>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14>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ㄴㅈ사업	2023.01.~ 2024.8.	강관거더 지점부 보강유니트 시공방법	363	2023.4.18.	2023.5.9.
㉯과	ㄴㅊ사업	2023년 ~ 2024년	입체교차시설(교량) 신설 1개소	2,300	2023.11.15.	2023.12.5.
㉰과	ㄴㅋ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	배수펌프, 제진기, 수배전반	4,710	2023.5.12	2023.6.27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표-15>와 같이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과는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정량평가 항목에 해당 공법 평가와 관련이 없는 신인도를 반영하였고, ㉯과와 ㉰과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준공 실적만을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15>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영동군)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2">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3">㉮과</td><td>제안액</td><td>- 해당 공법제안자 공사비용 / 공법 제안 평균 공사금액</td><td>10</td></tr>
<tr><td>신인도</td><td>-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 로부터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수 및 입찰, 계약이행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은 건수</td><td>5</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5</td></tr>
<tr><td rowspan="3">㉯과
㉰과</td><td>가격
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
</table></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10</td></tr>
<tr><td>실적</td><t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수행하여 준공한 실적</td><td>10</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과와 ㉧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15>와 같이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준공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아. 증평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공사" 등 하천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16>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16>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공사	2023.5.~ 2024.1. (중지중)	SCR 강합성라멘 주거더	220	2022.12.20.	2023.1.13.
	㉡㉤사업	2023.3.~ 2025.12.	PC BOX교량 제작 및 설치	1,400	2022.3.15.	2022.4.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17>과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반영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반영하였고 또한 최근 5년간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단경간 PC박스교의 준공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17>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증평군)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2">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4">㉱과</td><td>가격
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td><td>15</td></tr>
<tr><td>시공실적</td><td>-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5년간 해당업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시공 완료한 것으로 제안서에 제안한 공법을 적용하여 단경간 PC박스교의 준공실적(경간장 10m이상)에 한하여 인정(민간공사 제외)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 발주기관, 건설협회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에는 교량의 제원(경간장), 특허 또는 신기술 번호가 반드시 포함
- 실적증명서(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 제외
-
<table>
<tr><th rowspan="2">시공
실적</th><th rowspan="2">배점</th><th colspan="5">합성형 라멘교량 경간장 20m이상 시공실적</th></tr>
<tr><th>10건이상</th><th>7~9건</th><th>6~6건</th><th>2~3건</th><th>2건이하</th></tr>
<tr><td>점수</td><td>5</td><td>5</td><td>4</td><td>3</td><td>2</td><td>1</td></tr>
</table></td><td>5</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5</td></tr>
<tr><td>지역업체</td><td>- 지역업체
<table>
<tr><th>구 분</th><th>배점</th></tr>
<tr><td>- 특허·신기술을 충청북도 지역 내 등록한 기업</td><td>5.0</td></tr>
<tr><td>- 전용실시권을 충청북도 지역 내 등록한 기업</td><td>3.0</td></tr>
<tr><td>- 특허·신기술을 충청북도 지역 외 등록한 기업</td><td>1.0</td></tr>
</table></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자. 진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 ㉲과, ㉯실, ㉰과)는 “㉡㉥공사” 등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18>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18>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공사	2023.12.~ 2024.10.	IPC거더 (텐던 배치 방법)	226	2023.3.3.	2023.4.3.
㉲과	㉢㉠사업	2022.01.~ 2023.04.	철골구조물 제작 및 시공법	284	2021.12.7	2021.12.14

㉮실	㉲㉳공사	입찰협의 중	개량형 PSC 거더	1,914	2023.1.25	2023.2.15
㉱과	㉲㉲공사	2022.03.~ 2022.06.	유압식 가동보	335	2022.2.14	2022.2.28
	㉲㉶공사	2023.05.~ 2023.11.	유압식 가동보	276	2023.3.13	2023.4.3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과, ㉰과, ㉮실, ㉱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19>와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포함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반영하였고 또한 공공기관의 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19>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진천군)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 colspan="2">점수</th></tr>
<tr><td>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colspan="2"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4">㉯과
㉰과</td><td>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5.0</td><td>13.5</td><td>12.0</td><td>10.5</td><td>9.0</td><td></td></tr>
</table></td><td>15</td><td>20</td></tr>
<tr><td>시공실적</td><td>- 공공기관(국가,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공사·공단)에서 발주한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3(5)년간 준공한 것으로 당 제안서에 제안한 공법을 적용하여 준공한 실적
※ 준공실적 : 교량 최대 경간장 22m 이상인 경우, 제안공법</td><td>7</td><td>5</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td><td>3</td><td>5</td></tr>
<tr><td>지역업체 평가</td><td>- 신기술·특허권 및 전용실시권을 충청북도 지역 내 등록한 업체</td><td>5</td><td></td></tr>
<tr><td rowspan="4">㉮실</td><td>가격
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
<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
<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
<tr><td>12</td><td>10.8</td><td>9.6</td><td>8.4</td><td>7.2</td><td></td></tr>
</table></td><td colspan="2">12</td></tr>
<tr><td>시공실적</td><td>- 5건 이상 : 3.0점 - 5건 미만 ~ 3건 이상 : 2.0점
- 3건 미만 : 1.0점 ※ 최근 5년간 준공, 경간장 48m 이상</td><td colspan="2">3</td></tr>
<tr><td>경영상태</td><td>-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td><td colspan="2">2</td></tr>
<tr><td>지역업체</td><td>- 충청북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등 충청북도 정책 부합</td><td colspan="2">3</td></tr>
</table>

<table>
<tr><td rowspan="5">㉲과</td><td>공사비
(물품제작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tr><td colspan="6">배 점 기 준</td></tr><tr><td>90%미만</td><td>90%이상
95%미만</td><td>95%이상
100%미만</td><td>100%이상
105%미만</td><td>105%이상</td><td>비고</td></tr><tr><td>15</td><td>14</td><td>13</td><td>12</td><td>11</td><td></td></tr></table></td><td>15</td><td>15</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3</td><td>5</td></tr>
<tr><td>시공실적</td><t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제안한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한 실적</td><td>7</td><td>5</td></tr>
<tr><td>지역업체</td><td><table><tr><td>신기술 및 특허 보유 등 제안사 조건</td><td>점수</td></tr><tr><td>- 특허•신기술을 진천군 관내 등록한 기업</td><td>5.0</td></tr><tr><td>- 특허•신기술을 충청북도 관내 등록한 기업</td><td>4.0</td></tr><tr><td>- 특허•신기술을 그 밖의 지역 등록한 기업</td><td>3.0</td></tr></table></td><td>5</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차.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20>과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20>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공사	2022.6.7.~ 2023.5.8.	합성형 라멘교(거더)	3,000	2021.10.18.	2021.11.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21>과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포함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21>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괴산군)

구분	평가항목	평가방법	점수
계약집행기준	공사비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20
	경영상태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table>
<tr><td rowspan="4">㉲과</td><td>제안액</td><td>- 비율=(해당공법의 직접공사비/제안공법 평균 직접공사비)*100</td><td>15</td></tr>
<tr><td>시공실적</td><td><table><tr><th colspan="5">경간장30m 이상 실적</th></tr><tr><th>10건 이상</th><th>6~9건</th><th>3~5건</th><th>2건</th><th>`1건</th></tr><tr><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td><td>5</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5</td></tr>
<tr><td>지역업체</td><td><table><tr><th>구분</th><th>배점</th></tr><tr><td>특허·신기술을 충청북도 지역 내 등록한 기업</td><td>5.0</td></tr><tr><td>전용실시권을 충청북도 지역 내 등록한 기업</td><td>3.0</td></tr><tr><td>특허·신기술을 충청북도 지역 외 등록한 기업</td><td>1.0</td></tr></table></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카. 음성군의 경우

위 관서(㉳과, ㉴과, ㉶과)는 “㉡㉤공사” 등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22>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22>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공사	2023.12. ~2024.12.	합성형 라면교 및 그의 시공방법	1,669	2022.8.11.	2022.8.25.
㉴과	㉡㉥공사	2023.07.~ 2023.12.	육각편심롤러 및 가이드를 적용한 가동보	616	2022.5.30	2022.6.22.
	㉡㉦사업	착공 전	합성형 라멘교 거더 제작 및 설치	1,832	2022.12.26.	2023.1.12.
㉶과	㉡㉧개발 (ⓐ보)	2023.01.~ 2023.10.	가동보변경저감공법	1,119	2022.10.14.	2022.10.24.
	㉡㉧사업	2022.08.~ 2023.07.	합성형 라멘교 시공	512	-	2022.2.23.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표-23>과 같이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과와 ㉶과는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없이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정량평가 항목에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을 반영하였고,

또한 ㉯과는 지역업체에 대한 배점, 신기술 등 인증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반영하였고 또한 5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준공 실적실적만 인정하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23>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음성군)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2">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3">㉰과</td><td>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table></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3</td></tr>
<tr><td>지역업체</td><td>- 제안서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 지역 내·외 등록 업체에 따른 평가</td><td>7</td></tr>
<tr><td rowspan="5">㉱과</td><td>가격
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table></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5</td></tr>
<tr><td>실적</td><td>-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납품 시공실적
<table><tr><td>시공실적</td><td>20건 이상</td><td>15건이상</td><td>10건이상</td><td>5건이상</td><td>5건미만</td></tr><tr><td>환산점수</td><td>5</td><td>4</td><td>3</td><td>2</td><td>1</td></tr></table></td><td>5</td></tr>
<tr><td>품질인증</td><td>-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증, 특허등록원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td><td>5</td></tr>
<tr><td>지역업체</td><td>-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으로 제한, 법인등기부사항에 본사 소재</td><td>5</td></tr>
<tr><td rowspan="2">㉲과</td><td>공사비</td><td>- 비율=(해당공법의 공사비/제안공법 평균 공사비)*100
<table><tr><th colspan="6">배 점 기 준</th></tr><tr><th>90%미만</th><th>90%이상
95%미만</th><th>95%이상
100%미만</th><th>100%이상
105%미만</th><th>105%이상</th><th>비고</th></tr><tr><td>10</td><td>9</td><td>8</td><td>7</td><td>6</td><td></td></tr></table></td><td>10</td></tr>
<tr><td>지역업체</td><td>- 제안서 공고일 이전 충청북도 지역 내·외 등록 업체에 따른 평가</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타. 단양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법선정을 위해 <표-24>와 같이 공법선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표-24> 공법선정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백만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기간	공법내용	사업비	제안서 공고일	위원회 개최일
㈜과	㉡㉣공사	2023.01.~ 2024.12.	강합성라멘거더 (B=8.0m) L=30m	1,200	2023.10.20	2023.11.6.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과)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정하면서 <표-25>와 같이 정량평가 과정에서 계약집행기준과 달리하여 지역업체와 신기술 인증에 대한 배점을 행정안전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는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법 평가를 위해 마련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항목을 운영한 사실이 있다.

<표-25> 제안서 정량평가 비교 (단양군)

<table>
<tr><th>구분</th><th>평가항목</th><th>평가방법</th><th>점수</th></tr>
<tr><td rowspan="2">계약집행기준</td><td>공사비</td><td>-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td><td rowspan="2">20</td></tr>
<tr><td>경영상태</td><td>-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td></tr>
<tr><td rowspan="4">㈜과</td><td>제안액</td><td>- 비율=(해당공법의 직접공사비/제안공법 평균 직접공사비)*100</td><td>10</td></tr>
<tr><td>경영상태</td><td>-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td><td>10</td></tr>
<tr><td>품질인증</td><td>- 재난안전신기술 또는 건설신기술 보유에 따라 점수 부여
<table><tr><td>품질인증</td><td>재난안전신기술 보유</td><td>건설신기술 보유</td><td>기타 신기술</td></tr><tr><td>환산점수</td><td>5.0</td><td>3.0</td><td>1.0</td></tr></table></td><td>5</td></tr>
<tr><td>지역업체</td><td>- 본사 및 공장이 충청북도내 소재지를 둔 업체(공고일기준)
<table><tr><td>지역가점</td><td>본사 및 공장이 충북 도내 소재</td><td>전용실시권자가 본사 및 공장이 충북 도내 소재</td></tr><tr><td>환산점수</td><td>5.0</td><td>3.0</td></tr></table></td><td>5</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앞으로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하여 공법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신기술·특허공법 제안서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전자기록물 이관 업무 부적정**

기 관 명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되,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접수된 기록물(이하 “전자기록물”이라 한다)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에 생산·접수된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기록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이 전자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진본성, 무결성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이관 대상 기록물을 검수(檢收)하고, 오류가 없는 기록물에 대하여 행정전자서명

을 포함하는 등 진본확인 절차를 거쳐 이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매 1년 단위로 처리과에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접수된 전년도 전자기록물을 진본 확인 절차를 거쳐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번 정부합동감사 기간(2024. 3. 11.~3. 27.) 중 처리과에서 업무시스템으로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제천시(㉮과), 증평군(㉯과), 괴산군(㉰과), 음성군(㉱과) 등 4개 시·군은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처리과에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하거나 접수된 전자기록물에 대하여 2020년[4], 2021년[5], 2022년[6], 2023년[7]에 기록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 관서는 이관 대상 전자기록물에 대한 진본성, 무결성 등의 검수 절차와 진본확인 절차 등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전자기록물의 관리 부실을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음성군은 2024년에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1.0을 온-나라 2.0으로 전환하고 전자기록물 이관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4) (이관대상) 2019년도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
5) (이관대상) 2020년도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
6) (이관대상) 2021년도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
7) (이관대상) 2022년도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 증평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는**

[시정] 처리과에서 업무관리시스템(온나라)으로 생산·접수된 전자기록물을 기록관(기록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요구

제　　목 접도구역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및 11개[1] 시·군은 국토교통부(대전지방국토관리청[2])와 매년 반기별로 관할 구역 내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발생 여부 등 관리실태를 합동점검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접도구역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1> 접도구역 지정된 충청북도 일반국도 및 지방도 현황('23. 12. 31.)

(단위: ㎞)

구분	일반국도	지방도	합 계
충청북도	831	1,718	2,549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1. 10. 18.부터 10. 29.까지 2021년 하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1. 11. 10. 충청북도에 통보[3]하였으며, 충청북도는 이를 충주시 등 11개 시·군에 2021. 11. 10. 통보[4]하였다.

---

1) (3개시) 청주, 충주, 제천 (8개군) 괴산, 단양, 음성, 보은, 영동, 옥천, 진천, 증평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매년 반기별로 「도로법」 제40조 및 「접도구역관리지침」에 따라 충청남·북도 및 세종시 관내 지방도 및 국도의 접도구역 관리 실태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통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있음

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과-10159호(2021.11.10.)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도로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②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5]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접도구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제2019-190호, 시행 2019. 3. 7.) 4. 접도구역의 관리, 나. 관리책임자의 임무, (1) 시장, 군수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장의 임무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접도구역 관리책임자로서 접도구역 관리대장[6]을 작성하여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하며, 매월 1

---

4) 충청북도 ㉯과-20785(2021.11.10., 2021년 하반기 접도구역 점검결과 알림)

5)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6) ①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②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회이상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상태와 불법행위 발생여부를 현지 점검하여야 하고, 매 4월말과 10월말(연 2회)에는 정기적으로 접도구역 관리상태와 행위사항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관내 11개 시장·군수는 접도구역 관리대장[7]을 작성하여 시·군과 읍·면·동사무소에 각 1부씩 비치하여야 하며,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관할 구역내 접도구역 표주(각종 표지판 포함) 관리상태와 불법건축물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등 접도구역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 충주시는 2021. 11. 10. 충청북도로부터 지방도 000호선의 접도구역에 「도로법」상 허용되지 않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 가설건축물을 이동조치하라는 접도구역 점검결과를 통보[8]받았는데도, 2024. 3. 27. 감사일 현재까지 불법건축물 이동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접도구역 관리대장도 충주시에만 비치하고 관내의 읍·면·동사무소에는 비치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충청북도 충주시 등 8개 시·군은 <표 2>와 같이 '21년부터 충청북도로부터 통보받은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2024. 3. 27. 감사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충주시 등 11개 시·군은 <붙임>과 같이 시·군에만 비치하고 관내의 읍·면·동사무소에는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고 있다.

---

7) ① 접도구역 표주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② 접도구역안 기존건축물(공작물) 관리대장(도로법 시행규칙 제17호) 서식에 첨부된 사진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철인으로 압인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안 불법 건축물 대장(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8)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2021. 10. 18.부터 10. 29.까지 2021년 하반기 접도구역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결과를 2021. 11. 10. 충청북도에 통보했고, 충청북도는 이를 충주 등 11개 시·군에 2021. 11. 10. 통보함

<표 2> 접도구역 점검결과 미조치 현황(`21년 ~ '23년)

연번	점검기관	소관 지방자치단체	점검연도	노선명	점검결과
1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청주시	`23년 하반기	국도00호선	표주 정비
				지방도000호선	표주 정비
2	〃	충주시	`21년 하반기	지방도000호선	불법건축물(컨테이너) 이동조치
			`23년 하반기	국도0호선	안내표지판 정비
3	〃	제천시	`22년 하반기	국도0호선	표주 정비
			`23년 하반기	국도00호선	표주 정비
4	〃	옥천군	`21년 하반기	국도00호선	안내표지판 정비
			`22년 상반기	지방도000호선	표주 재설치
			`22년 하반기	-	불법건축물 대장 작성
			`23년 상반기	국도0호선	안내표지판 재설치
				국도00호선	안내표지판 재설치
				지방도000호선	안내표지판 재설치
				지방도000호선	안내표지판 재설치
			`23년 하반기	지방도000호선	표주 정비
5	〃	증평군	`23년 하반기	지방도000호선	안내표지판 재설치
				지방도000호선	안내표지판 재설치
6	〃	진천군	`23년 하반기	국도00호선	안내표지판 재설치
7	〃	음성군	`21년 하반기	-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행화
			`22년 상반기	-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행화
8	〃	단양군	`21년 상반기	-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행화
			`22년 하반기	-	접도구역 관리대장 현행화
			`23년 상반기	국도00호선	표주 정비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북도 충주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불법건축물 이동조치, 읍·면·동 사무소에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 접도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읍·면·동사무소에 접도구역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옥천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앞으로 접도구역 관리실태 점검에 따른 조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는 등 접도구역 관리가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접도구역 관리대장 및 확인자 점검현황

연번	지자체	관리대장	법정양식 사용 여부	접도구역 관리대장 비치 현황	
				시·군	읍·면·동사무소
1	청주시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O	O	X
2	충주시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O	O	X
3	제천시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O	O	X
4	보은군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X	O	X
5	옥천군	표주관리대장	X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X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X	O	X
6	영동군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O	O	X
7	증평군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O	O	X
8	진천군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O	O	X
9	괴산군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X	O	X
10	음성군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O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O	O	X
11	단양군	표주관리대장	O	O	X
		기존건축물관리대장	X	O	X
		불법건축물 관리대장	X	O	X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요구

제　　목　**배수성 포장공사 설계반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는 「도로법」 제31조제2항[1]등에 따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병목지점 개선사업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비 200억원을 지원[2]받아 2020. 11. 6. 충북 청주시 상당구 ○○로 00에 있는 ㉠과 '㉡공사'를 총 공사부기금액 8,929,500,000원으로 계약[3] 체결하고 2020. 11. 12. 착공하여 2026. 1. 23. 준공 예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토교통부가 2020. 1. 2. 위 관서 등에 통보[4]한 「도로관리 사업 예산내시 현황」의 [붙임 4] 집행지침에 따르면 과다한 사업비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도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1항에 따르면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2) 국비지원현황 : 200.38억('20년 4.31억, '21년 56억, '22년 59.13억, '23년 26.94억, '24년 54억)

3) 2024. 2. 21. 총부기금액 10,421,022,000원 및 총공사기간 2026. 1. 23.로 최종 변경계약됨

4) 국토교통부 ○○○○관-34(2020.1.2., 2020년 도로관리 예산내시 알림(도로병목지점, 위험도로))

로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5] 생산 및 시공 지침」(2020. 8. 27. 제정)에 따르면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이하 배수성 포장[6])은 도로의 안전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하며, 특히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 취약구간, 소음 취약구간 등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고 기타 일반 포장구간에 대해서도 내구성, 배수, 소음저감 성능 등이 확보될 경우 발주처는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7]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관서는 교통소음과 빗길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19호선 청주 미원단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본선 전구간(1.8km)에 배수성 포장을 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는 위 '㉠공사' 구간의 경우 실시설계용역[8] 시 실시한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표 1>과 같이 도로확포장공사 완료 후 차량 주행시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공사기간 중에만 정온시설(ⓐ초등학교, ⓑ중학교) 주변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공사완료 후 철거하면 방음벽 설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

5)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은 밀입도 아스팔트 혼합물에 비해 잔골재율을 낮춰 공극률을 높인 아스팔트 혼합물을 말하며,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은 도로 포장의 표층에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을 시공하여, 하부의 불투수성 중간층의 표면으로 노면수가 흘러서 배수로로 배수되는 구조로 돼 있음

6)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으로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저소음포장'이라고도 불림

7)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 제3쪽 ~ 4쪽

8) 2018. 12. 14. 전남 나주시 ○○로 000-0에 있는 ㉡과 총용역금액 245,630,000원에 계약

<표 1> 사전환경성검토 용역 결과보고서

연번	정온시설	이격거리 (단위: m)	예측소음도(단위: dB)		환경기준 (단위: dB)	비고
			주간	야간		
1	ⓐ초등학교	120	55.4	50.6	주간 65.0 야간 55.0	만족
2	ⓑ중학교	100	56.5	51.7		만족
3	우사[9]	10	67.6	62.3		초과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신설 우회도로와 주거·상업시설과는 이격거리(200m)가 있고 설계속도가 60km/h이며 설계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없어 소음저감대책이 필요없음에도 신속한 배수처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한 검토없이 소음저감만을 목적으로 배수성 포장을 반영하였고, 빗길 미끄럼 사고 등을 감안하여 교차로 및 본선 내리막 구간에는 미끄럼방지포장 및 그루빙을 설계에 반영한 점, 신설포장 구간으로 우천시 미끄러짐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배수성 포장이 불필요한데도, 모든 구간에 배수성 포장(36,939㎡)을 하는 것으로 설계에 반영되어 있어 그대로 시공할 경우 <표 2>와 같이 공사비 287,758천원 상당을 아끼지 못할 우려가 있다.

<표 2> 배수성포장을 일반포장으로 변경시 설계변경 예상금액

구 분	단위	수량		단가 (원)	금액(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포장공					36,484,000	29,170,000	△7,314,000	
- 아스콘표층 포설(일반 포장)	㎡	16,292	53,230	548	8,928,000	29,170,000	20,242,000	
- 아스콘표층 포설(배수성 포장)	㎡	36,939	-	746	27,556,000	-	△27,556,000	
관급자재					723,871,000	443,427,000	△280,444,000	
- 일반 표층 아스콘	ton	1,206	3,851	71,420	86,598,000	276,523,000	189,925,000	표층
		804	2,567	64,670	52,276,000	166,904,000	114,628,000	재생
- 배수성 표층 아스콘	ton	4,408	-	132,000	584,997,000	-	△584,997,000	
총사업비					760,355,000	472,597,000	△287,758,000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9) 우사로 사용되는 토지는 ⓒ 복합문화산업단지에 편입(청주시고시 제2022-000호)되어 보상예정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북도(㉮과)는 차량주행시 예측소음도가 환경기준을 만족하여 소음 취약구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계속도 60㎞/h로 평면 및 종단선형이 양호하여 일반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해도 우천시 차량 주행 안전에 지장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설계에 반영된 표층 배수성 포장(36,939㎡)을 일반 아스콘 포장으로 변경하는 실정보고를 진행하고 금년 상반기 내에 일괄 설계변경 조치할 계획이며, 향후 위임국도 및 지방도 실시설계시 배수성 포장은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소음 취약구간 등에 대해 유지관리성,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구성, 배수성, 소음저감 성능 등이 확보될 경우에 신중히 적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시정] '㉠공사'의 배수성 포장을 일반포장으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 287,758천원 상당을 감액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일반포장으로 공사 시행이 가능한 구간인데도 배수성 포장으로 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지장물 이설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3개 시·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목·공작물 등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토지보상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1]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2]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한

1) 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토지등'이란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2) 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다고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3]의 공급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국세청훈령) 4-0-1 제1항에 따르면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소유 재화의 파손·훼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감사원 심사결정(2012년 감심 제147호[4])에 따르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물건(지장전주 등) 등을 소유자에게 이전토록 하고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하는 금전은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에 해당하고,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 즉,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5]하였다[6].

---

3)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음

4) ㉮공사(㉯지점)에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청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로, ㉮공사에서는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지장전주를 이설하고, 청구·수령한 이설 비용에 대해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심사청구

5) 기획재정부(㉲과-296, 2013.5.6.)에서는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을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 이전하게 되는 지장물에 대한 이전비(이하 “이전비”라 한다) 보상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이전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 청주시(㉮과)는 ‘㉠사업’ 시행에 편입되는 지장전주(47본)에 대해 당해 시설물 관리기관인 ㉯공사(㉰지사)에게 사업부지 밖으로 이설해 줄 것을 요청[7]하였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이전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내역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2021. 12. 10. 및 2022. 10. 12. ㉯공사(㉰지사)에서 지장전주 등 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합계액 46,224,520원(33,535,008원+12,689,512원)을 포함하여 총 508,469,710원(368,885,080원+139,584,630원)을 청구[8]하자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않은 채 청구금액 전액을 2021. 12. 15. 및 2022. 10. 12. 그대로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표>와 같이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3개 시·군이 시행하는 ‘㉠사업’ 등 5건의 공익사업에 포함되는 지장물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면

---

6) 판례에 따르면(‘18.12.19. 선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가합9598) 원고(평택시)는 ‘17.7.6. 피고(㉯공사)를 상대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2년부터 ‘17년까지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18.7.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660,837,560원을 반환

7) 충북 청주시 ㉮과-8018(2021.6.22.)로 지장전주 47본, 충북 청주시 ㉯과-3794(2022.9.22.)호로 지장전주 총 47본 중 2본 지중화에 대한 이설을 요청

8) ㉯공사 ㉰(고객)-1082(2021.12.10.) 및 ㉰(고객)-947(2022.9.30.)

서 당해 물건의 소유자(관리자)가 부가가치세 52,545,466원을 포함하여 청구한 금액 총 578,000,090원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그대로 지급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포함 지장물 이설공사비 지급 현황

(단위: 원)

연번	사업명 (발주청)	지장물 현황		이설 공사비(지급금액)			지급일
		이설내역	소유자 (관리기관)	계	공사비	부가세	
			계	578,000,090	525,454,648	52,454,466	
1	㉠사업 (청주시)	전주 총 47본	소계	508,469,710	462,245,197	46,224,520	
		전주 47본	㈜공사	368,885,080	335,350,078	33,535,008	'21.12.15.
		전주 2본 (지중화)	㈜공사	139,584,630	126,895,119	12,689,512	'22.10.12.
2	㉡공사 (음성군)	전주 4본	㈜공사	3,628,460	3,298,599	329,861	'20. 2.12.
3	㉢사업 (충북도)	전주 6본	㈜공사	40,675,690	36,977,907	3,697,791	'23. 5.19.
4	㉣사업(개선복구) (단양군)	전주 3본	㈜공사	15,317,330	13,924,851	1,392,485	'21.12.13.
5	㉤사업 (개선복구) (단양군)	전주 3본	㈜공사	9,908,900	9,008,094	900,809	'22. 1.10.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3개 시·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사 등과 협의하여 부가가치세를 회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위 공익사업인 5건의 국고보조사업에 편입되는 지장물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52,454,466원 상당을 회수하고 국비에 대한 분담 비율을 산정하여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요구

제　　목 건설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 미체결 등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공사[1]'를 비롯한 다수의 건설공사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발주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지도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에서 2021. 1. 1.부터 2023. 12. 31.까지 최근 3년간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42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충청북도 관내 공공발주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2]하고 있다.

<표 1> 최근 3년간 충청북도 관내 공공발주 공사 안전사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계	1	42	-	10	-	8	1	9	-	4	-	-	-	1	-	1	-	4	-	2	-	1	-	2
21년	-	6	-	1	-	1	-	3	-	1	-	-	-	-	-	-	-	-	-	-	-	-	-	-

1) (노선명) 국도00호선 (위치) 보은군 ○○면 ○○리 000-0 일원 (사업량) 교량 노면보수 4,275㎡ (사업비) 540백만원, 국비 100% (사업기간) 2022. 12. ~ 2023. 6. 기간 중 40일

2) 충청북도 ㉣국에서 2024. 2. 3. 취합제출한 사전 감사자료 참조

구분	계		충북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2년	-	18	-	5	-	2	-	2	-	3	-	-	-	-	-	-	-	4	-	-	-	-	-	2
23년	1	18	-	4	-	5	1	4	-	-	-	-	-	1	-	1	-	-	-	2	-	1	-	-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3](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 등을 말하고,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4]고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 및 11개 시군은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공사를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74조에 따르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873호) 2022.8.16. 개정, 2022.8.18. 시행

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최소화[5]되도록 착공일의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소)는 2023. 9. 5. 계약체결한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이 553,490,700원이고 공사기간도 2023. 9. 11.부터 2023. 12. 9.까지 약 3개월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공사 준공시점까지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준공하는 등 2022. 8. 18. 이후 계약체결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중 총 7건의 공사에 대하여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준공하였다.

<표 2> 국고보조사업 중 기술지도계약 미체결 현황(충청북도 ㉮소)

연번	발주기관명	공사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비 고
1	㉯지소	2023. 9. 5.	㉠㉢공사	553,490,700	2023. 9.11. ~ 2023.12. 9.	미체결
2	㉰지소	2022.12.28.	㉠㉣공사	326,227,200	2022.12.29. ~ 2023. 2. 6.	미체결
3	㉱지소	2023. 5.22.	㉠㉤공사	177,623,300	2023. 5.16. ~ 2023. 9.12.	미체결
4	㉱지소	2023. 5.22.	㉠㉥공사	191,154,400	2023. 5.16. ~ 2023. 9.12.	미체결
5	㉰지소	2023. 7. 3.	㉠㉧공사	148,491,190	2023. 7. 5. ~ 2023.10. 2.	미체결
6	㉰지소	2023. 5. 1.	㉠㉦공사(ⓐ권역)	187,694,320	2023 .5. 4. ~ 2023. 6.12.	미체결
7	㉰지소	2023. 6.22.	㉠㉦공사(ⓑ권역)	174,274,600	2023. 6.23. ~ 2023. 8. 1.	미체결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충청북도 청주시는 2023. 5. 2. 계약체결한 '㉡㉠공사'의 경우 계약금

5) 고용노동부에서는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달리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어 2022. 8. 18.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시행하면서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전문기관에게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의무화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고용노동부 ㉰과-2456(2022.8.10.)호).

액이 224,022,700원이고 공사기간도 2023. 5. 8.부터 2023. 8. 5.까지 약 3개월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착공일의 전날까지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도, 공사가 착공된 지 2개월 이상 경과한 2023. 7. 19.에서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음성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은 2022. 8. 18.부터 감사일인 2024. 3. 22.까지 계약 체결한 공사금액이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 중 <붙임>과 같이 총 14건의 공사에 대하여 이미 착공되어 공사가 진행 중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영동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앞으로 공사금액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공사 착공일 전날까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고보조사업 중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체결 지연 현황

연번	시군명	공사계약일	공사명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기술지도 계약일	지연 일수
1	청주시	2023. 7.24.	㉡㉡사업	217,417,000	2023. 7.24. ~ 2024. 1.19.	2023. 8. 7.	+15
2	청주시	2023. 5. 2.	㉡㉠공사	224,022,700	2023. 5. 8. ~ 2023. 8. 5.	2023. 7.19.	+73
3	충주시	2023.12.20.	㉡㉢공사(건축, 토목, 조경)	8,764,136,480	2023.12.22. ~ 2025. 7.25.	2024. 1.26.	+36
4	충주시	2023.12.20.	㉡㉢공사(전기)	1,327,203,100	2023.12.22. ~ 2025. 7.25.	2024. 1.10.	+20
5	충주시	2023.12.21.	㉡㉢공사(소방)	837,988,440	2023.12.22. ~ 2025. 7.25.	2024. 1.10.	+20
6	충주시	2023.12.20.	㉡㉢공사(기계설비)	3,248,256,000	2023.12.22. ~ 2025. 7.25.	2024. 1.26.	+36
7	제천시	2023. 3. 7.	㉡㉣공사	347,202,000	2023. 3.13. ~ 2023.12. 8.	2023. 5.12.	+61
8	영동군	2023.12.15.	㉡㉤사업(전기)	843,972,400	2023.12.20. ~ 2025. 6.18.	2024. 1.26.	+38
9	영동군	2023.12.15.	㉡㉤사업(소방)	827,621,000	2023.12.20. ~ 2025. 6.18.	2024. 1.26.	+38
10	음성군	2023. 7.10.	㉡㉥사업	286,250,000	2023. 7.20. ~ 2024. 1.19.	2023.10.16.	+89
11	음성군	2023. 8.16.	㉡㉦사업	123,490,000	2023. 8.16. ~ 2023.11.17.	2023.10.12.	+58
12	음성군	2022.11.16.	㉡㉧공사	271,934,000	2022.11.21. ~ 2023. 7.23.	2023. 3.10.	+110
13	음성군	2022.11.22.	㉡㉨공사	494,850,000	2022.11.25. ~ 2024. 4.15.	2023. 3.10.	+106
14	단양군	2023.12.28.	㉡㉩사업	314,717,000	2023.12.29. ~ 2024. 4.26.	2024. 3.12.	+75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요구

제　　목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에 공영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사무위임 조례[1]에 근거하여 상당구·서원구·흥덕구·청원구 등 행정구청장에 그 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각 구청은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 등을 매년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주차장법」 제6조제3항[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사진 곳”이란 주차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곳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고정형 고임목 등의 형태와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 대한 사항을 규정[3]하고 있다.

---

1)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청주시조례 제1455호)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라 구청장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2) 2017년 10월, ⓐ 주차장에 주차된 차가 굴러 내려와 어린이가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조치 일환으로 주차장법이 2019.12.24. 개정되어 2020.6.25.부터 시행

따라서 충청북도 청주시는 관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경사진 주차면이 있는지 확인하고 경사진 곳이 있다면 자동차의 미끄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임목 등을 설치하고, 경사진 곳에 주차하려는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시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시행한 관내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4] 결과에 따라 관내 경사진 주차면이 있는 공영주차장 30개소 중 서원구 ○○동 000~000-0(○○로) 주차장 등 26개소에는 고임목 등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고, 서원구 ○○동 000-0 인근 주차장 등 12개소에는 경사진 주차장임을 알리는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붙임> 참조) 신속히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여야 하는데도, 용역이 완료된 지 2년 2개월이 경과한 2024. 3. 14. 감사일 현재까지도 2022년 2월경 폐지[5]된 청원구 ○○읍 ○○리 000

---

3) 시행규칙 제4조의2(고임목 등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4) (용역명) 2021년 청주시 주차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용역 (용역기간) 2021. 3. 15. ~ 2022. 1. 8. (용역비) 129,585천원 (용역사) ㉠

5) 주차장법 개정·시행('21.7.13.)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상주차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도록 의무화

주차장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경사진 주차장 29개소 중 서원구 ○○동 000~000-0(○○로) 공영주차장 등 14개소는 고임목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고, 청원구 ○○동 000-0 인근 주차장 등 10개소에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 중에 있어 향후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오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고임목과 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관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하여 고임목과 안전표지 등을 조속히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관내 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이나 안전표시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주시 관내 경사진 주차장 현황

연번	소관구청	소재 지번	'21 용역결과		2024. 3. 현재		비 고
			고임목	안내표지	고임목	안내표지	
1	상당구	-	O	O	O	O	
2	상당구	-	X	O	O	O	
3	상당구	-	X	O	O	O	
4	서원구	-	X	O	X	O	
5	서원구	-	X	O	X	O	
6	서원구	-	X	O	X	O	
7	서원구	-	X	O	X	O	
8	서원구	-	X	O	X	X	
9	서원구	-	X	O	X	O	
10	서원구	-	X	X	O	O	
11	서원구	-	X	O	O	O	
12	서원구	-	X	X	O	X	
13	서원구	-	X	X	O	X	
14	흥덕구	-	O	O	O	O	
15	흥덕구	-	O	O	O	O	
16	흥덕구	-	X	O	O	O	
17	청원구	-	O	O	O	O	
18	청원구	-	X	X	X	X	
19	청원구	-	X	O	X	O	
20	청원구	-	X	X	X	X	
21	청원구	-	X	O	O	O	
22	청원구	-	X	O	O	O	
23	청원구	-	X	O	O	O	
24	청원구	-	X	X	O	O	
25	청원구	-	X	X	X	X	
26	청원구	-	X	X	X	X	
27	청원구	-	X	X			'22.2월 폐지
28	청원구	-	X	X	X	X	
29	청원구	-	X	X	X	X	
30	청원구	-	X	X	X	X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차선도색공사 분할계약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국도00호선 등에 대한 국도유지보수사업[1]을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동일 구조물공사[2] 또는 단일공사[3]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으나,

다만, ①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

---

1)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 ㉯과-313호(2021. 1. 21.)에 따라 '21년도 도로유지보수 예산 307,000,000원을 지급받음

2) "동일구조물 공사"란 천연재료나 인조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부대 인공구조물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조)

3) "단일공사"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해당연도 예산에 특정 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에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를 준용한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참조)

된 공사, ②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工區)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 ③ 공사의 성격상 공종(工種)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설계서가 별도로 작성되는 공사나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 등으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단일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는 괴산군 ○○읍 ○○리의 제ⓐ교에서 ○○읍 ○○리의 ⓓ삼거리까지 약 6.3㎞의 국도00호선 구간에 차선도색공사를 시행하면서 연속된 구간에 동일한 도색공법[4]을 이용하여 도색공사를 진행하므로 공구를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공사의 성격상 공사의 종류별로 시공의 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도 아니어서 단일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차선도색 공사가 기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기온 강하가 심화되는 현시점에 시공 품질 저하가 우려되며, 공구의 분리 발주를 통해 품질 저하를 최

4) 3건의 차선도색공사 모두 융착식 공법 사용

소화하고 신속히 사업을 완료한다는 사유[5]로 위 공사 구간을 <표>와 같이 3개 구간으로 임의로 분할하여 2021. 11. 30. 각각 발주[6]하였다.

<표> ㉠공사 내역('21년)

(단위 : 원)

연번	사 업 명	추정가격	공사금액	공사기간	연장(㎞)	시공사
	합계	45,602,728	43,032,000		6.3	
1	㉠공사 (제ⓐ교~ⓑ삼거리)	19,340,909	17,864,000	2021.12. 9. ~ 2022. 1.17.	1.9	㉠
2	㉠공사 (ⓑ삼거리~ⓒ교차로)	14,983,637	14,243,000	2021.12. 9. ~ 2022. 1.17.	1.9	㉡
3	㉠공사 (ⓒ교차로~ⓓ삼거리)	11,278,182	10,925,000	2021.12. 9. ~ 2022. 1.17.	2.5	㉢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주의] 앞으로 단일공사로 발주해야 하는 공사를 분할하여 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5) 출장결과보고서(위임국도00호선 괴산군 인수구간 차선도색공사, ㉮과-8018, 2021.11.29.)

6) ㉮과-8065(2021.11.30. 위임국도 00호선 괴산군 인수구간 차선도색공사(제ⓐ교-ⓑ삼거리) 시행 의뢰). ㉮과-8069(2021.11.30. 위임국도 00호선 괴산군 인수구간 차선도색공사(ⓑ삼거리-ⓒ교차로) 시행 의뢰), ㉮과-8067(2021.11.30. 위임국도 00호선 괴산군 인수구간 차선도색공사(ⓒ교차로-ⓓ삼거리) 시행 의뢰)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정기 및 종합검사 미수검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등 11개 시·군은 2024년 2월말 기준 승용차 739,158대, 승합차 26,927대, 화물차 166,853대, 특수차 6,331대 등 총 939,269대의 자동차 중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을 하는 등 자동차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소유자는 정기검사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를 통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자동차관리법」제6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0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르면 법 제37조에 따른 명령에 관한 업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1]을 2010. 7. 10. 개발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하였고, 충청북도 청주시 등에서는 2010년부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를 활용하여 자동차 등록 및 폐차 등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저당권의 등록, 자동차 튜닝승인 및 제원관리, 자동차검사 등

의 자동차 관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 청주시 등 11개 시·군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온나라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한 별도의 전자문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정기 및 종합검사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표>와 같이 2022. 4. 14. 이후 정기 또는 종합검사 명령을 받은 자동차 17,580대 중 1,458대가 검사명령 이후 1년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도, 검사 이행 관련 정보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2022. 4. 14.「자동차관리법」 개정[2]으로 도입된 검사명령 장기 미이행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3]

---

2) 2021. 4. 13. 개정된「자동차관리법」제37조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소유자가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개정법 부칙에 따라 해당 조항은 시행일인 2022.4.14. 이후 검사명령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향후 검사명령을 받고도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등을 위해서는 검사명령 정보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될 필요가 있음

3) 2022. 4. 14. 이후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명령을 받은 자동차 17,580대 중 총 1,610대가 검사명령 이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기 및 종합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 운행정지명령 대상이며 이 중 152대에 대하여는 운행정지명령 조치가 이미 이루어져 1,458대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 조치할 필요가 있음

<표> 충청북도 자동차 검사명령 및 운행정지명령 미이행 현황

(단위: 대)

구분	검사명령 대상차량	검사명령 후 1년 이상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	운행정지명령 조치 차량	운행정지명령 미조치 차량
합계	17,580	1,610	152	1,458
청주	6,764	606	152	454
충주	3,039	243	-	243
제천	3,640	147	-	147
보은	421	32	-	32
옥천	516	75	-	75
영동	286	71	-	71
증평	377	48	-	48
진천	1,015	129	-	129
괴산	598	69	-	69
음성	602	158	-	158
단양	322	32	-	32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북도 청주시 등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명령을 할 경우 한 건씩을 입력해야하는 비효율이 있으며, 검사명령 정보 입력방식이 개별입력방식에서 다건 입력방식으로 개선되면 해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검사명령 정보를 입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앞으로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이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정기 및 종합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통보받은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운행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정기검사 미수검으로 운행정지명령 대상 중 미조치 차량 내역 :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시정요구

제　　목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승인사항 미통보**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적 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천탐사·채굴사업 등이다.

같은 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르면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납부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1조 및 시행령 제52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인·허가 등의 내용에 관한 통보의 수령, 부과금액·납부기간 등에 관한 통지, 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 징수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지방행정서기 AA는 2023. 5. 5. 부터 2023. 7. 16. 까지 청주시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서기 AB는 2021. 7. 15. 부터 2023. 1. 18. 까지 청주시 ㉯과(구 ㉰과)에서 “㉠㉡사업” 과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서기보 AC는 2021. 7. 15. 부터 2023. 1. 18. 까지 청주시 ㉱읍(㉲팀)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 ㉯과, ㉱읍)은 <표-1>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

(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 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71,003,85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1> 청주시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계						71,003,850	
청주시 (㉮과)	㉠㉠사업	청주시 청원구 ○○읍 ○○리 00번지 일원 공장부지 증설사업	'23.6.2	'23.6.8	37,375㎡ (11,839㎡)	8,879,250	'23.6 ~25.12
청주시 (㉯과)	㉠㉡사업	청주시 청원구 ○○읍 ○○리 000-0번지 일원	'21.9.6	청주시고시 제2021-000호 청주시고시 제2021-000호	34,935㎡ (31,229㎡)	10,921,800	'21.11.19 ~'24.12.31
청주시 (㉯과)	㉠㉢공사	청주시 청원구 ○○동 일원	'21.12.13	청주시 고시 제2022-000호	58,799㎡ (58,442㎡)	32,937,600	'22.9.8 ~'27.12.1
청주시 (㉲읍)	㉠㉣사업	청주시 ○○읍 ○○리 산00번지 외4필지	'22.1.11	'22.1.13	42,104㎡ (42,104㎡)	18,265,200	'21.2.4 ~ '22.1.11

※ 청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지방시설서기 BA는 2021. 7. 1. 부터 2022. 12. 31. 까지 충주시 ㉳과에서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 BB는 2019. 7. 1. 부터 2023. 12. 31. 까지 충주시 ㉳과에서 "㉠㉥ 인가",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BC는 2020. 1. 13.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

3. 27.) 까지 충주시 ㉮과(구 ㉶과)에서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 산업유통형) 결정”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BD는 2020.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충주시 ㉷과에서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 ㉮과, ㉷과)는 <표-2>와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77,700,60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2> 충주시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계						77,700,600	
충주시 (㉳과)	㈜ⓓ공사 (충주시)	충주시 ○○면 ○○리 000번지~000-0번지	’21.1.11.	’21.10.29	30,777㎡ (30,777㎡)	28,671,900	’22.03 ~ ’25.12
충주시 (㉳과)	㈜㉲ 인가 (충주시)	충주시 ○○동 000-0~○○동000-00, ○○면 ○○리 000-0~○○리 00-0, ○○○면 ○○리 000~○○리 산00-0, ○○면 ○○리 000-0~○○면 ○○리 000-00	’21.8.23.	충주시고시 2022-000 (’22.0.00)	195,447㎡ (43,624㎡)	13,087,200	’19～’25
충주시 (㉳과)	㈜ⓐ공사 (충주시)	충주시 ○○○면 ○○리 일원	’20.6.12.	충주시고시 2022-00 (’22.0.00)	40,142㎡ (10,059㎡)	3,017,700	’19～’24

충주시 (㉮과)	충주 도시관리계획 (ⓐ지구 산업유통형) 결정	충주시 ○○면 ○○리 산0-0번지 일원	'20.5.12.	'21.4.2	81,607㎡ (66,420㎡)	19,926,000	'23～'25
충주시 (㉲과)	㉠◎공사	충주시 ○○면 ○○리 산0-0번지 일원	'20.7.31.	'20.8.14	51,454㎡ (21,663㎡)	12,997,800	~ '25.12.31

※ 충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다. 제천시의 경우

지방시설주사보 CA는 2021. 1. 11. 부터 2023. 1. 12. 까지 제천시 ㉳과에서 "㉠㉵ 조성"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는 <표-3>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27,439,80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3> 제천시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제천시 (㉳과)	㉠㉵ 조성	제천시 ○○동 00번지 일원	'20.12.31	'22.1.28	50,144㎡ (45.733㎡)	27,439,800	'22.1.28 ~'26.12.31

※ 제천시 제출자료 재구성

라. 옥천군의 경우

지방시설주사보 DA는 2023. 1.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옥천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 DB는 2023. 1.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 3. 27.) 까지 옥천군 ㉮과에서 “㉠㉡공사” 와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DC는 2021. 1. 1. 부터 2022. 12. 31. 까지 옥천군 ㉮과에서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 ㉮과)는 <표-4>와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157,789,48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 하게 되었다.

<표-4> 옥천군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계						157,789,480	
옥천군 (㉰과)	㉠㉦사업	옥천군 ○○읍 ○○리 일원	’23.6.15	23.9.15	366,232㎡ (77,367㎡)	45,927,060	’22.~’25
옥천군 (㉮과)	㉠㉡공사	옥천군 ○○면 ○○리 일원	’22.1.7	’23.6.5	49,561㎡ (34,230㎡)	33,474,870	’22~’25
옥천군 (㉮과)	㉠㉢공사	옥천군 ○○면 ○○리 일원	’22.1.8	23.6.5	67,981㎡ (52,242㎡)	47,823,750	’22~’25
옥천군 (㉮과)	㉠㉤공사	옥천군 ○○면 ○○리, ○○리 일원	’22.1.8	21.11.30	63,393㎡ (51,985㎡)	26,563,800	’22~’24

※ 옥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마. 영동군의 경우

지방행정서기보 EA는 2022. 1. 10. 부터 2023. 6. 30. 까지 영동군 ㉲과에서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EB는 2023. 10. 30.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 ~3. 27.) 까지 영동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서기 EC는 2022. 1. 10. 부터 2023. 10. 30. 까지 영동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행정주사보 ED는 2022. 1. 10. 부터 2022. 10. 16. 까지 영동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 ㉮과, ㉰과)는 <표-5>와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171,918,63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5> 영동군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계						171,918,630	
영동군 (㉲과)	㉠㉲공사	영동군 ○○읍 ○○리 산00-0번지 일원	’21.9.9	’22.4.5	58,730㎡ (58,730㎡)	59,798,700	’19.~’22.
영동군 (㉮과)	㉡㉠사업	영동군 ○○면 ○○리 000-0번지 일원	’23.10.10	’23.10.27	41,789㎡ (37,124㎡)	29,426,660	’23.~’26.
영동군 (㉮과)	㉡㉡사업	영동군 ○○면 ○○리 0-0번지일원	’22.10.19	’22.10.27	31,340㎡ (23120㎡)	11,093,770	’22.~’25.
영동군 (㉰과)	㉡㉢사업	영동군 ○○면 ○○리, ○○리 일원	’21.10.22	’22.9.16	80,093㎡ (79,555㎡)	71,599,500	’22.9 ~ ’24.9

※ 영동군 제출자료 재구성

바. 증평군의 경우

지방시설주사보 FA는 2023. 1. 1. 부터 2023. 10 .5. 까지 증평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는 <표-6>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34,607,100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6> 증평군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증평군 (㉰과)	㉡㉣사업	증평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22.12.21	'22.12.28	43,123㎡ (42,160㎡)	34,607,100	'23.2 ~ '25.6

※ 증평군 제출자료 재구성

사. 진천군의 경우

지방시설주사 GA는 2020. 7. 1. 부터 2023. 12. 31. 까지 진천군 ㉱과에서 "㉡㉤조성(㉠)"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 GB는 2021. 1. 1. 부터 2023. 6. 30. 까지 진천군 ㉥과에서 "진천군 ○○읍 ㉡공장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산업유통) 결정 변경)",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 결정(변경)(안)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GC는 2021. 7. 1. 부터 2023. 7. 31. 까지 진천군 ㉦과에서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ㄹ)”,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ㅁ)”, “진천○○면 ㅂ창고신설사업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 “ㅅ공장조성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GD는 2023. 8.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까지 진천군 ㉦과에서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ㅇ)” ,“진천군○○읍군관리계획ㅈ진천물류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산업유통형)변경결정(안)”,“진천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ㅊ)”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서기 GE는 2022. 1. 1. 부터 2023. 6. 31. 까지 진천군 ㉦과에서 “진천군관리계획(ⓑ지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GF는 2020. 7. 1. 부터 2023. 6. 30. 까지 진천군 ㉦과에서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 ㉦과)는 <표-7>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237,741,60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7> 진천군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연번	인·허가 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미부과 금액	
	계						237,741,600	
1	진천군 (㉣과)	ㄴㅁ조성(ㄱ)	충북 진천군 ○○읍 ○○리 산00-0번지 일원	'23.4.4	'23.7.18	39,947㎡ (39,947㎡)	39,695,550	'23~'25
2	진천군 (㉮과)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안)	진천군 ○○읍 ○○리 000-0번지 외 00필지	'23.1.12	'23.9.25	81,320㎡ (31,860㎡)	9,558,000	'22.01 ~ '26.06
3	진천군 (㉮과)	진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ㄹ)	진천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23.1.20.	'23.4.10	48,448㎡ (48,448㎡)	14,534,400	'21.12 ~ '23.12
4	진천군 (㉮과)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ㅁ)	진천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23.2.7.	'23.5.30	40,479㎡ (40,479㎡)	14,385,750	'21.04 ~ '24.12
5	진천군 (㉮과)	진천○○면ㅂ창고신설사업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변경)	충북 진천군 ○○면 ○○리 00-0번지 일원	'23.2.22	'23.4.14	57,280㎡ (57,280㎡)	13,729,200	'23.01 ~ '25.12
6	진천군 (㉮과)	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ㅁ)	충북 진천군 ○○읍 ○○리 000번지 일원	'23.3.3	'23.9.12	49,978㎡ (20,828㎡)	6,248,400	'22.7 ~ '24.12
7	진천군 (㉮과)	진천군○○읍군관리계획ㅋ진천물류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산업유통형)변경결정(안)	충북 진천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23.10.23	'24.1.4	36,188㎡ (36,188㎡)	10,532,400	'23.06 ~ '25.12
8	진천군 (㉮과)	ㄴㅂ공사	충북 진천군 ○○읍 ○○리 일원	'22.2.9	'22.12.30	45,441㎡ (45,441㎡)	20,509,200	'23.06 ~ '26.10
9	진천군 (㉮과)	진천군관리계획(ⓑ지구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충북 진천군 ○○○면 ○○리 산00-0번지 일원	'22.9.13	'22.5.17	311,986m² (184,345㎡)	52,753,500	'22.01 ~ '25.12
10	진천군 (㉮과)	ㅅ공장조성진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	충북 진천군 ○○면 ○○리 0-0번지 일원	'22.11.30	'22.12.30	46,531m² (46,531m²)	10,009,200	'22.10 ~ '25.10.30

11	진천군 (㉱과)	진천군 ○○읍 ㄷ공장변경(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산업유통) 결정 변경)	충청북도 진천군 ○○읍 ○○리 000번지 외 14필지	'21.7.6	'21'8.20	51,767㎡ (51,767㎡)	1,017,000	'20.5 ~ '22.12.30
12	진천군 (㉱과)	ㄷ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계획)결정(변경)(안)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충북 진천군 ○○읍 ○○리 00-0번지 일원	'21.9.30	'21.11.19	80,469㎡ (80,469㎡)	23,799,600	'22.06 ~ '25.12
13	진천군 (㉱과)	진천군관리계획(산업유통형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ㅊ)	진천군 ○○면 ○○리 000번지 일원	'23.12.19	'24.2.20	74,418㎡ (74,418㎡)	20,969,400	'22.~'25.

※ 진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아. 괴산군의 경우

지방시설서기보 HA는 2022. 1.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괴산군 ㉯과(구 ㉲과)에서 "ㄴㅅ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고 있다.

위 관서는 <표-8>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44,881,00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8> 괴산군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괴산군 (㉯과)	ㄴㅅ사업 (괴산군)	괴산군 ○○면 ○○리, ○○리 일원	'20.9.1	인허가 누락	54,478㎡ (51,683㎡)	44,881,000	'21.9.16 ~ '22.12.23

※ 괴산군 제출자료 재구성

자. 음성군의 경우

지방시설주사보 IA는 2021. 7.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음성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서기 IB는 2022. 1. 3. 부터 2022. 10 .12. 까지 음성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IC는 2022. 1.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음성군 ㉯과에서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 ID는 2021. 1. 1. 부터 2023. 6. 30. 까지 음성군 ㉯과에서 “㉡㉢공사”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IE는 2019. 1. 1. 부터 2021. 6. 30. 까지 음성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IF는 2021. 7. 1. 부터 2022. 6. 31. 까지 음성군 ㉱과에서 “㉡㉦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 ㉯과, ㉰과, ㉱과)는 <표-9>와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159,955,650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9> 음성군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계						159,955,650	
음성군 (㉦과)	ㄴㅇ사업	음성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22.1.24.	’22.9.3	31,916㎡ (25,554㎡)	10,261,350	인가일 ~ ’24.6.30
음성군 (㉦과)	ㄴㅊ사업	음성군 ○○면 ○○리 000번지 일원	’22.6.13	’22.8.3	31,083㎡ (30,112㎡)	9,103,800	인가일 ~ ’24.6.30
음성군 (㉦과)	ㄴㅊ공사	(시점) 음성군 ○○읍 ○○리 000-0번지 (종점) 음성군 ○○읍 ○○리 000-00번지	’22.8.30	’23.2.15	95,274㎡ (44,433㎡)	19,993,350	’21.4.20 ~ ’26.12.30
음성군 (㉦과)	ㄴㅋ공사	음성군 ○○면 ○○리, ○○리 일원	’20.8.25.	’21.12.24	100,924㎡ (64,283㎡)	41,380,350	’19.5.2 ~ ’25.12.31
음성군 (㉧과)	ㄴㅌ사업	음성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21.5.10	’21.6.2	45,100㎡ (42,612㎡)	29,268,450	’21.6.15 ~
음성군 (㉤과)	ㄴㅍ사업	음성군 ○○리 0000-0~00일원	’20.11.16	22.5.3	114,634㎡ (109,117㎡)	49,948,350	’21.7.15 ~ ’24.6.28

※ 음성군 제출자료 재구성

차. 단양군의 경우

지방시설서기 JA는 2023. 3. 22. 부터 2023. 7. 19. 까지 단양군 ㉣과에서 “ㄴㅎ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주사보 JB는 2023. 1.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단양군 ㉥과에서 “ㄷㄱ사업” 관련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 ㉲과)는 <표-10>과 같이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등을 하고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하여 기간 내(인·허가 날로부터 20일 이내) 부과·징수기관(충청북도 ㉱과)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 및 토지의 용도별 훼손면적 등을 통보하여야 하나 통보하지 않아 대상 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부담금 52,325,695원의 부과·징수를 누락하게 되었다.

<표-10> 단양군 개발사업 생태계보전부담금 미통보 현황

(단위 : ㎡, 원)

인·허가등 기관	사업명	소재지	환경영향평가 협의 회신일	인·허가등 일자	생태계보전부담금		사업기간
					사업면적 (훼손면적)	부과금액	
계						52,325,695	
단양군 (㉯과)	㉡㉥사업	단양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23.3.15	단양군고시 2023-00 ('23.0.00)	50,786㎡ (27,977㎡)	17,288,985	'23.4.28 ~ '25.12.31
단양군 (㉲과)	㉢㉠사업	단양군 ○○읍 ○○리 일원	'22.12.19	'23.7.10	115,567㎡ (78,761㎡)	35,036,710	'23 ~ '27

※ 단양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AA, AB, AC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BA, BB, BC, BD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훈계] 관련자 CA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는

[훈계] 관련자 DA, DB, DC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는

[훈계] 관련자 EA, EB, EC, ED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는

[훈계] 관련자 FA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는

[훈계] 관련자 GA, GB, GC, GD, GE, GF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수는

[훈계] 관련자 HA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훈계] 관련자 IA, IB, IC, ID, IE, IF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수는

[훈계] 관련자 JA, JB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을 부과·징수기관에 통보하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승인기관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 및 반영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협의 내용을 반영한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 등)의 규정에 따르면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받기 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장 등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의 내용을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6조(협의 내용의 반영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에 따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1]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2]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 ㉯과)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

1) "승인기관장등"이란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5항)

2)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

㉠)” 등 16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1>과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도록 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1>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승인일
1	소규모	㉠㉠사업 (㉠㉠)	청주시 청원구 ○○읍 ○○리 산0번지 일원	㉮과	㉠㉠	19,235	2023-01-26	2023-08-24
2	소규모	㉠㉡사업	청주시 청원구 ○○읍 ○○리 000번지 일원	㉮과	㉠㉡	13,795	2023-03-09	2023-03-13
3	소규모	㉠㉢조성	청주시 상당구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	39,766	2023-03-28	2023-05-23
4	소규모	㉠㉣사업	청주시 청원구 ○○읍 ○○리 000번지 외 23필지	㉮과	㉠㉣	45,943.9	2023-04-04	2023-04-04
5	소규모	㉠㉤승인	청주시 청원구 ○○면 ○○리 000-0번지 일원	㉮과	㉠㉤	10,489	2023-06-20	2023-06-22
6	소규모	㉠㉥조성 (㉠㉥)	청주시 흥덕구 ○○면 ○○리 산000번지 일원	㉮과	㉠㉥	14,349	2023-07-03	2024-01-09
7	소규모	㉠㉦사업	청주시 상당구 ○○면 ○○리 산0번지 일원	㉮과	㉠㉦	20,230	2023-12-11	2023-12-29
8	소규모	㉠㉧사업	청주시 서원구 ○○면 ○○○○리 000-0번지 외 5필지	㉮과	㉠㉧	21,211	2023-12-12	2024-01-12
9	소규모	㉠㉨사업	청주시 서원구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	29,037	2022-06-22	2022-11-17
10	소규모	㉠㉩사업	청주시 청원구 ○○읍 ○○리 산00-0번지 일원	㉮과	㉠㉩	14,046	2022-07-04	2022-07-12

11	소규모	㉠㉤증설	청주시 흥덕구 ○○면 ○○리 000-0번지 일원	㉮과	ㄱㅋ	29,793	2022-08-29	2022-08-30
12	소규모	㉠㉢사업	청주시 청원구 ○○면 ○○리 00-00번지 일원	㉮과	ㄱㅌ	17,509	2021-12-01	2022-02-23
13	소규모	㉠㉣사업	청주시 청원구 ○○면 ○○리 공장부지 조성사업	㉮과	ㄱㅍ	11,936	2021-12-20	2022-01-25
14	소규모	㉠㉥사업	충북 청주시 ○○구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ㄱㅎ	36,901	2022-1-10	2022-3-24
15	소규모	㉡㉠사업	청주시 서원구 ○○면 ○○○○리 0000-0번지 일원	㉯과	ㄴㄱ	54,306	2022-03-15	2022-06-10
16	소규모	㉡㉡사업	충북 청주시 ○○면 ○○○○리 000번지 일원	㉯과	ㄴㄴ	18,612	2022-06-17	2022-08-23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 등 5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2>과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도록 환경부장관(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2>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소규모	㉡㉢사업	충주시 ○○읍 ○○리 산00번지일원	㉮과	ㄴㄷ	14,055	2022-03-07	2021-10-15 2022-05-24
2	소규모	㉡㉣사업	충주시 ○○읍 ○○리 00-0번지 일원	㉮과	ㄴㄹ	30,872	2022-10-26	2022-12-29
3	소규모	㉡㉤사업 (○○면 ○○리 000외00)	충주시 ○○면 ○○리 000번지 일원	㉮과	ㄴㅁ	10,302	2022-12-06	2022-12-12
4	소규모	㉡㉥사업	충주시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ㄴㅂ	7,416	2021-10-20	2021-10-27
5	소규모	㉡㉦사업	충주시 ○○읍 ○○리 산000-0번지 일원	㉮과	ㄴㅅ	17,294	2021-10-25	2021-12-16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다. 보은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등 4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3>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까지 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3>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소규모	㉡㉇사업	보은군 ○○리 산00-0번지 일원	㉮과	ㄴㅇ	10,886	2021-03-26	2021-05-07
2	소규모	㉡㉘조성	보은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ㄴㅈ	17,113	2021-04-06	2021-04-26
3	소규모	㉡㉙사업	보은군 ○○면 ○○리 산00-0번지 일원	㉮과	ㄴㅊ	24,210	2022-02-10	2022-03-08
4	소규모	㉡㉚사업	보은군 ○○면 ○○리 000번지 일원	㉮과	ㄴㅋ	24,158	2022-07-22	2022-10-11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라. 옥천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

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등 2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4>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까지 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4>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소규모	㉡㉢사업	옥천군○○면 ○○리 산0-00번지	㉮과	ㄴㅌ	14,546	2022-03-08	2022-04-19
2	소규모	㉡㉤사업	옥천군○○면 ○○리 산00번지	㉮과	ㄴㅍ	29,950	2022-04-05	2022-04-15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마. 영동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계획”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5>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까지 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5>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전략 개발	㉡㉣계획	영동군 전역	㉮과	영동군	199개 노선	2021-08-10	2023-07-25
2	소규모	㉢㉠사업	영동군 ○○면 ○○리 산00-0번지외 1필지	㉮과	ㄴㅎ	22,270	2022-07-06	2022-07-06
3	소규모	㉢㉡사업	영동군 ○○면 ○○리 산00-00번지	㉮과	ㄷㄱ	29,733	2022-10-05	2022-11-21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바. 진천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 등 7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6>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까지 환경부장관(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6>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소규모	㉣㉣사업	충북 진천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ㄷㄴ	28,273	2022-03-11	2022-05-31
2	소규모	㉣㉤사업	충청북도 진천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과	ㄷㄷ	21,007	2022-04-25	2022-12-22
3	소규모	㉣㉥조성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산104번지 일원	㉮과	ㄷㄹ	28,390	2022-06-27	2022-12-16
4	소규모	㉣㉦조성	충북 진천군 ○○읍 ○○리 산00-00번지 일원	㉮과	ㄷㅁ	18,074	2022-08-04	2023-02-06
5	소규모	㉣㉧조성	충북 진천군 ○○면 ○○리 산0번지 일원	㉮과	ㄷㅂ	10,895	2022-09-13	2022-12-13
6	소규모	㉣㉨사업	충북 진천군 ○○읍 ○○리 산00-0번지 일원	㉮과	ㄷㅅ	10,138	2022-12-13	2023-11-06
7	소규모	㉣㉩사업	진천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ㄷㅇ	17,324	2021-06-01	2021-06-18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사. 괴산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

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7>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까지 환경부장관(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7>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소규모	㉣㉱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면 ○○리 000-0번지 일원	㉮과	ㄷㅈ	29,950	2022-2-17	2022-3-11
2	소규모	㉣㉷조성	충청북도 괴산군 ○○면 ○○리 산000-0번지	㉮과	ㄷㅊ	29,500	2022-2-24	2022-3-23
3	소규모	㉣㉤사업 (ㄷㅋ)	충청북도 괴산군 ○○면 ○○○리 산00번지 일원	㉮과	ㄷㅋ	35,880	2022-5-4	2022-5-9
4	소규모	㉣㉲사업	충청북도 괴산군 ○○면 ○○리산00-0번지 일원	㉮과	ㄷㅌ	22,419	2022-5-20	2022-7-15
5	소규모	㉣㉶사업 (ㄷㅍ)	괴산군 ○○면 ○○리 산00-0번지	㉮과	ㄷㅍ	31658	2021-3-19	2021-3-29
6	전략 개발	㉥㉠사업	괴산군 ○○면 ○○리, ○○리, ○○리 일원	㉮과	ㄴㅋ	17555	2021-8-20	2021-12-27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아. 음성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까지 환경부장관(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소규모	㉣㉡사업 (㉢㉧)	음성군 ○○면 ○○리 000-0번지 일원	㉦과	㉢㉧	22,400	2022-11-03	2023-05-09
2	소규모	㉣㉤사업	충북 음성군 ○○면 ○○리 000번지 일원	㉦과	㉣㉠	29,713	2021-06-28	2021-10-20
3	소규모	㉣㉣사업	충청북도 음성군 ○○면 ○○리 산00-0번지 일원	㉦과	㉣㉡	31,472	2021-12-15	2022-02-18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자. 단양군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장 등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대상사업(대상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요청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였을 때에는 협의내용의 반영결과(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를 30일 이내(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한 날부터)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인 “㉣㉤사업” 등 9건의 사업에 대하여 <표>와 같이 사업계획의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하였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내용의 반영 결과 통보기한인 30일을 초과하여 충청북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까지 환경부장관(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 환경영향평가등 협의내용 반영결과 미통보 현황

번호	평가 구분	사업명	소재지	승인기관 (부서명)	사업자	사업규모 (㎡)	평가 협의일	사업계획 승인일
1	소규모	㉣㉤사업	(시점) 단양군 ○○면 ○○리 000(종점)충청북도 단양군○○면 ○○리000-0	㉦과	단양군	10,179	2022-3-23	2022-3-23
2	소규모	㉣㉥사업	단양군 ○○면 ○○리 000-0 일원	㉦과	ㄹㄷ	20,353 (기)15,578 (금)4,77	2022-4-18	2022-6-28
3	소규모	㉣㉡업	단양군 ○○면 ○○리 000번지 외 5필지	㉦과	ㄹㄹ	27868	2022-6-9	2022-9-16
4	소규모	㉣㉢사업	단양군 ○○면 ○○리 00번지 일원	㉦과	ㄹㅁ	15,633	2022-8-25	2023-1-30

5	소규모	㉲㉿조성	단양군 ○○읍 ○○리 000-0번지 일원	㉦과	ㄹㅂ	29,909	2022-10-27	2023-5-1 2023-5-2
6	소규모	㉲㉾시설	단양군 ○○○면 ○○리 000번지 일원	㉦과	ㄹㅅ	54,022	2022-12-15	2023-1-20
7	소규모	㉲㉻사업	충북 단양군 ○○면 ○○리 산000번지 외 4필지	㉦과	ㄹㅇ	29,973	2021-3-26	2021-6-17
8	소규모	㉲㉣사업	충청북도 단양군 ○○면 ○○리 000-0번지 외 4필지	㉦과	ㄹㅈ	15,578	2021-8-30	2021-10-12
9	소규모	㉲㉤사업	충청북도 단양군 ○○○면 ○○리 000번지 일원	㉦과	ㄹㅊ	29,957	2021-12-9	2022-06-24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개발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환경부장관(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제　　목　**석면건축물 해체·제거 사업장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시장·군수·구청장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석면안전관리법」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는 자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구청장은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흥덕구, 서원구, 청원구)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고, <표-2>와 같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1>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과태료 부과 내역

관련기관	건축물명 (설비명)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석면함유 자재면적 (㎡)	측정 대상사업 종류	측정 여부	과태료 부과여부
		시작일	종료일				
흥덕구	ⓐ지구 도시개발사업	2021-01-02	2022-12-31	11,629	제1호 제3호	×	×

※ 청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표-2>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공개 내역

관련기관	건축물명 (설비명)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석면함유 자재면적 (㎡)	측정 대상사업 종류	측정 여부	측정결과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흥덕구	ⓐ지구 도시개발사업	2021.01.02	2022.12.31	11,629	제1호 제3호	×	×
서원구	ⓑ대 대학본부	2022.01.01	2022.04.30	6,231	제1호	×	×
청원구	ⓒ대 공과대학 신관	2023.08.11	2023.09.10	8,500	제1호	×	×

※ 청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3>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공개 내역

건축물명 (설비명)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석면함유 자재면적 (㎡)	측정 대상사업 종류	측정 여부	측정결과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0길 000 0층	2021.6.21	2021.7.31	12,568	제1호	×	×

※ 충주시 ㉮과 제출 자료 재구성

다. 옥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4>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공개 내역

건축물명 (설비명)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석면함유 자재면적 (㎡)	측정 대상사업 종류	측정 여부	측정결과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	2020.07.04	2020.07.30	5,801	제1호	×	×

※ 옥천군 ㉮과 제출 자료 재구성

라. 영동군의 경우

위 관서(㉰과)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5>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공개 내역

건축물명 (설비명)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석면함유 자재면적 (㎡)	측정 대상사업 종류	측정 여부	측정결과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리 000-0	2022.03.26	2022.04.01	11,200	제1호	×	×

※ 영동군 ㉱과 제출 자료 재구성

마.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과)에서는 아래 <표-6>와 같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6>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공개 내역

건축물명 (설비명)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석면함유 자재면적 (㎡)	측정 대상사업 종류	측정 여부	측정결과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	2023.07.06	2023.12.30	5,092	제1호	×	×

※ 괴산군 ㉲과 제출 자료 재구성

바. 음성군의 경우

위 관서(㉳과)에서는 아래 <표-7>와 같이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석면 비산 정도를 측정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표-7>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공개 내역

건축물명 (설비명)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		석면함유 자재면적 (㎡)	측정 대상사업 종류	측정 여부	측정결과 공개여부
	시작일	종료일				
㉢ 음성공장	2022.08.15	2022.10.05	7,807	제1호	×	×

※ 음성군 ㉳과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옥천군수, 영동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는**

[주의]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및 그 결과의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

제　　목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기 관 명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르면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토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한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 등을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된 사실을 발견, 또는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제출한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환경부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는 토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아래의 <표-1>와 같이 "㉠" 등 4건의 사업에 대한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등을 지방환경관서의 장(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1>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일	정화명령 기간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일 (정화토양)
㉠	청원구 ○○읍 ○○리 사서함 000-00	2017-03-10	2017-03-10 ~ 2020-03-08	2019-07-12 (4,121㎡)
㉡	○○면 ○○리 0000번지 일원	2017-12-15	2017-12-15 ~ 2019-07-01	2019-05-08 (3,577.38㎡)
㉠	청원구 ○○읍 ○○리 일원	2018-05-03	2018-05-03 ~ 2020-05-03	2020-03-02 (2,413.8㎡)
㉢	서원구 ○○면 ○○로 0000	2023-04-20	2023-04-20 ~ 2024-06-30	2023-10-11 (109.43㎡)

※ 청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2) 가. 정밀조사명령의 경우 : 부지 및 주변지역 오염범위 조사명세서,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나. 시설의 설치·개선·이전 또는 정화조치 명령의 경우 : 개선명세서, 토양정화검증보고서, 각 개선지점별 토양오염도 검사 실시 후 이전된 토양처리내용 증명자료, 토양정화검증서

나. 보은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토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아래의 <표-2, 3>와 같이 "㉣" 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2> 토양정밀조사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명령일	조사기간 (오염토량)	정밀조사 보고서 제출일
㉣	○○면 ○○리 000번지 외 17필지	2018-08-13	2018-08-13 ~ 2019-02-12 (2,780.1㎥)	2018-12-04

※ 보은군 제출 자료 재구성

<표-3>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일	정화명령 기간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일 (정화토량)
㉣	○○면 ○○리 000번지 외 17필지	2018-08-13	2018-12-10 ~ 2020-12-09	2019-11-28 (2,780.1㎥)

※ 보은군 제출 자료 재구성

다. 증평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토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아래의 <표-4>와 같이 “㉤” 에 대한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4>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일	정화명령 기간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일 (정화토량)
㉤	○○읍 ○○로 00	2019-12-17	2019-12-19 ~ 2023-12-16	2023-12-06 (5121㎥)

※ 증평군 제출 자료 재구성

라. 진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토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아래의 <표-5>와 같이 “㉦” 등 4건에 대한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5>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일	정화명령 기간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일 (정화토량)
㉦	○○읍 ○○로 000	2018-07-20	2018.07.20. ~ 2019.01.15.	2019-01-14 (163.01㎥)
㉧	○○읍 ○○○0길 00	2018-12-01	2018.12.01. ~ 2019.12.01.	2019-05-23 (11.54㎥)

㉩	○○읍 ○○로 0000-000	2021-06-02	2021-11-29. ~ 2023.05.20.	2022-08-18 (1266㎥)
㉾	○○읍 ○○로 0-0	2021-08-24	2021-08-30 ~ 2022-08-29	2022-01-17 (233.93㎥)

※ 진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마.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토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아래의 <표-6>와 같이 "㉾"에 대한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6>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일	정화명령 기간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일 (정화토량)
㉾	○○면 ○○리 000, 000, 000, 000-0, 000, 000, 산00-0	2022-11-21	2022-11-21 ~ 2023-05-20 (1,860.33㎥)	2023-01-04

※ 괴산군 제출 자료 재구성

바. 음성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토양오염사고 등에 대한 지방환경관서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나아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화책임자로부터 제출받은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아래의 <표-7, 8>와 같이 “㉶” 등 3건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원주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표-7> 토양정밀조사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명령일	조사기간 (오염토량)	정밀조사 보고서 제출일
㉶	○○면 ○○리 000, 000-0, 00-0	2019-12-24	2019-12-28 ~ 2020-06-25 (257㎡)	2020-06-04

※ 음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표-8>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 미통보 현황

사업명	소재지	오염토양 정화명령일	정화명령 기간	이행완료보고서 제출일 (정화토량)
㉣	○○면 ○○리 000, 000-0, 00-0	2021-01-18	2020-06-05 ~ 2021-06-04	2020-12-31 (257㎡)
㉤	○○읍 ○○리 000 일원	2023-08-18	2020-10-07 ~ 2023-10-06	2023-06-27 (429.439㎡)
㉥	○○면 ○○리 000, 000-0	2022-04-01	2021-06-18 ~ 2021-12-17	2022-03-25 (222.28㎡)

※ 음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보은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는**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정화조치 이행완료보고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에게 통보하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법령 위반 사업소 주민세(중과) 미부과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세무 관련 부서는 주민세의 사업소분을 매년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부과하고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로서 최근 1년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이하 “개선명령등”이라 한다)을 받은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중과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81조(세율)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하고,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따르면 법 제81조제1항제

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란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로서 「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법」 제82조(세액계산)에 따르면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에 따르면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법률에 따라 하는 조사·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등의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130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에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

1) 1.「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2.「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3.「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 사업소로서 같은 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소 4.「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5.「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사목의 배출시설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운영 허가 대상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소 6.「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은 사업소로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업소

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해당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흥덕구, 서원구, 청원구)의 경우

청주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청주시(각 구청 포함)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부과 업무는 청주시(각 구청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청주시(각 구청 ㉮과)에서는 청주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각 구청 ㉮과)는 아래 <표-1>와 같이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9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29,598,25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1>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계						13,168,750
청주시	-	청주시 흥덕구 ○○면 ○○○○로 000-00	2021-03-31	개선명령	52,675	13,168,750

청주시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로000번길 00 (○○동)	2022-01-27	조업정지 10일	395	98,750
충북도청	-	청주시 흥덕구 ○○대로000번길 00	2021-12-07	조업정지 10일	13,093	3,273,250
충북도청	-	청주시 흥덕구 ○○면 ○○○0○로 000	2022-03-28	개선명령	5,302	1,325,500
충북도청	-	청주시 흥덕구 ○○로 000	2022-11-07	개선명령	27,392	6,848,000
청주시	-	서원구 ○○면 ○○0길 000	2020-12-31	개선명령	5,178.44	1,294,500
청주시	-	청주시 청원구 ○○읍 ○○○○로 00-0	2021-10-22	조업정지	4,054	2,027,000
충청북도	-	청주시 청원구 ○○읍 ○○○○0길 000	2021-08-17	개선명령	590.25	147,500
충청북도	-	청주시 청원구 ○○읍 ○○○길 00-00	2022-07-25	개선명령	5,660	1,415,00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충주시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충주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충주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2>와 같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2,093,0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2>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계						2,093,000
충주시	-	충주시 ○○○000-0	2020-09-23	개선명령	912	228,000
충주시	-	충주시 ○○읍 ○○○○0000-00	2022-09-28	개선명령	7,460.46	1,865,00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다. 제천시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제천시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제천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제천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3>과 같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20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49,244,25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3>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계						49,244,250
제천시	-	제천시 ○○길 00	2021-05-17	개선명령	3,989	997,250
제천시	-	제천시 ○○면 ○○로 0000	2021-12-08	사용중지 명령	364	91,000
제천시	-	제천시 ○○면 ○○○00길 00	2022-07-07 2022-07-20 2022-08-31 2022-09-16	개선명령 (1차) 개선명령 (1차) 개선명령 (2차) 조업정지 5일	3,457	864,250
제천시	-	제천시 ○○로 00	2022-07-20	개선명령	6,637	1,659,250
제천시	-	제천시 ○○면 ○○○00길 00	2022-08-02	개선명령	14,700	3,675,000
제천시	-	제천시 ○○면 ○○○○로 000	2022-09-13	조업정지 5일	1,807	451,750
제천시	-	제천시 ○○○0길 000	2022-10-04	개선명령	10,266	2,566,500
제천시	-	제천시 ○○○○00안길 00	2022-10-04	개선명령	3,613	903,250
제천시	-	제천시 ○○읍 ○○로 00	2022-10-28	개선명령	7,511	1,877,750
제천시	-	제천시 ○○면 ○○○○로 000	2022-11-14	사용중지 명령	1,122	280,500
제천시	-	제천시 ○○○0길 00	2023-04-17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2,991	747,750
충북도청	-	제천시 ○○○○○로 00	2020-03-03	개선명령	4,272	1,067,750
충북도청	-	제천시 ○○○○○로 00	2020-03-20	개선명령	5,351	1,337,750
충북도청	-	제천시 ○○○○○로 000	2020-03-20	개선명령	14,487	3,621,750
충북도청	-	제천시 ○0○○○○○로 00	2020-07-09	개선명령	2,515	628,750
충북도청	-	제천시 ○○○○○0로 00	2021-04-13	개선명령	15,733	3,933,250

충북도청	-	제천시 ○○○○○로 000	2021-11-29	개선명령	40,358	10,089,500
충북도청	-	제천시 ○○○○○로 000	2022-11-03	사용중지 명령	746	186,500
충북도청	-	제천시 ○○○○○로 000	2022-10-28	개선명령	40,358	10,089,500
충북도청	-	제천시 ○○○○○로 000	2022-11-24	개선명령	15,821	4,175,25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라. 영동군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영동군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영동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영동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4>와 같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5,390,5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4>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영동군	-	영동군 ○○면 ○○○○길 00	2021-04-12.	개선명령 (1차)	21,562	5,390,50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마. 증평군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증평군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증평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증평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5>와 같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2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5,438,25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5>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계						5,438,250
증평군	-	증평군 ○○면 ○○길 000	2021.11.01	개선명령	4,711	1,177,750
증평군	-	증평군 ○○면 ○○로 00	2021.12.29	개선명령	17,041	4,260,50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바. 진천군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진천군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진천군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진천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6>과 같이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18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52,496,5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6>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계						52,496,500
진천군	-	진천군 ○○읍 ○○로 000-0	2021-08-09	개선명령	8,386	2,096,500
진천군	-	진천군 ○○면 ○○길 00-00	2021-09-03	개선명령	11,001	2,750,250
진천군	-	진천군 ○○면 ○○○○로 0000	2021-10-13	개선명령	20,948	5,237,000
진천군	-	진천군 ○○면 ○○0길 00	2021-11-04	조업정지 10일	3,837	959,250
진천군	-	진천군 ○○면 ○○로 000-00	2021-11-22	조업정지 10일	1,300	325,000
진천군	-	진천군 ○○면 ○○길 000	2021-12-29	조업정지 15일	1,022	255,500
진천군	-	진천군 ○○면 ○○로 000	2021-12-20	개선명령	5,026	1,256,500
진천군	-	진천군 ○○○면 ○○0길 00	2021-12-20	개선명령	10,717	2,679,250
진천군	-	진천군 ○○면 ○○로 000	2022-01-03	개선명령	17,766	4,441,500
진천군	-	진천군 ○○○면 ○○○○○0길 00	2022-03-14	조업정지 5일	11,562	2,890,500
진천군	-	진천군 ○○면 ○○○○로 0000	2022-04-07	개선명령	20,948	5,237,000

진천군	-	진천군 ○○읍 ○○로 000-00	2022-04-18	개선명령	35,169	8,792,250
진천군	-	진천군 ○○면 ○○○○로 0000	2022-05-17	조업정지 5일	24,289	6,072,250
진천군	-	진천군 ○○읍 ○○로 00-00	2022-05-02	개선명령	14,413	3,603,250
진천군	-	진천군 ○○읍 ○○로 000-00	2022-06-13	개선명령	6,101	1,525,250
진천군	-	진천군 ○○읍 ○○로 000-00	2022-06-13	개선명령	2,287	571,750
충북도청	-	진천군 ○○읍 ○○○○0로 00-0	2022-01-10	사용중지	1,910	477,500
충북도청	-	진천군 ○○○○0로 00-00	2022-01-03	조업정지 10일	13,304	3,326,00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사.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괴산군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괴산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괴산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7>과 같이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402,75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7>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충북도청	-	괴산군 ○○면 ○○○○0길 00	2022-06-27	개선명령	1,611	402,75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아. 음성군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음성군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음성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음성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8>과 같이 개선명령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세 2,286,9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8>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계						2,286,900
음성군	-	음성군 ○○읍 ○○길 0	2022-07-05	사용중지 명령	1,172.5	322,300
음성군	-	음성군 ○○읍 ○○로 0000	2022-07-19	개선명령	1,160	638,000
충북도청	-	음성군 ○○면 ○○○○로 000-00	2023-02-21	개선명령	4,824	1,326,60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자. 단양군의 경우

위 관서에 소재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관리·감독 업무는 충청북도 또는 음성군에서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각각 담당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에 따른 배출업소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부과 업무는 음성군(㉦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과)에서는 음성군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서 무허가·미신고,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으로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년도 주민세 사업소분을 중과(1제곱미터당 250원→ 500원)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과)는 아래 <표-8>과 같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3개소에 대하여 주민세 사업분 중과세 63,481,500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8> 주민세 사업소분 중과 부과 대상 배출업소 현황

행정처분 기관	배출업소명	소재지	행정처분일	행정처분	사업장 면적(㎡)	미부과 중과세액(원)
계						63,481,500
단양군	-	단양군 ○○읍 ○○길 000	2023-01-04	개선명령	242,695	60,673,750
단양군	-	단양군 ○○면 ○○○○○○길 00	2023-01-13 2023-02-21	개선명령	11,231	2,807,750

※ 충청북도 ㉱실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누락된 주민세(사업소분)에 대하여 징수시효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징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환경부서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지방세 징수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수질오염물질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물환경보전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47조, 제81조에 따르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규모별 금액을 더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며, 특히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및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표-1>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제1종 사업장은 400만원, 제2종 사업장은 300만원, 제3종 사업장은 200만원, 제4종 사업장 100만원,

제5종사업장은 50만원(이하 “사업장 규모별 금액”이라 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기준

기준 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다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등에게 부과하는 경우 또는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규모별 금액을 더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일 기준초과배출량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경우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하고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은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 계산하여야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표-2>와 같이 각각 최저 3.0에서 최고 7.0까지, 1에서 2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표-2>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

구분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200% 미만	200% 이상 300% 미만	3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청정지역 및 가 지역	나 지역	특례 지역
유기물질 등 19종[2]	3.0	4.0	4.5	5.0	5.5	6.0	6.5	7.0	2	1.5	1

2) 유기물질,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크롤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 질소, 총 인 등 18종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충청북도의 경우

위 관서(충청북도 ㉮출장소)에서는 <표-3>과 같이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부과 사업장이 발생폐수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3]하여 처리하고 있다는 사유로 '나'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별 부과계수(1.5)를 적용하여 6건의 초과배출부과금 30,813,290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지역별 부과계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청정, 가, 나, 특례)의 부과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의 1. 가호의 지역(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4] 등)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가' 지역 2.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나' 지역 1.5)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초과배출부과금 7,271,11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표-3> 사업장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

연번	사업장명	시설위치	부과일자	오염물질	배출농도(㎖/L)	기 부과내역		적정 부과내역		과소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부과금액	
합계							30,813,290		4,646,470	411,620
1	-	제천시 ○○동 0000	20.3.19	T-N	88.355	1.5(나)	1,490,670	2(가)	1,654,230	163,560
2	-	제천시 ○○동 0000	20.7.23	SS	167.5	1.5(나)	2,744,180	2(가)	2,992,240	248,060

3) (시행규칙 별표13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정상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나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4) 환경부 고시 제2007-107호(2007. 7. 6.)

3	-	제천시 ○○동 0000	21.4.6	COD	214.5	1.5(나)	15,310,330	2(가)	19,747,110	4,436,780
4	-	제천시 ○○동 000	21.4.22	T-N	84.42	1.5(나)	1,051,920	2(가)	1,069,230	17,310
5	-	제천시 ○○동 000	21.6.8	T-N	73.32	1.5(나)	1,065,460	2(가)	1,087,280	21,820
6	-	제천시 ○○동 000	23.1.2	BOD	177.0	1.5(나)	9,150,730	2(가)	11,534,310	2,383,580

※ 충청북도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음성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표-4>과 같이 수질 초과배출부과금에 대하여 부과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2. 가. 2). 비고 2.[5]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특례'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1.0)를 적용하여 5건의 초과배출부과금 13,369,370원을 부과하였다.

그런데 지역별 부과계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청정, 가, 나, 특례)의 부과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3의 1. 가호의 지역(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등)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해당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가' 지역 2.0)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지역의 지역별 부과계수('특례' 지역 1.0)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초과배출부과금 11,939,100원을 과소부과하였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특례지역의 기준을 적용

<표-4>사업장별 초과배출부과금 부과내역

연번	사업장명	시설 위치	부과 일자	오염물질	배출농도 (㎖/L)	기 부과내역		적정 부과내역		과소부과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부과 금액	지역별 부과계수	부과 금액	
합계							13,369,370		25,308,470	11,939,100
1	-	○○읍 ○○로 0000	20.7.20	COD	86.9	1(특례)	1,249,140	2(가)	2,498,290	1,249,150
				SS	98		1,975,870		3,951,750	1,975,880
2	-	○○면 ○○로 000번길00	20.8.24	COD	41.9~56.9	1(특례)	2,102,160	2(가)	2,204,400	102,240
3	-	○○읍 ○○로 0000	20.10.20	COD	46.5	1(특례)	81,980	2(가)	163,960	81,980
4	-	○○면 ○○○○ 0길0	21.3.16	BOD	420	1(특례)	6,345,620	2(가)	12,691,250	6,345,630
				SS	68		485,710		971,420	485,710
5	-	○○면 ○○로 000-00	23.4.4	TOC	53.6	1(특례)	842,010	2(청정)	2,493,060	1,651,050
				SS	39.5		286,880		334,340	47,460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음성군수는

[시정]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미실시

기 관 명　진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물환경보전법」 제50조의2,「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 점검 및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물환경보전법」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물환경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0조의2(기술진단 등)에 따라 시행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행자는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악취방지법」제16조의2(기술진단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5년마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악취저감 등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천군(㉮과)은 진천군 ○○면 ○○○로 ○○○-○ 소재 ⓐ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준공 후 5년마다 시설 관리상태에 대한 기술진단과 악취에 관한 기술진단을 각각 실시하여야 함에도 준공일(2018. 2.)로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실시 현황

처리장명	용량	처리구역	착공일	준공일	사업비(백만원)			기술진단 시행년도	실시여부	
					총계	국비	지방비		시설	악취
ⓐ	300㎥/일	ⓑ산업단지	2012.2	2018.2	4,492	3,144	1,348	2023년	미시행	미시행

※ 진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는

[시정]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요구 및 통보(시정완료)

제　　목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대기관리권역[1]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 등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세탁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2]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1) 중부권의 경우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임
2) 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4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3]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시·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개선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지방환경서기 A는 2022. 1. 13. 부터 2023. 7. 16. 까지 청주시(㈜과)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관리·감독” 하는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청주시(㈜과)에서는 청주시 서원구 ○○면 ○○로 0000-0에 위치한 ㄱ, 청주시 서원구 ○○면 ○○로 0000-0에 위치한 ㄴ, 청주시 서원구 ○○로 0000에 위치한 ㄷ 등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검사 결과 <표>와 같이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검사기관에서 통보받았음에도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지 않았다.

3) 주유소 주유시설의 경우 회수설비 처리효율은 90% 이상 등의 기준을 말함

<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방지를 위한 시설의 검사 결과

사업명	소재지	검사구분	검사분야	검사일
㉠	청주시 서원구 ○○면 ○○로 0000-0	정기검사-재검(1)	유증기회수율 검사	2022. 8. 2.
㉡	청주시 서원구 ○○면 ○○로 0000-0	정기검사-일반	유증기회수율 검사	2022. 8. 2.
㉢	청주시 서원구 ○○로 0000	정기검사-일반	압력 감쇄·누설 검사, 유증기회수율 검사	2022. 8. 2.

다만, 위 관서는 정부합동감사 기간(2024. 3. 4.)중에 "㉡", "㉢"에 대하여 행정처분(개선명령 1차)을 하였으며, "㉠"은 2023년 시설개선(유중기회수설비 정기검사 적합판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A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통보(시정완료)] 위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함으로써 시정이 완료되었으나,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하여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옥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다중이용시설[1]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1년에 한 번 [별표3]의 오염물질 항목은 2년에 한 번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1)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모든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한다),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한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2]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 측정시기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의 소유자등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 외 시설의 소유자등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내공기질을 측정(2016. 12. 22. 신설)하고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

2)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측정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측정결과의 보고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종합정보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에게는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3]하도록 되어 있다.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충주시의 경우

지방행정서기 A는 2022. 1. 13. 부터 2023. 2. 28. 까지 충주시(㉮과)에서 “다중이용시설(㉠병원 등)을 관리・감독” 하는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다 2023. 3. 1. 퇴직하였다.

위 관서(㉮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2021년도, 2022년도)하지 아니하고 측정결과를 보고 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차 200만원, 2차 350만원, 3차 500만원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표 1>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위반 현황

연번	시설	시설명	주소	소유자	인가일자 (준공일자)	면적 (㎡)	위반사항
1	노인요양 시설	㉠	충주시 ○○○길0	-	2021.3.15. (2006.3.19.)	1,038	2021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
2	노인요양 시설	㉡	충주시 ○○○○로 000	-	2021.6.11. (1996.12.11.)	1,094	2021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
3	의료기관	㉢	충주시 ○○대로 0	-	2016.7.28. (2016.4.20.)	3,170	2022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
4	어린이집	㉣	충주시 ○○○길 00-0	-	2013.12.2. (2006.4.27.)	527	2022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
5	의료기관	㉤	충주시 ○○○길 0-0	-	1993.6.14. (1993.3.10.)	1,761	2022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

※ 충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옥천군의 경우

지방환경주사보 B는 2019. 5. 7. 부터 2022. 2. 14. 까지 옥천군(㉮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환경주사보 C는 2022. 8. 9.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옥천군(㉮과)에서 “다중이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위 관서(㉮과)에서는 아래 <표-2>과 같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2021년도, 2022년도)하지 아니하고 측정결과를 보고하지 않아 관련 법률을 위반하였음에도 과태료 부과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위반 현황

연번	시설	시설명	주소	소유자	인가일자 (준공일자)	면적 (㎡)	위반사항
1	노인요양시설	㉥	옥천군 ○○읍 ○○로 000-00	-	2011.12.07.	1,997	2021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
2	어린이집	㉦	옥천군 ○○길 000-0	-	2005.1.28.	493	2022년 실내공기질 미측정 및 미보고

※ 옥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시정] 실내공기질 측정·보고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조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는

[훈계] 관련자 B, C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실내공기질 측정·보고하지 않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 조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시정요구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기 관 명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를 하고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폐기물의 처분기준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관련 공무원은 현장확인이나 정기 지도점검 시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확인한 경우 위반내용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위반내용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내부 검토・보고를 거쳐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중간처분업, 폐기물최종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폐기물최종재활용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구분되어 있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9조(보고・검사 등)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 관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대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 내용에 따라 상응하는 경고,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벌칙) 내지 제66조(벌칙) 및 제68조(과태료)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사항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지방환경주사 A는 2021. 1. 11. 부터 2021. 7. 4. 까지, 2022. 1. 10. 부터 2023. 1. 11. 까지 제천시(㈜과)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환경서기 B는 2021. 7. 5. 부터 2022. 1. 9. 까지 제천시(㈜과)에서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다 2023. 1. 6. 퇴직하였다.

제천시(㈜과)는 아래 <표>와 같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을 위반한

㉠ 등 11개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60조 및 제68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과태료)을 사전통지 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는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예정된 행정처분 시행시 '과태료 100만원(1차)'의 처분과 함께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제1항 [별표21] 2. 다목(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경고(1차)' 처분도 하여야 하나 위 관서는 '경고(1차)' 처분을 하지 않았다.

<표>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미 집행 행정처분 현황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위반 법률	위반 확인일	사전 통지일	예정(사전통지)된 처분내용	미 집행 행정처분
1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1.2.16	2021.3.2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2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1.3.29	2021.4.5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3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1.4.21	2021.4.26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4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1.6.11	2021.6.18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5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1.8.24	2021.8.24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6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2.1.21	2022.1.25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7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2.1.25	2022.1.26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8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2.2.8	2022.2.8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9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2.5.16	2022.5.19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10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2.5.25	2022.5.25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11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미이행	제25조 11항	2022.11.23	2022.11.25	경고, 과태료100만원	경고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은**

[훈계] 관련자 A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규정에 따라 엄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 미준수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공사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대상에 해당하는 건설공사[1]를 발주할 때에는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2]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

1) 「농어촌도로 정비법」 따른 농어촌도로, 「도로법」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도로 중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 이상이거나 포장면적이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 이상인 도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에 따른 하수관로의 설치공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주차장법」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2017.9.27. 기준)

2) 순환골재는 골재 소요량의 40%이상,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은 제품소요량의 40%이상을 의무사용량으로 고시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발주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의 사유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나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자에게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등을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하고, 순환골재등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순환골재등 사용계획서 제출증명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르면 배출신고자는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고서의 제출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전송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6조에 따르면 순환골재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순환골재등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 1번~6번, ㉯과 7번~14번, 상당구청(㉰과) 15번~20번)에서 발주한 “㉠㉠공사” 등 20건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

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공사" 등 20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 및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의 미준수 내역

연번	건설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 반영(준수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제출여부	준공 여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	㉠㉠공사	2016-05-10	2020-03-16	미반영 (24%)	미반영 (11%)	미제출	미제출	준공
2	㉠㉡공사(2차)	2017-04-26	2020-09-08	미반영 (25%)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3	㉠㉢공사	2020-12-21	2023-05-22	미반영 (36%)	미반영 (30%)	미제출	미제출	준공
4	㉠㉣공사	2020-06-24	2021-12-04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5	㉠㉤공사	2020-06-22	2023-04-27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6	㉠㉥공사(1단계)	2022-09-13	2025-01-08	반영	반영	미제출	-	미준공
7	㉠㉦사업	2022-11-28	2024-12-22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미준공
8	㉠㉧사업(3단계)	2022-06-20	2024-12-13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미준공

9	㉠㉷사업	2022-03-07	2024-09-21	반영	미반영 (39%)	미제출	미제출	미준공
10	㉠㉸사업	2023-03-06	2025-08-21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미준공
11	㉠㉹사업	2018-05-04	2021-12-29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12	㉠㉺사업	2016-07-21	2020-08-12	반영	미반영 (37%)	제출	미제출	준공
13	㉠㉻사업	2016-06-07	2020-05-09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14	㉠㉼사업	2020-12-28	2023-12-15	반영	-	제출	미제출	준공
15	㉡㉠공사	2021-04-14	2021-05-26	미반영 (0%)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6	㉡㉡공사	2021-04-15	2021-06-13	미반영 (0%)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7	㉡㉢공사	2022-05-06	2022-11-03	미반영 (0%)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8	㉡㉣공사	2023-03-31	2023-06-20	미반영 (0%)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9	㉡㉤공사	2023-06-12	2023-09-28	반영	-	미제출	미제출	준공
20	㉡㉥공사	2023-08-16	2023-12-19	반영	-	미제출	미제출	준공

※ 청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충주시(㉮과)에서 발주한 “㉡㉬사업” 등 8건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사업” 등 8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의 미준수 내역

연번	건설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 반영(준수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제출여부	준공여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	㉡㉦사업	2022.5.26.	2022.11.21.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2	㉡㉧사업 (오수관로)	2021.7.12.	2023.7.11.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3	㉡㉧사업 (하수처리시설)	2021.12.8.	2023.12.7.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4	㉡㉤사업	2022.5.16.	2022.11.11.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5	㉡㉣사업 (하수관로)	2020.6.9.	2022.5.29.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6	㉡㉣사업 (하수처리시설)	2020.6.9.	2022.5.29.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7	㉡㉢사업	2018.6.27.	2020.8.17.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8	㉡㉡사업 (토목및기계)	2019.2.11.	2021.3.31.	반영	반영	제출	미제출	준공

※ 충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다. 보은군의 경우

위 관서(㉮소 1번~5번, ㉯과 6번)에서 발주한 “㉡㉠사업(ⓐ)” 등 6건의 건설

공사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3>과 같이 "㉡㉲사업(ⓐ)" 등 6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 및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의 미준수 내역

연번	건설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 반영(준수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제출여부	준공 여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	㉡㉲사업(ⓐ)	2019.11.07	2021.11.05	반영(67%)	-	제출	미제출	준공
2	㉡㉯사업(ⓓ,ⓔ)	2020.06.05	2022.06.04	반영(67%)	반영(62%)	제출	미제출	준공
3	㉡㉲사업(ⓑ)	2020.05.21	2021.05.20	반영(67%)	반영(67%)	제출	미제출	준공
4	㉢㉠사업(ⓕ)	2021.05.03	2022.05.09	반영(67%)	-	제출	미제출	준공
5	㉡㉲사업(ⓒ)	2021.10.18	2023.05.26	반영(67%)	-	제출	미제출	준공
6	㉢㉡사업	2020.7.29	2022.12.25	미반영(17%)	미반영(26%)	제출	미제출	준공

※ 보은군 제출 자료 재구성

라. 옥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 1번~3번, ㉯과 4번, 5번)에서 발주한 “㉣㉣공사” 등 5건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4>와 같이 “㉣㉣공사” 등 5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 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 및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 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4>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의 미준수 내역

연번	건설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 반영(준수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제출여부	준공 여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	㉣㉣공사	2019-09-16	2020-06-23	미반영 (0%)	미반영 (0%)	미제출	미제출	준공
2	㉣㉤공사	2020-03-04	2021-12-13	미반영 (0%)	미반영 (0%)	미제출	미제출	준공
3	㉣㉥공사	2020-11-17	2021-11-11	미반영 (0%)	미반영 (0%)	미제출	미제출	준공
4	㉣㉦사업	2020-07-23	2021-04-15	미반영 (33%)	반영 (100%)	미제출	미제출	준공
5	㉣㉧사업	2022-03-02	2022-09-01	미반영 (0%)	-	미제출	미제출	준공

※ 옥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마. 영동군의 경우

영동군(㈜과)에서 발주한 “㉣㉧사업” 등 3건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환골재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 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5>와 같이 “㉣㉧사업” 등 3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순환골재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사용계획서 및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5>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의 미준수 내역

연번	건설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 반영(준수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제출여부	준공 여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	㉣㉧사업	2023.1.4	2025.2.3	미반영 (29%)	-	미제출	-	미준공
2	㉣㉳사업	2023.1.4	2025.2.2	미반영 (20%)	-	미제출	-	미준공
3	㉣㉳사업	2018.8.13	2020.10.3	미반영 (23%)	-	미제출	미제출	준공

※ 영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바. 음성군의 경우

음성군(㈜과)에서 발주한 “㉦㉣공사” 등 13건의 건설공사는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순환골재등을 사용용도에 따른 의무사용량 이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착공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순환골재등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아래 <표-6>과 같이 “㉦㉣공사” 등 13건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 준공검사 전에 제출하여야 하는 순환골재등의 용도별 사용량 등을 포함한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6>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 등의 미준수 내역

연번	건설공사명	착공일	준공(예정)일	설계 반영(준수여부)		사용계획서 제출여부	사용실적 제출여부	준공 여부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1	㉦㉣공사	2019.03.13	2020.05.08	미반영 (0%)	-	미제출	미제출	준공
2	㉦㉤공사	2019.12.23	2020.06.22	반영	-	미제출	미제출	준공
3	㉦㉥공사	2020.04.06	2021.05.31	미반영 (19%)	-	미제출	미제출	준공
4	㉦㉧공사	2020.04.20	2021.06.04	미반영 (37%)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5	㉥㉠공사(3차)	2020.04.27	2021.04.09	반영	-	미제출	미제출	준공
6	㉥㉡공사	2020.04.27	2021.05.04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7	㉥㉦공사	2020.11.25	2021.12.15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8	㉣㉣공사(2차)	2021.04.26	2023.12.18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9	㉣㉤공사	2021.10.25	2022.11.10	미반영 (0%)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10	㉣㉦공사(2차)	2021.11.18	2022.06.23	반영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1	㉣㉧공사(2차)	2022.02.10	2023.06.22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12	㉣㉩공사(1차)	2022.09.19	2023.12.27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13	㉣㉭공사(1차)	2022.10.05	2023.11.02	반영	반영	미제출	미제출	준공

※ 음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음성군수는**

[시정]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하 “순환골재등”이라 한다) 등의 의무사용 건설공사 발주시 순환골재등을 의무사용량 이상 사용토록 하고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발주기관(부서)에 제출토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건설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배출자는 준공 후 15일 이내에(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이하 “올바로시스템[1]”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1)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최종처리까지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폐기물의 발생억제, 재활용, 적정처리를 통한 폐기물의 전 생애적 관리를 하나로 통합한 IT기반 폐기물 종합관리 시스템 임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배출신고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제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송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6조제3항 제6호에 따르면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50-70-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2]하도록 되어 있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상당구,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는 아래의 <표-1>과 같이 “㉠㉠공사” 등 63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청주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에게 위임됨

<표-1> 청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실적보고 미제출 내역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3	
<상당구>									
1	㉮과	㉠㉠공사	청주시장	2021-02-03	2021-06-02	미제출			준공
2	㉮과	㉠㉡ 소파보수 폐기물처리용역 연간단가계약	청주시장	2021-02-19	2021-11-30	미제출			준공
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3-24	2021-05-22	미제출			준공
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3-31	2021-06-28	미제출			준공
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연간단가)	청주시장	2021-01-30	2021-12-31	미제출			준공
6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4-16	2021-07-14	미제출			준공
7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4-13	2021-07-01	미제출			준공
8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4-23	2021-06-21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3	
9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4-16	2021-07-12	미제출			준공
10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5-14	2021-08-09	미제출			준공
1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1-06-21	2022-01-16	미제출			준공
12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연간단가계약	청주시장	2022-03-16	2022-12-31		미제출		준공
1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2-03-30	2022-06-27		미제출		준공
1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2-05-06	2022-08-03		미제출		준공
15	㉮과	㉡㉠ 소파보수 폐기물처리용역 연간단가계약	청주시장	2022-03-14	2022-12-31		미제출		준공
16	㉮과	㉡㉡공사	청주시장	2022-11-10	2022-12-17		미제출		준공
17	㉮과	㉡㉢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2-11-24	2022-12-21		미제출		준공
18	㉮과	㉡㉣공사	청주시장	2022-12-02	2022-12-29		미제출		준공
19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주시장	2022-04-20	2023-11-15		미제출	미제출	준공
20	㉮과	㉡㉥공사	청주시장	2023-03-22	2023-06-19			미제출	준공
<서원구>									
2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3-30	2023-04-26	-		미제출	준공
2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5-04	2023-05-29	-		미제출	준공
23	㉯과	㉡㉳공사 2구역(연간단가)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3-13	2023-12-31	-		미제출	준공
24	㉯과	㉡㉴공사 1구역(연간단가)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3-13	2023-12-31	-		미제출	준공
25	㉯과	㉡㉶공사(연간단간)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3-13	2023-06-30	-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3	
26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4-07	2023-07-05	-		미제출	준공
27	㉳과	㉡㉣공사	서원 구청장	2022-11-22	2023-01-20	-		미제출	준공
28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3-28	2023-05-16	-		미제출	준공
29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3-24	2023-04-20	-		미제출	준공
30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3-27	2023-05-25	-		미제출	준공
3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4-06	2023-10-02	-		미제출	준공
3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4-20	2023-05-17	-		미제출	준공
33	㉳과	㉦㉤공사(서원구)	서원 구청장	2022-06-23	2023-08-20	-		미제출	준공
3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5-15	2023-07-13	-		미제출	준공
3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06-27	2023-07-24	-		미제출	준공
36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서원 구청장	2023-10-19	2023-12-07	-		미제출	준공
37	㉳과	㉦㉿공사	서원 구청장	2023-11-23	2024-01-01	-		미제출	준공
38	㉳과	㉦㉾공사	서원 구청장	2023-11-07	2024-01-05	-		미제출	준공
<흥덕구>									
39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0.12.10.	2021.3.7.	미제출			준공
40	㉴과	㉦㉣공사	흥덕구청	2020.4.2.	2021.3.30.		미제출		준공
4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1.3.4.	2021.12.31.	미제출			준공
4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1.4.15.	2021.12.10.	미제출			준공
4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1.4.15.	2021.7.11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3	
4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1.5.20.	2021.8.15.	미제출			준공
4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1.5.26.	2021.9.22.	미제출			준공
46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3.2.15.	2023.4.5.			미제출	준공
47	㉱과	㉲㉮ 소파보수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3.2.20.	2023.12.31.			미제출	준공
48	㉱과	㉲㉭공사(소0-00000)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3.4.12.	2023.12.7.			미제출	준공
49	㉱과	㉲㉡공사(연간단가)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3.2.21.	2023.12.31.			미제출	준공
50	㉱과	㉲㉿공사	흥덕구청	2023.5.22.	2023.6.26.			미제출	준공
51	㉱과	㉲㉾공사(소0-0000)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3.3.22.	2023.11.30.			미제출	준공
52	㉱과	㉲㉷공사(000-0) 폐기물처리용역도	흥덕구청	2023.6.19.	2023.7.28.			미제출	준공
53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흥덕구청	2023.8.7.	2023.10.5.			미제출	준공
<청원구>									
5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2-11-10	2023-01-08		제출	미제출	준공
5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2-11-10	2023-01-08		제출	미제출	준공
56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2-11-10	2023-01-08		제출	미제출	준공
57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3-06-20	2023-07-17		-	미제출	준공
58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3-08-11	2023-10-07		-	미제출	준공
59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연간단가계약	청원구청	2023-02-22	2023-12-31		-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3	
60	㉮과	ㅁㅁ공사	청원구청	2022-11-16	2023-01-12		-	미제출	준공
61	㉮과	ㅁㅂ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3-04-11	2023-05-20		-	미제출	준공
62	㉮과	ㅁㅅ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3-04-14	2023-05-11		-	미제출	준공
63	㉮과	ㅁㅇ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청원구청	2023-04-11	2023-05-08		-	미제출	준공

※ 청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위 관서(각 구청 ㉰과)는 상기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였다.

나. 충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 등)는 <표-2>와 같이 발주한 "충주시 견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폐기물처리용역" 등 13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충주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2> 부서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	㉯과	ㅁㅊ지구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03.03	2024.02.20	미제출	미제출	미준공
2	㉯과	ㅁㅊ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03.17	2022.04.15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3	㉮과	㉤㉦사업	충주시 ㉶본부장	2022.03.17	2022.12.11	미제출		준공
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 ㉶본부장	2022.05.23	2022.11.08	미제출		준공
5	㉮과	○○○ ○○○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충주시장	2022.05.25	2023.11.15	미제출	제출	준공
6	㉰과	㉤㉣사업(건축)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10.17	2023.05.04	미제출	제출	준공
7	㉰과	㉤㉧공사 (ⓐ호선)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11.23	2023.11.17	미제출	제출	준공
8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11.28	2023.05.28	미제출	제출	준공
9	㉱과	㉧㉡정비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12.05	2023.09.07	미제출	미제출	준공
10	㉰과	㉧㉢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12.09	2023.01.07	미제출	미제출	준공
11	㉮과	㉧㉥사업 (㉷)	충주시장	2022.12.21	2026.01.17	미제출	제출	미준공
1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12.28	2023.08.18	미제출	미제출	준공
1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충주시장	2022.12.30	2025.12.13	미제출	미제출	미준공

※ 충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충주시(㉲과)는 발주기관(㉪과 등)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다. 제천시의 경우

위 관서(㉭과)는 <표-3>와 같이 발주한 "㉣㉡공사" 등 15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3>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1차분)	㈜과	2021-03-19	2022-09-09	미제출		준공
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3-02	2022-07-29	미제출		준공
3	㈜과	㈑㉲공사(단가)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3-17	2022-12-31		미제출	준공
4	㈜과	㈑㉳공사(단가)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3-17	2022-12-31		미제출	준공
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3-17	2022-06-14	미제출		준공
6	㈜과	㈑㉦공사	㈜과	2022-04-19	2023-04-13	미제출	미제출	준공
7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4-21	2022-07-19	미제출		준공
8	㈜과	㉥㉠공사	㈜과	2022-05-11	2023-09-30	미제출	미제출	준공
9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5-11	2023-01-05	미제출	미제출	준공
10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6-17	2022-09-14	미제출		준공
1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6-17	2022-10-14	미제출		준공
1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7-08	2022-10-05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3	㉮과	ㅅ㉱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7-08	2022-10-05	미제출		준공
14	㉮과	ㅅㅅ구간(1구간)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7-29	2022-10-26	미제출		준공
15	㉮과	ㅅ㉩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과	2022-08-08	2022-11-05	미제출		준공

※ 보은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제천시(㉲과)는 발주기관(㉮과)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라. 보은군의 경우

위 관서(㉰소)는 <표-4>와 같이 발주한 "ㅅㅈ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등 24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은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4> 부서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1	㉰소	ㅅㅊ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0.04.28	2022.04.27	미제출	미제출	준공
2	㉰소	ㅅㅊ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1.06.18	2022.12.30	미제출	미제출	준공
3	㉰소	ㅅ㉤사업(간선)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1.10.12	2022.02.08	미제출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4	㈜소	ㅅ㉥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1.11.08	2022.05.06	미제출	미제출	준공
5	㈜소	ㅅ㉲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1.11.08	2022.05.06	미제출	미제출	준공
6	㈜소	ㅅ㉳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1.11.19	2022.03.18	미제출	미제출	준공
7	㈜소	ㅇ�progress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1.12.10	2023.11.29	미제출	미제출	준공
8	㈜소	ㅇㄴ사업(ⓒ) 폐기물처리용역(4차)	㈜소	2021.12.16	2022.06.13	미제출	미제출	준공
9	㈜소	ㅇ㉥사업 (과세척인프라)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2.25	2022.12.21		미제출	준공
10	㈜소	ㅇ㉣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2.25	2022.06.24		미제출	준공
11	㈜소	ㅇ㉤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3.02	2022.06.29		미제출	준공
12	㈜소	ㅇ㉦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3.02	2022.06.29		미제출	준공
13	㈜소	ㅇㅅ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3.02	2022.08.28		미제출	준공
14	㈜소	ㅇㅇ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3.16	2022.05.14		미제출	준공
15	㈜소	ㅇ㉷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3.18	2022.05.16		미제출	준공
16	㈜소	ㅇ㉸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3.18	2022.11.05		미제출	준공
17	㈜소	ㅇ㉱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3.30	2022.05.08		미제출	준공
18	㈜소	ㅇ㉥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5.11	2022..09.07		미제출	준공
19	㈜소	ㅇ㉲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5.23	2022.10.19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0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5.23	2022.07.21		미제출	준공
21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7.18	2023.01.13		미제출	준공
22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전체)	㉰소	2022.07.21	2025.07.04		미제출	미준공
23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9.30	2022.12.28		미제출	준공
24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11.03	2023.01.29		미제출	준공

※ 보은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보은군(㉱과)은 발주기관(㉯소)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마. 옥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 등)는 <표-5>와 같이 발주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17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옥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5> 부서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3	
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0.06.10	2021.08.07	미제출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2	'23	
2	㉮과	㉾㉲공사	옥천군	2021.07.27	2021.08.25	미제출	-	-	준공
3	㉮과	㉾㉥공사 및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1.12.20	2022.06.08	-	미제출	미제출	준공
4	㉮과	㉾㉯공사	옥천군	2021.11.05	2022.06.21	-	미제출	미제출	준공
5	㉮과	㉾㉾공사	옥천군	2020.12.17	2022.06.09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준공
6	㉮과	㉾㉿공사	옥천군	2022.05.16	2022.08.13		미제출		준공
7	㉮과	㉾㉱공사	옥천군	2022.05.16	2022.08.13		미제출		준공
8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0.07.03	2020.10.30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준공
9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0.06.23	2020.08.21	미제	미제출	미제출	준공
10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0.09.15	2020.12.13	미제	미제출	미제출	준공
1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0.09.16	2020.12.1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준공
1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0.10.23	2022.04.15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준공
1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1.05.11	2021.08.08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1.05.10	2021.11.05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1.05.18	2021.08.15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6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1.05.26	2022.01.20	-	미제출	미제출	준공
17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옥천군	2021.07.30	2021.11.26	-	미제출	미제출	준공

※ 옥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옥천군(㉥과)은 발주기관(㉦과 등)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가 미흡하였다.

바. 영동군의 경우

위 관서(㉮소 등)는 <표-6>와 같이 발주한 "㉲㉡사업" 등 14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영동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6> 부서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	㉮소	㉲㉡사업	㉮소	2021-10-06	2022-01-03	미제출		준공
2	㉮소	㉲㉲공사	㉮소	2021-09-29	2022-01-26	미제출		준공
3	㉮소	㉲㉲사업	㉮소	2022-04-27	2022-07-25	미제출		준공
4	㉮소	㉲㉰사업	㉮소	2022-05-23	2022-09-19	미제출		준공
5	㉮소	㉲㉣사업	㉮소	2022-04-29	2022-09-25	미제출		준공
6	㉮소	㉲㉤사업	㉮소	2022-04-29	2022-10-25	미제출		준공
7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07-01	2022-10-28	미제출		준공
8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10-25	2022-12-23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9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소	2022-10-25	2022-12-23	미제출		준공
10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영동군청	2021-11-12	2022-02-09	미제출		준공
1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영동군청	2020-12-11	2023-05-09	미제출	미제출	준공
1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영동군청	2021-12-17	2023-05-31	미제출		준공
13	㉮과	㉲㉥구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영동군청	2022-10-07	2023-04-04	미제출	미제출	준공
1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영동군청	2022-10-19	2023-07-27	미제출	미제출	준공

※ 영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영동군(㉳과)은 발주기관(㉦소 등)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 증평군의 경우

위 관서(㉴과 등)는 <표-7>와 같이 발주한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등 18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증평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7> 부서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11.16	2023.02.13	미제출	제출	준공
2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05.09	2023.06.12	미제출	제출	준공
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11.22	2022.12.30	미제출		준공
4	㉮과	㉤㉤공사	증평군	2022.11.11	2023.10.05	미제출		준공
5	㉦과	㉤㉭공사	증평군	2022.10.17	2024.10.05	미제출	제출	미준공
6	㉦과	㉤㉱공사	증평군	2022.10.21	2022.12.19	미제출		준공
7	㉣소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03.23	2022.09.06	미제출		준공
8	㉣소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03.29	2022.06.26	미제출		준공
9	㉦과	㉦㉥공사	증평군	2022.05.02	2022.06.30	미제출		준공
10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04.03	2022.05.31	미제출		준공
11	㉱과	㉦㉡사업	증평군	2022.03.07	2022.03.27	미제출		준공
12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1.10.13	2023.10.02	미제출		준공
1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1.11.25	2022.01.23	미제출		준공
1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1.08.23	2022.02.13	미제출		준공
15	㉩과	㉦㉤사업 생활환경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1.04.21	2022.06.30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6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05.20	2022.07.01	미제출		준공
17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04.11	2022.09.07	미제출		준공
18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증평군	2022.04.21	2022.06.27	미제출		준공

※ 증평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증평군(㉱과)은 발주기관(㉵과 등)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 진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 등)는 <표-8>와 같이 발주한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등 20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진천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8> 부서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4.28.	2022.7.26.	미제출		준공
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4.8.	2023.12.27.	미제출		준공
3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4.8.	2022.8.5.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4.8.	2022.7.6.	미제출		준공
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4.6.	2022.9.2.	미제출		준공
6	㉯과	㉶㉥사업 (교량 재가설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4.5.	2022.7.3.	미제출		준공
7	㉯과	㉶�senior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3.28.	2022.7.25.	미제출		준공
8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3.24.	2022.9.19.	미제출		준공
9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3.22.	2022.9.17.	미제출		준공
10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2.2.22.	2022.7.11.	미제출		준공
11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12.28.	2023.5.22.	미제출	미제출	준공
12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10.18.	2022.1.15.	미제출		준공
13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10.18.	2022.6.14.	미제출		준공
14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10.15.	2022.12.21.	미제출		준공
15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7.7.	2022.1.2.	미제출		준공
16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6.24.	2022.12.15.	미제출		준공
17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4.13.	2022.4.12.	미제출		준공
18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1.3.24.	2022.3.23.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9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0.5.20.	2022.2.5.	미제출		준공
20	㉲과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진천군수	2020.5.12.	2022.6.10.	미제출		준공

※ 진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진천군(㉯과)은 발주기관(㉱과 등)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자.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과 등)은 <표-9>와 같이 발주한 “㉥㉦공사” 등 16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괴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9> 부서별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3	
1	㉶과	㉥㉧공사	괴산군	2020.11.13	2021.03.12	미제출		준공
2	㉶과	㉥㉩공사	괴산군	2020.10.13	2021.04.10	미제출		준공
3	㉶과	㉥㉲공사	괴산군	2020.09.03	2021.03.01	미제출		준공
4	㉶과	㉥㉳공사	괴산군	2020.12.02	2021.03.31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1	'23	
5	㉷소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괴산군	2021.04.23	2021.05.22	미제출		준공
6	㉷과	㉷㉾공사	괴산군	2021.04.23	2021.07.21	미제출		준공
7	㉷과	㉷㉿공사	괴산군	2021.04.20	2021.08.17	미제출		준공
8	㉷과	㉷㉷공사	괴산군	2021.03.02	2021.06.29	미제출		준공
9	㉷과	㉷㉷공사	괴산군	2021.03.02	2021.06.29	미제출		준공
10	㉷과	㉠㉠㉠공사	괴산군	2021.04.20	2021.08.17	미제출		준공
11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괴산군	2021.06.21	2021.09.18	미제출		준공
12	㉷소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괴산군	2021.06.16	2021.09.13	미제출		준공
13	㉷과	㉠㉠㉣공사	괴산군	2021.04.09	2021.08.06	미제출		준공
14	㉶과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괴산군	2022.12.09	2023.08.05		미제출	준공
15	㉴실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괴산군	2023.09.26	2023.10.25		미제출	준공
16	㉶과	㉠㉠㉥ (폐콘크리트) 위탁처리용역	괴산군	2023.09.22	2023.10.30		미제출	준공

※ 괴산군 제출 자료 재구성

또한, 괴산군(㉶과)은 발주기관(㉷과 등)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차. 단양군의 경우

위 관서는 <표-10>과 같이 발주한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등 16건의

공사에 대한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로 해당 건설공사 준공 후 15일 이내에 (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2월 말일)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표> 단양군 건설폐기물 처리실적 보고 미제출 현황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2-03-17	2023-03-16	미제출	미제출	준공
2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2-05-20	2023-05-14	미제출	미제출	준공
3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3-20	2023-12-14		미제출	준공
4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4-11	2023-09-07		미제출	준공
5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4-24	2023-06-22		미제출	준공
6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6-21	2023-10-18		미제출	준공
7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6-23	2023-09-20		미제출	준공
8	단양군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6-30	2023-11-26		미제출	준공
9	단양군청	○○면 ○○리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6-20	2023-12-16		미제출	준공
10	단양군청	㉠㉡㉡복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8-29	2023-09-27		미제출	준공
11	단양군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6-20	2023-09-17		미제출	준공
12	단양군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6-22	2023-12-18		미제출	준공
13	단양군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10-24	2023-12-22		미제출	준공

연번	해당 부서	공사명	배출 신고자	공사 시작일	공사(준공) 종료일	실적보고 년도		준공 여부
						’22	’23	
14	단양군청	㉠㉡㉣사업 (○○면 ○○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7-27	2023-11-23		미제출	준공
15	단양군청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3-06-28	2023-12-24		미제출	준공
16	단양군청	㉠㉡㉥사업 폐기물처리용역	단양군수	2022-03-22	2022-09-17	미제출		준공

또한 단양군(㉦과)은 발주기관에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관계인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요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미제출 기관(부서)에 제출하도록 조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 성과평가 미실시**

기 관 명 진천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농산물류·수산물류·축산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추진 성과를 평가하여 그 평가 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향후 발생 예상량 및 적정 처리계획 등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 계획에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포함하여 시장·군수는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 평가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평가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도록 하고, 성과 평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 12명[1]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의 성과를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고 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기관이 의뢰한 성과보고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3월 20일까지 평가대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결과를 반영,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진천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2016. 6. 2. 1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난 2020. 12. 16. 2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관서는 매년 기 수립한 음식물류 폐기물발생 억제 계획에 대하여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발생량 산정방법,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2016. 6. 2 1차 계획수립 이후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과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

1)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위원 4명, 2.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 위원 4명

<표-1>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여부 및 평가 실시 현황

구분	계획수립일	평가 실시현황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용	'16.06.02(최초) '20.12.16(최근)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진천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단양군의 경우

위 관서(㉯과)는 2017. 6. 14. 1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고 5년이 지난 2022. 9. 19. 2차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하였다.

위 관서는 매년 기 수립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에 대하여 관할 구역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감량실적(발생량 산정방법, 전체 및 발생원별 발생량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실적 등을 평가하여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을 조정하여 4월 10일까지 성과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최초 2017. 6. 14. 계획수립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과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아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여부 및 평가 실시 현황

구분	계획수립일	평가 실시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내용	'17.6.14(최초) '22.9.19(최근)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단양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시고, 앞으로 위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징계·주의요구

제　　목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제조업소 등) **건축허가**(신고) **부적정**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사건개요

괴산군 ㉮과 지방시설주사보 A(이하 “A”이라 한다)는 2018. 10. 22. 부터 2023. 2. 18. 까지 괴산군 ㉯과에서 건축신고 수리, 건축물 사용 승인 등의 실무담당자로 “건축주 B(이하 “B”라 한다)의 공장(제조업소)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 및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실무담당자이다.

2021. 6. 8. B는 괴산군 ○○면 ○○리 000-0번지에 공장(제조업소) 신축을 위하여 괴산군 ㉯과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지역은「수도법」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으로 공장(제조업소 등) 설립을 위한 건축허가(신고)가 불가함에도 위 관서에서는 관련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2021. 6. 22. 건축신고를 수리하고 2022. 1. 24.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제2조(책무)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수원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및 제78조(권한의 위임·위탁)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같은 법 제7조의2(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공장설립의 제한)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이하 “공장설립 제한지역”이라 한다)에서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같으며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는 같은 법 제14조의3과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의 규정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제조업[1]을 하기 위한 사업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의 규정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 미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한 건축허가를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따르면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공장건축면적 500㎡) 여부와 관계없이 제조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과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 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과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상기 시설이 설치된 공장 부지를 공장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받으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및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르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및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고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제1호 라목(2)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해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괴산군 ㉮과 A는 2018. 10. 22. 부터 2023. 2. 18. 까지 괴산군 ㉯과에서 건축신고 접수・신고 수리 및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로 공장설립 제한지역내 B가 신청한 공장(제조업소)에 대한 건축 신고를 수리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실무 담당자이다.

충청북도 괴산군 ○○리 000-0번지(제한면적 4,130㎡) 지역은 ○○취수장(400㎥/일)의 취수시설로부터 1㎞(지하수를 원수로 취수하는 경우)이내인 공장 설립제한 지역이다.

2021. 6. 8. B는 취수시설로부터 1㎞ 이내 지역인 괴산군 ○○리 000-0번지에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분류코드 00000)'의 공장(제조시설 99㎡)을 신축하고자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제7조의2]<수도법>'이 명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첨부하여 괴산군 ㉰과[2]에 건축신고를 신청하였다.

「수도법」 제7조의2의 규정은 「건축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규정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A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에 앞서 「수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취수시설 상·하류지역의 공장설립 가능 여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으로 인하여 수질오염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등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A는 건축복합민원 신청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시(㉰과-35567(2021.6.9.)) B가 신청한 공장(제조업소)은 수도법에서 정의하는 공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수도법을 관장하는 ㉱소에 협의하지 않았고 그로인해 상기 지

2) ㉰과 → 2022.11.10. ㉲과(조직개편) → 2024.1.1. ㉳과(인허가 업무 이관)

역의 공장(제조업소) 입지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를 누락 하였다.

그 결과 A는 B가 신청한 '제조업소(제2종 근생)'의 건축신고에 대하여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제한지역이 명시된 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취수시설 상·하류지역의 공장설립이 제한된 지역에 2021. 6. 2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신고)를 해주고 2022. 1. 24. 건축물 사용승인(㉮과-4953)을 하였다.

[표] 공장설립제한지역 내 공장(제조업소) 건축허가(신고) 현황

건축주	용도	접수일	허가일 (신고수리)	건축물 사용승인	면적(㎡)		비고
					제조시설	건축 연면적	
B	제2종근생 (제조업소)	21.6.8	21.6.22	22.1.24	99	99	
허가(신고) 번호	2021-㉮과-신축신고-000		위치	괴산군 ○○면 ○○리 000-0			

※ 괴산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징계] 관련자 A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경징계 이상)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수도법」을 위반하여 공장설립제한지역 내에 제조업 시설, 공장의 신축 허가 및 신고, 용도변경, 공장등록 허가 및 신고 등이 부당하게 승인(인·허가 등)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시정요구

제　　목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5년)이 끝나는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하고,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시설 및 토지의 원상복구 등을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하수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기관의 장에게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유효기간 만료시 연장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할 기관의 장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연장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37조에 따르면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 원상복구 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지방시설서기보 A는 2021. 1. 11. 부터 2022. 3. 31.까지 청주시 흥덕구 ㉮과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위 관서(흥덕구 ㉮과)는 아래 <표-1>과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시설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3. 27.)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1]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미연장(무허가) 시설 현황

(단위 : 건)

연번	업체명	주소	취수계획량(㎥/일)	양수능력(㎥/일)	허가 유효 시작일	허가 유효 종료일	현재 사용여부
1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로00번길 00-0(○○동)	60	403	20160804	20210803	사용중
2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로00번길 00(○○동)	250	523	20161117	20211118	사용중
3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로00번길 00-0(○○동)	60	403	20160804	20210803	사용중
4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로 000-0(○○동)	100	132	20170106	20220106	사용중
5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대로000번길 000 (○○동)	150	304	20161117	20211116	사용중

※ 청주시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지방행정서기 B는 2019. 7. 10. 부터 2021. 4. 29. 까지 충주시(㉮과)에서 아래 <표-2>의(6건/ 25번～30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다 2021. 5. 26. 퇴직하였다.

지방공업서기 C는 2021. 5. 1. 부터 2023. 6. 30.까지 충주시(㉮과)에서 아래 <표-2>의(18건/ 2번, 5번～7번, 8번～17번, 19번～22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지방공업주사 D는 2023. 7.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3. 27.) 까지 충주시(㉮과)에서 아래 <표-2>의(6건/ 1번, 3번, 4번, 18번, 23번, 24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위 관서(㉮과)는 아래 <표-2>과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시설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3. 27.)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2]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미연장(무허가) 시설 현황

(단위 : 건)

연번	업체명	소재지	취수 계획량 (㎥/일)	양수 능력 (㎥/일)	유효 시작일	유효 종료일	현재 사용여부
1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300	532	20181017	20231016	사용중
2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0호	300	568	20180115	20230114	사용중
3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0호 (BH-0)	300	370	20180806	20230805	폐공예정 (도로설치)
4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0호 (BH-0)	300	373	20180806	20230805	폐공예정 (도로설치)
5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교	200	400	20161108	20211107	

6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교	200	400	20161108	20211107	
7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교	200	400	20161108	20211107	
8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교	200	500	20161108	20211107	
9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교	200	400	20161108	20211107	
10	-	충주시 ○○동 000번지 (W-0호공)	300	550	20161117	20211116	
11	-	충주시 ○○동 000번지 (W-0호공)	70	80	20161117	20211116	
12	-	충주시 ○○동 000번지 (W-0호공)	300	550	20161117	20211116	
13	-	충주시 ○○동 000번지 (W-0호공)	300	550	20161117	20211116	
14	-	충주시 ○○동 000번지 (W-0호공)	300	550	20161117	20211116	
15	-	충주시 ○○동 000번지 (W-0호공))	300	550	20161117	20211116	
16	-	충주시 ○○동 000번지 0호	150	150	20161117	20211116	
17	-	충주시 ○○동 000번지 0호	200	300	20161117	20211116	
18	-	충주시 ○○면 ○○리 0000번지	150	411	20190125	20240125	사용중
19	-	충주시 ○○면 ○○리 0번지	150	160	20170622	20220622	
20	-	충주시 ○○면 ○○리 0번지 사업장부지내	100	110	20170622	20220622	
21	-	충주시 ○○동 00번지 0호	100	140	20170910	20220909	
22	-	충주시 ○○동 00번지 0호	150	195	20161117	20221116	
23	-	충주시 ○○면 ○○리 ○○○번지 00호 (CH-0)	500	720	20180806	20230805	
24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120	240	20190207	20240207	
25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0호	40	140	20151123	20201122	휴업중
26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0호	10	120	20151123	20201122	휴업중
27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150	550	20151123	20201122	휴업중
28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150	450	20151123	20201122	휴업중
29	-	충청북도 ○○리 000번지 00호 (W-0)	100	144	20150923	20200922	휴업중
30	-	충주시 ○○○면 ○○리 000번지 00호 (W-0)	100	148	20150923	20200922	휴업중

※ 충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다. 증평군의 경우

지방공업서기보 E는 2022. 8. 12. 부터 2023. 6. 30. 까지 증평군(㉲소)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위 관서(㉲소)는 아래 <표-3>과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시설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 3. 27.)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3>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미연장(무허가) 시설 현황

(단위 : 건)

연번	업체명	주소	취수계획량 (㎥/일)	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 시작일	허가 유효 종료일	현재 사용여부
1	-	충청북도 증평군 ○○읍 ○○리 000번지 w-0호정	85	350	20170921	20220920	사용중
2	-	충청북도 증평군 ○○읍 ○○리 000번지 w-0호정	65	175	20170921	20220920	사용중
3	-	충청북도 증평군 ○○읍 ○○리 000번지 w-0호정	60	232	20170921	20220920	사용중
4	-	충청북도 증평군 ○○읍 ○○리 000번지 w-0호정	60	220	20170921	20220920	사용중

※ 증평군 제출 자료 재구성

라. 음성군의 경우

지방행정주사보 F는 2021. 7. 1. 부터 2021. 12. 31. 까지 음성군(㉳소)에서 아래 <표-4>의(8건/ 1번~6번, 8번, 9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지방환경서기 G는 2022. 1. 1. 부터 2022. 9. 26. 까지 음성군(㉳소)에서 아래 <표-4>의(2건/ 10번, 12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의 실무담당자로 근무하다

2022. 9. 30. 퇴직하였다.

지방행정서기 H는 2022. 10. 12. 부터 2023. 6. 30. 까지 음성군(㉮소)에서 아래 <표-4>의(2건/ 7번, 11번)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위 관서(㉮소)는 아래 <표-4>과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시설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 3. 27.)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4>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미연장(무허가) 시설 현황

(단위 : 건)

연번	업체명	주소	취수계획량 (㎥/일)	양수능력 (㎥/일)	허가 유효시작일	허가 유효종료일	현재 사용여부
1	-	음성군 ○○면 ○○리 000번지 0호	150	180	20160809	20210808	사용중
2	-	음성군 ○○면 ○○리 000번지	100	300	20161116	20211115	사용중
3	-	음성군 ○○면 ○○리 000번지	500	867	20161116	20211115	사용중
4	-	음성군 ○○읍 ○○리 000번지 0호	100	125	20161206	20211205	사용중
5	-	음성군 ○○읍 ○○리 000번지 0호	120	159	20161206	20211205	사용중
6	-	음성군 ○○읍 ○○리 000번지 0호	80	92	20161206	20211205	사용중
7	-	음성군 ○○읍 ○○리 000번지 0호	20	29	20180508	20230507	사용중
8	-	음성군 ○○면 ○○리 00번지 0호	150	200	20161121	20211120	사용중
9	-	음성군 ○○면 ○○리 000번지 00호	120	220	20161116	20211115	사용중
10	-	음성군 ○○면 ○○리 000번지	350	450	20170113	20220112	사용중
11	-	음성군 ○○면 ○○리 00번지	50	60	20180416	20230415	사용중
12	-	음성군 ○○면 ○○리 000번지 ○○(주)	-	432	20170214	20220214	사용중

※ 음성군 제출 자료 재구성

라. 단양군의 경우

지방행정서기보 I는 2023. 6. 1. 부터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3. 27.) 현재까지 단양군(㉯과)에서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업무를 담당한 실무담당자이다.

위 관서(㉯과)는 아래 <표-5>과 같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시설이 유효기간의 만료로 지하수 개발·이용기간이 끝났음에도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 3. 27.) 현재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원상복구 명령,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표-5>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미연장(무허가) 시설 현황

(단위 : 건)

연번	업체명	주소	취수계획량(㎥/일)	양수능력(㎥/일)	허가 유효시작일	허가 유효종료일	현재 사용여부
1	-	○○면 ○○리 000-00	350	430	20180711	20230711	사용중
2	-	○○면 ○○리 000	200	250	20180530	20230530	사용중
3	-	○○면 ○○리 00	400	600	20180530	20230530	사용중

※ 단양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A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훈계] 관련자 C, D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는

[훈계] 관련자 E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훈계] 관련자 F, H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수는

[훈계] 관련자 I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하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개선계획 미보고

기 관 명 보은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공공하수도관리청[1]은「하수도법」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같은 법 제20조(기술진단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5년마다 소관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공공하수도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하고 기술진단의 결과 관리상태가 불량한 공공하수도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에서는 기술진단 대상을 1일 하수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분뇨처리시설, 그 밖에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1)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된다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기술진단 등) 제1항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기술진단의 내용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공공하수도관리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각각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보은군의 경우

위 관서(㉮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구역 등 20개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수행하였으나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1>과 같이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보고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미준수하고 있다.

<표-1>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계획서 미보고 내역

연번	처리구역	하수관로연장(km)	기술진단 종료일	개선계획 제출 여부	비고
1	ⓐⓐ	131.0	2021. 5. 22.	미보고	
2	ⓐⓑ	19.3	2021. 5. 22.	미보고	
3	ⓐⓒ	30.4	2021. 5. 22.	미보고	
4	ⓐⓓ	3.0	2021. 5. 22.	미보고	
5	ⓐⓔ	2.9	2021. 5. 22.	미보고	
6	ⓐⓕ	1.6	2021. 5. 22.	미보고	
7	ⓐⓖ	0.8	2021. 5. 22.	미보고	
8	ⓐⓗ	3.2	2021. 5. 22.	미보고	
9	ⓐⓘ	13.6	2021. 5. 22.	미보고	
10	ⓐⓙ	6.1	2021. 5. 22.	미보고	

11	ⓐⓚ	4.9	2021. 5. 22.	미보고	
12	ⓐ①	2.5	2021. 5. 22.	미보고	
13	ⓐⓜ	1.3	2021. 5. 22.	미보고	
14	ⓐⓝ	5.9	2021. 5. 22.	미보고	
15	ⓐⓞ	6.3	2021. 5. 22.	미보고	
16	ⓐⓟ	4.4	2021. 5. 22.	미보고	
17	ⓐⓠ	3.6	2021. 5. 22.	미보고	
18	ⓐⓡ	2.6	2021. 5. 22.	미보고	
19	ⓐⓢ	3.7	2021. 5. 22.	미보고	
20	ⓐⓣ	14.9	2021. 5. 22.	미보고	

※ 보은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구역 등 18개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15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수행하였으나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2,3>과 같이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보고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미준수하고 있다.

<표-2>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계획서 미보고 내역

연번	처리구역	하수관로연장(km)	기술진단 종료일	개선계획 제출 여부	비고
1	ⓑⓐ	3.80	2020. 12. 31.	미보고	
2	ⓑⓑ	4.42	2020. 12. 31.	미보고	
3	ⓑⓒ	3.10	2020. 12. 31.	미보고	
4	ⓑⓓ	2.88	2020. 7. 31.	미보고	
5	ⓑⓔ	5.53	2020. 7. 31.	미보고	
6	ⓑⓕ	5.00	2023. 3. 21.	미보고	
7	ⓑⓖ	2.95	2020. 12. 31.	미보고	
8	ⓑⓗ	7.18	2020. 12. 31.	미보고	
9	ⓑⓘ	18.60	2020. 12. 31.	미보고	
10	ⓑⓙ	8.21	2020. 12. 31.	미보고	

11	ⓑⓚ	7.00	2020. 12. 31.	미보고	
12	ⓑ①	2.29	2022. 9. 30.	미보고	
13	ⓑⓜ	12.61	2020. 7. 31.	미보고	
14	ⓑⓝ	12.00	2022. 9. 30.	미보고	
15	ⓑⓞ	5.16	2020. 12. 31.	미보고	
16	ⓑⓟ	1.03	2020. 12. 31.	미보고	
17	ⓑⓠ	0.91	2020. 12. 31.	미보고	
18	ⓑⓡ	6.10	2023. 3. 21.	미보고	

※ 괴산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3>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계획서 미보고 내역

연번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기술진단 종료일	개선계획 보고 여부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	350㎥/일	2021. 2. 27.	미보고	
2	ⓑ①공공하수처리시설	300㎥/일	2021. 2. 27.	미보고	
3	ⓑⓞ공공하수처리시설	230㎥/일	2021. 2. 24.	미보고	
4	ⓑⓟ공공하수처리시설	65㎥/일	2021. 2. 24.	미보고	
5	ⓑⓘ공공하수처리시설	200㎥/일	2021. 2. 24.	미보고	
6	ⓑⓑ공공하수처리시설	50㎥/일	2021. 2. 24.	미보고	
7	ⓑⓐ공공하수처리시설	310㎥/일	2021. 6. 25.	미보고	
8	ⓑⓝ공공하수처리시설	350㎥/일	2023. 3. 20.	미보고	
9	ⓑⓙ공공하수처리시설	200㎥/일	2023. 3. 20.	미보고	
10	ⓑⓗ공공하수처리시설	100㎥/일	2023. 3. 20.	미보고	
11	ⓑⓡ공공하수처리시설	90㎥/일	2023. 3. 20.	미보고	
12	ⓑⓒ공공하수처리시설	50㎥/일	2023. 11. 5.	보고(2024. 2. 20.)	
13	ⓑⓢ공공하수처리시설	80㎥/일	2023. 11. 5.	보고(2024. 2. 20.)	
14	ⓑⓖ공공하수처리시설	100㎥/일	2023. 11. 5.	보고(2024. 2. 20.)	
15	ⓑⓣ공공하수처리시설	200㎥/일	2023. 11. 5.	보고(2024. 2. 20.)	

※ 괴산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다. 음성군의 경우

위 관서(㉮소)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구역 등 2개 처리구역 내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8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수행하였으나 기술진단을 한 후 30일 이내에 공공하수도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4, 5>과 같이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보고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미준수하고 있다.

<표-4> 하수관로 기술진단 개선계획서 미보고 내역

연번	처리구역	하수관로연장(km)	기술진단 종료일	개선계획 제출 여부	비고
1	ⓒⓐ	69	2023. 12. 13.	미보고	
2	ⓒⓑ	32	2020. 10. 5.	미보고	

※ 음성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2>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개선계획서 미보고 내역

연번	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	기술진단 종료일	개선계획 보고 여부	비고
1	ⓒⓐ공공하수처리시설	7,000㎥/일	2021. 9. 5.	미보고	
2	ⓒⓒ공공하수처리시설	8,000㎥/일	2021. 8. 29.	미보고	
3	ⓒⓓ공공하수처리시설	6,000㎥/일	2023. 3. 18.	미보고	
4	ⓒⓔ 소규모처리시설	450㎥/일	2021. 8. 29.	미보고	
5	ⓒⓕ 소규모처리시설	100㎥/일	2023. 12. 7.	미보고	
6	ⓒⓖ 소규모처리시설	50㎥/일	2022. 10. 9.	미보고	
7	ⓒⓗ 소규모처리시설	50㎥/일	2023. 12. 7.	미보고	
8	ⓒⓘ 소규모처리시설	50㎥/일	2022. 10. 9.	미보고	

※ 음성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는**

[주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준공정산 부적정

기 관 명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에 대한 정산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기성(준공)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주 부담금액(총 납입금액의 1/2)에 대하여만 정산하되,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에 대해서는 소속회사의 납부확인서 확인 금액 중 현장 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대가의 지급)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7항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에 따르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건설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 (행정안전부예규 제231호, 2023. 1. 1. 시행)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 계약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납입확인서 중 사업주 부담금액(총 납입금액의 1/2)에 대하여 정산하되, 일용근로자는 해당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상용근로자는 실제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한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1) 현행 : 행정안전부예규 제135호, 2020. 12. 30. 일부개정

하여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을 확인하고 해당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대로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보은군의 경우

위 관서(㉮소)는 "㉠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과 29,811,700천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8. 8. 6. 착공 및 2021. 11. 30. 준공하였다.

<표-1> ㉠사업 계약현황

구 분	시설공사 계약현황	비 고
사 업 명	㉠사업	정수장(9,000㎥/일) 및 배수지 증설 등
위 치	보은군 ○○읍 ○○○길 ○○	
도 급 사	㉡	
공사기간	2018.8.6. ~ 2021.11.30	
공사금액	계약금액 29,811,700천원, 준공금액 28,691,960천원	

※ 보은군 ㉮소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업" 준공정산 시 원도급사인 ㉡의 현장대리인 등 관리자가 직접노무에 참여한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표-2>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34,914,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2> 보험료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준공내역(A)	감사시 재산정액(B)	과다지급액(A-B)
국민건강보험료	54,093,680	39,564,965	14,528,71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6,925,945	44,738,090	12,187,855
국민연금보험료	5,278,895	4,051,580	3,174,000

[보험료 소계]	116,298,520	88,354,635	잘못된 계산식
일반관리비	5,190,403	3,943,267	잘못된 계산식
이 윤	11,758,464	9,209,485	잘못된 계산식
공급가액	133,247,387	101,507,387	잘못된 계산식
부가가치세	13,324,739	10,150,739	잘못된 계산식
합 계	146,572,125	111,658,126	잘못된 계산식

※ 보은군 ㉮소 제출 자료 재구성

2. 증평군의 경우

위 관서(㉯소)는 "㉡사업"을 아래 <표-3>과 같이 ㄴ과 7,300,000천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2. 25. 착공 및 2021. 12. 24. 준공하였다.

<표-3> ㉡사업

구 분	시설공사 계약 현황	비 고
사 업 명	㉡사업(토목)	· 사업규모 -하수관로18.7km -배수설비321개소등
위 치	증평군 ○○면 ○○리 및 ○○리, ○○읍 ○○○리 일원	
도 급 사	ㄴ	
공사기간	2019. 02. 25. ~ 2021. 12. 24.	
공사금액	계약금액 7,300,000천원, 준공정산금액 8,052,667천원	

※ 증평군(㉯소) 제출 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업" 준공정산 시 원도급사인 ㄴ의 공사담당, 공무담당 등 관리자가 직접노무에 참여한 현장작업일지, 감독관 근무일지, 임금대장, 출근부 등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표-4>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5,385,409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4> 보험료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준공내역(A)	감사시 재산정액(B)	과다지급액(A-B)
국민연금보험료	36,139,335	33,924,075	2,215,260

국민건강보험료	36,614,441	34,879,040	1,735,40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932,375	3,709,200	223,175
[보험료 소계]	76,686,151	72,512,315	4,173,836
일반관리비	3,987,679	3,770,640	217,039
이윤	9,277,490	8,772,539	504,951
공급가액	89,951,320	85,055,494	4,895,826
부가가치세	8,995,132	8,505,549	489,583
합 계	98,946,452	93,561,043	5,385,409

※ 증평군(㉡소) 제출 자료 재구성

3. 단양군의 경우

단양군(㉮과)은 "㉢사업"을 아래 <표-5>과 같이 ㉣과 2,752,764천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4. 8. 착공 및 2023. 5. 17. 준공하였다.

<표-5> ㉢사업

구 분	시설공사 계약 현황	비 고
사 업 명	㉢사업	· 사업규모 - 처리장 210톤/일 - 하수관로 6.60km - 배수설비 147가구 등
위 치	단양군 ○○면 ○○리 일원	
도 급 사	㉣	
공사기간	2019. 4. 8. ~ 2023. 5. 17.	
공사금액	계약금액 2,752,764천원, 준공금액 2,652,780천원	

※ 단양군(㉮과)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위 관서는 "㉢사업" 준공정산 시 각종 보험료 납입확인서 중 사업주 부담금액(납부금액의 50%)에 대하여 정산하여야 함에도 사업주 부담금액을 근로자 부담금액(납부금액의 100%)으로 일부 정산하여 <표-6>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20,556,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표-6> 보험료 과다 지급 현황

(단위 : 원)

구 분	준공내역(A)	감사시 재산정액(B)	과다지급액(A-B)
국민연금보험료	19,219,810	15,203,540	4,016,270
국민건강보험료	27,945,550	17,449,610	10,495,94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2,683,130	1,865,320	817,810
[보험료 소계]	49,848,490	34,518,470	15,330,020
일반관리비	2,990,909	2,071,108	919,801
이윤	7,925,910	5,488,437	2,437,473
공급가액	60,765,309	42,078,015	18,687,294
부가가치세	6,076,531	4,207,801	1,868,729
합 계	66,841,840	46,285,816	20,556,000

※ 단양군(㉣과)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 증평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과다 지급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환수 등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시설공사 간접비 계상 부적정

기 관 명 보은군

내　　용

1. 업무개요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산업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리고 금액(산출내역서 포함) 조정 없이 계약 체결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1]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제4조(계상의무 및 기준) 제1항에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산정기준에 의해 산정한 금액 이상의 산업안전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0-63호)

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제2항에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입찰공고 등을 통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안전관리비용)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7호)」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1조(적용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발주자가 공사원가계산서에 계상한 안전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제1항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1. 일반사항 나.에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97호)」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한다) 사후정산 다. 입찰공고 시 안내 등에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보은군(㈜소)에서는 2022년 4월 ㉠사업(ⓐ) 시설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충북지방조달청 시설공고 제20220400000-00호)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시설공사 최초 계약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표-1>과 같이 입찰공고 금액과 다르게 계상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사업(ⓐ) 간접비 계상 현황

단위 : 원

구분	입찰공고문(A)	최초계약내역(B)	과계상액(B-A)	비고
국민연금보험료	52,438,033	56,056,234	3,618,201	
국민건강보험료	40,726,872	43,537,008	2,810,136	
퇴직공제부금비	26,801,661	28,650,964	1,849,30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997,187	5,341,990	344,80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52,141,918	54,217,606	2,075,688	
안전관리비	9,999,925	10,300,000	300,075	
품질관리비	25,722,195	28,781,877	3,059,682	
[간접비 소계]	212,827,791	226,885,679	14,057,888	
일반관리비	12,769,667	13,613,141	843,473	(재+노+경)*6.00%
이윤	33,839,619	36,074,823	2,235,204	(노+경+관)*15.00%
부가가치세	25,943,708	27,657,364	1,713,657	
합 계	285,380,785	304,231,007	18,850,222	

※ 보은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는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금액으로 조정없이 반영토록 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용역평가 미흡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내　　용

1. 업무개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과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등)에 따르면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 사업(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과 건설공사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7. 7. 31.)」,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19. 11. 13.)」,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21. 10. 28.)」,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국토교통부, 2022. 12. 30.)」에 따르면 설계용역평가는 계약금액이 고시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대상으로 기본설계

의 경우 해당 용역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실시설계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대상으로 해당 건설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시공평가는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60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는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의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를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표-1> 청주시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평가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용역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설계용역 평가
1	㉠사업	하수관로 25km 배수설비 823개소	㉡	2019. 5. 28. ~ 2020. 11. 2.	806	미실시

※ 청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나. 충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는 아래 <표-2>과 같이 "㉡사업(하수처리시설)"등 3개 사업의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를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표-2> 충주시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평가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용역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설계용역 평가
1	㉡사업	60톤/일 오수관로 7.24km	㉠ 외 1개사	2019. 11. 27. ~ 2020. 12. 22.	303	미실시
2	㉢사업	오수관로 8.30km	㉡ 외 2개사	2020. 2. 10. ~ 2020. 12. 22.	283	미실시
3	㉣사업	우수관로 13.12km 빗물받이 611개소	㉢ 외 1개사	2020. 8. 27. ~ 2022. 12. 12.	1,653	미실시

※ 충주시 ㉮과 제출자료 재구성

다. 제천시의 경우

제천시(㉰소)는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의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를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표-3> 제천시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평가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용역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설계용역 평가
1	㉤사업	하수찌꺼기 건조시설 50톤/일	㉣ 외 1개사	2019. 4. 5. ~ 2020. 12. 29.	606	미실시

※ 제천시 ㉰소 제출자료 재구성

라. 증평군의 경우

증평군(㉱소)은 아래 <표-4>과 같이 “㉥사업”의 설계용역에 대한 평가를 건설공사가 착공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가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일 현

재(2024. 3. 11.~)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표-4> 증평군 환경기초시설 설계용역평가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용역사	용역기간	용역금액 (백만원)	설계용역 평가
1	㉱사업	Q=5,000톤/일	回	2020. 3. 3. ~ 2022. 12. 20.	504	미실시

※ 증평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증평군수는**

[주의] 건설기술용역과 건설공사에 대한 업무수행 및 시공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건설공사(환경기초시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미실시

기 관 명 증평군

내　　용

1. 업무개요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및「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080호)」에는 적정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 등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5항 제3호에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증평군(㉮과)은 아래 <표>와 같이 "㉠사업"의 총공사비가 6,383백만원으로 50억원 이상임에도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한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았으며 공사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고 시설공사를 발주하였다.

<표> 증평군 환경기초시설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미실시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규모	수행 용역사	용역기간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비고
1	㉠사업	하수관로 L=7.6km	㉡	2021. 11. 29. ~ 2023. 12. 15.	미실시	

※ 증평군 ㉮과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증평군수는**

[주의] 건설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확보 등을 위한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시공방법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을 하여 계약금액의 증감분을 조정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7절에 따르면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제9절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4조제5항에 따르면 발주자 또는 자기공사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표 1의 3]에 따라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청주시(㉮과)에서는 "㉠사업"을 ㉠과 6,749,100천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20. 9. 10.에 착공하고 2024. 6. 6.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사업"을 ㉡과 27,625,539천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22. 3. 7.에 착공하고 2024. 9. 21.에 준공예정에 있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사업" 등 2개사업 추진 중 관련 법령에 따라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으나 상기 기준에 따라 제경비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표-1>, <표-2>와 같이 부적정하게 산출하여 설계변경 하였다.

<표-1> ㉠사업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원

구분	변경계약 원가(A)	감사시 재산정원가(B)	차 액 (B-A)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90,951,792	87,285,415	-3,666,377	
노인장기요양보험료	9,322,558	8,946,754	-375,804	

국민연금보험료	122,723,558	117,776,422	-4,947,136	
퇴직공제부금	62,725,374	60,196,838	-2,528,53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92,890,065	89,752,654	-3,137,411	
[간접비 소계]	378,613,347	363,958,084	-14,655,263	
일반관리비	18,930,667	18,197,904	-732,763	(재+노+경)*율%
이윤	43,684,116	41,993,203	-1,690,913	(노+경+관)*율%
공급가액	441,228,131	424,149,192	-17,078,939	
부가가치세	44,122,813	42,414,919	-1,707,894	
합 계	485,350,944	466,564,111	-18,786,833	

※ 청주시(㉮과) 제출자료 재구성

<표-2> ㉯사업 설계변경 현황

단위 : 원

구분	변경계약원가(A)	감사시 재산정원가(B)	차 액 (B-A)	비고
국민건강보험료	511,038,365	498,105,284	-12,933,081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8,871,619	57,381,729	-1,489,890	
국민연금보험료	670,458,497	653,490,897	-16,967,600	
퇴직공제부금	342,678,786	334,006,458	-8,672,32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89,709,072	486,065,365	-3,643,707	
[간접비 소계]	2,072,756,339	2,029,049,732	-43,706,607	
일반관리비	103,637,816	101,452,486	-2,185,330	(재+노+경)*율%
이윤	-	-	-	(노+경+관)*율%
공급가액	2,176,394,155	2,130,502,218	-45,891,937	
부가가치세	217,639,416	213,050,222	-4,589,194	
합 계	2,394,033,571	2,343,552,440	-50,481,130	

※ 청주시(㉮과)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제경비 재산출, 준공금 감액 등 적정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제　　목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규정 미준수

기 관 명 진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 및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하며, '일반수도사업자'란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가 수질기준에 맞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전용상수도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 및 즉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및 별표6에 근거하여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 원수는 2년마다 1회 이상(계곡수는 반기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근거하여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마을상수도 정수는 매분기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표-1> 진천군 지방, 마을상수도시설 원·정수 수질검사 주기

구 분		원수		정수		비 고
		수원 종류	정기수질검사	시설용량	정기수질검사	
마을상수도	ⓐ	지하수	매2년	20㎥/일	매분기	
	ⓑ	계곡수	매반기	2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15㎥/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3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27㎥/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15㎥/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5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3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2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2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5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5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40㎥/일	매분기	
	ⓝ	지하수	매2년	30㎥/일	매분기	

※ 자료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 수도시설현황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천군(㈜소)은 일반수도 사업자로 관리 중인 마을상수도 14개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전산망(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 관리 중인 마을상수도 14개소의 원·정수 수질검사

실시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 <표-2>와 같이 13개소의 원수 및 1개소의 정수에 대하여 법정 주기에 맞도록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수도법」 제29조 4항에 근거한 전산망(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공개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2> 진천군 마을상수도시설 수질검사 및 자료입력 현황

원수 수질검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검사횟수	공개횟수	검사횟수	공개횟수	검사횟수	공개횟수	검사횟수	공개횟수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13개소 '18년~'22년 검사 및 공개 실적 없음
ⓑ	2	-	2	1	2	2	2	2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	-	-	미실시	미공개	-	-	1	1	
정수 수질검사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검사횟수	공개횟수	검사횟수	공개횟수	검사횟수	공개횟수	검사횟수	공개횟수	
ⓐ	4	4	4	4	4	4	4	4	국가 상수도 정보 시스템 공개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4	4	4	4	4	4	
ⓝ	4	4	3(-1)	3(-1)	4	4	4	4	

※ 진천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는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질검사 및 결과 공개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수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자격 규정 미준수

기 관 명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 등 기술적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에 맞는 자를 수도시설 관리자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2]에

---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졸업 후 또는 해당 학력을 갖춘 후 2년(마을상수도 및 시설용량이 1일 2천톤 이하인 전용상수도는 1년) 이상 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나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하고 토목·전기·전자·기계·건축·환경 또는 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 법령에 따라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에 관한 과목을 이수한 사람 등

맞는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천시(㈜소)는 일반수도사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근거하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고 수돗물의 공급, 수도시설의 관리, 수도관련 통계자료의 관리, 수질관리 및 긴급조치와 수도시설 운영요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관서는 2024. 1. 8. 수도시설관리자(㈜소장)를 임명하면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미준수 하였다.

<표> 제천시 수도시설관리자 임명현황

시군	정수장명	시설규모 (㎥/일)	임명현황		자격현황	비고
			직급	성명		
제천시	ⓐ	73,000	행정5급	A	자격미달	

※ 제천시 ㈜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은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여 수행토록 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 미준수

기 관 명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수도법」 제2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 별표2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1조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상수도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2 별표2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에 따라 아래의 [표-1]과 같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다.

<표-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상수도관망시설의 규모	배치기준
1. 6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 600㎞ 이상 1,000㎞ 미만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1,000㎞ 이상 1,500㎞ 미만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4. 1,500㎞ 이상	가.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옥천군의 경우

옥천군(㉮소)은 상수도 관망시설 701km를 운영 및 관리 중인 일반수도사업자로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위 관서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미준수 하였다.

<표-1> 옥천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

시군	상수도관망시설 규모(km)	배치기준(명)		배치현황(명)	부족 인원(명)	비고
옥천군	701	1급	-	-	-	2급 2명 미배치
		2급	2	-	2	

※ 옥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영동군의 경우

영동군(㉯소)은 상수도 관망시설 822km를 운영 및 관리 중인 일반수도

사업자로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을 2명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위 관서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적용을 미준수 하였다.

<표-2> 영동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

시군	상수도관망시설 규모(km)	배치기준(명)		배치현황(명)	부족 인원(명)	비고
영동군	822	1급	-	-	-	2급 2명 미배치
		2급	2	-	2	

※ 영동군 제출 자료 재구성

다. 진천군의 경우

위 관서(㉰소)는 934km의 상수도관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아래의 [표-4]과 같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에 비하여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3> 진천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

시군	상수도관망시설 규모(km)	배치기준(명)		배치현황(명)	부족 인원(명)	비고
진천군	934	1급	-	1	-	2급 1명 미배치
		2급	2	-	1	

※ 진천군 제출 자료 재구성

라. 괴산군의 경우

위 관서(㉮소)는 600km의 상수도관망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관망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기준에 맞게 배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는 아래의 [표-5]와 같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기준'에 비하여 1명이 부족한 상태로 상수도관망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다.

<표-4> 괴산군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현황

시군	상수도관망시설 규모(km)	배치기준(명)		배치현황(명)	부족 인원(명)	비고
괴산군	600	1급	-	-	-	2급 1명 미배치
		2급	1	-	1	

※ 괴산군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옥천군수, 영동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는**

[통보]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규정에 맞게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관련자에 대한 교육 지원, 자격증 취득자의 조속한 고용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결과보고 미준수

기 관 명 청주시, 보은군, 증평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결과를 인가관청에 알리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74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수장·상수도관망 등 그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진단 결과 및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시행결과를 인가관청에 알려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의 구분) 및 제29조(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에 따르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

진단은 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과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으로 구분되며, 상수도관망에 대한 기술진단은 시·군단위의 급수구역에 따라 일반기술진단(군 단위 이하 급수구역)과 전문기술진단(시 단위 이상 급수구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 등의 보고 기한)에 따라 기술진단 결과보고는 실시 후 60일 이내,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는 60일 이내, 개선계획 시행 결과보고 30일 이내에 인가관청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수행 하였으나 기술진단 수행 후 결과보고 및 시설개선 계획수립 결과에 대한 보고를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시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였다.

<표-1> 청주시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현황

지자체	최근 기술진단 시행시기	기술진단 결과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	비고
청주시	'19.5.24 ~ '21.12.22	미보고	시행('22.9.8)	미보고	

※ 청주시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보은군의 경우

보은군(㉯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수행 하였으나 기술진단 수행 후 결과보고 및 시설개선 계획수립 등에 대한 보고를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시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였다.

<표-2> 보은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현황

지자체	최근 기술진단 시행시기	기술진단 결과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	비고
보은군	'20.3.11. ~ '20.7.8.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 보은군 ㉮소 제출 자료 재구성

다. 증평군의 경우

증평군(㉯소)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수행 하였으나 기술진단 수행 후 결과보고 및 시설개선 계획수립 등에 대한 보고를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시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였다.

<표-3> 증평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현황

지자체	최근 기술진단 시행시기	기술진단 결과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	비고
증평군	'20.6.26 ~ '21.2.19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 증평군 ㉯소 제출 자료 재구성

라. 단양군의 경우

단양군(㉰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수행 하였으나 기술진단 수행 후 결과보고 및 시설개선 계획수립 등에 대한 보고를 정부합동감사일 현재(2024. 3. 11～)까지 시행하지 않아 관련규정을 미준수 하였다.

<표-4> 단양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실시 및 결과보고 현황

지자체	최근 기술진단 시행시기	기술진단 결과보고	시설개선계획 수립	시설개선계획 수립 결과보고	비고
단양군	'19.7.17 ~ '22.10.20	미시행	미시행	미시행	

※ 단양군 ㉰과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보은군수, 증평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실시 결과 등의 관련 보고가 인가관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수도시설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기 관 명 보은군,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6개월마다 1회)을 실시하여야 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환경부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고,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

1)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화기계통 전염병이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제조공장 또는 수도의 취수장·배수지 부근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2. 1.>

1.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먹는샘물등의 취수·제조·가공·저장·이송시설에서 종사하는 자와 「수도법」 제32조제1항(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자 : 6개월마다 1회

2.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1호 외의 자 : 환경부장관이 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그 시설 안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인가관청은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건강진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보은군의 경우

보은군(㉮본부)은 일반수도사업자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표-1>과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1> 보은군(㉮본부) 건강진단 실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보은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 보은군 ㉮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괴산군의 경우

괴산군(㉯소)은 일반수도사업자로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나, 아래 <표-2>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표-2> 괴산군(㉮소) 건강진단 실시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괴산군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 괴산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 괴산군수는**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수·정수 및 배수시설의 업무 종사자, 시설 거주자가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마을상수도 수질기준 위반보고 및 주민공지 규정 미준수

기 관 명 청주시, 영동군

내　　용

1. 업무개요

일반수도사업자는 마을상수도 수질기준 위반 시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26조(수질기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등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6조의2(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 등을 관할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27조(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의 공지)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7조(마을상수도)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마을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청주시 소규모수도시설 관리 조례(2017.12.19. 시행)」 제4조(시설의 관리)에 따르면 시장은 시설물의 운전·개수·보수·소독 등 마을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조례 제8조(개선조치)에 따르면 시장은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청주시(㈜본부)는 일반수도사업자로 63개의 마을상수도를 운영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 관서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 마을상수도의 2023년 2분기 수질이 수질기준(질산성질소 : 먹는물 수질기준 10㎎/ℓ)을 초과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관련 규정에 따른 위반보고 및 주민공지를 시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였다.

<표-1> 청주시 ⓐ 마을상수도 먹는물 수질기준(질산성질소) 초과 현황

구분		2023년	비고
		2분기	
ⓐ	질산성질소(mg/L)	10.5	질산성질소 수질기준 10mg/l
	위반보고	미실시	
	주민공지	미실시	

※ 청주시 ㉮본부 제출 자료 재구성

나. 영동군의 경우

영동군(㉯소)은 일반수도사업자로 마을상수도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위 관서의 마을상수도 수질검사결과를 확인한 결과, ⓑ 마을상수도의 경우 2023년 4월 24일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폐쇄되기 전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질산성질소 : 먹는물 수질기준 10㎎/ℓ)을 초과하였으나, 아래 표와 같이 관련규정에 따른 위반보고 및 주민공지를 시행하지 않아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였다.

<표-2> 영동군 ⓑ 마을상수도 먹는물 수질기준(질산성질소) 초과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비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2분기	
ⓑ	질산성질소(mg/L)	10.8	11.4	15.2	13.3	12.3	질산성질소 수질기준 10mg/l
	위반보고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주민공지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미실시	

※ 영동군 ㉯소 제출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영동군수는**

[주의]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시 즉시 수질기준 위반 항목 및 조치계획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 · 시정요구

제　　목 전용상수도 설치사업장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그 밖의 위생에 필요한 조치(이하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도꼭지의 먹는 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mg/L(결합잔류염소 0.4mg/L) 이상이 되도록 위생상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가관청은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수도법」 제2조(책무)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시장 · 군수는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6조(수질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병원성 미생물, 건강에 해로운 무기·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및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되며 수질기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33조(위생상의 조치)제1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2(일반수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위생상의 조치)의 규정에 따라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수도꼭지의 먹는 물 유리잔류염소가 항상 0.1mg/L(결합잔류염소 0.4mg/L) 이상이 되도록 위생상의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52조(전용상수도 인가) 및 제53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 규정)의 규정에 따르면 전용상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게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용상수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수질기준), 제33조(위생상의 조치)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1061호, 2023. 11. 17)」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및 제6조(수질검사결과의 보고)의 규정에 따르면 전용상수도는 매분기(잔류염소 포함 17개 항목) 및 매년(전 항목 60개)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전용상수도 설치자는 분기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출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수질검사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63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따르면 인가관청은

전용수도의 설치자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소독 등 위생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지방시설서기 A는 2019. 10. 28. 부터 2020. 6 .30. 까지 음성군 ○○○○소에서 “관내 전용상수도 관리 감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서기보 B는 2020. 7. 1. 부터 2022. 3 .1. 까지 음성군 ○○○○소에서 “관내 전용상수도 관리 감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지방시설서기 C는 2022. 3. 2. 부터 정부합동감사일(2024. 3. 11.~) 현재 까지 음성군 ㉮소에서 “관내 전용상수도 관리 감독” 실무담당자로 근무하였다.

음성군(㉮소)은 총 9개소의 전용상수도를 인가하였으며 설치자가 수질검사, 소독 등 위생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고 미준수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인가하여 운영중인 전용상수도의 2020년 부터 2023년 까지 분기별 수질검사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총 9개소 중 8개소에서 유리잔류염소가 불검출되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이중 6개소는 전회 모두 불검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전용상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른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 음성군 전용상수도 유리잔류염소 분석결과

시설명	시설용량 (㎥/일)	유리잔류염소 검사결과(1회/분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	330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	119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	304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	129	3회 불검출	3회 불검출	4회 불검출	2회 불검출
-	200	검출	검출	검출	검출
-	180	3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	400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	400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	255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4회 불검출

※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waternow.go.kr) 조회 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음성군수는

[훈계] 관련자 A, B, C를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기초시설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진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이하 “실적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1]하도록 되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재정법」 제3조(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중앙

1)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보조사업 완료시 실적보고서 등을 제출하여 보조사업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위 관서(㉮과, ㉯과)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사업 등 3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하여 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의 반납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1>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관리 현황

연번	관련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완료일)	실적보고서 적정제출일	제출 지연일	교부금액 (백만원)	비고
1	㉮과	㉠사업	2017.6~ 2022.7	2022.10	907	11,400	
2	㉮과	㉡ 정밀조사	2017.4~ 2022.7	2023.6.9	530	1,082	
3	㉯과	㉢사업	2017.12 ~ 2022.12.16	2023.3.15	369	8,693	

※ 청주시 제출자료 재구성

나. 진천군의 경우

위 관서(㉱소)에서는 아래 <표-2>와 같이 ㉣사업(2차)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작성하여 실적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정산, 집행잔액의 반납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제출기한 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관리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완료일)	실적보고서 적정제출일	실적보고서 제출일	제출 지연일	교부금액 (백만원)	집행잔액(백만원)			비고
						계	반납액	이자액	
㉣사업(2차)	2018.3.20.~ 2020.12.15	2021.3.15	미제출	1,085	2,146	1,126	1,126		
㉤사업(2차)	2020.8.5.~ 2023.3.9	2023.6.9	미제출	269	33	3	3		

※ 진천군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진천군수는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완료된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기간 내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정산 등)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물의 재이용시설에 대한 관리 소홀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지붕면적 1천㎡이상인 체육시설, 공공기관의 청사 등과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는 빗물 재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 그 이행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운동장 또는 체육관, 건축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등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 포함)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조에 따르면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 포함)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수도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괴산군(㉮소)은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위 관서에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시설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 포함)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표>와 같이 괴산군 ⓐ센터 등 6개 시설이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2024. 3. 11. ~) 설치·운영하도록 이행을 명하지 않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물의 재이용시설 미설치 현황

시설 구분	대상 구분	시설명	위치	최초 건축 허가일 등	건축(부지)면적 (연면적 등)	비고
빗물	산업단지 개발사업	ⓐ센터	괴산군 ○○읍 ○○리 0000	2014.12.18	1,290.66㎡	
빗물	체육시설	ⓑ승마장	괴산군 ○○읍 ○○리 00-0	2018.11.12	2,680㎡	
빗물	체육시설	ⓒ센터	괴산군 ○○읍 ○○리 000	2020.07.06	2,677.74㎡	
빗물	체육시설	ⓓ센터	괴산군 ○○면 ○○리 산0-00	2019.05.29	1,580.18㎡	
중수도	산업단지 개발사업	ⓔ산업단지	괴산군 ○○읍 ○○리 일원	2015.08 고시	9,846.04㎡	
중수도	도시개발사업	ⓕ타운	괴산군 ○○읍 ○○리 00-0 일원	2017.11 고시	96,653㎡	

※ 괴산군 ㉮소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시정] 관련 법령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신고 및 설치·운영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업무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완료,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보조사업을 정산하여 최소한 사업집행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기획재정부 지침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반납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서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하여 보고하고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하도록 통지하였다.

따라서 충청북도는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보건복지부에 반납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18년부터 2022년 회계연도까지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현황을 확인한 결과, 충청북도는 각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예산 미편성 등의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총 76건 10,392,954,2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시정]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조속히 납부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 미준수**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통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신청인에 대한 급여결정 통지는 급여의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①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22조제1항, 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원받고자 신청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급여의 실시 여부와 급여의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74건의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등 급여신청일로부터 결정 통지일까지 최소 62일(2일 지연)에서 최장 91일(31일 지연)이 소요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 <붙임>과 같다.

따라서 위 관서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대한 조사를 지연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법정 처리 기간인 60일을 초과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막대한 의료비 때문에 한시라도 빠른 급여 지원이 필요했던 의료급여 신청자의 경우에는 법정 처리 기간 내에 보장 결정이 이루어졌다면 지원받을 수 있었던 의료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급여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표>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 미준수 현황('23.1.~'24.1.):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

제　　목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보장기관이 보장비용 징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통지[1]를 해야 하며,

1)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서식 8호)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고,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계처리에 동의하는 경우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 가능하고, 분할 납부 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 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분할 징수’ 가능.

징수대상자가 타 시·군·구 거주 및 전출 시에는 각 담당사업팀에서 보장비용 납부 통지서 및 고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하도록 해야 하고,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로 결정된 수급자가 보장비용의 징수에 대하여 상계처리를 동의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급여에서 상계처리가 가능[2]하다고 되어 있으며, 보장비용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① '일시 납부' 또는 '분할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대상자에게 납부의 독촉 등 사후관리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② 수급권자인 징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하기로 하였으나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여 ②-1 급여의 변경 또는 정지·중지 등의 사유로 상계처리 할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일시 납부 혹은 분할 납부 등으로 납부방식을 변경하여 납부통지 및 독촉 등 사후관리 절차를 진행하고 ②-2 상계처리 할 급여가 있음에도 상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상계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19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현황[3]을 확인한 결과,

---

2) 단, 타법에 따른 급여(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에서 상계하는 것은 불가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각각의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간에도 상계 불가

3) 사망자, 결손, 등록 오류 등은 제외

가.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 미이행

청주시는 납부고지 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대상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지 않는 등 총 9건(33,664,130원)에 대한 사후 관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미납부자에 대한 독촉고지 이행 현황('19년 1월 ~ '24년 1월)

(단위: 원)

연번	시군구	성명	주민등록번호(앞6자리)	환수(징수)결정 급여	환수(징수)결정 일자	환수(징수)결정액	미납액	납부방법	납부통지일	독촉고지일
청주시 소계				9건		34,973,850	33,664,130			
1	청주시	-	-	생계급여	2024.01.09.	411,540	411,540	분납	감사중 조치 2024.02.27.	-
2	청주시	-	-	생계급여	2023.12.04.	460,080	460,080	분납	감사중 조치 2024.02.27.	-
3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8.30.	1,437,300	1,317,520	분납	-	감사중 조치 2024.02.27.
4	청주시	-	-	생계급여	2022.12.21.	1,683,870	693,930	분납	감사중 조치 2024.02.27.	-
5	청주시	-	-	생계급여	2023.12.28.	23,752,680	23,752,680	분납	감사중 조치 2024.02.27.	-
6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9.07.	1,852,860	1,852,860	분납	-	감사중 조치 2024.02.27.
7	청주시	-	-	생계급여	2020.09.01.	874,920	874,920	일시	감사중 조치 2024.02.27.	-
8	청주시	-	-	생계급여	2020.02.25.	2,296,000	2,096,000	분납	-	-
9	청주시	-	-	생계급여	2019.01.28.	2,204,600	2,204,600	분납	-	-

※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상계처리 불가능 징수대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미이행

청주시 등 2개 시·군은 급여중지, 전출 등의 사유로 상계처리가 불가능하게 된 총 13건(10,690,564원)에 대해 납부방법의 변경을 통한 “납부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그 상세 내역은 <표-2>과 같다.

<표-2> 상계처리 불가 징수대상자에 대한 납부고지 미이행 현황('19년 1월 ~ '24년 1월)

(단위: 원)

연번	시군구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환수(징수)결정급여	환수(징수)결정일자	환수(징수)결정액	미납액	급여 중지 및 전출일	비고
합계				13건		18,435,424	10,690,564		
청주시 소계				12건		16,889,344	9,496,114		
1	청주시	-	-	생계급여	2023.06.19.	3,651,350	2,755,350	2023.05.30.	중지
2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7.07.	1,424,740	252,960	2023.05.17.	중지
3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10.20.	1,665,630	1,110,430	2022.05.25.	중지
4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5.14.	1,089,900	1,089,900	2021.11.26.	중지
5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6.11.	930,180	697,650	2021.12.07.	중지
6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5.12.	921,990	553,210	2022.10.19.	중지
7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7.12.	27,260	9,100	2021.09.09.	중지
8	청주시	-	-	생계급여	2019.04.13.	1,388,360	488,520	2023.11.03.	중지
9	청주시	-	-	생계급여	2023.08.13.	549,660	274,830	2023.08.25.	중지
10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8.15.	764,960	509,980	2021.06.08.	중지
11	청주시	-	-	생계급여	2020.08.12.	3,865,134	1,510,094	2023.04.24.	중지
12	청주시	-	-	생계급여	2020.02.13.	610,180	244,090	2020.04.21.	중지
음성군 소계				1건		1,546,080	1,194,450		
1	음성군	-	-	생계급여	2023.02.07.	1,546,080	1,194,450	2023.07.13.	중지

※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상계처리 가능 대상자에 대한 상계처리 미이행

청주시 등 2개 시·군은 수급자격이 유지되어 상계처리가 가능한 대상자의 급여에서 보장비용 징수금액을 차감상계 하지 않는 등 총 23건(19,765,330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업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상계처리 미이행 현황('19년 1월 ~ '24년 1월)

(단위: 원)

연번	시군구	성명	생년월일	환수(징수)결정급여	환수(징수)결정일자	환수(징수)결정액	미납액	마지막납부월
합계				23건		28,524,020	19,765,330	
청주시 소계				20건		23,413,840	16,575,430	
1	청주시	-	-	생계급여	2023.10.16.	4,668,950	4,668,950	-
2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5.12.	900,640	681,250	2021.10.
3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5.13.	675,480	352,330	2021.08.
4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4.12.	3,465,540	2,100,600	2021.09.
5	청주시	-	-	생계급여	2019.04.02.	40,000	20,000	2019.08.
6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4.08.	2,208,490	1,181,230	2022.02.
7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6.14.	626,430	313,230	2021.08.
8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4.11.	630,000	535,560	2021.10.
9	청주시	-	-	생계급여	2019.11.13.	2,096,900	2,028,920	2019.11.
10	청주시	-	-	생계급여	2020.06.23.	1,081,230	208,920	2022.01.
11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7.14.	3,032,640	3,032,640	-
12	청주시	-	-	생계급여	2022.03.23.	187,030	187,030	-
13	청주시	-	-	생계급여	2022.04.27.	131,600	32,900	2022.07.
14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4.05.	314,100	52,350	2021.08.
15	청주시	-	-	생계급여	2022.01.14.	776,080	129,380	2022.10.
16	청주시	-	-	생계급여	2022.01.14.	130,560	65,280	2022.06.
17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7.12.	716,030	155,790	2021.12.
18	청주시	-	-	생계급여	2020.09.13.	501,640	313,500	2021.04.
19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3.26.	1,225,580	510,650	2022.02.
20	청주시	-	-	생계급여	2021.04.13.	4,920	4,920	2021.04.
음성군 소계				3건		5,110,180	3,189,900	
1	음성군	-	-	생계급여	2023.01.12.	1,329,540	1,196,550	2023.01.
2	음성군	-	-	생계급여	2021.08.31.	877,260	541,660	2021.12.
3	음성군	-	-	생계급여	2022.05.11.	2,903,380	1,451,690	2023.04.

※ 자료: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및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미완료 건 중 급여의 중지, 전출 등의 사유로 ① 납부고지 및 독촉고지를 아니한 9건, 총 33,664,130원에 대하여 “독촉” 등을, ② 상계처리가 불가능한 12건, 총 9,496,114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③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가 가능한 20건, 총 16,575,430원에 대하여 차감상계 등 보장비용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기초생활 보장비용 징수 미완료 건 중 급여의 중지, 전출 등의 사유로 ① 상계처리가 불가능한 1건, 총 1,194,45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②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상계처리가 가능한 3건, 총 3,189,900원에 대하여 차감상계 등 보장비용 징수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이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격 중지자에 대한 서면 통지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수급자격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보장기관[1]은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고 급여의 중지는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이하 “사업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안내"라 한다)에 따르면 급여의 중지 결정은 해당 급여의 보장기관장이 행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중지처리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생계급여의 중지 결정에 대하여는 사업안내에 구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및 민원 발생 시 서면 통지 여부는 행정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며 소급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판단기준이 될 수 있음을 기술하면서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수급자의 수급자격 또는 급여가 중지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초생활급여(생계, 의료) 수급자에 대한 서면 통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청주시 등 11개 시·군은 총 1,335건의 기초생활급여 수급자격을 중지하면서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그 상세 내역은 <붙임>과 같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수급자에 대한 수급자격 중지 시 대상자에게 반드시 서면 통지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격 중지자에 대한 서면 통지 미실시 현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점검 소홀**

기 관 명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은 타인에 의한 수급권 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을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는(미약한) 무연고 장기입원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스스로 급여를 사용·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장기관이 판

단하는 사람인 경우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수급자의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1]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급여관리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인 경우 연 1회, 그 외의 자가 급여관리자인 경우 반기별로 수급자의 생활 실태 및 급여관리자의 급여관리 실태(통장 소지자,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인출 여부 및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급여 사용 여부 등) 등을 점검하고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고의로 수급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 결과, 총 19명의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자에 대해 급여관리 점검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1) (1) 반기별 점검
- ○ 급여 관리·사용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이나, 타인이 급여를 관리하는 것을 희망하지 않아 급여관리자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 ○ ① 수급자와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친족, ②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중 직계존속 또는「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아닌 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 직계존속의 범위 : 대상자의 부모 및 (외)조부모
- ○ 보장시설 외 시설 입소자 또는 무연고 장기입원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 ○「아동복지법」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서, 보호 중인 수급자의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 ○ 수급자의 이웃, 지역인사 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등

(2) 연 1회 점검
- ○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또는 「민법」상 3촌 이내 친족이 급여관리자로 지정된 경우
  ※ 수급자의 직계존속이나 3촌 이내 친족이 수급자의 병원 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거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치료비 결제, 물품 구매 대행 등 보호자 역할을 지속하는 기간은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가능

<표>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 점검 부적정 현황

연번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자				점검여부			
								2022년		2023년	
	시군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명	지정연월일	급여관리자 유형	점검주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합계				19명							
보은군 소계				2명							
1	보은군	-	-	-	2018.01.10.	병원관계자	반기	여	부	여	-(사망)
2	보은군	-	-	-	2023.07.17.(변경 지정일)	병원관계자	반기	여	부	여	부
증평군 소계				1명							
1	증평군	-	-	-	2022.12.19.	위탁가정의 위탁부모	반기	-	-	여	부
괴산군 소계				16명							
1	괴산군	-	-	-	2023.07.21.(변경 지정일)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반기	여	여	여	부
2	괴산군	-	-	-	2015.05.01.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중 직계존속 및 3촌내 친족 이외의 자	반기	여	여	여	부
3	괴산군	-	-	-	2012.04.27.	2촌이내 직계존비속	반기	여	부	부	부
4	괴산군	-	-	-	2021.09.03.	시설관계자	반기	여	여	여	부
5	괴산군	-	-	-	2022.11.03.(변경 지정일)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반기	여	여	여	부
6	괴산군	-	-	-	2020.04.22.	시설관계자	반기	여	여	여	부
7	괴산군	-	-	-	2016.07.13.	기타	반기	여	여	여	부
8	괴산군	-	-	-	2015.02.05.	기타	반기	여	여	여	부
9	괴산군	-	-	-	2018.01.31.	주거를 같이하는 친족 중 직계존속 및 3촌내 친족 이외의 자	반기	여	여	여	부
10	괴산군	-	-	-	2020.10.08.	기타	반기	여	여	여	부
11	괴산군	-	-	-	2020.12.22.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반기	여	여	여	부
12	괴산군	-	-	-	2020.07.09.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반기	여	여	여	부
13	괴산군	-	-	-	2020.05.01.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반기	여	여	여	부
14	괴산군	-	-	-	2020.04.29.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존비속 및 친족	반기	여	여	여	부
15	괴산군	-	-	-	2021.05.04.	기타	반기	여	여	여	부
16	괴산군	-	-	-	2018.01.31.	시설관계자	반기	여	여	여	부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 증평군수, 괴산군수는**

[주의] 앞으로 급여관리자에 대한 급여관리(사용)실태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긴급의료지원사업 비급여 진료비 심사 청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의 검사비, 치료비, 약제비 등에 대하여 1회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긴급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시·군·구청장은 요양기관 등이 청구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진료비 내역 중 비급여 항목의 지원금액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금액[1] 이상인 건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긴급의료비 지원금액 중 비급여진료비 항목이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심사평가원에 심사요청을 하도록 한 것은, 보장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임하도록 하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긴급지원 대상자가 부당하게 의료비 등을 청구받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가 제도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2)]

따라서 긴급의료비를 지원한 시·군·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진료비용 외의 본인부담금 과다 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의 긴급의료비를 지원한 내역 중 비급여 항목이 기준금액 이상인 건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에 심사 요청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붙임>과 같이 긴급의료지원 총 105건

---

1) 보건복지부 지침 「긴급지원사업안내」에 따라 15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단, 2020.7.31.부터 2021.12.31.까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요청 기준금액 한시적 완화 조치에 따라 2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적용함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과-3675(2020.7.24.), 6735(2021.12.27.))

2) ‘202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긴급의료비 부정 청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급여진료비 확인 제도의 위임규정을 신설하는 등 요양기관 등의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문한 바 있는 만큼, 각 지자체는 긴급의료비 지원 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여 관내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243,535,298원)[3]에 대해 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요양기관 등에 과다하게 지불된 진료비에 대한 확인 및 환급 등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38건(87,907,913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12건(28,439,055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3건(7,134,109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6건

3) 2020.1.1.부터 2024.1.31. 기간 중 해당 지자체가 심평원에 심사 요청하지 않은 101건(234,700,249원)을 금번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기간('24.2.15.~ '24.3.6.) 중 심사 요청함

(15,026,270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9건(21,536,863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5건(11,263,410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10건(23,299,150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1건(2,332,280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6건(14,450,367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9건(18,482,980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수는

[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긴급의료지원 6건(13,662,901원)에 대하여 비급여진료비 부당 청구 여부 심사를 요청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긴급의료지원 비급여진료비 심사 미요청 현황(2024.1.31. 기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주의요구

제　　목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중지 지연처리**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음성군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는 등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및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 사업안내」에 의하면 의료급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종료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수급자 자격 상실시 행복이음을 통하여 지체없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료급여 사업안내」의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의 진료비 상호정산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가입자가 의료급여증을 사용한 경우(소급상실)에는 시·군·구에서 건강보험공단지사에 지급청구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자격 상실 시에는 행복이음을 통하여 즉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격상실 자료를 전송하고, 의료급여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의료급여수급자 중지처리 현황을 살펴본 결과 아래 <표>과 같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중지자 중 총 17명의 의료급여 중지를 지연처리하였다.

<표> 의료급여 중지처리 지연 및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시군	의료급여 자격관리 지연 대상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보장 구분	중지사유 발 생 일[1]	실 제 의료급여 자격상실일	자격 상실 지연 일수	자격상실 이후의 의료급여 진료횟수	중지지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부담액
합계				17명					16,470
청주시 소계				5명					-
1	청주시	-	-	국민기초	2023.08.08.	2023.08.10.	2	-	-
2	청주시	-	-	국민기초	2022.12.23.	2022.12.27.	4	-	-
3	청주시	-	-	국민기초	2023.06.04.	2023.06.06.	2	-	-
4	청주시	-	-	국민기초	2023.09.27.	2023.10.11.	14	-	-
5	청주시	-	-	국민기초	2023.08.08.	2023.08.10.	2	-	-
충주시 소계				4명					16,470
1	충주시	-	-	국민기초	2023.08.15.	2023.08.17.	2	-	-
2	충주시	-	-	국민기초	2023.08.23.	2023.08.25.	2	-	-

연번	시군	의료급여 자격관리 지연 대상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보장 구분	중지사유 발 생 일[1]	실 제 의료급여 자격상실일	자격 상실 지연 일수	자격상실 이후의 의료급여 진료횟수	중지지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 부담액
3	충주시	-	-	국민기초	2023.05.31.	2023.06.03.	3	-	-
4	충주시	-	-	국민기초	2021.11.23.	2021.12.10.	17	1	16,470
옥천군 소계				1명					-
1	옥천군	-	-	국민기초	2023.11.06.	2023.11.10.	4	-	-
영동군 소계				5명					-
1	영동군	-	-	국민기초	2021.12.29.	2021.12.31.	2	-	-
2	영동군	-	-	국민기초	2021.12.29.	2021.12.31.	2	-	-
3	영동군	-	-	국민기초	2021.12.29.	2021.12.31.	2	-	-
4	영동군	-	-	국민기초	2021.12.29.	2021.12.31.	2	-	-
5	영동군	-	-	국민기초	2021.12.29.	2021.12.31.	2	-	-
괴산군 소계				1명					-
1	괴산군	-	-	국민기초	2023.01.12.	2023.01.18.	6	-	-
음성군 소계				1명					-
1	음성군	-	-	국민기초	2020.12.24.	2020.12.29.	5	-	-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시정]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액 16,47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 옥천군수, 영동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는

[주의]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상실 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1) 의료급여 보장 중지일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정·주의요구

제　　목　**의료급여수급자 중 군입대자 자격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군입대 시 군입대 의료급여 자격을 책정하고, 군입대자가 제대 시 제대일로 군입대 의료급여 자격을 중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의료급여법」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의 소득, 재산상황, 근로능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권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을 받아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르면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는 1종 수급권자에 해당하며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의3제3호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급권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

13조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의료급여 사업안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군입대자의 의료급여(군입대 1·2종)자격은 해당 수급자의 군입대 기간 동안 유지(입대일로 자격 책정, 제대일로 자격 중지)하되, 제대 후 10일 이내 신청할 경우 의료급여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군입대 1·2종 자격 취득 시 제대일을 반드시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대 정보가 누락 되지 않게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군입대자 발생 시 군입대 의료급여 자격을 취득시켜야 하고, 제대일을 시스템에 입력하여 제대 시 제대일로부터 군입대자 자격을 중지하여 의료급여기금이 부당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의료급여수급자중 군입대자 16명의 제대 후 의료급여 자격 중지를 지연처리하였다. 그중 10명은 의료급여 자격중지를 지연처리하여 건강보험재정에서 부담해야 할 급여비용 총 7,030,700원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당하게 지급하였고, 그 내역은 <붙임>과 같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자 3명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액(총 80,550원)을 검토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시정]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자 5명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액(총 4,709,330원)을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는

[시정]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자 1명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액(총 1,467,390원)을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는

[시정]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자 5명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액(총 685,500원)을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의료급여 자격상실 지연처리자 1명에 대하여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액(총 87,930원)을 검토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는

[주의] 앞으로 군입대자의 의료급여 자격 관리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급여 중지처리 지연 및 의료급여기금 부당지급 현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연장심의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이하 “상한일수”라 한다)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승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 각 호[1]에 정하는 바

1) 1.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윤년의 경우 366일로 한다. 이하 같다)
2. 정신 및 행동장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 각 질환별로 연간 380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질환 : 모든 질환의 의료급여 일수를 합하여 연간 400일

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가 장기간 입원 또는 복합적인 투약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2022 의료급여 사업안내」에 따르면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①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②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2](이하 "만성고시질환"이라 한다) 각 질환별 연간 380일, ③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 포함) 및 만성고시질환에 해당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로 되어 있고, 의료급여일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의 급여일수를 합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

2) 만성고시질환(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② 신경계질환(G00~G37, G43~G83)
③ 고혈압성 질환(I10~I15)
④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B18, B19, K70~K77)
⑤ 당뇨병(E10~E14)
⑥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⑦ 대뇌혈관질환(I60~I69)
⑧ 두개내손상(S06)
⑨ 갑상선의 장애(E00~E07)
⑩ 심장질환(I05~I09, I20~I27, I30~I52)
⑪ 뇌전증(G40~G41)

따라서 위 관서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승인하되,「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질환의 경우에는「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의 2022년 의료급여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연장심의 실시 여부을 확인한 결과, 청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총 87명의 의료급여수급자가 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수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 승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상한일수 초과자에 대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미실시 내역

(단위: 일, 명)

연번	시군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급여 상한일수 (a)	실급여 일수 (b)	초과일수 (c=b-a)
합계				87명		
청주시 소계				17명		
1	청주	-	-	400	565	165
2	청주	-	-	400	619	219
3	청주	-	-	400	418	18
4	청주	-	-	400	401	1
5	청주	-	-	380	455	75
6	청주	-	-	400	408	8
7	청주	-	-	400	430	30
8	청주	-	-	400	825	425
9	청주	-	-	380	385	5
10	청주	-	-	400	438	38
11	청주	-	-	400	692	292
12	청주	-	-	380	417	37

13	청주	-	-	380	470	90
14	청주	-	-	400	441	41
15	청주	-	-	400	421	21
16	청주	-	-	400	560	160
17	청주	-	-	380	392	12
충주시 소계				4명		
1	충주	-	-	400	406	6
2	충주	-	-	380	399	19
3	충주	-	-	380	416	36
4	충주	-	-	400	440	40
제천시 소계				3명		
1	제천	-	-	400	413	13
2	제천	-	-	400	404	4
3	제천	-	-	380	420	40
보은군 소계				14명		
1	보은	-	-	400	436	36
2	보은	-	-	380	453	73
3	보은	-	-	380	390	10
4	보은	-	-	380	402	22
5	보은	-	-	380	402	22
6	보은	-	-	380	392	12
7	보은	-	-	380	410	30
8	보은	-	-	380	424	44
9	보은	-	-	400	447	47
10	보은	-	-	400	442	42
11	보은	-	-	380	421	41
12	보은	-	-	380	420	40
13	보은	-	-	380	383	3
14	보은	-	-	380	381	1
진천군 소계				11명		
1	진천	-	-	400	697	297
2	진천	-	-	400	539	139

3	진천	-	-	400	464	64
4	진천	-	-	400	1,103	703
5	진천	-	-	400	415	15
6	진천	-	-	380	425	45
7	진천	-	-	400	599	199
8	진천	-	-	380	407	27
9	진천	-	-	380	405	25
10	진천	-	-	380	422	42
11	진천	-	-	380	412	32
괴산군 소계				24명		
1	괴산	-	-	400	407	7
2	괴산	-	-	380	401	21
3	괴산	-	-	400	540	140
4	괴산	-	-	380	405	25
5	괴산	-	-	380	404	24
6	괴산	-	-	380	381	1
7	괴산	-	-	380	389	9
8	괴산	-	-	380	408	28
9	괴산	-	-	400	417	17
10	괴산	-	-	380	397	17
11	괴산	-	-	380	410	30
12	괴산	-	-	380	420	40
13	괴산	-	-	380	389	9
14	괴산	-	-	380	395	15
15	괴산	-	-	380	464	84
16	괴산	-	-	380	394	14
17	괴산	-	-	380	418	38
18	괴산	-	-	380	433	53
19	괴산	-	-	380	383	3
20	괴산	-	-	400	514	114
21	괴산	-	-	380	390	10
22	괴산	-	-	400	676	276

23	괴산	-	-	380	543	163
24	괴산	-	-	380	572	192
음성군 소계				12명		
1	음성	-	-	400	575	175
2	음성	-	-	400	703	303
3	음성	-	-	400	460	60
4	음성	-	-	400	417	17
5	음성	-	-	400	506	106
6	음성	-	-	400	568	168
7	음성	-	-	400	474	74
8	음성	-	-	400	714	314
9	음성	-	-	380	436	56
10	음성	-	-	400	470	70
11	음성	-	-	400	426	26
12	음성	-	-	380	383	3
단양군 소계				2명		
1	단양	-	-	380	401	21
2	단양	-	-	400	407	7

※ 자료: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의료급여 상한일수 연장승인 시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심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 등 사후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지급이 완료된 의료급여비용 중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료비 환수를 위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의료급여법」 제23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한 기관, 제13조제1항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 또는 급여비용을 받은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침 「의료급여 사업안내」에 따르면 지급이 완료된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 환수(현지조사에 의한 환수)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행정처분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면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전산망에 등록하고, 보장기관(시·군·구)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송한 부당이득금 내역을 행복이음에서 확인하여 전산상계 또는 직접환수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는 등 환수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등록한 부당이득금 내역을 행복이음에서 확인하여 전산상계 또는 직접환수를 결정하여 공단에 통보하는 등 환수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 청주시의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행복이음 시스템상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실사에 의한 환수)를 처리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총 3건의 부당청구(실사에 의한 환수) 결과에 대해 전산상계 또는 직접환수 등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환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미처리 내역(실사에 의한 환수)

(단위: 원)

연번	의료기관명	시군구	접수년월	실사 차수	명세서 건수	환수금 합계
청주시 소계					3건	4,284,930
1	-	청주시	2023.09	202153028	8	28,250
2	-	청주시	2020.02	201654132	368	557,700
3	-	청주시	2020.10	201851127	218	3,698,980

※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자료 및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미환수금 3건(총 4,284,930원)을 검토하여 상계 환수, 직접환수 등 사후 조치를 이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

제　　목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어린이집 전반의 주요 정보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부모들이 쉽고 편리하게 어린이집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기본현황 등 7개 항목[1] 자료를 공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어린이집의 시설, 설치·운영자, 보육교직원 등 기본현황, 어린이집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 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1) ①기본 현황, ②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에 관한사항, ③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에 관한 사항, ④법 제38조에 따라 수납하는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에 관한 사항, ⑤예산·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⑥건강·영양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보육여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6에서는 어린이집 정보 공시의 범위·횟수 및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20년 이후의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등과 연계하여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 또한 변경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 운영정지 처분 등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이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해당 정보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 관내 전체 어린이집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정보공시 준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관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충청북도 합계 기준 2021년 54.8%(1042개소 중 571개소), 2022년 80.6%(972개소 중 783개소), 2023년 84.8%(921개소 중 781개소) 수준으로 정보공시가 완료되었다.

시·군별, 연도별(2020년, 2021년, 2022년)로는 청주시 54.6%, 83.3%, 88.4%, 충주시 65.8%, 84.4%, 88.0%, 제천시 50.8%, 91.5%, 85.2%, 보은군 28.6%, 62.5%, 71.4%, 옥천군 78.9%, 88.2%, 86.7%, 영동군 62.5%, 93.8%, 93.8%, 증평군 37.5%, 52.0%, 76.0%, 진천군 53.6%, 83.6%, 88.0%, 괴산군 36.4%, 54.5%, 63.6%, 음성군 42.6%, 43.9%, 58.5%, 단양군 66.7%, 83.3%, 50.0% 수준으로 정보공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관서는 해당 어린이집에 시정을 권고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 정보공시 관리를 게을리하였다[2].

2) 2021년(청주시 1개소, 충주시 4개소), 2022년(청주시 6개소, 충주시 1개소), 2023년(청주시 8개소, 충주시 2개소)만 시정 권고

<표> 어린이집 정보공시 완료 및 사후 관리 현황

(단위 : 개소, %)

지자체	연도별	전체 어린이집 수	정보공시 완료 어린이집		사후 관리	
			개소	처리율	시정 권고 개소수	운영 정지 처분 개소수
합계	2021	1042	571	54.8	5	-
	2022	972	783	80.6	7	1
	2023	921	781	84.8	10	-
청주시	2021	661	361	54.6	1	-
	2022	603	502	83.3	6	-
	2023	578	511	88.4	8	-
충주시	2021	114	75	65.8	4	-
	2022	109	92	84.4	1	1
	2023	100	84	84.0	2	-
제천시	2021	61	31	50.8	-	-
	2022	59	54	91.5	-	-
	2023	54	46	85.2	-	-
보은군	2021	7	2	28.6	-	-
	2022	8	5	62.5	-	-
	2023	7	5	71.4	-	-
옥천군	2021	19	15	78.9	-	-
	2022	17	15	88.2	-	-
	2023	15	13	86.7	-	-
영동군	2021	16	10	62.5	-	-
	2022	16	15	93.8	-	-
	2023	16	15	93.8	-	-
증평군	2021	24	9	37.5	-	-
	2022	25	13	52.0	-	-
	2023	25	19	76.0	-	-
진천군	2021	56	30	53.6	-	-
	2022	55	46	83.6	-	-
	2023	50	44	88.0	-	-
괴산군	2021	11	4	36.4	-	-
	2022	11	6	54.5	-	-
	2023	11	7	63.6	-	-
음성군	2021	61	26	42.6	-	-
	2022	57	25	43.9	-	-
	2023	53	31	58.5	-	-
단양군	2021	12	8	66.7	-	-
	2022	12	10	83.3	-	-
	2023	12	6	50.0	-	-

※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자료 및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정보공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미준수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 권고하는 등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양육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보육료 지급 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영동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군, 음성군은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양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이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되 양육수당 자격확정을 하는 경우 보육료 자격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고, 아래 <표-1>과 같이 매월 15일 이내에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

우에는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하여 해당 월 보육료는 미지원하고 양육수당은 전액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매월 16일 이후에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하여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고 양육수당은 익월 1일부터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표-1>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한 경우 적용 규정

변경구분	지 원 내 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 자료:「보육사업안내」 발췌

따라서 위 관서는 보육료수급자가 보육료에서 양육수당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확인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중복 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주시 등 3개 시·군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양육수당을 지급받은 “A” 등 25명의 영유아에게 총 1,550,010원의 보육료를 중복 지급하였다.

<표-2>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급 현황('21.1.~'23.12.)

(단위: 원)

연번	시군구	어린이집명	아동명	생년월일	보육료		양육수당	
					지급월	지원금액	지급일	지원금액
합계			25명			1,550,010		2,750,000
청주시 소계			22명			1,154,070		2,450,000

1	청주	ㄱㄱ	A	000000	2021.01.	13,440	2021.01.25.	100,000
2	청주	ㄱㄴ	B	000000	2021.10.	76,730	2021.10.25.	100,000
3	청주	ㄱㄷ	C	000000	2022.02.	66,180	2022.02.25.	100,000
4	청주	ㄱㄹ	D	000000	2022.03.	52,680	2022.03.25.	150,000
5	청주	ㄱㄷ	E	000000	2022.03.	43,680	2022.03.25.	100,000
6	청주	ㄱㅁ	F	000000	2022.04.	10,730	2022.04.25.	100,000
7	청주	ㄱㅂ	G	000000	2022.04.	118,190	2022.04.25.	150,000
8	청주	ㄱㅅ	H	000000	2022.09.	24,340	2022.09.30.	100,000
9	청주	ㄱㅇ	I	000000	2022.09.	63,300	2022.09.30.	100,000
10	청주	ㄱㅈ	J	000000	2022.09.	63,300	2022.09.30.	100,000
11	청주	ㄱㅊ	K	000000	2022.10.	46,660	2022.10.25.	100,000
12	청주	ㄱㅊ	L	000000	2022.10.	12,160	2022.10.25.	100,000
13	청주	ㄱㅊ	M	000000	2022.10.	12,160	2022.10.25.	100,000
14	청주	ㄱㅊ	N	000000	2022.10.	46,660	2022.10.25.	100,000
15	청주	ㄱㅋ	O	000000	2022.10.	41,580	2022.10.25.	150,000
16	청주	ㄱㅌ	P	000000	2022.10.	62,370	2022.10.25.	150,000
17	청주	ㄱㅌ	Q	000000	2022.11.	115,150	2022.11.25.	150,000
18	청주	ㄱㅍ	R	000000	2022.12.	51,850	2022.12.23.	100,000
19	청주	ㄱㅎ	S	000000	2023.08.	27,730	2023.08.25.	100,000
20	청주	ㄱㅎ	T	000000	2023.08.	100,960	2023.08.25.	100,000
21	청주	ㄱㅎ	U	000000	2023.08.	75,380	2023.08.25.	100,000
22	청주	ㄴㄱ	V	000000	2023.11.	28,840	2023.11.24.	100,000
영동군 소계			1명			144,230		100,000
1	영동	ㄴㄴ	W	000000	2023.07.	144,230	2023.07.25.	100,000
음성군 소계			2명			251,710		200,000
1	음성	ㄴㄷ	X	000000	2022.02.	159,630	2022.02.25.	100,000
2	음성	ㄴㄹ	Y	000000	2021.10.	92,080	2021.10.25.	100,000

※ 자료: 사회보장정보시템 추출자료 및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A” 등 22명에게 과오 지급한 보육료 1,154,07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

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는

[시정] “W”에게 과오 지급한 보육료 144,23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X” 등 2명에게 과오 지급한 보육료 251,71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본재산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관리와 정관 변경 등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법인의 재산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價額)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는 부동산, 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관할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지와 소유재산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가액을 정관에 적었는지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에서 사전감사자료로 제출한 "ㄱㄱ" 등 89개의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기본재산 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ㄱㄴ" 등 32개의 어린이집 기본재산 목록에 토지 외에 어린이집 설치에 필수적인 건물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나, 토지만 법인 기본재산으로 등재된 32개 어린이집 중 청주시 소재 "ㄱㄷ"과 "ㄱㄹ"의 소재지 지번 건축물 관리대장을 표본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지번에 법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본재산 목록

연번	시군구	법인명	시설장 성명	소재지	기본재산 종류
합계			32개소		
청주시 소계			13개소		
1	청주	ㄱㄴ	-	청주시 상당구 ○○면 ○○○○로 000	토지
2	청주	ㄱㄷ	-	청주시 청원구 ○○읍 ○○○길 00-0	토지
3	청주	ㄱㄹ	-	청주시 흥덕구 ○○읍 ○○○로000	토지
4	청주	ㄱㅁ	-	청주시 서원구 0○○로 000번길00	토지
5	청주	ㄱㅂ	-	청주시 서원구 ○○로 00-00	토지
6	청주	ㄱㅅ	-	청주시 흥덕구 ○○로00번길 00	토지
7	청주	ㄱㅇ	-	청주시 흥덕구 ○○로 000번길 00	토지
8	청주	ㄱㅈ	-	청주시 청원구 ○○면 ○○길 0	토지

9	청주	ㄱㅊ	-	청주시 청원구 ○○읍 ○○0길 00	토지
10	청주	ㄱㅋ	-	청주시 서원구 0○○로 0000번길 00	토지
11	청주	ㄱㅌ	-	청주시 서원구 ○○로 00번길 00	토지
12	청주	ㄱㄹ	-	청주시 청원구 ○○읍 ○○0길 00-0	토지
13	청주	ㄱㄷ	-	청주시 청원구 ○○읍 ○○○○로 0000-00	토지
충주시 소계			1개소		
1	충주	ㄱㅎ	-	충주시 ○○면 ○○○0길 00	토지
제천시 소계			3개소		
1	제천	ㄴㄱ	-	제천시 ○○로 00○길 00	토지
2	제천	ㄴㄴ	-	제천시 ○○읍 ○○로 00	토지
3	제천	ㄴㄷ	-	제천시 ○○면 ○○○0길 00-0	토지
옥천군 소계			1개소		
1	옥천	ㄴㄹ	-	옥천군 ○○읍 ○○길 000-0	토지
영동군 소계			4개소		
1	영동	ㄴㅁ	-	영동군 ○○읍 ○○길 00	토지
2	영동	ㄴㅂ	-	영동군 ○○읍 ○○로 0000-00	토지
3	영동	ㄴㅅ	-	영동군 ○○면 ○○로 0000	토지
4	영동	ㄴㅇ	-	영동군 ○○면 ○○○로 000	토지
진천군 소계			5개소		
1	진천	ㄴㅈ	-	진천군 ○○○면 ○○0길 00	토지
2	진천	ㄴㅊ	-	진천군 ○○면 ○○로 000-0	토지
3	진천	ㄴㅋ	-	진천군 ○○읍 ○○길 000	토지
4	진천	ㄴㅌ	-	진천군 ○○면 ○○0길 00	토지
5	진천	ㄴㅍ	-	진천군 ○○읍 ○○로 000	토지
괴산군 소계			2개소		
1	괴산	ㄴㅎ	-	괴산군 ○○면 ○○로○○0길0	토지
2	괴산	ㄷㄱ	-	괴산군 ○○면 ○○○○○0길 00	토지
단양군 소계			3개소		
1	단양	ㄷㄴ	-	단양군 ○○읍 ○○0길 00-0	토지
2	단양	ㄷㄷ	-	단양군 ○○읍 ○○00길 00	토지
3	단양	ㄷㄹ	-	단양군 ○○읍 ○○00길 0-0	토지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통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본재산 조사 및 정관 등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에게 연령, 장애정도,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장애인연금사업안내」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도록 장애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 장애인[1]에게는 장애수당[2]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1) 만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종전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경증장애인(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2) 장애수당(기초): 2020~2022(4만원/월), 2023~2024(6만원/월) / 장애수당(시설): 2020~2022(2만원/월), 2023~2024(3만원/월)

장애인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장애수당 미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자가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로 새롭게 책정되거나 기존 기초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가 새롭게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경우 장애수당을 지급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A” 등 213명에게 각 1~100개월간 총 143,570,000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그 세부 내역은 아래 <붙임>과 같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66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54,15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은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38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26,94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43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11,41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

랍니다.

보은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9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6,51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3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1,64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6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7,96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증평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8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5,78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9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6,74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7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7,03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18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9,07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수는

[시정]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 6명에게 미지급된 장애수당 6,340,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표> 장애수당 미지급 내역(2021년 1월 ~ 2024년 1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아동수당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장애인에게 연령, 장애 정도,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 수준 및 장애아동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는 장애아동수당[1]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해당 장애인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1) 연도별 지급액

지급연도	구 분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또는 의료)
2020~2021년	중증장애인	월 20만원	월 15만원	월 15만원	월 7만원
	경증장애인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10만원	월 2만원
2022~2024년	중증장애인	월 22만원	월 17만원	월 17만원	월 9만원
	경증장애인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11만원	월 3만원

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20세 이하의 경우를 포함)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장애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 줌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장애아동수당 과오지급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중 18세 이상임에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재학' 등의 사유로 장애아동수당 대상으로 포함된 대상자가 졸업 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여야 했으나, "A" 등 56명에게 수당을 중지하지 않고 각 1~31개월간 계속 지급하여 총 42,780,000원을 과오 지급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 <붙임>과 같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시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38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30,49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시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1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33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는

[시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3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99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수는

[시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1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6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수는

[시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4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61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괴산군수는

[시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3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3,06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수는

[시정]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6명에게 부적정 지급된 7,240,000원을 환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아동수당 과오 지급 내역 (2021년 1월 ~ 2024년 1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

제　　목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자격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음성군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정신적·감각적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양육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지원 대상인 “장애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다.

다만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안내」에 따라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

하고 있고,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 장애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례 규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던 영·유아가 만 6세 도래하는 경우 그 도래월까지만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로는 자격을 중지하여야 하되 장애등록증을 제출하여 신규로 신청한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을 계속 지원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지나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을 지원받던 대상자가 만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 졸업하는 달까지만 비용을 지원하고 이후로는 자격을 중지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생성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충주시 등 4개 시·군은 특례 규정에 따라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여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던 “A” 등 5명이 학교 졸업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자격을 중지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총 4,332,700원의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을 과오 지급하였다.

<표> 발달재활서비스 과오 지급 내역('21.1.~'23.12.)

(단위: 원)

순번	시군구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과오 지급 내역	
		성명	생년월일	만20세 도래월	졸업년월	개월	금액
합계				5명			4,332,700
충주시 소계				1명		18	3,092,700

1	충주시	A	00.00.00.	2021.07	2020.01	18	3,092,700
제천시 소계				1명		1	180,000
1	제천시	B	00.00.00.	2021.01	2021.02	1	180,000
보은군 소계				2명		2	400,000
1	보은군	C	00.00.00.	2021.10	2021.01	1	180,000
2	보은군	D	00.00.00.	2022.08	2022.01	1	220,000
음성군 소계				1명		3	660,000
1	음성군	E	00.00.00.	2022.07	2021.02	3	660,000

※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자료 및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시정] “A”에게 과오 지급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3,092,70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시정] “B”에게 과오 지급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180,00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수는

[시정] “C” 등 2명에게 과오 지급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400,00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E”에게 과오 지급한 발달재활서비스 비용 660,000원을 환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확인 등 자격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은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동지원인력의 자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에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제공내용 확인, 활동지원급여의 관리·평가 등 활동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활동지원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 따르면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의2제1항에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2].

또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이 같은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는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의 확인 주체는 활동지원기관의 장으로 활동지원인력의 소속, 고용관계, 결격사유 확인 목적 등을 고려하여 활동지원기관이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관계기관에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각 결격사유 확인 방법도 규정[3]하고 있다.

---

1)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6.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절차는 2016.12.2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6.12.30. 시행됨

3) 결격사유 확인 방법
1. 정신질환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특정 연령의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료 활용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3.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사법기관(법원)의 피성년후견 및 피한정후견 선고 사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따라서 위 관서는 활동기관의 장이 소속 활동지원인력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활동지원기관별 활동지원인력(2024. 2. 20. 현재)에 대한 2023년도 활동지원인력 결격사유 조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주시 등 5개 시·군은 활동지원기관의장의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 의무 이행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센터” 등 8개 소의 활동지원기관에서 총 452명의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규정한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괴산군수는**

[주의] 관할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범죄경력조회 회신서

붙임> 2023년 결격사유 조회 미실시 활동지원인력 현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후점검(모니터링) 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음성군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협업하여 부정이 의심되는 활동지원급여 이상결제 건에 대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전자바우처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및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소명자료를 검토·심사하여 부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후점검(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나 ②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제19조제3항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

급자가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②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③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2023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사회서비스 제공비용(결제대금)을 지급하고 ① 장기요양급여 중복제공자 ② 장기입원환자 ③ 제공인력 입원중 결제 ④ 시설종사자 서비스제공 등 부정이 의심되는 이상결제 건에 대해 제공기관의 소명을 받고 모니터링 결과(점검필요, 사실인정)를 전자바우처 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제공하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는 제공받은 모니터링 결과의 소명자료를 심사 후 환수 및 행정처분을 진행하며 처분 즉시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한 부정이 의심되는 활동지원급여 이상결제 건에 대하여 심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의 2021년 1월부터 2024년 1. 22.(자료 추출일)까지의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후 점검(모니터링) 결과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주시 등 5개 시·군은 아래 <붙임>와 같이 "□" 등 15개 제공기관의 총 120건의 사후 점검(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제공기관 소명자료 등에 대한 검토 및 심사를 하지 않고 부당금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증평군수, 음성군수는**

[시정]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후 점검(모니터링) 결과 미처리 건을 지체없이 완료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사후 점검(모니터링) 결과 미처리 현황('21년 1월~'24년 1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의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사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장사시설의 안전관리·보건위생·운영실태를 점검하거나,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 또는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례식장 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제37조제2항에 따르면 장례식장업자는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등을 관할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르면 장례식장 영업자는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할 시장 등에게 별지 제

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2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있고,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별표7에 따르면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 이후 개정된 보건복지부「장사(葬事)업무안내」에 따르면 시·군·구청장은 장례식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장례식장영업자가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하고 관할 장례식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장례식장영업자의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현황 누락

그런데 충청북도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례식장영업자의 연도별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보고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아래 <표-1>와

같이 “□□” 등 22개소 장례식장에서 각각 매년 장례식장영업자의 장례식장 관리·운영상황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누락한 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사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1> 장례식장 관리·운영상황 보고 현황

('24.1.31. 기준)

연번	시군구	장례식장명	장례식장 관리·운영상황 보고 현황 (장례식장영업자→시장등)					
			2021년		2022년		2023년	
			보고일	사후조치 유무 (과태료 부과 등)	보고일	사후조치 유무 (과태료 부과 등)	보고일	사후조치 유무 (과태료 부과 등)
합계		22개소						
청주시 소계		6개소						
1	청주시	□□	부	무	'23.1.13.	-	'24.1.22.	-
2	청주시	□□	부	무	부	무	'24.1.30.	-
3	청주시	□□	부	무	부	무	'24.1.12.	-
4	청주시	□□	부	무	부	무	'24.1.23.	-
5	청주시	□□	부	무	부	무	'24.1.10.	-
6	청주시	□□	부	무	부	무	'24.1.29.	-
충주시 소계		6개소						
1	충주시	□□	부	무	'23.1.31.	-	'24.1.25.	-
2	충주시	□□	부	무	'23.1.31.	-	'24.1.10.	-
3	시충주	□□	부	무	'23.1.12.	-	'24.1.21.	-
4	충주시	□□	부	무	'23.1.30.	-	'24.1.25.	-
5	충주시	□□	부	무	'23.1.17.	-	'24.1.10.	-
6	충주시	□□	부	무	'23.1.12.	-	'24.1.22.	-
보은군 소계		2개소						
1	보은군	□□	'22.1.21.	-	'24.2.23. (감사중)	무	'24.2.23. (감사중)	무
2	보은군	□□	'24.2.23. (감사중)	무	'24.2.23. (감사중)	무	'24.2.23. (감사중)	무
옥천군 소계		2개소						
1	옥천군	□□	'21.2.3.	-	부	무	'24.1.31	-
2	옥천군	□□	'21.2.3.	-	부	무	'24.1.31	-

영동군 소계		3개소						
1	영동군	ㄴㄷ	부	무	부	무	'23.2.23.	-
2	영동군	ㄴㄹ	부	무	부	무	'23.2.23.	-
3	영동군	ㄴㅁ	부	무	부	무	'23.2.23.	-
괴산군 소계		3개소						
1	괴산군	ㄴㅂ	부	무	부	무	부	무
2	괴산군	ㄴㅅ	부	무	부	무	부	무
3	괴산군	ㄴㅇ	부	무	부	무	부	무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장례식장 정기 지도・감독 소홀

그리고 충청북도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장례식장 정기 지도·감독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아래 <표-2>와 같이 "ㄴㅈ" 등 15개소의 장례식장에 대해 각각 매년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고 누락한 연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2> 장례식장 정기 지도·감독 실시 현황

('23.12.31. 기준)

연번	시군구	장례식장명	정기 지도·감독 실시 여부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14개소			
제천시 소계		6개소			
1	제천시	ㄴㅈ	여(3.22.)	여(4.5.)	부
2	제천시	ㄴㅊ	여(3.22.)	여(4.5.)	부
3	제천시	ㄴㅋ	여(3.22.)	여(4.5.)	부
4	제천시	ㄴㅌ	여(3.22.)	여(4.5.)	부
5	제천시	ㄴㅍ	부	여(4.5.)	부
6	제천시	ㄴㅎ	여(3.22.)	여(4.5.)	부
증평군 소계		4개소			
1	증평군	ㄷㄱ	여(7.22.)	여(4.5.)	부
2	증평군	ㄷㄴ	여(7.22.)	여(4.5.)	부

3	증평군	ㄷㄷ	여(7.22.)	여(4.5.)	부
4	증평군	ㄷㄹ	('22.10. 영업시작)	부	부
음성군 소계		4개소			
1	음성군	ㄷㅁ	부	여(4.6.)	부
2	음성군	ㄷㅂ	부	여(4.6.)	부
3	음성군	ㄷㅅ	부	여(4.6.)	부
4	음성군	ㄷㅇ	부	여(4.6.)	부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괴산군수는**

[시정]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의 관리·운영상황 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증평군수, 음성군수는

[시정] 정기 지도·감독을 미실시한 장례식장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자 조사 사후조치 소홀

기 관 명 증평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증평군, 음성군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기초연금 중점관리수급권자 등을 조사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 등을 결정하여 변동내역을 수급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신청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 및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집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한 후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사업안내」를 통해 수급자의 인적사항 변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중점관리수급자[1]에 대한 조사내용[2]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수급자 중 현장확인이 필요한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이 확인조사 실시 후 조사결과를 시·군·구에 회신하고 시·군·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 변동내용을 결정하고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업안내」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 65세 이상인 자를 “신청자격이 있는 자”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 자를 “예외적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자” 중 하나로 규정하며 이중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한 날로부터 1개

1) 「행복e음」으로 조회(통보)되지 않아 정기적인 현장확인이 필요한 수급자

2) ①사실혼·사실이혼 관계로 등록된 수급자 (만 65세 미만 배우자 포함), ②거주불명등록자로서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여 매월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자, ③기초연금 지급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자, ④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사유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부부1인 수급가구, ⑤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외국국적을 가진 수급자로서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이 경과한 자, ⑥기초연금 수급권 상실 개연성이 높은 고령(만 85세 이상) 수급자, ⑦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에서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수급자

월 이내에 국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수급)자격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한 중점관리수급권자에 대한 국민연금공단의 조사결과를 확인하여 수급자격 여부, 기초연금액 등 변동내용을 결정하고 수급자에게 통지하는 등 사후조치를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국민연금공단에서 행복이음을 통해 충청북도로 전송한 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현황을 확인한 결과, 증평군 등 2개 군은 아래 <표>와 같이 “A 등 2명에 대해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를 지연하여 과오지급된 기초연금 금20,098,240원 중 지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금11,499,24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기초연금 지급 및 환수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과오수급자는 반납에 더 큰 부담을 갖게 한 사실이 있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과오지급된 기초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다.

<표> 기초연금 확인조사 결과 처리 내역

(단위: 원)

연번	시군구	성명	주민등록번호(앞 6자리)	조사유형 및 결과	회신일(공단→시군구)	시군 처리일	총 과오 지급		처리 지연에 따른 과오 지급	
							지급액	지급 기간	지급액	지급 기간
합계					3건		20,098,240 (환수액: 0)	73개월	11,499,240	45개월
증평군 소계					1건		8,997,680 (환수액: 0)	27개월	4,189,080	17개월
1	증평	A	-	외국 국적 배우자 (혼인신고 2년 경과-귀화 불허가자)	2021.10.05.	2023.02.05.	8,997,680	2019.12 ~ 2023.2.	4,189,080	2021.10 ~ 2023.2.

음성군 소계					2건		11,100,560 (환수액: 0)	46개월	7,310,160	28개월
1	음성	B	-	외국 국적 배우자 (혼인신고 2년 경과-귀하허가 미신청)	2021.10.06.	감사 중 중지 처리	11,100,560	2020.5. ~ 2024.2.	7,310,160	2021.10. ~ 2024.2.
2	음성	B	-	외국 국적 배우자 (혼인신고 2년 경과-귀하허가 미신청)	2022.10.04.	감사 중 중지 처리				

※ 자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추출 자료 및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증평군수는

[시정] “A”에게 과오 지급된 금8,997,68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수는

[시정] B”에게 과오 지급된 금11,100,56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 미준수

기 관 명 충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기초연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기초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초연금의 지급 신청 접수를 받은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및 기초연금 수급권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기초연급 지급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수급권의 발생 여부 등의 내용을 결정함으로써 기초연금 지급신청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3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기초연금 지급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충주시는 아래 <표>와 같이 “A” 등 총 3건의 기초연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리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등 접수일로부터 결정통지일까지 최소 65일(5일 지연)에서 최장 71일(13일 지연)이 소요되었다.

<표>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 기간 미준수 현황('23.1.~'24.1.)

(단위 : 일)

연번	시군	성명	주민등록 번호 (앞 6자리)	신청 급여명	접수일 (a)	처리완료일 (b)	총 민원 처리기간 (c=b-a)
충주시 소계				3건			
1	충주	A	-	기초연금	2023.02.15.	2022.05.30.	71
2	충주	B	-	기초연금	2023.10.19.	2024.01.23.	70
3	충주	C	-	기초연금	2023.01.17.	2023.04.20.	65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주의] 기초연금 지급 신청에 따른 법정 처리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향후 동

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제　　목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법 제39조의3제2항에는 시·도지사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고,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이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개별기준 “5-다” 또는 “7-나”에 따르면 학습교구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지정취소”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르면, 광역시·도지사는 교육기관(실습시설)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정기(연 1회 이상)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2]하여 교육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교육기관(실습시설)에 대해 정기(연 1회 이상) 및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도·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충청북도는 아래 <표>와 같이 “㉮” 등 2개 교육기관에 대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11에 따라 위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여 2023년 처분 시에는 각각 2차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 “경고” 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2) 다만, 여건 상 전수점검이 어려운 경우 지정기관의 1/2 이상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기관은 자체점검 후 서면보고하도록 함

<표> 교육기관(실습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21년~'23년)

점검 년도	결과 보고일	교육기관명	위반내역	적용법규 (별표11)	실제 처분 수위	적법 처분 수위
2021	11.10.	㉮	교육일정 임의변경 (강사 변경)	개별기준 7-나	경고 (1차)	경고 (1차)
		㉯	학습교구 기준 위반	개별기준 5-다	경고 (1차)	경고 (1차)
2023	9.12.	㉮	교육일정 임의변경 (강사 변경)	개별기준 7-나	**경고 (1차)**	**사업정지 1개월(2차)**
		㉯	학습교구 기준 위반 등	개별기준 5-다	**경고 (1차)**	**사업정지 1개월(2차)**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주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행정처분 시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11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전담사회복지사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대상자의 욕구와 상태 점검을 위해 연 1회 필수적으로 재사정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소득자격, 유사중복 사업 수혜여부 등 대상 자격을 행복이음 조회 등을 통해 재검증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와 상태 등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연 1회 재사정을 실시해야 하며, 재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종결이 필요한 자(대상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는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자격 관리(재사정)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103명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대해 서비스 제공기간 중 연 1회 이상 재사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였으며, 그 상세내역은 <붙임>과 같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 보은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는**

[시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기간 중 연 1회 재사정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재사정 절차를 이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재사정 미실시 현황('20년 1월 ~ '23년 12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사무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은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운영 전반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운영 전반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의 각 시·군은 연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조직운영 전반 및 회계관리 등에 대한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현황을 확인한 결과, 총 395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할 정기 지도·감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2년에 1회 또는 3년간 1~2회만 실시하였으며, 그 상세 내역은 <붙임>과 같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정기 지도·감독을 미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을 조속히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미실시 현황 ('21년 ~ '23년):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 처리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관리 소홀**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으로부터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보고 받고 공개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6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부터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법인 및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 미공고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세입·세출명세서 공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1>와 같이 총 147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회계별 세입·세출 명세서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지 않았다.

<표-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 공고 미이행 내역

(단위 : 건)

명칭		예산서 공고 미이행 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47개소			
청주시 소계		48개소			
법인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미준수
시설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미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휴지
	-	-	-	-	미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	준수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	미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충주시 소계		28개소			
법인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시설	-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	미준수	준수	준수
	-	-	준수	준수	미준수
	-	-	미준수	준수	준수
	-	-	미준수	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준수
	-	-	-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제천시 소계		19개소			
법인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시설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	-	-	미준수

	-	-	-	-	미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	미준수	준수	준수
	-	-	-	-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	-	미준수
	-	-	-	미준수	미준수
	-	-	-	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보은군 소계		7개소			
시설	-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미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미준수
	-	-	-	미준수	준수
옥천군 소계		8개소			
시설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	미준수	미준수
	-	-	-	미준수	미준수
영동군 소계		11개소			
법인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시설	-	준수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	-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	-	-	미준수
증평군 소계		6개소			
법인	-	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시설	-	-	미준수	준수	준수
	-	-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진천군 소계		1개소			
시설	-	준수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괴산군 소계		11개소			
법인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준수
시설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준수	미준수	준수	준수
	-	-	-	-	미준수
음성군 소계		7개소			
시설	-	준수	준수	준수	미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준수
	-	준수	준수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	-	미준수	미준수
	-	-	-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단양군 소계		1개소			
시설	-	준수	준수	미준수	-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 결산서 미공고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세입·세출결산서 공고현황을 확인한 결과, 아래 <표-2>와 같이 총 83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지 않았다.

<표-2> 사회복지법인 결산서 공고 미이행 내역

(단위 : 건)

명칭		결산서 공고 미이행 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83개소		
청주시 소계		35개소		
법인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시설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
	-	해당없음	미준수	-
	-	해당없음	미준수	-
충주시 소계		7개소		
시설	-	-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	미준수	제출예정
	-	-	미준수	제출예정
	-	-	미준수	제출예정
제천시 소계		6개소		
법인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시설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보은군 소계		8개소		
시설	-	준수	미준수	준수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제출예정
옥천군 소계		4개소		

시설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영동군 소계		6개소		
법인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시설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증평군 소계		5개소		
법인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시설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진천군 소계		1개소		
시설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괴산군 소계		6개소		
법인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시설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
음성군 소계		3개소		
시설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	해당없음	미준수	제출예정
단양군 소계		2개소		
시설	-	준수	미준수	미준수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미공개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3>와 같이 총 39개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3개월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표-3>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 공개 미이행 내역

(단위 : 건)

명칭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미이행 내역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39개소		
청주시 소계		4개소		
법인	-	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	-	미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미준수	제출예정
시설	-	미준수	준수	해당없음
충주시 소계		4개소		
시설	-	-	-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	-	미준수	미준수
제천시 소계		5개소		
시설	-	해당없음	미준수	미준수
	-	미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	미준수	해당없음	해당없음
	-	해당없음	미준수	미준수
	-	해당없음	미준수	미준수
보은군 소계		10개소		
시설	-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미준수	준수	해당없음
	-	-	미준수	해당없음
	-	-	미준수	해당없음
옥천군 소계		2개소		
시설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해당없음	미준수	해당없음
영동군 소계		4개소		
법인		미준수	-	제출예정
시설		미준수	-	해당없음
		미준수	-	해당없음
		미준수	준수	해당없음
증평군 소계		3개소		
시설	-	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준수	제출예정
	-	미준수	-	제출예정
괴산군 소계		4개소		
법인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미준수	미준수	준수
	-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음성군 소계		3개소		
시설	-	미준수	미준수	해당없음
	-	해당없음	미준수	해당없음
	-	해당없음	미준수	해당없음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예·결산서 등의 공개를 철저히 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사용 승인 절차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옥천군, 증평군, 음성군은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시설 이용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교부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안내」에서는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설계변경, 자체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및 금액변경 사업량 변경, 낙찰차액 활용사업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로부터 변경 관련 서류 일체를 접수하여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신건강사업안내」에서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변경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토한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서(기능보강비)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및 자체 부담 등으로 인한 단가, 사업비 및 사업량 변경 사항 등에 한하여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보육사업안내」에서도 국고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노숙인재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수행 시 사업수행기관은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시·군·구에서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 및 조정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에서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승인을 요청하거나,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승인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청주시의 경우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은 충청북도 청주시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을 교부 받아 “ㄴ”과 2021년 6월 17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노후보일러실 교체 등 추가공사를 이유로 충청북도 청주시에 2021년 10월 13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낙찰차액 사용)을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는 해당 노숙인재활시설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검토 및 조정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지 않고 2021년 10월 14일에 직접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4,859,880원의 보조금이 충청북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ㄱ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합계)	보조금(집행)			계약금액	낙찰차액	미승인 사용금액
		국	시·도	시군구			
ㄱ (노후보일러실 교체등)	441,302,000	220,651,000	154,455,000	66,196,000	126,367,240	17,932,760	4,859,880

나. 옥천군의 경우

충청북도 옥천군 소재 “ㄷ”은 충청북도 옥천군으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아 “ㄹ”과 2023년 11월 8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옥상크랙, 난간 테두리 보수 등 추가공사를 이유로 충청북도 옥천군에 2023년 12월 11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낙찰차액 사용)을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옥천군은 해당 정신요양시설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검토 및 조정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지 않고 2023년 12월 12일에 직접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11,876,340원의 보조금이 충청북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합계)	보조금(집행)			계약금액	낙찰차액	미승인 사용금액
		국	시·도	시군구			
㉢ (옥상크랙, 난간테두리 보수 등)	151,086,000	75,543,000	-	75,543,000	133,853,660	17,232,340	11,876,340

다. 증평군의 경우

충청북도 증평군 소재 "㉯"은 충청북도 증평군으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아 "㉱"과 2021년 11월 18일에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도배, 장판, 조명공사 등 추가공사를 이유로 충청북도 증평군에 2021년 12월 14일 사업계획 변경 승인(낙찰차액 사용)을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증평군은 해당 어린이집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검토 및 조정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지 않고 2021년 12월 16일에 직접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3,053,530원의 보조금이 충청북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합계)	보조금(집행)			계약금액	낙찰차액	미승인 사용금액
		국	시·도	시군구			
㉯ 기능보강사업 (도배, 장판 조명공사 등)	30,000,000	15,000,000	7,500,000	7,500,000	25,634,000	3,222,000	3,053,530

라. 음성군의 경우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 등 4개 어린이집은 충청북도 음성군으로부터 기능보강사업 보조금을 교부 받아 장애인 보행통로 보수, 계단수리 등 추가공사를 이유로 충청북도 음성군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낙찰차액 사용)을 신청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북도 음성군은 해당 어린이집이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를 검토 및 조정 후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충청북도에 제출하지 않고 직접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총 14,450,650원의 보조금이 충청북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1>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예산 및 집행 내역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합계)	보조금(집행)			자부담	계약금액	낙찰차액	미승인 사용금액
		국	시·도	시군구				
㉥ 기능보강사업 (장애인 보행통로 보수 등)	33,300,000	15,000,000	7,500,000	7,500,000	3,300,000	26,159,800	3,840,200	3,840,200
㉧ 기능보강사업 (지붕 및 판넬 공사 변경 등)	30,404,000	15,202,000	7,601,000	7,601,000	-	26,626,800	3,373,200	3,290,450
㉨ 기능보강사업 (중문설치 등)	33,000,000	15,000,000	7,500,000	7,500,000	3,000,000	26,312,000	3,688,000	3,676,000
㉩ 기능보강사업 (계단수리 등)	30,000,000	15,000,000	7,500,000	7,500,000	-	26,356,000	3,644,000	3,644,000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옥천군수, 증평군수, 음성군수는

[주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낙찰차액 사용 시 승인 요청 및 보고 등을 철저히 하시고,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장애인거주시설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와 제천시는 2021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비 부담분을 부담하여 장애인거주시설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하여 ㉠(대표자 A)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1>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단위: 천원)

시설명	사업명	사업비	공사 기간	사업 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준불연재)	106,590 (국비: 53,295 도비: 15,988 시비: 37,307)	’21. 6. ~ ’22. 12.	- 사업종류: 개보수 - 사 업 량: 646㎡ - 사업장소: 충북 제천시 ○○로0길 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1] 제13장 제6절 1-가 따르면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1) [시행 2022. 1. 11.] [행정안전부예규 제 197호, 2022. 1. 7. 일부개정.]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변경은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 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14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보조금을 관련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2021년「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사업의 변경 신청 시 변경신청서 및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결과(출장보고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 ▲자체부담 조정에 따른 사업비·사업량의 변경, ▲공기연장[2]에 대해서

는 시·도지사가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 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보조사업 변경 승인 시에는 보조사업자료부터 사업변경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설계도서, 공사비내역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면서, 제천시는 2022. 4. 7. ㉠으로부터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외벽 준불연재 교체) 변경 계획 신청을 받아 2022. 4. 13. 충청북도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3]하고, 충청북도는 2022. 4. 28.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4]하여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그 추진 경과 및 세부 내역은 아래 <표-2>과 같다.

<표-2> 사업계획 변경 추진 경과 및 세부 내역

추진 경과			세부 내역
시행일	주체	주요 내용	
2022.4.7.	㉠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외벽 준불연재 교체) 변경 계획 신청 (보조금수령자[5]→제천시)	(변경 사유) ①조적공사 미장벽돌에서 외단열(습식)공법으로 변경 및 벽 공간넣기 준불연재로 교체 ②가설공사 건축물현장정리 부분 반영 ③금속공사 당초 설계 시 누락 부분 반영 ④건설폐기물처리비 경비 상승분 반영
2022.4.12.	제천시	출장 결과 보고[6] (사업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여 계획변경의 타당성 검토)	(검토 내용) - 당초 설계의 외벽은 조적공사(벽돌)였으나, 현장 여건 등 실제 시공이 어려워, 준불연재인 DK보드 및 외단열(습식)공법으로 변경하고 금속공사 등 당초 설계 누락부분을 반영하여 화재에 취약한 현재 시설의 외벽을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2)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에서는 “공기연장”을 시군구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천시 ㉮과-14920(2022.4.13.)

4) 충청북도 ㉰과-8108(2022.4.28.)

2022.4.13.	제천시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제천시→충북도청)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라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출장보고서 사본)를 첨부하여 신청
2022.4.28.	충청북도	사업계획 변경승인 알림 (충청북도→보건복지부, 제천시)	- 보조사업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당초 보조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설계변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승인(제천시)하고 그 결과 보고(보건복지부)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런데 2022.04.13. ㉠에서 변경사유로 제출한 "④건설폐기물처리비 경비상승분 반영"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최초 설계서에 건설폐기물처리비가 "한국건설자원협회 2021년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표[7]"에 따라 톤(TON)당 단가(135,760원=156,569원×86.71%(낙찰률))로 적정하게 설계되었으나, 설계변경내역서에는 아래 <표-3>과 같이 철거공사의 설계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수령자가 제출한 견적서<별첨>에 근거한 세제곱미터(㎥)당 단가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설계변경내역서

(단위: 원)

<철거공사>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합 계]					46,707,726		17,952,340				64,660,066
					24,690,007		27,474,483		433,466		52,597,956
철 거 공 사											
외단열재철거		M2	646			1,879	1,213,834			1,879	1,213,834
		M2	646			1,879	1,213,834			1,879	1,213,834

<건설폐기물처리비>

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을 "보조금수령자"로, 제천시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충청북도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한다.

6) 제천시 ㉮과-14619(2022.4.12.)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합 계]									473,424		473,424
건설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KG	26.78					135,760	3,635,652	135,760	3,635,652
		TON	4.55					135,760	617,708	135,760	617,708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따라서 제천시는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건설폐기물 처리비 경비 상승분 반영”을 사유로 상기 <표-3>의 설계변경내역서를 작성하여 충청북도에 국고보조사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충청북도는 설계변경내역서 및 설계변경 사유 등 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변경승인을 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3장 제6절 1-가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통보]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시에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변경 사유 준수 여부, 설계도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은

[주의] 기능보강사업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에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 변경 사

7) 3. 기타 혼합건설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등)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으로 5% 이하 혼합된 경우 적용단가: 156,569원/톤

유를 준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은 노숙인의 발생추세, 신축·증축·개축의 필요성 및 시설의 입지조건, 지방비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대상시설 및 규모를 결정하고 노숙인 시설의 신축, 증개축, 개보수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1)「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①법 제16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의 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토하고 보조사업자의 성실성과 사업수행능력을 고려하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국고보조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사업에 소요되는 제반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관련 교부신청 제출서류를 규정하면서 시·군·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의견서(별지 27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에 시·군·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의견서(별지 27호 서식)를 포함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과 관련하여 시·군·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청주시 노숙인 재활시설 “㉠” 개보수 공사 등 6개 사업에서 시·군·구 건축공무원의 설계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시·군·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 여부

(단위: 천원)

연번	연도	시군	시설종류	시설명	사업종류	공사내용	예산액	정산액	설계도 검토 및 제출 여부	검토자
1	2021	청주	노숙인 재활시설	㉠	개보수	보일러 및 난방배관 교체공사, 옥상방수공사	160,330	147,257	여	사회복지 7급 A
2	2021	음성	노숙인 재활시설	㉡	신증축	코로나19 격리시설 신축공사	86,914	86,914	여	행정8급 B
3	2021	음성	노숙인 요양시설	㉢	개보수	석면내장재 철거 및 재시공, 핸드레일 설치	70,928	70,928	여	행정8급 B

4	2022	음성	노숙인 요양시설	ㄷ	개보수	도배, 장판교체 (ⓐ, ⓑ)	900,680	900,680	여	행정8급 B
5	2022	음성	노숙인 재활시설	ㄹ	개보수	리모델링공사 (ⓒ)	717,649	717,649	여	행정8급 B
6	2023	청주	노숙인 재활시설	ㅋ	개보수	남자생활실(3개동) 보일러 교체공사 및 배관공사 주방시설 외부옹벽 및 내부시설 개·보수 세탁기, 건조기구입	441,302	441,301	부	-

※ 자료: 수감기관 제출 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통보] 보조금 신청 시 시·군·구 건축공무원 설계도 검토의견서가 제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 음성군수는

[주의] 보조금 신청 시 시·군의 건축공무원의 설계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사회복지법인 재산 취득 보고 여부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기 관리, 정관변경의 인가, 기본재산 처분허가 등 관할지역 내의 사회복지법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르면 법인이 매수·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법인은 법 제24조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

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르면 제2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지침 2020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에 따르면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3월말까지[1]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상기의 사유 등으로 법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감소했을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체 없이 정관을 변경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정관을 변경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보은군 소재 "㉠(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법인 기본재산 목록(2020. 6. 15. 기준)을 확인한 결과, 충청북도는 법인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여 법인이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한 재산이 있음에도 재산 취득보고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 감사일(2024. 3. 21.) 현재까지 해당 재산이 법인 정관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 2019 태양광 설치 사업 개요

(단위: 천원)

공 사 명	공사 기간	공 사 비	설치 사유
비영리시설 태양광 설치사업	2019. 6. ~ 11.	46,295 - 에너지기금(21,495), 도비(9,900) - 군비(9,900), 자부담(5,000)	전기요금 절감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종전 보고시한은 1월 말이었으나 시행규칙 개정('19.1.4. 시행)으로 '19년도부터는 3월 말로 변경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시정] ㉠이 미신고 재산에 대해 재산 취득보고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을 하도록 지도·감독 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시정요구

제　　목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 소홀

기 관 명 보은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보은군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항공기 등을 중요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2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 변경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하지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제4조제4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등의 의무가 있으며, 제31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등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해 부기등기를 완료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의 2021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대상 시설의 사업완료 후 부기등기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보은군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수행하면서 간접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시에 해당사업의 중요재산 부기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중요재산관리 의무를 이행하게 해야 했으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에서는 치매전담실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을 완료하고 해당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

<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부기등기 미완료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도	시군구	시설명	사업명	예산 현황					비고
					계	국비	시도비	시군비	자부담	
1	2021	보은군	㉠	치매전담실 증개축	704,000	518,400	38,880	90,720	56,000	노인 요양시설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보은군수는**

[시정] 부기등기가 미완료 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운영현황 및 수행상황에 대한 이행점검 미흡**

기 관 명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서는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현황('20~'23년)

시·군	내역사업명	사업연도	예산액 (단위: 천원)	지원 개소수
충주시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1,794,000	3
		2021년	2,416,000	3
		2022년	3,476,000	4
		2023년	1,109,000	2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1,47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1,470,000	1
		2023년	-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3,227,000	4
		2021년	2,906,000	3
		2022년	2,057,000	4
		2023년	1,160,000	2

	시군역량강화	2020년	133,000	1
		2021년	77,000	1
		2022년	-	1
		2023년	127,000	1
제천시	기초생활거점조성	2023년	420,000	2
	농촌신활력플러스	2022년	980,000	1
		2023년	1,47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5,239,000	3
		2021년	2,772,000	2
		2022년	1,208,000	3
		2023년	3,429,000	3
	시군역량강화	2020년	123,000	1
		2021년	133,000	1
		2022년	182,000	1
		2023년	280,000	1
보은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1,083,000	1
		2021년	1,417,000	1
		2022년	387,000	2
		2023년	1,061,000	1
	농촌신활력플러스	2022년	980,000	1
		2023년	1,47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3,411,000	3
		2021년	3,150,000	3
		2022년	696,000	1
	시군역량강화	2020년	116,000	1
		2021년	133,000	1
		2022년	189,000	1
		2023년	207,000	1
옥천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762,000	1
		2021년	1,948,000	3
		2022년	2,352,000	3
		2023년	1,752,000	2
	농촌신활력플러스	2022년	980,000	1
		2023년	1,47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973,000	1
		2021년	1,306,000	1
		2022년	746,000	1
	시군역량강화	2020년	133,000	1
		2021년	91,000	1
		2022년	238,000	1
		2023년	197,000	1
영동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704,000	1
		2021년	924,000	4

		2022년	1,507,000	4
		2023년	1,533,000	3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1,47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	0
		2023년	-	0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5,115,000	4
		2021년	6,961,000	5
		2022년	7,788,000	3
		2023년	5,591,000	2
	시군역량강화	2021년	294,000	1
		2022년	287,000	1
		2023년	280,000	1
증평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2년	280,000	1
		2023년	1,311,000	1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1,47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1,470,000	1
		2023년	-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393,000	1
		2021년	1,422,000	1
		2022년	2,776,000	1
	시군역량강화	2020년	210,000	1
		2021년	266,000	1
		2022년	231,000	1
		2023년	217,000	1
진천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3년	597,000	3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98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1,470,000	1
		2023년	98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1,975,000	3
		2021년	2,359,000	2
		2022년	2,560,000	1
		2023년	5,916,000	3
	시군역량강화	2020년	196,000	1
		2021년	210,000	1
		2022년	189,000	1
		2023년	188,000	1
괴산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552,000	2
		2021년	3,007,000	3
		2022년	2,172,000	3
		2023년	2,191,000	3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98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1,470,000	1
		2023년	98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3,353,000	2
		2021년	3,526,000	2
		2022년	7,498,000	1
		2023년	5,724,000	1
	시군역량강화	2020년	140,000	1
		2021년	56,000	1
		2022년	161,000	1
		2023년	210,000	1
음성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1,275,000	2
		2021년	2,219,000	2
		2022년	1,830,000	3
		2023년	981,000	2
	농촌신활력플러스	2022년	980,000	1
		2023년	1,47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1,089,000	1
		2021년	500,000	1
		2022년	2,169,000	2
		2023년	5,744,000	3
	시군역량강화	2020년	60,000	1
		2021년	63,000	1
		2022년	182,000	1
		2023년	210,000	1
단양군	농촌신활력플러스	2021년	980,000	1
		2022년	1,470,000	1
		2023년	98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1,502,000	1
		2021년	-	1
	시군역량강화	2020년	161,000	1
		2021년	210,000	1
		2022년	414,000	1
		2023년	450,000	1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관리주체인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에

의거 중요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군은 <표-2>와 같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이 있는 지구와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모든 준공지구의 운영현황을 반기별로 전수 점검하여야 하며, 사업이 진행 중인 지구에 대해서 분기에 1회 이상 수행상황을 현장점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부터	까지
부동산과 그 종물	준공일	10년간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 장비	구입일	5년간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아래 <붙임>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이 진행중인 지구에 대해서 분기 1회 이상 수행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고, 괴산군은 준공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반기별로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리소홀 등의 사유로 점검 이행에 대해 충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며, 향후에는 관련 규정 및 사업지침 등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수행상황, 준공지구 운영현황 점검 및 중요재산 전수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행점검 현황('20년~'23년)

시·군	구분	점검 연도	사업 유형	지구 (마을, 권역)	연간 점검 필요 횟수	점검 현황 (횟수)
충주시	추진지구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농촌신활력플러스	○○시	4	3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시	4	2
제천시	추진지구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보은군	추진지구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202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202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옥천군	추진지구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202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202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영동군	추진지구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3
		202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3
증평군	추진지구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202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2023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진천군	추진지구	202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3
괴산군	추진지구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1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1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1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1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1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1
		202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3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3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3
	완료지구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2	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2	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2	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2	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2	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2	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2	1
음성군	추진지구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202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2023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기초생활거점조성	○○면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단양군	추진지구	2020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읍	4	2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2021	농촌중심지활성화	○○면	4	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1
		2022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2023	농촌신활력플러스	○○군	4	2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내　　용

1. 사업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은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현황('20~'23년)

(단위: 천원)

시·군	내역사업명	사업연도	예산액	지원 개소수
충주시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1,794,000	3
		2021년	2,416,000	3
		2022년	3,476,000	4
		2023년	1,109,000	2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1,47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1,470,000	1
		2023년	-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3,227,000	4
		2021년	2,906,000	3
		2022년	2,057,000	4
		2023년	1,160,000	2
	시군역량강화	2020년	133,000	1
		2021년	77,000	1
		2022년	-	1
		2023년	127,000	1

영동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704,000	1
		2021년	924,000	4
		2022년	1,507,000	4
		2023년	1,533,000	3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1,47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	0
		2023년	-	0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5,115,000	4
		2021년	6,961,000	5
		2022년	7,788,000	3
		2023년	5,591,000	2
	시군역량강화	2021년	294,000	1
		2022년	287,000	1
		2023년	280,000	1
진천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3년	597,000	3
	농촌신활력플러스	2020년	980,000	1
		2021년	1,470,000	1
		2022년	1,470,000	1
		2023년	98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1,975,000	3
		2021년	2,359,000	2
		2022년	2,560,000	1
		2023년	5,916,000	3
	시군역량강화	2020년	196,000	1
		2021년	210,000	1
		2022년	189,000	1
		2023년	188,000	1
음성군	기초생활거점조성	2020년	1,275,000	2
		2021년	2,219,000	2
		2022년	1,830,000	3
		2023년	981,000	2
	농촌신활력플러스	2022년	980,000	1
		2023년	1,470,000	1
	농촌중심지활성화	2020년	1,089,000	1
		2021년	500,000	1
		2022년	2,169,000	2
		2023년	5,744,000	3
	시군역량강화	2020년	60,000	1
		2021년	63,000	1
		2022년	182,000	1
		2023년	210,000	1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에 따르면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보조금을 지

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에 따르면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군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그 종물(토지·시설물·건축물 등) 등 중요재산에 대해 시장·군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주시,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시설이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아래 <표-2>와 같이 감사 기간(2024년 3월 19일 현재 기준)까지도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은 시장·군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하지 않았고, 영동군은 소유권 보존등기는 하였으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표-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요재산 소유권 미등기 현황('24.3.19. 현재 기준)

시·군	사업 유형	시설명	사업 기간	사업비 (백만원)	준공 일자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	부기등기 여부
충주시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	2017~2023	3,243	2023.12.31.	부	부
영동군	농촌신활력 플러스	ⓑ공장 (거점센터)	2018~2023	4,906	2023.9.20.	여 (2023.11.13)	부
진천군	농촌중심지 활성화	ⓒ센터	2017~2023	5,757	2023.12.31.	부	부
음성군	기초생활 거점조성	ⓓ센터	2019~2022	4,500	2022.12.31.	부	부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감사 결과를 통해 등기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 할 것이며,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영동군수, 진천군수, 음성군수는

[주의] 본 감사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 및 부기등기를 추진하시고, 향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 등의 중요재산은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영동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영동군은 지역개발사업, 농촌융복합산업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표 1]과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영동군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지원 현황('18~'21년)

(단위: 백만원)

시군	내역사업명	사업지원 내역				
		집행내역	사업연도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영동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일반농산어촌개발)	1개소 (ⓐ공장 신축, 영동ⓐ 생태기반 조성 등)	합계	7,000	4,900	2,100
			2018년	700	490	210
			2019년	2,100	1,470	630
			2020년	2,100	1,470	630
			2021년	2,100	1,470	63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

사업관리기본규정」 및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농림축산식품부 선정) 농어촌 시·군에 대하여 보조금(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지역의 법인, 단체 등 활동조직이 참여하는 '㉮'를 구성하여 '㉮' 및 행정협의체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지역현황 및 여건, 기본구상, 사업 내용, 투자 및 운영·관리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그 사업 구성의 세부 내용으로는 총사업비의 30% 이상은 ㉠ 등 지역 내 민간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활동가 양성, 조직 활성화, 역량강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s/w 사업)에 활용하게 되어 있고, 관련 법령에서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1]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추진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사업시행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 구성원 활동비 등 운영비'는 총사업비(자부담 제외)의 7.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 구성원 중 비상근의 활동비는 위 운영비 총액의 50% 범위에서 지급해야 하며, ㉯ 구성원(상근)의 인건비는 지자체(시군 또는 시도)에서 별도 확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는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결과보고해야 하며, 사업 준공 이후 3개월 이내에 사업 완료보고서를 시·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1) 균특법 시행령 제36조 별표2의 사업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 별표2의 사업

따라서 충청북도 영동군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업 구성 내용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이 준수하여햐 할 사항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공사 준공 및 사업 완료 시 정해진 기한 내 결과를 보고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충청북도 영동군은 아래 [표 2]와 같이 총사업비 7,000,000천원 중 ㉮ 구성원 활동비 등 운영비로 276,579천원을 집행하였고 그 중 비상근 활동비로 155,500천원(56.2%)을 집행하여 운영비 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다.

또한, 2023년 9월 20일 ⓐ공장을 준공하였음에도 충청북도에 결과보고 등을 하지 않았고, 2023년 12월 31일 S/W사업을 완료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에도 사업 완료보고서를 2024년 3월말까지 충청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표 2] 일반농산어촌사업(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천원)

<table>
<tr><th rowspan="2">사업
연도</th><th></th><th colspan="3">사업비 집행 내역</th><th colspan="2">사업 보고</th></tr>
<tr><th>총사업비</th><th>소프트웨어
프로그램</th><th>㉮
운영비</th><th>운영비 중
비상근 활동비</th><th>사업준공</th><th>완료보고 등</th></tr>
<tr><td>합계</td><td>7,000,000</td><td>2,871,300</td><td>276,579</td><td><u>155,500</u></td><td rowspan="5"><u>(H/W사업)
ⓐ공장
'23.09.20. 준공</u>

<u>(S/W사업)
'23.12.31. 완료</u></td><td rowspan="5">(2023.12.31.
사업완료)

<u>완료보고서
미제출</u></td></tr>
<tr><td>2020</td><td>700,000</td><td rowspan="4">㉮
- 20년: 8,080천원
- 21년: 339,760천원
- 22년: 765,969천원
- 23년: 30,000천원

㉯
- 20년: 229,110천원
- 21년: 166,148천원
- 22년: 394,189천원
- 23년: 938,044천원</td><td rowspan="4">- 21년 146,000천원

- 22년 130,579천원</td><td rowspan="4">- 21년 78,000천원

- 22년 77,500천원</td></tr>
<tr><td>2021</td><td>2,100,000</td></tr>
<tr><td>2022</td><td>2,100,000</td></tr>
<tr><td>2023</td><td>2,100,000</td></tr>
</table>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를 완료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는

[통보] 사업시행 전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24년 정부합동 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내　　용

1. 사업개요

충청북도 청주시는 미래 승마 수요층을 확보하고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내역('20~'23년)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교부액(단위: 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2020년	㉠	20,000	10,000	10,000	
2021년	〃	20,000	10,000	10,000	
2022년	〃	20,000	10,000	10,000	
2023년	〃	24,000	12,000	12,000	

* (사업 개요) 지속 가능한 승마 인구 확보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 희망자 또는 운영중인 자에게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운영경비을 지원하는 사업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유소년 창단·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의 사용비율은 아래 <표-2>와 같이 정해져 있어, 사업관리주체인 시·군은 유소년 승마단 운영을 지원하는 경우 물품구입은 총사업비의 30%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하고, 보조금 정산 시 물품구입, 교육비 및 대회참가활동비를 항목별로 면밀히 정산검사하고 보조금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표-2>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구 분	지원자금 사용 용도	자금 사용비율	
		운영	창단
말 구입	■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국내산 포니	미해당	총 사업비의 40~60%
물품구입	■ 안전장구 : 헬멧, 프로텍터, 승마장갑 ■ 승마용품 : 승마복 상·하의, (반)부츠, 챕 등 ■ 유니폼 : 훈련용 및 대회용 단체 유니폼	총 사업비의 0~30%	
교육비	■ 유소년 승마단 교육비(강습비) : 정액지원(3만원/회당) * 일부 자부담 매칭 必	총 사업비의 0~50%	총 사업비의 40~60%
대회참가 활동비	■ 대회참가비용(부대비용 포함) : 정액지원(1인 30만원/회) * 지자체로 세금계산서 발행, 대회 참가 확인서 증빙 必 ■ 기승자 보험 가입비, 대한승마협회 선수등록 비용	총 사업비의 20~100%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청주시는 2023년 총사업비(국비 50%, 지방비 50%) 24,000천원인 유소년 청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사업의 정산보고(청주시(㉮과) → 충청북도)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한 물품구입에 대한 최대 보조 비율인 30%(7,200,000원)에 약 10%를 초과한 9,608,600원을 정산하였고,

또한 예산 사용처에 교육비, 대회참가활동비 등을 확인하고 기재하여 정산검사·보고하여야 하나, 물품구입 관련 항목(장애물·에어조끼·안장가방등 구입)만 기재한 사업결과표를 통해 정산검사 및 보조금을 확정하였다.

<표-3> 유소년 승마단 운영지원 사업 결과표(총괄)

(단위 : 원)

유소년 승마단 현황				예산 사용처	지원금액				국비집행내역	
승마단 명칭	대표자	승마단 인원	대상 (초,중)		총 사업비	국비 (50%)	지자체		교부액 (A)	사용액 (B)
							지방비 (광역)	지방비 (기초)		
㉠	A	11	초7명 중4명	ㅇ장애물구입 :6,378,600원 ㅇ에어조끼구입 :1,320,000원 ㅇ안장가방등구입:1,550,000원	24,000,000	12,000,000	3,600,000	8,400,000	12,000,000	12,000,000

* 예산 사용처 : 지원금액의 사용처 기재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품목별 집행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지적사항 관련 보조금을 재정산하여 2024년 3월 15일 충북도에 재보고하였으며,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은**

[주의] 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시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고, 항목별 집행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지원 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음성군

내　　용

1. 사업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은 미래 승마 수요층을 확보하고 말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1>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보조금 교부 내역('20~'23년)

시군명	사업연도	보조사업자	교부액(단위: 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청주시	2020년	㉠	20,000	10,000	10,000	'16년 창단
	2021년	〃	20,000	10,000	10,000	
	2022년	〃	20,000	10,000	10,000	
	2023년	〃	24,000	12,000	12,000	
음성군	2021년	㉡	75,850	37,925	37,925	'21년 창단
	2022년	〃	10,000	5,000	5,000	
	2023년	〃	10,100	5,050	5,050	

* (사업 개요) 지속 가능한 승마 인구 확보를 위해 유소년 승마단 창단 희망자 또는 운영중인 자에게 창단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 운영경비을 지원하는 사업

또한,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의 보조금으로 사업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중요재산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중요재산 취득내역('20~'23년)

시·군	사업연도	재산명 (물품)	구입액 (단위: 천원)	비고
청주시	2020년	승마복	4,000	
	2021년	사각패드, 오뚜기패드, 복대 테크나, 점핑용안장	4,000	
	2022년	손잡이안장, 복대 테크나	4,000	
	2023년	안장캐리어, 안장가방, 에어조끼, 장애물	7,200	
음성군	2021년	말 구입(2필)	14,000	
		안장, 안전조끼, 헬멧 등	26,220	
	2022년	굴레, 채찍, 승마바지 등	2,500	
	2023년	장갑, 손잡이안장세트 등	2,960	

* 해당 시·군 제출자료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에 따라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수시로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또한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시설, 장비 등은 완공일과 구입일로부터 10년 및 5년을 각각의 사후관리기간으로 정하여, 연 1회 이상 사업대상자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표-3>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부터	까지
승마시설, 문화시설 등 시설물	완공일	10년간
장비 등 기타	구입일	5년간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유소년 승마단의 창단·운영을 지원하면서 보조사업자가 구입한 물품 등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운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 사업 중요재산 사후관리 현황('20~'23년)

시군	창단연도	점검연도	사업자	관리대장 여부	운영실태 점검 여부
청주시	2016년	2020년	㉠	부	부
		2021년	〃	부	부
		2022년	〃	부	부
		2023년	〃	부	부
음성군	2021년	2021년	㉡	부	부
		2022년	〃	부	부
		2023년	〃	부	부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여 사후관리를 충실히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음성군수는**

[주의]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등 중요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효력상실된 건축신고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1]을 농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허가가 제39조(전용허가의 취소)에 따라 취소된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자의 사업계

1)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과하며, ㎡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농지조성비(1975년 도입, 2006.1.22. 농지법 제40조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 :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
- 농지전용부담금(1992년 도입, 2002.1.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개정으로 폐지) :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

획이 변경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건축허가 등을 한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 하도록 되어 있고, 농지에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건축허가 부서 등 인·허가부서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 농지전용 여부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및 시행규칙 제46조(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 등)에 따르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 중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없이 그 환급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결정통지서를 농지보전부담금납입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전용허가 담당부서에서는 「농지법」 등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기 위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건축법」 등에 따른 건축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지체없이 그 환급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자와 한국농어촌공사에 각각 통지하고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표] “효력 상실된 건축신고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 현황”과 같이 총 93건 486,791천원(청주시 4건, 31,851천원, 충주시 21건, 95,517천원, 제천시 31건, 161,509천원, 보은군 1건, 2,092천원, 옥천군 6건, 5,998천원, 영동군 2건, 3,346천원, 증평군 3건, 5,237천원, 진천군 6건, 103,521천원, 괴산군 1건, 4,727천원, 음성군 4건, 24,413천원, 단양군 14건, 48,580천원)의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을 환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효력 상실된 건축신고 건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미환급 현황(2023. 12월 기준)

부과권자	연도	납부자	미환급		환급사유	조치현황
			건수	금액(천원)		
합계			93	486,791		
청주시	소계		4	31,851		
청주시	2021	-	1	6,87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청주시	2021	-	1	15,97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청주시	2022	-	1	591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청주시	2022	-	1	8,406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충주시	소계		21	95,517		
충주시	2018	-	1	11,602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8	-	1	388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8	-	1	2,923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8	-	1	7,047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9	-	1	3,539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9	-	1	1,508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9	-	1	32,526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9	-	1	2,514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19	-	1	6,403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0	-	1	1,501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1	-	1	1,833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1	-	1	1,296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1	-	1	1,208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1	-	1	1,427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2	-	1	1,636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2	-	1	4,612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2	-	1	1,123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2	-	1	5,701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충주시	2022	-	1	2,99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충주시	2023	-	1	2,041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충주시	2023	-	1	1,694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제천시	소계		31	161,509		
제천시	2018	-	1	2,91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19	-	1	1,238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19	-	1	2,380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환급
제천시	2019	-	1	5,922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0	-	1	4,52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0	-	1	3,504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0	-	1	1,05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환급
제천시	2020	-	1	2,476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환급
제천시	2021	-	1	4,468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10,224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4,298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2,643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5,397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4,46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13,596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13,262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2	-	1	3,537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3,006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580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1,410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16,443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2,556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4,84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1,014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7,118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7,558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3,31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1,296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3,444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11,204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제천시	2023	-	1	11,803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보은군	소계		1	2,092		
보은군	2023	-	1	2,092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옥천군	소계		6	5,998		
옥천군	2019	-	1	534	건축신고 취소	환급안내(24.2.22.)
옥천군	2019	-	1	1,112	건축신고 취소	환급안내(24.2.22.)
옥천군	2020	-	1	1,310	건축신고 취소	환급안내(24.2.22.)
옥천군	2021	-	1	519	건축신고 효력상실	환급안내(24.2.22.)
옥천군	2021	-	1	1,425	건축신고 효력상실	환급안내(24.2.22.)
옥천군	2021	-	1	1,098	건축신고 효력상실	환급안내(24.2.22.)

영동군	소계		2	3,346		
영동군	2023	-	1	2,374	건축신고효력상실	미조치
영동군	2023	-	1	972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증평군	소계		3	5,237		
증평군	2022	-	1	2,443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증평군	2022	-	1	1,44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증평군	2022	-	1	1,34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진천군	소계		6	103,521		
진천군	2020	-	1	21,344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진천군	2023	-	1	10,749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진천군	2023	-	1	22,226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진천군	2023	-	1	870	건축신고 취소	미조치
진천군	2023	-	1	43,60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괴산군	소계		1	4,727		
괴산군	2021	-	1	4,727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음성군	소계		4	24,413		
음성군	2020	-	1	6,837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음성군	2022	-	1	11,224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음성군	2022	-	1	4,031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음성군	2023	-	1	2,322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소계		14	48,580		
단양군	2018	-	1	1,34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0	-	1	2,877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0	-	1	3,714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0	-	1	2,203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0	-	1	4,88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1	-	1	3,40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2	-	1	1,07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1	-	1	4,85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2	-	1	2,096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1	-	1	4,021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1	-	1	1,815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1	-	1	3,739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1	-	1	5,732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단양군	2023	-	1	6,810	건축신고 효력상실	미조치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부서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미환급 농지보전부담금 486,791천원(가산금 제외)이 조속히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이번 감사에 지적된 이외 미환급한 건의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어 동일한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제　　목 **불법전용 농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사후관리 미흡**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관내 지역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이 필요할 경우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따른 농지전용 및 타용도 일시사용 등을 허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42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협의를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농지로의 복구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복구비용을 예치하게 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이 종료된 후 복구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복구대행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전용허가 및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사항 등에 대한 추진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농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불법전용 적발 농지에 대한 조치 미흡

위 관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붙임 1> “불법전용농지 원상회복 미이행 현황”과 같이 불법전용 농지 238건 211,930㎡(청주시 105건 96,855㎡, 충주시 11건 9,703㎡, 제천시 15건 7,352㎡, 보은군 22건 12,180㎡, 옥천군 1건 3,811㎡, 영동군 23건 8,980㎡, 진천군 41건 57,707㎡, 괴산군 13건 17,736㎡, 음성군 1건 300㎡, 단양군 6건 1,117㎡)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거나 계속해서 원상회복 명령만 통보하는 등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농지에 대한 원상회복 미흡

위 관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붙임 2>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원상복구 미이행 현황”과 같이 212건 355,353㎡(청주시 7건 14,788㎡, 충주시 21건 96,175㎡, 제천시 2건 1,046㎡, 보은군 1건 3,955㎡, 영동군 1건 1,369㎡, 증평군 2건 1,596㎡, 진천군 11건 13,193㎡, 괴산군 74건 98,734㎡, 음성군 58건 79,458㎡, 단양군 43건 45,039㎡)에 대해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경과된 농지를 원상 복구하지 않음에도 추가적으로 고발이나 원상회복을 위한 대집행을 하지 않는 등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불법전용 농지 및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기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고발이나 농지 원상복구 대집행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농지 사후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전용농지 원상복구 미이행 현황(2023. 12월말 기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붙임 2>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 원상복구 미이행 현황(2018~2023.4월말 기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기 관 명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4조 및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법」 제29조제2항, 「하천법」 제32조제3항,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소하천의 정비를 시행하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및 실시계획을 작성 하거나

인가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의제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개설, 하천공사, 개발행위 등 공공사업 수행을 위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농지전용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2023년 12월말까지 농지전용 사전협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표】“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현황”과 같이 총 22건(충주시 2건, 보은군 2건, 옥천군 3건, 영동군 4건, 증평군 4건, 진천군 1건, 괴산군 3건, 음성군 2건, 단양군 1건) 사업 448,067㎡의 전용면적에 대해 농지전용 협의요청 또는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기관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부서에서는 실시계획을 승인(사업계획 고시)하는 등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 미준수 현황

시·군	농지전용협의대상 내역			농지전용 협의 요청일	농지전용 협의 회신일	실시계획 승인일 (사업계획 고시일)	착공계 접수일	사업추진 부서
	사 업 명	사업량 (㎡,㎞)	협의대상 전용면적 (㎡)					
합계	**22건**		**448,067**					
충주시	㉠㉠사업	11,120	10,117	2022.12.30 (㉮과-20819호)	2022.12.30 (㉯과-13776호)	2022.12.26. (㉮과-20462호)	2022.12.01. (㉮과-19033호)	㉮과
충주시	㉠㉡공사	41,417	22,533	2021.08.18 (㉮과-13248호)	2021.09.28 (㉰과-45864호)	2021.8.23 (㉲과-13545호)	2021.7.29 (㉲과-12170호)	㉲과
보은군	㉠㉢사업 농지전용 협의 (소하천정비허가)	12,629	12,265	2020.01.03. (㉱과-259호)	2020.01.07. (㉱과-223호)	2019.04.01. (㉴과-4606호)	2019.08.19. (㉳과-24443호)	㉱과
보은군	㉠㉣공사 농지전용협의	71,734	30,676	2020.12.24. (㉱과-40783호)	2020.12.28. (㉱과-13930호)	2020.06.17. (㉱과-18914호)	2020.07.29. (㉵과-24758호)	㉱과

옥천군	㉠㉤공사	39,551	19,876	2022.11.25. (㉲과-39652호)	2022.11.29. (㉮과-12142호)	미승인, 미고시	2022.03.29. (㉱과-276호)	㉲과
옥천군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49,786	41,717	2023.8.9 (㉲과-29994호)	2023.08.16. (㉮과-9266호)	2022.01.26. (㉯과-1642호)	2023.07.03. (㉰과-1052호)	㉲과
옥천군	㉠㉦공사	29,764	10,609	㉲과-32149 (2023.8.24.)	㉤과-31988 (2023.9.14.)	㉲과-18024 (2023.5.17.)	㉰과-894 (2023.6.19.)	㉲과
영동군	㉠㉧사업	24,591	20,994	2021.08.19. (㉴과-15531호)	2021.09.06. (㉶과-9360호)	2021.03.25. (㉴과-4977호 (2021.03.22.)	2021.09.02. (㉴과-16567호 (2021.09.02.)	㉴과
영동군	㉠㉪사업	14,740	13,978	2022.07.13. (㉴과-12294호)	2022.07.19. (㉶과-7242호)	2021.10.25. (㉴과-19169호(2021.10.18.)	2021.12.14. (㉴과-23212호 (2021.12.14.)	㉴과
영동군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25,468	20,684	2023.09.05. (㉴과-4747호)	2023.09.15. (㉴과-10412호)	2023.02.15. (㉴과-2515호(2 023.2.9.)	2023.06.22. (㉴과-12704호 (2023.06.22.)	㉴과
영동군	㉠㉭사업	24,800	16,696	㉴과-19499(20 21.10.20.)	㉥과-12688(20 22.3.15.)	2021.10.25. (㉴과-19170, 2021.10.18.)	2021.12.16. (㉴과-23353, 2021.12.16.)	㉴과
증평군	㉠㉢사업 시행계획고시 농지전용협의	39,060	11,532	2020.8.18. (㉯과-14767호)	2020.8.20. (㉮과-8794호)	2020.06.19. (㉯과-10487호)	2020.06.08. (㉷과-16035호)	㉯과
증평군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52,337	13,788	2021.12.24 (㉯과-22818호)	2021.12.27. (㉰과-13613호)	2021.10.29. (㉯과-18854호)	2021.09.24. (㉷과-23229호)	㉯과
증평군	㉠㉱사업	29,809	13,424	2023.5.17 (㉷과-9937호)	2023.5.18. (㉮과-5996호)	2023.03.10. (㉷과-4430호)	2023.02.27. (㉷과-5070호)	㉷과
증평군	㉡㉠지구 농지전용협의	42,160	28,259	2023.7.12 (㉷과-14352호)	2023.7.15. (㉮과-8086호)	2022.12.30. (㉷과-26932호)	2023.02.27. (㉷과-4964호)	㉷과
진천군	㉡㉠사업	16,151	15,597	2023.02.24. (㉷과-4564호)	2023.03.06. (㉰과-2976호)	미승인, 미고시	2022.07.08. (㉷과-29849호)	㉷과
괴산군	㉡㉠공사시행계획고시	29,359	26,152	2021.8.2 (㉵과-26843호)	2021.8.10호 (㉯과-8512호)	미승인, 미고시	2021.02.26. (㉲과-440호)	㉵과
괴산군	㉡㉠사업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55,427	33,639	2021.12.9. (㉵과-41581호)	2021.12.17 (㉯과-13232호)	미승인, 미고시	2021.09.16. (㉲과-2315호)	㉵과
괴산군	㉡㉠사업 부지 조성	16,220	16,220	2020.12.31. (㉵과-22487호)	㉯과- 707(2021.01.12 .)호	㉵과-14296 (2020.4.29.)호	㉵과-22155호 (2020.12.29.)	㉵과
음성군	㉡㉠공사	14,949	14,228	2023.08.22. (㉳과-94788호)	2023.09.05. (㉲과-10012호)	미승인, 미고시	2023.05.09. (㉶과-12480호)	㉳과
음성군	㉡㉠공사	53,149	53,149	2022.01.12. (㉲과-525호)	2022.1.14. (㉶과-1534호)	2021. 12. 24. (㉶과-44724호)	2021. 11. 12 (㉶과-32315호)	㉲과
단양군	㉡㉠사업	30,711	12,543	2021.11.15 (㉱과-31153호)	2021.11.16 (㉷과-11655호)	2021.4.14. (㉱과-10336호)	2021.3.8. (㉱과-5989호)	㉱과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앞으로 공공사업 수행을 위한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 사전협의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련 부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농업진흥지역 내 공공기관의 농지 불법전용 및 조치 부적정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괴산군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하여 농지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따르면,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야 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른다고 되어 있고,

법 제4조(국가 등의 의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이 구현되도록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1]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법 제42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행위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및 법 시행령 제58조(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에 따르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하고,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또는 전용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

1) 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생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의 설치, 5. 간이퇴비장의 설치, 6.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7.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 저장조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말함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 제63조에 따르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농지의 이용실태 또는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할구역 내 농지를 관리해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여 농지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농지 불법전용 등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표 1]와 같이 충청북도 괴산군 ㉲센터 인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불법전용이 적발[2]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사후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표 1] 괴산군 불법전용 농지 현황

지번	지목	면적	불법사항	소관부서	농지소유자
합 계	15필지	42,495			
○○리 000	답	4,424	잔디, 보도블럭, 체험관	㉲센터	괴산군

2) 2023.11.1. 농식품부 주관 “2023년 농지대장정비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부합동(농림축산식품부 ㉥과, 충청북도 ㉡과, 괴산군 ㉦과) 현장점검” 시 괴산군 사업부서에 의한 농지 불법전용 확인

지번	지목	면적	불법사항	소관부서	농지소유자
○○리 000-0	답	1,690	잔디,태양광,보도블럭,체험관	㉮과	〃
○○리 000	답	3,213	조경시설,조경수,관람로, 테이블	㉱센터	〃
○○리 000-0	답	24	잔디		〃
○○리 000-0	답	2,054	조형물,조경수,보도블럭,체험관	㉯과 설치 /㉱센터	〃
○○리 000-0	답	1,691	조형물,조경수,보도블럭,체험관		〃
○○리 000	답	3,334	보도블럭, 공원	㉱센터	〃
○○리 000-0	답	1,882	보도블럭, 공원		〃
○○리 000	답	4,922	염전		〃
○○리 000(도)	답	6,171	우렁이양식장		충청북도
○○리 000(도)	답	5,532	우렁이양식장		〃
○○리 000	답	5,905	정자,파고라,교량산책로,조경수	㉰과	괴산군
○○리 000-0	잡종지	1,653	주차장 및 출입로 목적외 사용	㉱센터	〃
○○리 000-0	전	1,292	잔디		〃
○○리 000-0	전	3,414	일부 주차장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충청북도 괴산군은 위 불법전용 적발 농지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3]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2024. 2. 15. 정부합동감사 전까지 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 등 관련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농지의 불법전용이 적발되었을 경우 「농지법」에 따라 해당 농지의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야 하고, 위법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불법전용 행위자 등에 대하여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형사처벌 등 조치를 해야 하며, 위법 사항을 인지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농지업무 담당자 등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 유사사례 발생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충청북도 및 괴산군에 위와 같은 불법 농지전용 및 이에 대한 조치 부적정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였고,

괴산군은 감사기간 중 위 불법전용 농지 15필지에 대하여, 2024. 2. 29.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4]를 하였다고 [표 2]와 같이 불법전용 농지에 대한 조

3) 괴산군 ㉯과-29164호(2023.11.30.), “농업진흥지역 군(도)소유 미전용 사용 농지 조치 계획(안)”

치 현황 및 계획을 제출하였고,

[표 2] 괴산군 불법전용 조치 현황 및 계획

지번	불법사항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 현황 및 계획
○○리 000	잔디, 보도블럭, 체험관	원상회복 명령 1차: ㉮과-4701(2024.2.29.), -4702(2024.2.29.)	원상회복 미이행 시 부과 검토	ㅇ외부 보도블럭 및 잔디제거 완료(2023.12.) ㅇ외부 경관작물 식재 중(진행중) ㅇ내부 간판제거 완료(2023.12) ㅇ내부 석판, 석재골조, 화훼류 제거 및 작물식재(2024.6.)
○○리 000-0	잔디,태양광,보도블럭,체험관			
○○리 000	조경시설,조경수,관람로, 테이블			
○○리 000-0	잔디			
○○리 000-0	조형물,조경수,보도블럭,체험관			ㅇ외부 잔디, 비석, 보도블럭 제거 완료(2023.12.) ㅇ내부 간판, 조형물 제거 완료(2023.12.) ㅇ내부 열대작 물 석재조형물 제거(2024.5.) ㅇ화훼류 생산 및 재배(2024.7-12)
○○리 000-0	조형물,조경수,보도블럭,체험관			
○○리 000	보도블럭, 공원			ㅇ보도블럭 제거(2024.6.) ㅇ철거 및 폐기물 업체 계약 완료(2024.1.) ㅇ복숭아 등 과수류 식재 및 재배 예정
○○리 000-0	보도블럭, 공원			ㅇ보도블럭 및 조형물 제거 완료(2023.12.) ㅇ병해충 예찰, 농촌지도사업 실증포 활용 예정
○○리 000	염전			ㅇ 외부 잡석 제거 완료(2023.12) ㅇ 외부 펜스, 골재 제거(2024.5.) ㅇ 내부 판넬 및 스트로폼 베드 철거(2024.5.) ㅇ 내부 식량작물 실증포 활용 예정
○○리 000(도)	우렁이양식장			ㅇ 외부 잡석 제거 완료(2023.12) ㅇ 외부 펜스, 골재 제거(2024.7.) ㅇ 양식장 베드 및 관수시설 철거(2024.7.) ㅇ 내부 벼 신품종 실증포 활용 예정
○○리 000(도)	우렁이양식장			
○○리 000	정자,파고라,교량산책로,조경수			ㅇ파고라 및 벤치 제거 완료(2023.12.) ㅇ정자 제거 및 둠벙 원상회복 예정(2024.5.)
○○리 000-0	주차장 및 출입로 목적외 사용			ㅇ주차라인, 주차블록 제거 완료(2023.12.)
○○리 000-0	잔디			ㅇ잔디 제거 완료(2023.12.) ㅇ실증포 조성을 위한 종자 구입 완료(2024.1.) ㅇ경관작물 품종별 비교 실증포 조성 예정(2024.3.)
○○리 000-0	일부 주차장			ㅇ주차장 부지 철거 완료(2023.12.) ㅇ농지전용 협의(2023.12.14) ㅇ농업인편의시설(운동시설 부지) 설치 예정(2024.5.)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관련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처분 관련하여, 괴산군은 2024. 3. 13.부터 “농업진흥지역 군유지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5], 2024. 3. 25.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불법전용 행위자인 사업부서(㉯과, ㉮과, ㉰과, ㉱센터)에 “시정” 조치[6]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농지 사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과

4) 괴산군 ㉯과-4701호(2024.2.29.), 4702호(2024.2.29.), “원상회복 명령 알림”

5) 괴산군 ㉱과-4283호(2024.3.13.): “농업진흥지역 군유지 불법 농지전용 감사 실시계획”

에 “주의” 조치[7]하였다고 관련 문서[8]를 제출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규 숙지 및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통보]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해 관련 법규 및 ’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6) 처분 내용: ㉯과, ㉮과, ㉰과, ㉱센터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협의) 없이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등 농지법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향후 빠른 시일내에 원상회복 조치를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처분 내용: ㉯과에서는 농지관리 총괄 부서로서 ㉮과, ㉰과, ㉱센터가 관련 규정에 따라 1회 추경 예산 확보 후 원상회복 조치계획에 의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시기 바라고, 농지법에 따라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주시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8) 괴산군 ㉲과-4913호(2024.3.25.): “농업진흥지역 군유지 불법 농지전용 감사 결과 보고”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은 「농지법」 시행일(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취득한 농지를 농업경영 등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분하게 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아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맞게 농지처분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농지 소유자가 자연재해·농지개량·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상 농지, 기간 등을 명시하여 해당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농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 의무 기간 내에 소유자가 처분하지 아니할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다시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2조에 따르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농지전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은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3조에 따르면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였음에도 그 기한까지 원상회복을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예[1]에 따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상 농지, 의무 기간 등을 명시하여 처분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 충주시, 제천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은 [붙임]과 같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현황”과 같이 총 152건(충주시 123건, 제천시 21건, 증평군 1건, 괴산군 2건, 음성군 5건), 1,049,299천원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이 납부 완료되지 않고 체납된 상태로 있다.

---

1)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의 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납부기한(20일 이내)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제천시장, 증평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는

[통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1,049,299천원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고, 앞으로는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체납액 현황('23.12월 기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농지전용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부과·통지한 농지보전부담금[1]을 납기내 납부하여야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전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38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가 농지보전부담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에

1) 「농지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은 ㎡당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부과하며, ㎡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농지조성비(1975년 도입, 2006.1.22. 농지법 제40조 개정으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변경) : 농지전용사업자에 대해 국민식량의 공급기반인 농지의 대체조성 비용으로 부과
- 농지전용부담금(1992년 도입, 2002.1.1.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 개정으로 폐지) : 농지전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

게 나누어 낼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허가 등을 한 날부터 30일까지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자가 예치기한 안에 보증서를 예치하지 않은 때에는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법 제38조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 발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농지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45조,「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전용허가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는지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분할납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검토하며, 보전부담금 조달방안 제출여부를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소요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신청서 등을 반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은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확인한 결과,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과 같이 총 4건(충주시 1건, 증평군 1건, 음성군 2건)에 1,251,767,040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이 체납된 상태로 있다.

[표]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현황(2023. 12월말 기준)

부과권자	부과번호	체 납 현 황(원)		
		농지보전 부담금	가산금	계
합계		1,085,673,850	166,093,190	1,251,767,040
충주시	0000-00000-00000-00	40,059,620	8,893,140	48,952,760
증평군	0000-00000-00000-00	516,000,000	21,672,000	537,672,000
음성군	0000-00000-00000-00	481,662,480	132,938,660	614,601,140
음성군	0000-00000-00000-00	47,951,750	2,589,390	50,541,14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증평군수, 음성군수는

[통보]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액 1,251,767,040원을 조속히 징수할 수 있는 체납관리 방안을 마련하시고, 앞으로는 체납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통 보

제 목 농막 '불법 증축 등' 사후관리 미흡

기 관 명 제천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감사원은 전국적으로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2022년 4월~12월)하고 '농막 형태기준 마련 등 농막 설치요건 보완' 등이 필요함을 농림축산식품부에 통보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내 농막 설치 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9,175건에서 2021년 4만 6,057건으로 7년만에 5배 급증하는 등 전체 농막 수는 2021년 말 기준 18만 2,848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요청에 따라 충청북도에서는 관내 각 시·군에 문서[1]를 시행하여 농막이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농막에서의 주거·연면적초과·타용도이용 등 관리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전용 확인 시 원상회복명령·벌칙·이행강제금 적용 등 관련 법상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지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고, 일부 시·군과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농막 불법 증축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1) 충청북도 ㉮과-3177호(2023.3.8.), 4773호(2023.4.14.), 5038호(2023.4.21.), 14308호(2023.12.26.)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농지는 전·답·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위 토지의 개량시설과 위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여 농지를 경작 등 농작업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르면 농막은 농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이나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목적으로 하며, 연면적 20㎡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지법」 제42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수 있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으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 충청북도(㉮)는 각 시·군과 수시로 농지대장, 가설 건축물대장상 농막이 등재된 필지 중에서 불법 가능성이 높은 농막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

는 등 관리를 하고 있으나, 위 관서 중 일부 시·군은 농막 자체 조사 등 사후관리 실태가 미흡하여 정부합동감사 기간(2024.2.15. 사전조사 ~ 본감사) 해당 시·군의 관내 농막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와 같이 위 관서의 관내 농지에 설치된 농막에 대한 관리 현황을 파악한 결과, [표] “시군별 농막 현황 및 자체조사 결과”와 같이 총 8,159개의 농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중 면적대비 연면적 초과 농막은 전체 약 36.4%인 2,967개소였고, 전입신고된 농막은 전체 약 2.5%인 203개소로 총 3,170개소의 농막이 위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위 관서의 연면적 초과 등 불법 농지전용 및 전입신고 등의 위법 사항이 확인된 농막 3,17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 건수는 800건(27%)으로 아직까지 위 관서 제천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서는 대부분의 불법농막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등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 시군별 농막 현황 및 자체조사 결과(2024. 3월 기준)

시군	농막 개소 수	농막 자체 조사 현황(개소)						행정조치 현황 (건)
		부적정 농막(합계)	증축	데크 설치	정원 조성	콘크리트, 잡석 등	전입 신고	
충북	**8,159**	**2,967**	**2,078**	**474**	**36**	**315**	**203**	**800**
	비율	**36.4%**	**25.5%**	**5.8%**	**0.4%**	**3.9%**	**2.5%**	**26.9%**
청주시	50	32	10	5	6	11	0	31
	비율	64%	20%	10%	12%	22%	0%	
충주시	1677	566	404	40	4	118	14	443
	비율	34%	24%	2%	0.2%	7%	2%	
제천시	1,738	914	650	206	18	40	82	38
	비율	53%	37%	11%	1%	2%	8%	
보은군	105	15	15	0	0	0	3	17
	비율	14%	14%	0%	0%	0%	3%	

시군	농막 개소 수	농막 자체 조사 현황(개소)						행정조치 현황 (건)
		부적정 농막(합계)	증축	데크 설치	정원 조성	콘크리트, 잡석 등	전입 신고	
옥천군	375	184	106	26	2	50	10	4
	비율	49%	28%	6%	0.5%	13%	2%	
영동군	27	9	8	1	0	0	0	9
	비율	33%	29%	3%	0%	0%	0%	
증평군	192	38	14	12	6	6	3	38
	비율	20%	7%	6%	3%	3%	2%	
진천군	996	102	68	6	0	28	34	27
	비율	10%	6%	0.6%	0%	2%	3%	
괴산군	690	182	103	70	0	9	0	0
	비율	26%	14%	10%	0%	1%	0%	
음성군	965	343	241	98	0	4	23	0
	비율	36%	25%	10%	0%	0.4%	2%	
단양군	1,344	582	459	10	0	49	34	193
	비율	43%	34%	0.7%	0%	3%	2%	

※ 붙임 : 시군별 농막 자체조사 결과 확인서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농지법 숙지 및 농막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를 통해 농막이 불법전용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 옥천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통보] 향후 농막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한 농지 훼손 및 전입신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막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군별 농막 자체조사 결과 확인서(2024. 3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전용으로 지급 제외 농지에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1]과 면적직접지불금[2]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급
- 농업법인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정액 지급

2)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 단가 적용 지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이다.

다만, 「농지법」 제34조·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한 농지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를 한 농지,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등을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2020~2023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면서 신청 농지가 농지전용 허가를 받거나 전용신고 또는 전용협의를 거친 농지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래 <표>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지급 현황”과 같이 총 31건(필지), 12,240,73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기본직접지불금(농지전용) 부당지급 현황(2020년~2023년)

시군	건수 (필지)	기본직불직불금 지급내역(㎡,원)		회수해야할 직불금(㎡,원)	
		지급면적	지급금액	회수면적	회수금액
합계	**31**	**85,655**	**13,434,290**	**81,294**	**12,240,730**
청주시	1	1,927	369,970	1,927	395,030
충주시	1	4,634	620,970	3,293	441,260
제천시	4	7,693	1,225,960	7,693	1,225,960
음성군	3	6,101	1,045,970	5,122	894,940
괴산군	1	2,446	429,810	2,446	327,760
단양군	19	59,802	8,272,120	58,560	7,629,690
영동군	2	3,052	1,469,490	2,253	1,326,090

※ 세부내역: 붙임

4. 관계기관 등 의견

위 관서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사업 업무추진 시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 숙지 등을 통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 영동군수는**

[시정] 지급대상 제외(농지전용) 농지에 부당 지급한 기본직접지불금 12,240,73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지급(농지전용) 세부내역(2020년~2023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미충족 자에게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하고, 기본직접지불금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1]과 면적직접지불금[2]으로 구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

---

1)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소농직접지불금)
-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한 경우 지급
- 농업법인은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정액 지급

2)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대상 농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면적 구간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진적 단가 적용 지급

에 따르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의「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이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서 주소를 둔 자는 경작하는 농지 등의 면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등을 고려하여「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경우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농업농촌공익직불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조사하여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2020~2023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면서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 선정 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

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래 <표>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지급 현황"과 같이 총 13건(수령자), 9,107,820원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표>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지급 현황(2020년~2023년)

시군	건수 (수령자)	기본직불직불금 지급내역(㎡,원)		회수해야할 직불금(㎡,원)	
		지급면적	지급금액	회수면적	회수금액
합계	**13**	**47,645.6**	**9,108,120**	**47,645.6**	**9,107,820**
청주시	1	4,475.6	917,490	4,475.6	917,490
충주시	1	11,844.0	2,086,870	11,844.0	2,086,570
제천시	5	4,889.0	678,250	4,889.0	678,250
단양군	6	26,437.0	5,425,510	26,437.0	5,425,510

※ 세부내역: 붙임

4. 관계기관 등 의견

위 관서는 앞으로 공익직접지불사업 업무추진 시 관련법령 및 규정, 지침 숙지, 교육 등을 통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단양군수는**

[시정]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자격요건 미충족)에게 부당 지급한 기본직접지불금 9,107,820원을 회수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본직접지불금 부당지급(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 미충족) 세부내역(2020~2023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용 대형관정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관내 시·군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 및 관리하여 농민들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표1]과 같이 2023년 12월말 현재 2,019개의 관정을 보유하고 있다.

[표 1] 농업용 대형관정 보유 및 사용·미사용 현황

(단위 : 개소)

시·군	보유 관정수	사용	미사용	미사용 사유				
				수리 필요	위치확인 곤란	농경지가 타목적전용	시설보수 실익없음	수원고갈 등
합 계	2,019	1,951(96%)	68(3%)	36	1	1	3	27
청주시	458	452	6	0	0	1	0	5
충주시	282	281	1	0	1	0	0	0
제천시	158	146	12	12	0	0	0	0
보은군	219	210	9	2	0	0	3	4
옥천군	137	122	15	4	0	0	0	11
영동군	136	136	0	0	0	0	0	0
증평군	50	50	0	0	0	0	0	0
진천군	83	83	0	0	0	0	0	0
괴산군	224	219	5	5	0	0	0	0
음성군	145	145	0	0	0	0	0	0
단양군	127	107	20	13	0	0	0	7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管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溜池: 웅덩이), 도로(농도(農道) 등 농로 포함), 방조제, 제방(堤防: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로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생산 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가. 정기(3년) 수질검사

「지하수법」 제20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정기적으로(농업용수는 준공신고 후 3년 주기로 1회 수질검사)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농업용수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5년) 연장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경우

에는 미리 시장의 허가(유효기간 5년)를 받아야 하며, 계속하여 해당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5년) 만료 30일전에 지하수 이용 여부를 파악하여 계속 사용할 경우 연장허가신청서와 최근 6개월 이내에 조사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허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에 대한 관리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지하수법」 제15조(원상복구 등) 제1항에 따르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인 시장·군수는 농업용 관정에 대해 시설정비, 개·보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가뭄발생시 적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이용을 종료한 농업용

관정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정기(3년) 수질검사 미실시

위 관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은 [표 2]와 같이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총 2,019개소 중 224개소(충주시 45개소, 제천시 94개소, 보은군 8개소, 옥천군 4개소, 영동군 25개소, 괴산군 20개소, 단양군 28개소) 관정(상세내역 붙임1 참조)에 대하여 수질검사 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2] 농업용 대형관정 수질검사 미실시 현황(2023.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시군명	보유관정수	검사대상(A)	정기 수질검사 실시현황*		
			실시	미실시(B)	비율(B/A)(%)
합계	2,019	1,716	1,460	224	13.1
청주시	458	276	245	31개소 기간 미도래	0.0
충주시	282	274	229	45	16.4
제천시	158	139	45	94	67.6
보은군	219	191	183	8	4.2
옥천군	137	121	117	4	3.3
영동군	136	135	110	25	18.5
증평군	50	50	50	0	0.0
진천군	83	80	79	1개소 기간 미도래	0.0
괴산군	224	217	197	20	9.2
음성군	145	118	118	0	0.0
단양군	127	115	87	28	24.3

* 수질검사 대상 :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인 경우(3년 주기 1회), 100톤 미만인 경우 제외

※ 상세내역: 붙임 1

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5년) 연장 미실시

위 관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대형관정 중에서 [표 3]과 같이 허가가 필요한 관정 총 663개소 중 302개소(충주시 20개소, 제천시 56개소, 보은군 8개소, 영동군 62개소, 증평군 3개소, 괴산군 61개소, 음성군 78개소, 단양군 12개소) 관정(붙임1 상세내역 참조)은 허가 유효기간(5년)이 경과되었는데도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았고,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은 [표 3](세부내역 붙임 1)과 같이 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총 2,019개소 중 198개소(청주시 179개소, 보은군 12개소, 옥천군 7개소) 관정에 대한 1일 양수능력 자료 부존재로 유효기간 연장 허가대상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연장 미실시 현황(2023.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시군명	보유 관정수	허가대상* (A)	허가실시현황		
			허가 유효기간 연장	허가 유효기간 미연장(B)	비율(5) (B/A)
합계	2,019	663	357	302	45.6
청주시	458	-*	-	-	-
*** 179개 관정에 대한 양수능력 자료 부존재(농업용 대형관정 관리대장 관리 미흡)**					
충주시	282	76	56	20	26.3
제천시	158	69	13	56	81.2
보은군	219	34*	23	8(3개소 기간 미도래)	23.5
*** 12개 관정에 대한 양수능력 자료 부존재(농업용 대형관정 관리대장 관리 미흡)**					
옥천군	137	112*	110	2(미사용 2개소)	1.8
*** 7개 관정에 대한 양수능력 자료 부존재(농업용 대형관정 관리대장 관리 미흡)**					
영동군	136	115	53	62	53.9
증평군	50	24	21	3	12.5
진천군	83	33	33	0	0.0
괴산군	224	81	20	61	75.3
음성군	145	79	0	78(1개소 기간 미도래)	98.7
단양군	127	40	28	12	30.0

* 허가대상 : 농업용수로서 1일 양수능력 150톤을 초과하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여는 경우, 150톤 이하인 경우 제외

※ 상세내역: 붙임 1

다.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에 대한 조치 미이행

위 관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은 시·군별 농업용 대형관정 세부자료를 확인한 결과, [표 4]와 같이 수리 필요(36개소), 수원고갈, 오염 등(32개소) 등 사용이 불가능한 관정에 대해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4] 농업용 대형관정 사용불가 내역(2023.12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시군명	사용불가 관정수	사용불가 사유				
		수리 필요	위치확인 곤란	농경지가 타목적전용	시설보수 실익없음	수원고갈, 오염 등
합계	68	36	1	1	3	27
청주시	6	0	0	1	0	5
충주시	1	0	1	0	0	0
제천시	12	12	0	0	0	0
보은군	9	2	0	0	3	4
옥천군	15	4	0	0	0	11
괴산군	5	5	0	0	0	0
단양군	20	13	0	0	0	7

※ 상세내역: 붙임 2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정기적인 수질검사 누락 및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이 경과한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수질검사 및 지하수영향조사 추

진계획을 수립하여 유효기간 허가 갱신을 실시하시기 바라며, 부적합 및 사용불가 판정을 받은 관정은 폐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농업용 대형관정 정기 수질검사 및 유효기간 연장 미실시 현황: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붙임2> 농업용 대형관정 사용불가 상세내역(2023.12월말 기준):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반영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의 종류, 임대료 및 임대사업 운영기준 등이 포함된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산정방식 등 임대료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아래 [표 1]과 같이 정하고 있다.

[표 1] 임대사업 시행기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관련)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또한 「농기계임대 사업시행지침」에는 임대농기계를 영농적기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조례를 조기에 제·개정하고, 임대농기계 구입 및 이용에 따른 A/S 방안을 강구하는 등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상의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개정 ·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위 관서에 대해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부합되게 운영조례를 개정했는지 확인한 결과, 충주시,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은 아래 [붙임]과 같이 농업기계 구입가격 구간 기준이 다르게 하거나, 구간별 1일 임대료 기준을 28%~74% 낮게 정하는 등「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 제2항(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임대료 지급 기준과 달리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금번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적극 업무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옥천군수, 영동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 2 제2항 [별표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상의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게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군별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 현황

<table>
<tr><th>시 군</th><th>조례명
(최종 개정일)</th><th>임대료
기준
관련 조항</th><th>시군별 농기계 임대료 기준</th></tr>
<tr><td>충주시</td><td>충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2021. 12. 31)</td><td>미반영
(조례 제8조)</td><td>[별표 1]
농기계사용료기준
(단위 : 원/일)
<table>
<tr><th>농기계 구입금액</th><th>사 용 료</th><th>비 고</th></tr>
<tr><td>50만원 미만</td><td>5,000</td><td></td></tr>
<tr><td>50만원 이상 ~ 100만원미만</td><td>10,000</td><td></td></tr>
<tr><td>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td><td>20,000</td><td></td></tr>
<tr><td>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td><td>30,000</td><td></td></tr>
<tr><td>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td><td>40,000</td><td></td></tr>
<tr><td>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td><td>50,000</td><td></td></tr>
<tr><td>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td><td>60,000</td><td></td></tr>
<tr><td>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td><td>70,000</td><td></td></tr>
<tr><td>2,5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td><td>80,000</td><td></td></tr>
<tr><td>3,000만원 이상 ~ 3,500만원 미만</td><td>90,000</td><td></td></tr>
<tr><td>3,5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td><td>100,000</td><td></td></tr>
<tr><td>4,000만원 이상 ~ 4,500만원 미만</td><td>110,000</td><td></td></tr>
<tr><td>4,5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td><td>120,000</td><td></td></tr>
<tr><td>5,000만원 이상 ~</td><td>150,000</td><td></td></tr>
</table></td></tr>
<tr><td>옥천군</td><td>옥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2023. 12. 29)</td><td>미반영
(조례 제9조)</td><td>[별표 1] <개정 2016.12.17., 2016.12.23., 2023.12.29.>
1. 농업기계 임대료
(단위 : 천원/일)
<table>
<tr><th>취득가액</th><th>임대료</th></tr>
<tr><td>100만원 미만</td><td>5</td></tr>
<tr><td>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td><td>10</td></tr>
<tr><td>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td><td>15</td></tr>
<tr><td>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td><td>20</td></tr>
<tr><td>7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td><td>25</td></tr>
<tr><td>900만원 이상 ~ 1,100만원 미만</td><td>30</td></tr>
<tr><td>1,1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td><td>35</td></tr>
<tr><td>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td><td>45</td></tr>
<tr><td>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td><td>50</td></tr>
<tr><td>3,000만원 이상 ~ 4,000만원 미만</td><td>80</td></tr>
<tr><td>4,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td><td>110</td></tr>
<tr><td>5,000만원 이상 ~ 10,000만원 미만</td><td>130</td></tr>
<tr><td>10,000만원 이상 ~ 15,000만원 미만</td><td>180</td></tr>
<tr><td>15,000만원 이상</td><td>300</td></tr>
</table>
※ 비고 : 트랙터(68마력 이상)와 콤바인은 대여하지 않으며, 농작업 대행만 실시한다. 다만, 축산 조사료 수확 및 조제 작업 용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
※ 반일(4시간) 대여 시에는 1일 임대료의 50%를 적용한다.
2. 콩 정선기 임대료 기준
<table>
<tr><th>포대당(40kg) 기준</th><th>임대료</th><th>비고</th></tr>
<tr><td>1 ~ 10포대</td><td>5,000원</td><td></td></tr>
<tr><td>11 ~ 20포대</td><td>10,000원</td><td></td></tr>
<tr><td>21 ~ 30포대</td><td>15,000원</td><td></td></tr>
<tr><td>31포대 이상</td><td>포대당 500원 추가</td><td></td></tr>
</table>
3. 농업기계 농작업 대행료
<table>
<tr><th>구 분</th><th>경 수 기 준</th><th>비 고</th></tr>
<tr><td>트랙터 68마력이상
(경운, 정지)</td><td>30원/㎡</td><td rowspan="2">1,000원 이하는 절사한다.</td></tr>
<tr><td>콤바인
(수확및탈곡)</td><td>45원/㎡</td></tr>
</table></td></tr>
</table>

<table>
<tr><th>시 군</th><th>조례명
(최종 개정일)</th><th>임대료
기준
관련 조항</th><th>시군별 농기계 임대료 기준</th></tr>
<tr><td>영동군</td><td>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2022. 11. 07)</td><td>미반영
(조례 제9조)</td><td>
[별표 2] <개정 18.10.5.>
농업기계 사용료 징수기준(제9조제1항 관련)
(단위: 원/ 1일)
<table>
<tr><th rowspan="2">기종별</th><th colspan="2">트랙터</th><th>트랙터 작업기</th><th colspan="2">파쇄기</th><th colspan="8">축산기계</th></tr>
<tr><th>45HP 이상</th><th>45HP 미만</th><th>경기 트랙터 등 트랙터 부착작업기</th><th>간가기</th><th>목재</th><th colspan="2">베일러</th><th>헤일로우</th><th>수확기</th><th>분쇄기</th><th>계사 청소기</th><th>급이기</th><th>급계</th><th>배합기</th></tr>
<tr><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원형</th><th>사각</th><th></th><th></th><th></th><th></th><th></th><th></th><th></th></tr>
<tr><td>사용료</td><td>60,000</td><td>40,000</td><td>30,000</td><td>15,000</td><td>50,000</td><td>70,000</td><td>55,000</td><td>55,000</td><td>30,000</td><td>60,000</td><td>60,000</td><td>15,000</td><td>10,000</td><td>20,000</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기종별</th><th colspan="2">SS 분무기</th><th colspan="2">관리기</th><th colspan="2">경운기</th><th colspan="2">이앙기</th><th colspan="3">피비살포기</th></tr>
<tr><th>400ℓ 이하</th><th>500ℓ 이상</th><th>일반용</th><th>작업기</th><th>승용형</th><th>작업기</th><th>승용</th><th>보행</th><th>승용</th><th>보행</th><th>경운기용</th></tr>
<tr><td>사용료</td><td>30,000</td><td>50,000</td><td>10,000</td><td>5,000</td><td>15,000</td><td>5,000</td><td>60,000</td><td>20,000</td><td>50,000</td><td>30,000</td><td>15,000</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기종별</th><th rowspan="2">콤바인</th><th rowspan="2">농글작용기</th><th colspan="2">파종기</th><th colspan="2">재초기</th><th rowspan="2">종예취기</th><th rowspan="2">종정선기</th><th rowspan="2">종탈곡기</th><th colspan="2">농력운반차</th></tr>
<tr><th>파종</th><th>인력</th><th>승용</th><th>보행</th><th>승용</th><th>보행</th></tr>
<tr><td>사용료</td><td>80,000</td><td>50,000</td><td>20,000</td><td>5,000</td><td>20,000</td><td>15,000</td><td>15,000</td><td>10,000</td><td>10,000</td><td>30,000</td><td>10,000</td></tr>
</table>
<table>
<tr><th rowspan="2">기종별</th><th colspan="2">인삼기계</th><th rowspan="2">승자동대동가동권파</th><th rowspan="2">지설주치복기</th><th rowspan="2">파편이당포기</th><th rowspan="2">풍분무덕기</th><th rowspan="2">감박피기</th><th rowspan="2">비료살포기</th><th rowspan="2">기기타종</th><th rowspan="2">기각업타기</th></tr>
<tr><th>두둑기</th><th>아식기</th></tr>
<tr><td>사용료</td><td>20,000</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d>10,000</td><td>5,000</td><td>10,000</td><td>5,000</td></tr>
</table>
</td></tr>
<tr><td>단양군</td><td>단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2016. 10. 21)</td><td>미반영
(조례 제9조)</td><td>
농기계 임대료 기준(제7조 관련)
농기계 임대료는 다음을 기준으로 농기계 상태,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table>
<tr><th>농기계 구입가격</th><th>1일 임대료</th></tr>
<tr><td>1) 100만원 미만</td><td>8,500원</td></tr>
<tr><td>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td><td>10,000원</td></tr>
<tr><td>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d>12,750원</td></tr>
<tr><td>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td><td>16,150원</td></tr>
<tr><td>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d><td>19,550원</td></tr>
<tr><td>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td><td>23,800원</td></tr>
<tr><td>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td><td>27,200원</td></tr>
<tr><td>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td><td>31,025원</td></tr>
<tr><td>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td><td>34,850원</td></tr>
<tr><td>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td><td>39,100원</td></tr>
<tr><td>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td><td>55,250원</td></tr>
<tr><td>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td><td>72,250원</td></tr>
<tr><td>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td><td>93,500원</td></tr>
<tr><td>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td><td>110,500원</td></tr>
<tr><td>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td><td>136,000원</td></tr>
<tr><td>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td><td>157,250원</td></tr>
<tr><td>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td><td>165,750원</td></tr>
<tr><td>18) 5,000만원 이상</td><td>178,500원</td></tr>
</table>
</td></tr>
</table>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농식품분야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식품 국고보조사업 사업시행기관으로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한 공시 및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의 책임이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공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부동산과 그 종물,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항공기는 10년,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은 5년으로 하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2조(사업의 관리책임 등) 및 사업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 등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매년 1회 농업협동조합 등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성검토에 참여한 기관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미공시

위 관서는 아래 [표] '농식품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과 같이 농식품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500만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한 중요재산 공시를 하지 않았으며,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위 관서는 [붙임] '농식품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과 같이 농식품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500만원 이상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농식품 분야 국고보조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20년~'23년 12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미흡**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분야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사업(지자체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완료, 폐지 승인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보조금을 정산·반납하면서 집행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에 제출하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라 집행잔액을 소관 중앙관서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Ⅱ. 사업유형별 지침에 따르면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하고, 반납기한은 최소한 사업 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농림축산식품부 훈령)」 제63조(집행잔액 등 반납)에 따르면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을 반납하여야 하며, 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내에는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교부 결정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6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및 별지 7호(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집행잔액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통지하였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이와 관련, 충청북도는 완료된 보조사업에 대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반납해야 하며, 시·군이 국고보조사업의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이자 포함)을 반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늦어도 사업이 완료된 다음 해까지 반납하도록 해야 했다.

그런데 충청북도(㉮과, ㉯과)는 2020년, 2021년,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이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하였으나, 반납예산 미편성 등의 사유로 감사일 현재까지 총 18건 701,498,600원을 반납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시정] 충청북도와 청주시 등 5개 시·군이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반납하지 않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총 18건의 701,498,600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반납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관내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농업용저수지, 양배수장 등을 아래 [표 1]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표 1] 농업생산기반시설 현황(2023.12월말)

(단위 : 개소)

시군	농업용저수지				양·배수장	관정	보
	소계	총저수량 30만㎥ 이상	총저수량 5만㎥ 이상 30만㎥ 미만	총저수량 5만㎥ 미만			
총계	558	3	28	527	275	2,029	1,326
청주시	155	-	2	153	66	458	159
충주시	51	-	2	49	42	282	129
제천시	37	-	2	35	1	161	295
보은군	42	-	4	38	40	220	65
옥천군	61	1	5	55	37	137	59
영동군	56	-	2	54	38	138	65
증평군	8	-	-	8	1	50	6
진천군	38	-	-	38	7	83	32
괴산군	53	2	7	44	25	228	121
음성군	42	-	3	39	15	145	99
단양군	15	-	1	14	3	127	296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안전관리시행계획은 그 계획의 성격상 영농기 이전에 수립하여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해·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영농편익 제공 등 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또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하여 결함이 발견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개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 청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아래 [표 2]와 같이 2020년도부터 2023년도 12월말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시행계획을 한 번도 수립하지 않거나 일부 수립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은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라도 영농기가 경과한 6월~11월에 수립하는 등 수립 시기가 부적절하였다.

[표 2]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현황(2023.12월말 기준)

시·군	연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여부 (수립한 경우 결재 문서)	안전관리시행계획 수립 여부 (수립한 경우 결재 문서)	비고
청주시	2020	미수립	㉮과-28846(20.10.06.)	지연수립
	2021	미수립	미수립	
	2022	미수립	미수립	
	2023	미수립	미수립	
제천시	2020	㉯과-16920(17.8.3.)	미수립	
	2021	㉯과-16920(17.8.3.)	미수립	
	2022	㉰과-7681(22.11.14)	미수립	
	2023	㉰과-7681(22.11.14)	미수립	
보은군	2020	㉱과-38113(17.8.3.)	㉱과-5664(20.1.31.)	
	2021	㉱과-38113(17.8.3.)	㉱과-3386(21.1.20.)	
	2022	미수립	미수립	
	2023	㉱과-10798(23.3.6.)	㉱과-10799(23.3.6.)	
옥천군	2020	㉲과-31347(17.8.3.)	㉳과-914(20.1.17.)	
	2021	㉲과-31347(17.8.3.)	미수립	
	2022	미수립	미수립	
	2023	미수립	㉳과-6346(23.4.17.)	
영동군	2020	㉴과-49341(16.11.7.)	㉴과-21427(20.3.11.)	
	2021	미수립	㉴과-899(21.1.5.)	
	2022	㉴과-8782(22.1.25.)	㉴과-11097(22.2.4.)	
	2023	㉴과-8782(22.1.25.)	㉴과-12342(23.2.7.)	
증평군	2020	㉵과-20777(17.8.3)	㉶과-12103(2023.6.30)	지연수립
	2021	㉵과-20777(17.8.3)	미수립	
	2022	㉶과-12409(22.7.26)	㉶과-12409(22.7.26)	
	2023	㉶과-12409(22.7.26)	㉷과-26439(23.3.16)	
괴산군	2020	㉸실-20174(17.7.13.)	㉹과-126(20.7.3.)	지연수립
	2021	㉸실-20174(17.7.13.)	미수립	
	2022	미수립	㉹과-6798(22.3.29.)	
	2023	㉺과-6999(23.3.22.)	㉺과-6999(23.3.22.)	
음성군	2020	㉻과-14108호(17.8.1.)	㉼과-11181(20.6.30.)	지연수립
	2021	㉻과-14108호(17.8.1.)	미수립	
	2022	㉼과-3403호(22.3.4.)	㉼과-3403호(22.3.4.)	
	2023	㉼과-3403호(22.3.4.)	㉼과-3177(23.3.3.)	
단양군	2020	㉽과-13033(16.11.9.)	㉽과-9488(20.7.1.)	지연수립
	2021	미수립	미수립	
	2022	㉾과-1869(22.3.11.)	㉾과-1879(22.3.11.)	
	2023	㉾과-1869(22.3.11.)	㉾과-1364(23.2.20.)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 시행계획을 법령상 계획수립 주기 및 시기에 맞게 수립하여 안전점검 등을 통해 재해·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농업인에게 영농편익 제공 등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시설원예 분야 사업 추진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원예현대화사업과 시설원예 분야 ICT 기반 자동·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위해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및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시행지침」 및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시행지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이하 '사업지침'이라 함)에 따라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 사업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 기계·장비는 반드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는 주요시설의 설계·시공·감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효율성 및 안전성이 높은 시설로 계획하고,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공사감리를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시장·군수(사업시행기관)은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자(시공업체 등)가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를 확인하고, 제품의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은 반드시 지역실정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적용하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감리 시행 여부를 확인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위 관서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은 아래 [표 1]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과 같이 기계·장비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를 일부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의 사실과 같이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대상자 대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된 기계・장비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 제품의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이 지역실정 맞게 책정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합동감사 기간 사후 발급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청주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은 일부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의 사후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

시군	사업연도	증빙자료 미제출(건수)				사후제출 가능여부 "X"(건수)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감리보고서	시험성적서	원가계산서
청주시	2020	131	37	1		4	1
	2021	52	1	1		1	0
	2022	68	9			16	
	2023	26	6			2	
충주시	2023	8	10	1		0	1
보은군	2020	1	1	1		0	1
	2022	2	2			1	
옥천군	2022	2	2			0	
영동군	2021	1				1	
진천군	2020	1				1	
	2022	2				1	
	2023	1				0	
음성군	2020	12				0	
	2021	9				0	
	2022	18				0	
	2023	16	3			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세내역 <붙임 1> 참조**

나.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위 관서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영동군, 음성군은 [표 2]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과 같이 기계・장비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를 일부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의 사실과 같이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대상자 대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된 기계・장비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 제품의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이 지역실정 맞게 책정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합동감사 기간 사후 발급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청주시, 증평군, 괴산군, 영동군은 일부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의 사후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

시군	사업연도	증빙자료 미제출(건수)				사후제출 가능여부 "X"(건수)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감리보고서	시험성적서	원가계산서
청주시	2020		3				
	2021		1				
	2022		4	20			20
증평군	2021	2				2	
	2023	1	1			1	
진천군	2020	1				0	
	2021	1				0	
괴산군	2022	1		1		1	0
영동군	2020	1				1	
음성군	2021	2				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세내역 <붙임 2> 참조**

다.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위 관서 청주시, 충주시,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은 [표 3] “농업에너지이용효

율화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과 같이 기계・장비에 대해 보조금 지원 시 공인인증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전문기관의 원가계산서 발급 여부와 총 사업비 기준 5천만원 이상 사업의 감리 시행 여부를 일부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집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위의 사실과 같이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대상자 대상으로 보조금으로 지원된 기계・장비가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 제품의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이 지역실정 맞게 책정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부합동감사 기간 사후 발급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 3]과 같이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은 일부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의 사후 발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

시군	사업연도	증빙자료 미제출(건수)				사후제출 가능여부 "X"(건수)	
		시험성적서	사후관리보증서	원가계산서	감리보고서	시험성적서	원가계산서
청주시	2020			11			6
	2022			2			2
충주시	2021				2		
	2022	1	1	1		1	1
옥천군	2023	1	1			0	
진천군	2020			1			1
괴산군	2020	1		1			
	2022	1		1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상세내역 <붙임 3> 참조**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

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는

[주의] 사업시행 전 담당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조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집행 시 사업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장, 충주시장, 보은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는

[통보] 보조사업 추진 시 미제출한 '시험성적서' 및 '원가계산서'에 대해 사후 발급이 불가하다고 확인된 66건(시험성적서 33건, 원가계산서 33건)에 대해 공인인증시험기관 등으로부터 효율·성능이 인정된 제품이 보급되었는지 여부와 보조사업 제품의 지원단가 및 내역 등이 지역실정 맞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이에 합당하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붙임2> 시설원예 ICT융복합확산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붙임3>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사업추진 점검 현황(증빙자료 미제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원예분야 사업 포기·이월 사업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은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을 구축하고,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에너지절감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함)」,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업법인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4조(시책과 장려 등), '기본규정',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시설원예현대화사업 시행지침’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시행지침’을 보면, 사업대상자 조건에 “신청일 현재 사업 포기·이월로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지원제외 대상자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사업 포기·이월 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과)에서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2021년 사업부터 적용하였다.

위 시행지침(Ⅲ 사업추진체계 - 4. 사업 시행 단계)에 따르면 사업대상자가 사업 추진단계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일 이후 3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고, 이월하는 경우에는 준공일 이후 2년간 모든 시설원예분야 사업의 지원이 제한된다.

더욱이, 2023년도 상반기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림축산식품부(㉮과)에서 시설원예분야 지원 사업 관련 지침(포기·이월 사업자의 시설원예분야 사업 제한 기간 준수) 미준수 사례를 전파하며, “각 시·도에서는 시설원예분야 정산 자료(포기·이월 사업자 명단)를 각 시·군에 배포하고 각 시·군에서는 동 자료를 활용하여 현재 진행중인 2024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선정 심의 시 포기·이월 사업자가 제한 기간 내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1]을 시행하였고,

충청북도(㉯과)에서는 위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문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2024년 시설원예분야 예비사업자 선정 심의 시 포기·이월 사업자가 제한 기간

1) 농림축산식품부 ㉮과-2859호(2023.7.19.)

내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조치” 등 유의 사항을 읍·면에 전달하여 위의 유의사항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며 “현재 진행중인 사업에 해당 사례가 확인될 경우 서류를 보완·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공문[2]을 시행하였다.

따라서 시·군(사업시행기관)은 위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최근 2년~3년간 사업대상자가 사업 추진단계에서 포기·이월한 경우에는, 위 시행지침에서 제한하는 기간 동안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해당 사업대상자(농업인 등)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배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포기·이월 사업자 지원제한 기간 내 보조금 지원

그런데 위 관서 청주시는 [표 1] “시설원예사업 포기·이월 사업자 제한기간 내 보조금 지원 현황”과 같이 시설원예 분야 사업대상자 중 1명이 2022년도 시설원예현대화사업을 포기하여 보조금(국고+지방비) 6,135천원이 불용 되었음에도, 2023년(지원제한 기간 내)에 시설원예 분야 사업대상자로 다시 선정하여 16,500천원의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 1] 시설원예사업 포기·이월 사업자 제한기간 내 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2022년 포기.이월 현황						2023년 보조금 지원 내역		
시군	구분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자명	보조금(국고+지방비)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금(국고+지방비)
청주시	포기	시설원예현대화	2022년	A	6,135천원	20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	16,500천원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충청북도 ㉮과-9215호(2023.7.27.)

나. 포기·이월 사업자 지원제한 기간 내 사업대상자 선정

그리고 위 관서 청주시, 음성군은 [표 2] “시설원예사업 포기·이월 사업자 제한기간 내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과 같이 시설원예 분야 사업대상자 중 5명이 2021년~2023년도에 시설원예현대화사업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포기하였음에도 2022년~2024년(지원제한 기간 내)에 시설원예 분야 사업대상자로 다시 선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더욱이 2023년에 위 제한기간 내 선정된 사업자 중 일부는 당해연도 말에 다시 보조사업을 포기한 사실[3]이 확인된다.

[표 2] 시설원예사업 포기·이월 사업자 제한기간 내 사업대상자 선정 현황

(단위 : 천원)

포기.이월 사업자 현황						제한기간 내 사업자 선정 현황		
시군	구분	사업명	사업연도	사업자명	보조금(국고+지방비)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금(국고+지방비)
청주시	포기	시설원예현대화	2021년	B	1,500	2022년	시설원예현대화	3,000
청주시	포기	시설원예현대화	2022년	A	6,135	2023년	시설원예현대화	21,000
청주시	포기	시설원예현대화	2022년	C	3,750	20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시설보급)	29,400
청주시	포기	에너지절감시설	2022년	C	10,285			
음성군	포기	시설원예현대화	2022년	D	3,990	2024년	에너지절감시설	8,388
음성군	포기	시설원예현대화	2023년	E	11,501	2024년	에너지절감시설	7,535
음성군	포기	에너지절감시설	2023년	E	17,60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음성군수는**

3) 2023년 시설원예 ICT융복합 확산사업(시설보급) 포기서 제출(C), 청주시 상당구 ㈜면-23484호(2013.12.19.)

[주의] 사업시행 전 담당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검증을 면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관리 미흡**

기 관 명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내　　용

1. 사업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은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고, 그 시설 등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군은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및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축산업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그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할 수 있으며,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축사·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축산법」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

하지 아니한 자와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시·군은 제56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합동감사결과 통보 공문(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시행)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고지, 농장 소명 등 적정한 행정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반의 점검결과에 따라 관내 축산농장에 지적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관련 행정조치를 미이행한 것을 확인하였다.

<표>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결과 통보사항에 대한 행정조치 미 이행 현황('20~'23년)

시·군	합동점검 결과 통보사항			시·군 조치사항		비 고
	점검일자	위반농가	위반사항	행정처분 사항 (처분일자)	기타	
청주시	2020.7.27	A	사육밀도 초과, 일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중	-	위반사항 해소 ('20.12.15)	5개월간 미조치
	2023.5.4	B	사육밀도 초과 (배출시설 미설치)	-	-	미조치
제천시	2022.5.24	C	사육밀도 초과	-	-	미조치
	2022.5.25	D	신발소독조 미비치	-	-	미조치
진천군 (㉮과)	2023.3.27	E	사육밀도 초과 (축산업 미등록)	시정명령 ('23.4.27~7.31)	-	과태료 미처분
	2023.3.27	F	사육밀도 초과 (축산업 미등록)	〃	-	〃
	2023.3.27	G	사육밀도 초과 (축산업 미등록)	〃	-	〃

	2023.4.5	H	사육밀도 초과 (보수교육 미이수)	〃	-	〃
	2023.4.5	I	사육밀도 초과 (약품기록부 미비치)	〃	-	〃
	2023.4.5	J	사육밀도 초과 (축산업변경미신고)	〃	폐업 ('24.3.6)	〃
진천군 (㈜과)	2023.3.27	F	배출처리시설 미허가	시정명령 (1차 : '23.4.27~7.31) (2차 : '23.12.5~'24.1.31)	-	과태료 미처분
	2023.3.27	E	배출처리시설 미설치	〃	-	〃
	2023.3.27	G	배출처리시설 미허가	〃	-	〃
	2023.4.5	K	배출처리 시설 미허가	〃	-	〃
	2023.4.5	H	배출처리시설 미허가	〃	-	〃
	2023.4.5	I	배출처리시설 미허가	〃	-	〃
	2023.5.4	L	배출처리 시설 미허가	〃	-	〃
괴산군	2022.4.4	M	사육밀도 초과	과태료 사전예고 (1차 : '22.4.21) (2차 : '22.7.7)	-	과태료 미처분
	2022.4.4	O	사육밀도 초과	〃	-	〃
	2022.5.27	P	사육밀도 초과	-	-	미조치
	2022.5.27	Q	사육밀도 초과	-	-	〃
	2023.4.3	R	무허가 축사에서 가축 사육	-	-	〃
	2023.4.3	S	허가면적 초과된 불법축사에서 사육	-	-	〃
	2023.4.3	T	허가면적 초과된 불법축사에서 사육	-	-	〃
	2023.4.17	U	허가면적 초과된 불법축사에서 사육	-	-	〃
	2023.4.17	V	허가면적 초과된 불법축사에서 사육	-	-	〃
	2023.4.17	W	허가면적 초과된 불법축사에서 사육	-	-	〃
	2023.4.20	X	허가면적 초과된 불법축사에서 사육	-	-	〃
	2023.4.20	Y	허가면적 초과된 불법축사에서 사육	-	-	〃

4.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하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법령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제천시장, 진천군수, 괴산군수는**

[주의] 축산관련기관 합동점검결과 통보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가 규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제　　목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조치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및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에 따라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 및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주고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도록 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축산법」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자(제22조제1항)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제22조제3항)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제34조의2제1항)는 2년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휴업 ·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1]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1) 1.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2. 휴업한 경우 등

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축산법」제56조(과태료) 제2항 4호에 따르면, 축산업의 허가자를 받은 자 등이 같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정부합동감사 기간 중 2020~2023년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후속 조치 결과를 확인한 결과, 위 관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20년도 387명, 2021년도 411명, 2022년도 600명의 보수교육 미이수자 중에서 2022년도 7명(청주시 4명, 괴산군 3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이수자(사망, 폐업, 직권말소 제외)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연도별 축산관련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조치현황(2023.12월말 기준)

(단위 : 명)

시·군	연도	대상자	이수자	미이수자	미이수자 조치 현황			
					미조치	과태료 부과	사망, 폐업 직권말소 등	비고
충북 전체	2020	5,179	4,792	387	307	-	80	
	2021	6,033	5,622	411	293	-	118	
	2022	6,119	5,519	600	429	7	164	
	2023	6,633	5,859	774	615	-	159	
청주시	2020	1,766	1,704	62	1	-	61	
	2021	1,803	1,765	38	2	-	36	
	2022	1,839	1,798	41	1	4	36	
	2023	1,910	1,761	149	44	-	105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충주시	2020	570	522	48	44	-	4	
	2021	741	703	38	11	-	27	
	2022	650	631	19	-	-	19	
	2023	784	691	93	93	-	-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제천시	2020	516	436	80	80	-	-	
	2021	553	477	76	76	-	-	
	2022	576	439	137	137	-	-	
	2023	588	430	158	158	-	-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보은군	2020	565	565	-	-	-	-	
	2021	686	672	14	-	-	14	
	2022	625	617	8	2	-	6	
	2023	747	679	68	68	-	-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옥천군	2020	402	391	11	11	-	-	
	2021	469	467	2	-	-	2	
	2022	500	465	35	31	-	4	
	2023	544	544	-	-	-	-	
영동군	2020	273	233	40	40	-	-	
	2021	305	266	39	39	-	-	
	2022	325	248	77	77	-	-	
	2023	336	262	74	74	-	-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증평군	2020	71	63	8	8	-	-	
	2021	219	214	5	5	-	-	
	2022	93	90	3	3	-	-	
	2023	208	170	38	30	-	8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진천군	2020	166	166	-	-	-	-	
	2021	218	199	19	-	-	19	
	2022	365	343	22	10	-	12	
	2023	371	348	23	23	-	-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괴산군	2020	458	385	73	59	-	14	
	2021	578	411	167	160	-	7	
	2022	509	320	189	164	3	22	
	2023	599	514	85	48	-	37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음성군	2020	392	371	21	20	-	1	
	2021	461	448	13	-	-	13	
	2022	443	434	9	2	-	7	
	2023	510	492	18	11	-	7	24.2월말까지 교육기간 연장
단양군	2020	-	-	-	-	-	-	
	2021	-	-	-	-	-	-	
	2022	194	134	60	2	-	58	
	2023	36	34	2	-	-	2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향후 업무 담당자의 관련 법규 숙지와 적극적인 지도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축산 관련 종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교육을 미이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제외 대상자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충주시는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을 위하여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 등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침」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 양봉농가로 등록된 농가에 대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침에 따르면, '21.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곤충산업법)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

을 받은 농가는 아래와 같이 지원 제한 기간 내에 지원을 제한하고 있고,

< 지원 제한 기간 >

①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②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 사용정지) : 2년
③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 : 1년
④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위와 같은 지원 제외 규정 관련하여, “사업신청자는 지원 제외 사유를 회피하기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지 아니하며, 지자체는 사업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상 유무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의 지원 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하여야 한다”고 ‘농가 및 지자체 준수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관인 시·군·구는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신청서 및 사업대상자의 지원제한 해당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 및 심의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 충주시는 [표] “「축산법」 위반 농가 행정처분 현황 및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현황”과 같이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대상자 중 1명이 2021년도 「축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년(지원제한 기간 내)에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다.

[표]「축산법」위반 농가 행정처분 현황 및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현황

시군	「축산법」 위반 농가 행정처분 현황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내역			
	처분 연도	농가명	처분종류	처분일	사업 연도	사업명	지원금액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일
충주시	2021년	A	과태료 1회	2021.4.19.	2022년	축산 ICT융복합	15,000 천원	2022.3.10. (㈜과-3451호)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은

[주의] 사업 시행 전 담당 공무원에 대해 관련 규정 및 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사업대상자 선정 시 검증을 면밀히 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등록대상동물(맹견) 사후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충북 만들기”를 위해「동물복지법」제4조,「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4)’을 수립하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항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1]이 변경된 경우에는 일정기간[2]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1)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1. 소유자 변경 4. 소유자의 주소, 5. 소유자의 전화번호, 7.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8.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

2) 1.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2. 등록동물에 대하여 상기 각주 “1)”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같은 법 제21조(맹견의 관리) 제3항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3조(보험의 가입 등) 제1항에 따르면, 맹견의 소유자는 자신의 맹견이 다른 사람 또는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에 따르면, 상기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 청주시, 충주시, 보은군, 옥천군, 진천군, 괴산군은 [표 1]과 같이 일부 맹견 소유자가 교육을 받지 않거나 보험을 미가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표 2]와 같이 등록동물의 소유자 변경 및 등록동물의 사망 또는 양도한 경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가입권고 또는 등록동물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안내만 하고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표 1] 충청북도 맹견 사후관리 현황(2024.1월말 기준)

(단위: 명, 마리, 건)

구 분	등록현황		교육이수	보험
	소유자	맹견 수	교육이수자	가입 마릿수
합계	79	138	58	107
청주시	38	64	26	42
충주시	7	23	4	23

제천시	8	9	8	9
보은군	3	3	3	2
옥천군	8	9	4	4
영동군	2	11	2	11
증평군	1	1	1	1
진천군	2	2	2	1
괴산군	4	5	2	2
음성군	5	10	5	10
단양군	1	1	1	1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충청북도 맹견 사후관리 상세현황(2024.1월말 기준)

시군	소유주	보험가입 여부	조치내역	교육이수 여부	조치내역	비고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사망(변경 미신고)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여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
청주시	-	부	미조치	부	미조치	연락불가
청주시	-	부	미조치	부	미조치	연락불가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부	미조치	부	미조치	연락불가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청주시	-	여		여		양도(변경 미신고)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여		여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양도(변경 미신고)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양도(변경 미신고)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청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사망말소자
청주시	-	여	`	여		
청주시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충주시	-	여		여		
충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동물 사망
충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동물 사망
충주시	-	여		여		
충주시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타인 입양 (동물등록변경신고안내)
충주시	-	여		여		
충주시	-	여		여		
제천시	-	여		여		
제천시	-	여		여		
제천시	-	여		여		맹견2마리 소유
제천시	-	여		여		
제천시	-	여		여		
제천시	-	여		여		
제천시	-	여		여		
제천시	-	여		여		
보은군	-	여		여		
보은군	-	부	가입권고 조치	여		
보은군	-	여		여		
옥천군	-	여		여		
옥천군	-	여		여		
옥천군	-	여		여		
옥천군	-	여		여		
옥천군	-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옥천군	-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옥천군	-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옥천군	-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부	동물정보 변경 신고 안내	반려견 사망(변경 미신고)

영동군	-	여		여		
영동군	-	여		여		
증평군	-	부	가입권고 조치	부	교육이수 권고 조치	양도(변경 미신고)
진천군	-	여	-	여	-	
진천군	-	부	보험갱신 권고	여	-	
괴산군	-	여		여		
괴산군	-	여		여		
괴산군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동물 사망
괴산군	-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부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반려동물 사망
음성군	-	여		여		
음성군	-	여		여		
음성군	-	여		여		
음성군	-	여		여		
음성군	-	여		여		
단양군	-	여		여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관련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는**

[주의] 업무담당자 등에 대해 관련 규정 및 '24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교육 이수 여부, 맹견 정보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소방·안전교육 미이행 민박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흡**

기 관 명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제천시, 괴산군, 단양군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소득 창출・증대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및 지도·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및 제88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과태료)에 따르면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민박업을 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교육이수의무 불이행은 지차체의 과태료 부과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소방·안전 교육(2시간)을 이수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아래 <표> “교육이수 미이행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현황(’20~’23년)”과 같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표> 교육이수 미이행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현황('20~'23년)

시군명	미처분 연도	처분 대상 사업자수	미처분 사업자수	비고
제천시	2020년	13	13	'20년 미이수
	2021년	9	9	'21년 미이수
	2022년	4	4	'22년 미이수
	2023년	3	3	'23년 미이수
괴산군	2020년	9	9	'20년 미이수
	2021년	13	12	'21년 미이수
	2023년	2	2	'23년 미이수
단양군	2020년	4	4	'20년 미이수
	2021년	7	7	'21년 미이수
	2022년	12	12	'22년 미이수
	2023년	5	5	'23년 미이수
계	3개 시군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의견

이에 대하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 괴산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미이수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민박사업자 전기·가스 안전점검 이행여부 확인 및 행정처분 미흡**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전체 11개 시군은 농어촌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하여 소득 창출·증대하도록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 및 지도·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각 시군별로 2024년 2월 19일 기준으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충청북도 시군별 농어촌민박사업자 운영 현황('24.2.19.기준)

시·군	민박사업자 수	시·군	민박사업자 수	비고
청주시	112	증평군	5	
충주시	153	진천군	32	
제천시	311	괴산군	231	
보은군	78	음성군	15	
옥천군	82	단양군	367	
영동군	91	-	-	
계	11개 시군, 총 1,477개 민박사업자			

* 출처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localdata.go.kr), 영업상태 '정상'인 사업자 대상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및 제88조(지도·감독 등)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및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

여야 하고,

「농어촌정비법」 제132조(과태료)에 따르면 시·군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농어촌민박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민박업을 한 자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 후 그 사본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할 것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아래 <붙임>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징구 현황('20~'23년)”과 같이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전기·가스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 전기·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징구 현황('21~'22년)

시·군	연도	전기 안전점검 확인서		가스 안전점검 확인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	제출자	대상자	제출자	
청주시	2020년	104	0	36	0	0
	2021년	127	0	40	0	0
	2022년	134	0	46	0	0
	2023년	150	16	49	3	0
충주시	2020년	104	0	36	0	0
	2021년	127	0	40	0	0
	2022년	134	0	46	0	0
	2023년	150	16	49	3	0
제천시	2020년	273	0	273	0	0
	2021년	297	0	297	0	0
	2022년	300	0	300	0	0
	2023년	310	0	310	0	0
보은군	2020년	88	3	88	0	0
	2021년	77	0	77	0	0
	2022년	75	0	75	0	0
	2023년	75	0	75	0	0
옥천군	2020년	61	58	40	40	0
	2021년	60	0	60	0	0
	2022년	65	0	65	0	0
	2023년	66	0	66	0	0
영동군	2020년	95	4	95	0	0
	2021년	94	0	94	0	0
	2022년	96	0	96	0	0
	2023년	92	0	92	0	0
증평군	2020년	4	0	4	0	0
	2021년	3	0	3	0	0
	2022년	4	0	4	0	0
	2023년	5	3	5	0	0
진천군	2020년	26	2	26	0	0
	2021년	19	0	19	0	0
	2022년	29	0	29	0	0
	2023년	31	0	31	0	0
괴산군	2020년	184	0	184	0	0
	2021년	195	0	195	0	0
	2022년	214	0	214	0	0
	2023년	229	0	229	0	0
음성군	2020년	6	0	6	0	0
	2021년	11	0	11	0	0
	2022년	16	1	16	0	0
	2023년	15	0	15	0	0
단양군	2020년	339	0	339	0	0
	2021년	332	0	332	0	0
	2022년	325	0	214	0	0
	2023년	359	0	359	0	0
계	11개 시군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시스템' 연계된 민박 시설 정보 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농어촌민박업 관련 정보는 2023년 4월 17일부터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누리집(localdata.go.kr)에서 공개되고 있다. 전국 농어촌민박업소를 포함한 모든 신고·등록 숙박업소 정보를 공개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숙박업소 방문 전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영업상태, 소방시설·장비 등을 포함한 28개 항목의 농어촌민박사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는 시·군의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한 민박의 규모·시설 등 각종 정보가 그대로 누리집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지자체의 축적된 식품, 문화, 의료, 물류 등 195종의 인허가 데이터를 개방, 국민경제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인허가 정보를 제공

*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의 자료가 매일 자동으로 수집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어촌정비법」 제81조(농어촌 관광휴양의 지원·육성),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및 별표 3(농어촌 관광휴양사

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의 시설기준에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어, 농어촌민박 사업과 관련하여 민박의 규모·시설 등의 정보가 시·군에서 운영하는 행정업무시스템인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서 등록되어 있는 정보 그대로 누리집을 통해 전국민에 공개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에서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농어촌민박사업체의 시설정보 등 특히 안전과 관련한 정보는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그 민박업체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이 지방행정 정보의 신빙성을 인지하고 이용할 것이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위 관서는 아래 <표> "데이터개방에 소방시설 미비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현황"과 같이 시·군이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일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시설 정보를 수정·변경 등 현행화를 하지 않음에 따라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에 민박사업자가 보유한 소화기와 경보감지기의 수량 등 잘못된 정보가 대국민에 공개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표> 소방시설정보 현행화 되지 않은 농어촌민박사업자 현황('24.2.19.기준)

시·군	전체 민박 사업자수	정보가 현행화 되지 않은 민박사업자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충주시	153	6	6
제천시	311	0	2
보은군	78	2	3
괴산군	231	92	92
단양군	367	205	205
계	5개 시군		

* 출처 :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개방 누리집(localdata.go.kr), 영업상태 '정상'인 사업자 대상

4. 관계기관 등 의견

위 관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는**

[통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시설 등 민박사업정보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정확히 수정·변경 등록하는 등 농어촌민박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훈계·주의요구

제　　목　**농업법인 사업대상자 선정 부적정**

기 관 명　괴산군

내　　용

1. 업무개요

괴산군㈜센터에서는 2020년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및 2021년 ‘치유농업 육성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표-1>과 같이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표-1> 국고보조사업 현황

(단위: 년, 천 원)

사업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보조사업자	지원내역
2020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개소	50,000	ㄱ (대표 C)	가공장비 등
2021	치유농업 육성 시범	1개소	70,000	ㄴ (대표 D)	치유농장조성 등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제9항 및 별표6(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의 ‘1 공통 지원요건’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업법인 설립요건을 준수하고, 해당 법인이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의 지원요건 구비 여부와 특정인이 개인 사업을 위

하여 위장설립 했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별표6의 '2 사업별 지원요건'에 따라 공통지원요건은 개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에 강화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등기부등본상 설립일 1년 이내의 농업법인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경우 공통지원요건의 출자금 및 운영실적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지방농업연구사 A(이하 "A"라 한다)는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지방농업연구사 B(이하 "B"라 한다)는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표-2>와 같이 괴산군㈜센터에서 실무담당자 직위로 각 사업의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 교부결정 등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A, B는 사업담당자로서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에 농업법인 선정기준에 대한 별도의 완화 조건이 없고 사업시행기관의 장 또한 별도로 기준을 정한 바가 없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지원요건에 충족하는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하였음에도, <표-2>와 같이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표-2> 농업법인 지원요건 충족 여부

(단위: 년, 년/월/일, 천 원)

사업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현황			지원요건별 충족 여부		사업 담당자
		법인명 (대표자)	총출자금 (기준일)	법인 설립일	총출자금 1억 원 이상	운영실적 1년 이상	
2020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 지원	ㄱ (대표 C)	10,000 (2016.10.24.)	2016.5.4.	**미충족**	충족	지방농업 연구사 A
2021	치유농업 육성 시범	ㄴ (대표 D)	20,000 (2017.2.28.)	2014.10.20.	**미충족**	충족	지방농업 연구사 B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는

[훈계] 관련자 A, B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업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확인해 주시고, 향후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미이행

기 관 명 진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진천군㈜센터에서는 농업·농촌의 가치를 높이는 농경문화자원에 대한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촉진을 위해 2021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경문화체험 및 전시공간 리모델링,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제1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 등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르면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토지·건물표시변경등기와 동시에 하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로 부동산의 등기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7조

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진천군㈜센터에서는 2021년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을 추진하면서 <표>와 같이 농경문화자원 전시·판매 공간 리모델링을 통해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는데도, 2024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기간인 2024년 3월 26일까지 부기등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표> 부기등기 미실시 내역

(단위: 년, 천 원)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장(주소)	지원내역	구조 및 용도	지원액
2021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	㉠ (대표 A)	충청북도 진천군 ○○면 ○○리 000-0	농경문화체험 및 전시공간 리모델링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	흙벽돌/철판기와 휴게음식점 (83.2㎡)	128,20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진천군수는**

[시정] 보조사업자에게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여 효용가치가 증가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부기등기를 실시하게 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미이행

기 관 명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제천시㈜센터에서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전문농업인으로의 성장 유도를 위해 2023년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공장비,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정산보고서 검증)에 따르면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총액이 1억 원 이상인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8조(정산보고서의 검증) 제2항에 따르면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제천시㈜센터에서는 <표>와 같이 국고보조금이 1억 원인 2023년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을 때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하였음에도, 검증받지 않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보조사업 정산 검사를 완료하였다.

<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미실시 내역

(단위: 년, 천원)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사업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실시여부
			계	국비	도비	시비		
2023	선도농가 기술이전 모델화 사업	㉠ (대표 A)	200,000	100,000	50,000	50,000	2023.12.6.	**미실시**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제천시장은

[시정]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으로부터 검증받지 않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센터에서는 2020~2023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받고 이에 대한 정산을 확정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할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 등에게 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및 별표5(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자재를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집행잔액의 반납)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단양군 ㈜센터에서는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을 정산하면서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 및 시·군고에 반납처리하여야 하였으나, 적절한 조치없이 정산결과를 확정하였다.

<표> 부가가치세 환급금 미조치 내역

(단위: 년, 원)

시·군	사업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청주	2022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	고구마 5kg box	12,750,000	1,275,000
				고구마 10kg box	856,000	85,600
	2023	열효율화 기술 활용 시설과수 생육환경 개선 시범	-	공기순환히터팬 1kw	20,700,000	2,070,000
				공기순환히터팬 500w	15,470,000	1,547,000
				공기순환팬	560,000	56,000
				풍향가변형 공기순환팬	12,000,000	1,200,000
				제어기	3,300,000	330,000
				제어기	5,500,000	550,000

충주	2020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	과일상자 (플라스틱)	1,878,200	187,800
	2020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	-	저온저장고	5,300,000	530,000
	2021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시범	-	멀칭필름	10,710,000	1,071,000
				고구마 10kg 박스	11,343,182	1,134,318
				농업용 파이프 및 비닐부자재	10,546,000	1,054,000
				농업용 파이프 및 비닐부자재	15,818,200	1,581,800
			-	고구마 10kg 박스	9,090,909	909,091
				파이프 외	17,727,270	1,772,730
				파이프 외	11,818,180	1,181,820
				멀칭필름	7,790,000	779,000
				HD투명필름	14,590,909	1,459,091
				차광막 90%	15,360,000	1,536,000
	2021	식량작물 종자 생산기반단지 조성 시범	-	온탕소독기	4,300,000	430,000
	2022	위해요인 전통장 제어 발효 관리기술 시범	-	농업용 파이프 외	62,131,818	6,213,182
제천	2020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 시범	-	과일운반상자 (플라스틱)	14,921,910	1,492,190
보은	2022	한우 우량암소 조기선발 기술 시범	-	농축산용 환풍기	17,160,000	1,716,000
옥천	2021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	멀칭비닐	25,530,000	2,553,000
영동	2022	PLS대응 밭작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	드론	30,681,818	3,068,182
단양	2022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농산물 건조기	5,800,000	580,000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지 않은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국고금 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제외한 36,362,790원(청주시 7,113,600원, 충주시 19,839,820원, 제천시 1,492,190원, 보은군 1,716,000원, 옥천군 2,553,000원, 영동군 3,068,180원, 단양군 580,000원)을 보조비율에 따라 국고 및 시·군고에 환수하여 주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센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신청서, 정산보고서 등을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시하도록 관리·감독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대상 및 방법 등)에 따르면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등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하 “기본규정”이라 한다) 제30조(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사업관리 모니터링, 중요재산 등록 등) 및 제64조(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사업신청서, 보조사업의 수입 및 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및 검증보고서, 보조사업 감사 지적사항, 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보조사업자의 재무제표 및 결산서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기본규정 제27조(정보취약계층의 보조금통합관리망 이용 지원)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 ㉮단, ㉶원 등에서는 미공시 보조사업에 대하여 정보공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요청한 바 있다.

*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후속조치 안내 및 업무 협조 요청(기획재정부 ㉮단-186, 2023.5.22.) 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괴산군, 단양군 ○○○○센터에서는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가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도록 관리·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 사용을 지원하여야 하였음에도, <표>와 같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를 2024년 충청북도 정부합동감사 기간인 2024년 3월 26일까지 실시하지 않았다.

<표>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미실시 내역

(단위: 년, 천 원)

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비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계	국비	시·군비	자부담		
청주시	**7개 사업**						
2020	곤충(누에)사료활용 실용기술 시범	50,000	25,000	25,000	-	-	**미실시**
2021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100,000	50,000	50,000	-	-	〃
2021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시범	70,000	35,000	35,000	-	-	〃
2021	매실 가공기계 기술 시범	50,000	25,000	25,000	-	-	〃
2021	쌀 누룩 이용 발효식품 (주류, 음료)제조	50,000	25,000	25,000	-	-	〃
2022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60,000	24,000	24,000	12,000	-	〃
2022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기술 시범	40,000	20,000	20,000	-	-	〃
충주시	**41개 사업**						
2020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20,000	10,000	10,000	-	-	**미실시**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20	천적과 작물보호제 활용 해충종합방제	50,000	25,000	25,000	-	-	〃
2020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30,000	15,000	15,000	-	-	〃
2020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시범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20	동물교감 치유환경 조성 시범	70,000	35,000	35,000	-	-	〃
2020	혼밥족 겨냥 시래기 간편 건나물 제품화 시범	60,000	30,000	30,000	-	-	〃
202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50,000	25,000	25,000	-	-	〃

2020	농촌치유자원 상품화 시범	100,000	50,000	50,000	-	-	**미실시**
2020	고품질 베이커리용 과일가공 시범	50,000	25,000	25,000	-	-	〃
2021	식량작물 종자생산 기반단지 조성 시범	203,243	100,000	100,000	3,243	-	〃
2021	팥 재배 전과정 기계화 수확관리 기술 시범	56,534	25,000	25,000	6,534	-	〃
2021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60,000	30,000	30,000	-	-	〃
2021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단지 조성 시범	200,000	100,000	100,000	-	-	〃
		200,000	100,000	100,000	-	-	〃
2021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시범	200,043	100,000	100,000	43	-	〃
2021	천적과 작물보호제 활용 해충종합방제 시범	50,000	25,000	25,000	-	-	〃
2021	토마토 수경재배 작은뿌리파리 종합관리 기술시범	30,000	15,000	15,000	-	-	〃
2021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전생산기술 시범	30,000	15,000	15,000	-	-	〃
2021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	26,000	13,000	13,000	-	-	〃
2021	외부환경 데이터 기반 스마트 양액 공급기술 시범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21	양념채소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20,725	10,000	10,000	725	-	〃
		20,795	10,000	10,000	795	-	〃
		21,011	10,000	10,000	1,011	-	〃
2021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관리 기술시범	20,275	10,000	10,000	275	-	〃
		23,400	10,000	10,000	3,400	-	〃
		20,574	10,000	10,000	574	-	〃
2021	터널식 해가림을 이용한 인삼재배 신기술 시범	40,382	20,000	20,000	382	-	〃
		40,382	20,000	20,000	382	-	〃

2021	축산 스마트팜 통합 제어시스템 활용 기술 시범	60,000	30,000	30,000	-	-	**미실시**
		60,000	30,000	30,000	-	-	〃
2021	청년농업인 경쟁력제고 사업	50,000	22,500	22,500	5,000	-	〃
2021	사포닌 고함유 도라지 품질 고급화 기술	70,000	35,000	35,000	-	-	〃
2021	소비선호형 우리품종 단지조성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000	10,000	10,000	-	-	〃
2021	참깨 재배 및 수확 후 관리 기술보급 시범	70,000	35,000	35,000	-	-	〃
2021	약용작물 생산·수확 후 관리기술	80,000	40,000	40,000	-	-	〃
		35,000	17,500	17,500	-	-	〃
		35,000	17,500	17,500	-	-	〃
		25,000	12,500	12,500	-	-	〃
		25,000	12,500	12,500	-	-	〃
2021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 시범	25,000	12,500	12,500	-	-	〃
		25,000	12,500	12,500	-	-	〃
2021	작물 수분스트레스 기반 노지 스마트 관개시스템 기술 시범	30,000	15,000	15,000	-	-	〃
2022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	100,000	50,000	50,000	-	-	〃
2022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400,019	200,000	200,000	19	-	〃
2022	친환경 감자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관리기술 시범	60,090	30,000	30,000	90	-	〃

2022	스마트 축사환경 조절 젖소 열 스트레스 저감기술 시범	50,000	25,000	25,000	-	-	**미실시**
		50,000	25,000	25,000	-	-	〃
2022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기술 보급시범	50,000	25,000	25,000	-	-	〃
		50,000	25,000	25,000	-	-	〃
2022	천적을 활용한 해충종합방제기술 시범	60,000	30,000	30,000	-	-	〃
2022	비벡터링 기술 이용 시설 원예작물 주요 병 방제기술(계속)	60,000	30,000	30,000	-	-	〃
2022	느타리버섯 병재배 스마트 재배사 및 환경관리 기술 시범	70,000	35,000	35,000	-	-	〃
2022	데이터 기반 생산모델 보급	200,000	100,000	100,000	-	-	〃
2022	화분매개용 개량 벌통 적용 기술 시범	20,000	10,000	10,000	-	-	〃
2022	원격 병해충 방제 생력화 체계 구축 시범	50,000	25,000	25,000	-	-	〃
		50,000	25,000	25,000	-	-	〃
제천시	**8개 사업**						
2020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37,350	17,401.545	17,401.545	2,546.6	-	**미실시**
2021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	50,000	25,000	25,000	-	-	〃
2021	벼 안정육묘 자동이송 단지조성 시범사업	150,700	75,000	75,000	700	-	〃
2021	약용작물 생산 수확후 관리기술 시범	200,277	100,000	100,000	277	-	〃
2021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 시범	51,775	25,000	25,000	1,775	-	〃
2021	풋땅콩 연중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	200,000	100,000	100,000	-	-	〃
2021	참깨 재배 및 수확후 관리 기술 보급	70,000	35,000	35,000	-	-	〃
2022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	50,000	25,000	25,000	-	-	〃

보은군	**8개 사업**						
2020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50,000	22,500	22,500	5,000	-	**미실시**
2020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50,000	25,000	25,000	-	-	〃
2020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56,600	25,000	25,000	6,600	-	〃
2020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 확산 시범	32,000	15,638	15,638	725	-	〃
2021	스마트 양봉 기술보급 시범	20,000	10,000	10,000	-	-	〃
2021	노지 고추 실속형 자동 관수시스템 시범	28,133	14,000	14,000	133	-	〃
2021	햇빛차단망 적용 노지과원 일소피해 저감 시범	36,000	18,000	18,000	-	-	〃
		36,000	18,000	18,000	-	-	〃
		28,000	14,000	14,000	-	-	〃
2021	잔대 우량종근 대량생산 및 시설재배 기술시범	50,000	25,000	25,000	-	-	〃
옥천군	**3개소**						
2020	밭작물 관개시스템 시범	100,000	50,000	50,000	-	-	**미실시**
2021	찰옥수수 칼라패키지 상품화 시범	60,000	30,000	30,000	-	-	〃
2022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0	22,500	22,500	5,000	-	〃
괴산군	**7개 사업**						
2020	특산자원 융복합제품 생산기반 조성시범	120,950	60,000	60,000	950	-	**미실시**
		130,000	65,000	65,000	-	-	〃
2021	특산자원 융복합 기술(2년차) 체험기반 조성 사업	60,000	30,000	30,000	-	-	〃
2021	특산자원 소재화 창업지원 시범	20,000	10,000	10,000	-	-	〃
2021	특산자원 융복합 제품 즉석제조 판매시범	20,000	10,000	10,000	-	-	〃

2022	토종벌 회전식 소초광 보급 시범	20,000	10,000	10,000	-	-	**미실시**
2022	축산 스마트팜 통합제어 시스템 활용 기술시범	62,200	30,000	30,000	2,200	-	〃
2022	특산자원 융복합 체험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20,000	10,000	10,000	-	-	〃
단양군	**6개 사업**						
2020	밭작물 논 재배 확대를 위한 암거배수 시범	100,000	50,000	50,000	-	-	**미실시**
2021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00,000	50,000	50,000	-	-	〃
2021	약선 소재를 이용한 쌀조청 제조 시범	70,000	35,000	35,000	-	-	〃
2021	농촌자원 활용 치유프로그램 보급사업	100,000	50,000	50,000	-	-	〃
2022	종균활용 장류 품질 향상 기술시범	70,000	35,000	35,000	-	-	〃
2022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100,000	50,000	50,000	-	-	〃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한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를 실시하시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예치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산지(山地)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등의 허가·신고업무를 처리하고,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의 산지전용 등의 기간 만료에 따른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산림청은 해마다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고시하고 있고, 복구

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단위면적당 복구비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 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의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해마다 고시하는 복구비 산정기준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비를 예치하여야 하는 자가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미리 산정하여 예치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고시한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복구비란 산지전용 등을 허가받은 자가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후 형질이 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게 하는 것으로서 허가기관에서는 산지전용 중이라도 재해방지나 경관유지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를 실시하여 허가받은 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치된 복구비가 부족한 경우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구되지 않은 산림으로 인해 산사태 등의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부족한 복구비의 추가 예치는 적정 시기에 반드시 예치할 필요가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미예치

제천시 등 4개 시·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지전용 등 허가·협의하면서 「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에게 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수허가자가 <표-1>과 같이 23건에 대한 복구비 3,534,349천 원(제천시 16건, 2,144,065천 원 / 보은군 2건, 55,983천 원 / 괴산군 3건, 722,795천 원 / 음성군 2건, 611,506천 원)을 현재까지 예치하지 않고 있다.

<표-1>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관련 복구비 미예치 내역

(단위: ㎡, 원)

소 재 지	산지전용 등 허가·협의 내용			복구비
	목 적	면적	사 용 기 간	
합 계	23건			3,534,349,440
제천시	16건			2,144,064,830
○○동 산00-0	창고 신축	6,816.0	2021.01.22~2024.12.30	242,514,000
○○면 ○○리 산00-0 외 1	단독주택 신축	4,830.0	2021.06.09~2025.06.30	126,090,000
○○면 ○○리 000-0	창고 신축	2,988.0	2021.07.21~2024.05.31	165,633,000
○○읍 ○○리 산00-0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662.0	2021.08.17~2024.08.31	18,296,000
○○면 ○○리 000-0 외 4	창고시설 신축	3,668.1	2021.08.23~2025.07.31	98,230,000
○○면 ○리 산00-00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3,435.0	2021.09.24~2023.09.30	87,635,000
○○읍 ○○리 000-00 외 2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9,167.0	2022.02.28~2023.12.31	224,515,000
○○면 ○○리 산00-00	농업용 창고 신축	2,377.0	2022.05.11~2024.03.31	37,972,000
○○면 ○○리 산00 외 2	공장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17,167.0	2022.06.27~2024.06.30	165,453,770
○○읍 ○○리 산00-00 외 3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1,590.0	2022.08.23~2024.07.31	47,575,910
○○면 ○○리 000-0	단독주택 신축	1,123.0	2022.10.11~2024.12.31	26,263,090
○○동 산00-00	사무실 신축	1,890.0	2022.12.23~2024.10.31	92,147,190
○○면 ○○리 산00	단독주택(19동) 신축 및 진출입로 개설	7,238.0	2022.12.30~2024.07.30	383,972,990
○○동 000-0 000-00	부설주차장 조성	989.0	2023.06.27~2024.12.31	33,764,800
○○면 ○○리 산00-0	단독주택 신축	2,849.0	2023.08.03~2025.12.31	174,608,900
○○면 ○○리 산00-0 외 1	단독주택 신축 및 진출입로 조성	4,979.0	2023.09.04~2024.12.31	219,393,180
보은군	2건			55,983,000
○○읍 ○○리 산00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049.0	2022.09.23~2024.06.30	30,619,000
○○읍 ○○리 산00-0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진입도로	1,074.0	2022.11.17~2024.12.31	25,364,000

괴산군	3건			722,795,610
○○면 ○○리 산0-0 외 9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건립 및 진입로 개설	15,302.0	2022.05.17~2024.02.28	397,773,000
○○면 ○○리 산00	공장 건립	4,995.0	2023.04.14~2025.04.31	133,763,000
○○면 ○○리 산00 외 3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건립	7,142.0	2023.04.26~2024.12.31	191,259,610
음성군	2건			611,506,000
○○읍 ○○리 000 외 1	공장	3,987.0	2023.06.28~2025.12.31	137,663,000
○○면 ○○리 000-0	공장부지	17,366.0	2023.11.07~2025.12.31	473,843,000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원' 단위 이하 절사

나.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비 산정 부적정

충주시 등 3개 시·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산지전용 등 허가·협의하면서 산지전용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산정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수허가자에게 <표-2>와 같이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15건에 대한 복구비 281,638천 원(충주시 1건, 6,456천 원 / 제천시 1건, 18,723천 원 / 진천군 13건, 256,459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2> 산지전용허가 및 협의 관련 복구비 산정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소 재 지	산지전용 등 허가·협의 내용			복구비		
	목 적	면적	사 용 기 간	예치 기준금액	예치액	부족액 (추정)
합계	15건			2,253,899,000	1,972,261,000	281,638,000
충주시	1건			64,709,000	58,253,000	6,456,000
○○ ○○ 산00-0 외 1	공장진입로 및 부대시설 설치 신축부지조성	2,740	2021.03.15.~2024.03.31.	64,709,000	58,253,000	6,456,000
제천시	1건			112,339,000	93,616,000	18,723,000
○○면 ○○리 000-00 외 1	단독주택 신축	2,070	2022.03.22~2024.12.31	112,339,000	93,616,000	18,723,000
진천군	13건			2,076,851,000	1,820,392,000	256,459,000
○○면 ○○리 산00-00 외 5	공장증설	23,336	2021.03.30~2024.12.31	234,270,000	181,132,000	53,138,000
○○읍 ○○리 산00-00 외 2	제2종근린생활시설 진입로 부지 조성	1,137	2021.04.30~2023.01.31	9,038,000	8,217,000	821,000
○○면 ○○리 00-0	공장부지	5,736	2021.11.05~2023.12.30	146,341,000	121,951,000	24,390,000
○○면 ○○리 산00-00 외 1	공장부지	4,016	2021.11.05~2023.12.30	102,459,000	85,383,000	17,076,000
○○읍 ○○리 산00-00 외 3	공장 부지 조성	3,256	2022.03.16~2023.12.31	41,402,000	39,050,000	2,352,000

○○읍 ○○리 산00-00 외 1	진천 교성2지구 도시개발사업	13,182	2022.06.17~2023.12.31	1,109,607,000	1,010,234,000	99,373,000
○○읍 ○○리 산00-00 외 10	창고 부지 조성	15,621	2022.07.07~2024.12.30	135,454,000	112,879,000	22,575,000
○○읍 ○○리 산00-0	단독주택 및 진출입로 부지 조성	1,275	2022.07.26~2024.04.30	39,289,000	35,718,000	3,571,000
○○읍 ○○리 산00-00	단독주택 부지 조성	774	2022.08.23~2024.07.31	48,054,000	47,495,000	559,000
○○읍 ○○리 산0-00 외 2	공장 및 진입도로 조성	6,186	2022.08.31~2025.12.30	94,363,000	80,953,000	13,410,000
○○읍 ○○리 000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진입로 부지 조성	802	2022.07.22~2024.06.30	6,675,000	5,796,000	879,000
○○읍 ○○리 산0-00 외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및 도로부지 조성	5,586	2022.07.22~2024.07.31	48,437,000	40,365,000	8,072,000
○○면 ○○리 000 외 3	하천정비사업 현장사무실 등	7,088	2022.06.09~2025.04.11	61,462,000	51,219,000	10,243,000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다. 토석채취 등에 따른 복구비 추가 미예치 및 산정 부적정

제천시 등 2개 시·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토석채취 등을 허가 및 기간연장 하면서 「2023년도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 따라 복구비를 재산정하여 예치한 복구비가 재산정한 복구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토석채취 등의 기간 동안 매년 추가로 예치하게 될 금액을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산정하여 예치하게 하여야 하는데도 수허가자에게 <표-3>과 같이 추가 및 미리 예치하여야 하는 52건에 대한 복구비 31,081,636천 원(제천시 5건, 551,618천 원 / 단양군 47건, 30,530,018천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표-3> 토석채취 등 허가관련 복구비 추가 미예치 및 산정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소 재 지	토석채취 등 허가 내용			복구비		
	목 적	면적	사 용 기 간	예치 기준금액	예치액	부족액 (추정)
합계	52건			212,881,467,000	181,799,831,000	31,081,636,000
제천시	5건			3,074,217,000	2,522,599,000	551,618,000
○○면 ○○리 산00-0 외 1	채광	1,114	2019.04.16..~2024.03.31	48,321,910	39,035,000	9,286,910
○○면 ○○리 산00	채광	1,890	2021.06.2.~2024.05.30	146,350,100	112,577,000	33,773,100
○○면 ○○리 산00 외 2	채광	3,835	2017.12.15.~2024.12.31	236,353,200	196,961,000	39,392,200
○○면 ○○리 산00-0	채광	19,900	2020.10.11..~2025.11.30	882,184,000	808,361,000	73,823,000

○○면 ○○리 산000-0 외2	토석채취	41,799	2020.02.05.~2024.04.30	1,761,007,790	1,365,665,000	395,342,790
단양군	47건			209,807,250,000	179,277,232,000	30,530,018,000
○○○면 ○○○리 산00 외 11	채광	160,212	2022.01.01~2024.12.31	8,656,440,000	7,822,330,000	834,110,000
○○읍 ○○리 산00-0 외 2	채광	38,646	2021.06.01~2024.05.31	2,559,490,000	2,310,910,000	248,580,000
○○읍 ○○리 산00	채광	15,000	2019.08.01~2024.07.31	813,340,000	675,127,000	138,213,000
○○읍 ○○리 산0	채광	26,010	2020.01.01~2024.12.31	1,723,810,000	1,303,892,000	419,918,000
○○읍 ○○리 산0 외 1	채광	13,121	2022.01.01~2026.12.31	871,130,000	786,680,000	84,450,000
○○면 ○○리 산00-0 외 1	채광	29,114	2021.05.01~2024.04.30	1,575,850,000	1,424,160,000	151,690,000
○○면 ○○리 산00 외 3	채광	16,835	2020.02.01~2026.01.31	360,770,000	277,330,000	83,440,000
○○면 ○○리 산000-0 외 14	채광	371,820	2022.10.01~2027.09.30	24,588,870,000	22,200,760,000	2,388,110,000
○○면 ○○리 산00 외 1	채광	41,660	2022.09.26~2027.09.30	1,727,330,000	1,562,340,000	164,990,000
○○면 ○○리 산00	채광	808	2016.04.27~2025.04.30	52,720,000	47,600,000	5,120,000
○○면 ○○리 산00 외 3	채광	90,972	2019.07.01~2025.06.30	3,767,850,000	3,127,871,000	639,979,000
○○면 ○○리 산00 외 3	채광	45,125	2010.09.01~2025.08.31	1,870,810,000	1,553,210,000	317,600,000
○○면 ○○리 산00-0 외 1	채광	6,769	2015.08.26~2025.08.31	360,620,000	299,160,000	61,460,000
○○면 ○○리 산00 외 2	채광	42,427	2016.01.01~2025.06.30	2,809,620,000	2,329,620,000	480,000,000
○○면 ○○리 산00 외 1	채광	9,777	2021.01.01~2025.12.31	637,890,000	528,810,000	109,080,000
○○면 ○○리 산000	채광	14,678	2021.02.01~2024.01.31	974,020,000	808,021,000	165,999,000
○○면 ○○리 000	채광	327	2021.11.20~2026.11.19	21,340,000	19,270,000	2,070,000
○○면 ○○리 산00-0 외 9	채광	108,804	2021.08.01~2026.01.31	2,319,720,000	2,118,690,000	201,030,000
○○면 ○○리 산00 외 1	채광	22,254	2015.11.05~2025.09.30	1,205,020,000	1,000,229,000	204,791,000
○○면 ○○리 산00 외 1	채광	41,980	2015.09.01~2025.08.31	2,270,460,000	1,884,428,000	386,032,000
○○읍 ○○리 산00-0 외 2	채광	23,094	2016.06.01~2026.05.31	958,860,000	867,440,000	91,420,000
○○읍 ○○리 산0-0 외 14	채광	107,874	2022.07.20~2027.07.19	4,467,450,000	4,040,340,000	427,110,000
○○면 ○○리 산000-0 외 2	채광	28,060	2018.10.01~2024.04.30	1,859,490,000	1,679,060,000	180,430,000
○○면 ○○리 산000-0 외 3	채광	55,918	2018.10.01~2024.04.30	3,701,940,000	3,342,400,000	359,540,000
○○○면 ○○○리 산00 외 5	채광	82,325	2021.04.22~2026.04.30	4,449,870,000	4,021,100,000	428,770,000
○○읍 ○○○리 000 외 6	채광	9,097	2021.10.01~2024.09.30	593,530,000	535,830,000	57,700,000
○○면 ○○리 산00-0	채광	21,028	2021.10.01~2024.09.30	1,138,740,000	1,029,330,000	109,410,000
○○면 ○○리 산00-0	채광	18,110	2015.11.23~2025.10.31	1,201,060,000	996,269,000	204,791,000
○○면 ○○리 산00	채광	29,348	2022.08.01~2025.07.31	1,944,650,000	1,755,960,000	188,690,000
○○면 ○○리 산00	채광	29,585	2021.10.01~2024.09.30	1,960,350,000	1,770,140,000	190,210,000
○○면 ○○리 산000 외 4	채광	28,260	2018.10.01~2024.04.30	1,872,730,000	1,691,030,000	181,700,000
○○면 ○○○리 산00 외 3	채광	66,337	2022.03.01~2024.02.28	3,586,030,000	3,240,500,000	345,530,000
○○면 ○○리 산00-0 외 1	채광	7,186	2022.08.01~2025.07.31	468,850,000	423,270,000	45,580,000
○○읍 ○○리 산0-0 외 1	채광	118,913	2020.02.01~2025.01.31	7,869,280,000	6,524,235,000	1,345,045,000
○○읍 ○○리 산0-0 외 3	채광	100,857	2020.02.01~2025.01.31	5,451,030,000	4,522,427,000	928,603,000
○○읍 ○○리 산0-0	채광	8,540	2015.12.31~2025.01.31	557,190,000	461,910,000	95,280,000
○○읍 ○○리 산0-0	채광	37,460	2020.01.01~2024.12.31	2,480,940,000	2,057,494,000	423,446,000
○○읍 ○○리 산00-0	채광	7,300	2015.01.26~2025.01.31	153,310,000	128,340,000	24,970,000
○○읍 ○○리 산00 외 1	채광	12,270	2015.03.17~2026.03.31	510,450,000	461,790,000	48,660,000

○○읍 ○○리 산0-0 외 2	채광	31,887	2013.05.01~2025.01.31	2,112,460,000	1,751,919,000	360,541,000
○○읍 ○○리 산0-0 외 2	채광	10,926	2019.01.01~2025.01.31	592,960,000	492,247,000	100,713,000
○○읍 ○○리 산00-0	채광	4,348	2020.02.01~2025.01.31	177,480,000	147,310,000	30,170,000
○○읍 ○○리 산0-0 외 24	채광	1,204,266	2021.02.28~2024.02.28	79,600,170,000	65,994,559,000	13,605,611,000
○○읍 ○○리 산00-0 외 3	채광	33,171	2022.10.01~2025.09.30	2,197,320,000	1,984,110,000	213,210,000
○○읍 ○○리 산00-0 외 7	채광	296,466	2021.02.28~2024.02.28	19,607,560,000	16,257,754,000	3,349,806,000
○○면 ○○리 산000-0	채광	24,397	2021.06.04~2026.01.31	1,012,750,000	916,200,000	96,550,000
○○면 ○리 산00-0 외 2	채광	5,414	2013.11.29~2024.10.31	113,700,000	103,830,000	9,870,000

※ 자료: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미예치 복구비는 수허가자에게 복구비 예치를 재촉구하며, 앞으로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숙지하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시정] 산지전용 허가·협의 등에 따른 부족한 복구비 34,897,623천 원(충주시 6,456천 원, 제천시 2,714,406천 원, 보은군 55,983천 원, 진천군 256,459천 원, 괴산군 722,795천 원, 음성군 611,506천 원, 단양군 30,530,018천 원)에 대하여 예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 부가가치세 정산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임업인 등이나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시·군의 보호지역 주민들의 산림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농민, 임업에 종하는 자와 어민(이하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1]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는 <표-1>과 같다.

---

1)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9조

<표-1>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3. 농업·임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산물·임산물·축산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4. 농업·임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정한다)
5. 과일 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정한다)
6. 인삼재배용 지주목·광망·차광지 및 은박지
7. 차광망(연초·표고버섯 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야생화·산채 재배용에 한정한다)
8. 농업·임업용 부직포·다겹보온덮개·다겹보온커튼(작물·수실류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9. 농업·임업용 배지[培地: 생물을 기르는 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養液: 양분이 있는 액체를 말한다)·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10. 축산업용 톱밥(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에 한정한다)·이탄(泥炭)·토탄(土炭)·토탄 추출물
11. 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정한다)
12. 농업·임업용 방조망(防鳥網) 및 방풍망(과수·수실류·작물 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정한다)
13. 농업·임업용 양수기 / 14. 볍씨발아기 / 15. 동력배토기 / 16. 예취기
17. 가축급여(家畜給與) 조사료(粗飼料: 단백질, 전분 등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생산용 필름
18. 화훼·야생화용 종자류 / 19. 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정한다) / 20. 버섯재배용기
21.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 22. 폐사축처리기 / 23. 축사세척기 / 24. 카우브러쉬 / 25. 축산 악취제거기
26.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 27. 작물 지주대 / 28. 농업·임업용 무인 항공기
29. 농업·임업용 로더(2톤 미만) / 30. 농업·임업용 굴착기(1톤 미만) / 31. 동력제초기
32. 농업·임업용 고압세척기 / 33. 농산물 및 임산물 저온저장고(바닥면적이 17㎡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34. 농업·임업·축산용 환풍기(컨트롤러를 포함하며, 시설하우스용 또는 축사용에 한정한다)
35.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 36.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 37. 축산용 정액 희석제
38. 축산용 인큐베이터 / 39.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 40. 축사용 보온등 컨트롤러 / 41. 축사용 쿨링 패드
42. 축사용 워터컵 / 43. 축사용 바닥재[철재(鐵材) 바닥재에 한정한다]
44. 농산물·임산물 수확용 상자(플라스틱 재질에 한정한다) / 45. 화훼·야생화 재배용 배지
46. 화훼·야생화 재배용 화분(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및 고무 재질에 한정한다)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48. 농업용 양파망·마늘망·배추망·양배추망·옥수수망 /
49. 축산 착유용 라이너 / 50. 축산용 분만실 깔판 / 51. 축산용 대인소독기 / 52. 축산용 방역복
53. 조사료 생산용 네트 / 54. 팽연왕겨 / 55. 탈봉기 / 56. 소문망 / 57. 조사료 생산용 종자류
58. 점적(點滴)호스(점적테이프 및 분수호스를 포함한다) / 59. 농업용수 처리기 / 60. 농업용 제습기
61. 농산물 건조기 / 62. 농산물 선별기 및 정선기 / 63. 개량 물꼬(논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장치를 말한다)
64. 농업용 관비기 / 65. 농업용 양액기
66. 스마트팜용 센서류(온실이나 축사의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악취 등을 감지하여 환경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구동기류(驅動機類)·복합환경제어기

※ 자료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재구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사업”이란 농식품사업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

독권한이 있는 재정이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63조제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금 신청 전이라도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주시 등 2개 시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산림소득분야 및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하여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여 정산 시 사업비에서 공제하거나, 최초 정산 시에 예상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중 보조비율 만큼을 미리 사업비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도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3,271,350원(충주시 1,540,890원, 제천시 1,730,460원)을 정산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표-2> 부가가치세 정산 미조치 세부내역

(단위: ㎡, 원)

구분	지원연도	사업명(사업대상지)	집행금액			부가가치세 미정산 내역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기자재	정산대상액	
합계		11건	83,961,500	65,631,450	18,330,050		3,271,350	
충주시	소계	4건	29,871,000	16,950,000	12,921,000		1,540,890	
	2021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 (○○면 ○○리 산000)	10,000,000	5,000,000	5,000,000	저온 저장고	454,540	산림소득
	2022	임산물생산기반조성(생산장비) (○○면 ○○로 000-00)	500,000	250,000	250,000	예취기	22,720	
	2022	임산물저장건조시설지원 (○○면 ○○○○길 00-00)	9,900,000	4,950,000	4,950,000	저온 저장고	450,000	
	2022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지원 (○○○면 ○○○○○길 00)	9,471,000	6,750,000	2,721,000	저온저장고	613,630	백두대간

제천시	소계	7건	83,961,500	65,631,450	18,330,050		1,730,460	
	202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면 ○○리 000-0)	1,729,000	1,556,100	172,900	예초기	141,460	백두대간
	2021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면 ○○리 000)	1,736,000	1,562,400	173,600	엔진분무기, 고압호스	142,030	
	2022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면 ○○리 000-0)	6,650,000	5,985,000	665,000	예초기	544,090	
	2022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면 ○○리 000-0)	7,164,700	6,448,230	716,470	예초기	97,200	
	2022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면 ○○○○로○길 00-0)	19,205,000	17,284,500	1,920,500	동력배토기, 제초기, 호스	352,800	
	2022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면 ○○○○로○길 0-00)	14,974,500	13,477,050	1,497,450	예초기	237,600	
	2023	단기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면 ○○리 00)	2,631,300	2,368,170	263,130	배토기	215,280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제천시장은**

[시정]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보조비율 만큼의 부가가치세 3,271,350원을 환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소득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임업인 등이나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시·군의 보호지역 주민들의 산림소득 증대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중요재산은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중앙관

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라고 되어 있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두고 중요재산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농식품사업자금”이란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예산, 기금, 자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이 직접 집행 운용·관리하거나 감독 권한이 있는 재정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30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제60조에 따른 중요재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중요재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경우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60조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별표 4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15일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대국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4는 아래 <표-1>과 같이 되어 있다.

<표-1>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기간
o 부동산 - 농식품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 가능 한 대상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o 부동산의 종물 -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3년) * 부동산과 그 종물을 같이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부동산의 종물만 지원받은 경우 별표 3에 따른 스티커형 표지를 반드시 부착
o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 등(트렉터, 광역액비살포기, 방제기 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기준 설정. 다만,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사업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 500만원 미만으로 구입한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자료 :「농림축삭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4 재구성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산림소득분야 및 백두대간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500만 원이상으로 구입한 기계·장비는 중요재산에 해당하는데도 <표-2>와 같이 1,266건(청주시 31, 충주시 97, 제천시 21, 보은군 273, 옥천군 50, 영동군 598, 증평군 13, 진천군 2, 괴산군 139, 음성군 31, 단양군 11)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하지 않고, 중요재산 현황도 공시하지 않았다.

<표-2> 중요재산 미등록·미공시 내역(2021년~2023년)

(단위: 건)

구분		합 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합 계	소계	1,266	31	97	21	273	50	598	13	2	139	31	11
	2021	503	10	49	4	86	31	260	6	1	38	13	5
	2022	382	10	32	17	79	10	163	1	-	57	11	2
	2023	381	11	16	-	108	9	175	6	1	44	7	4
산림소득사업	소계	1,026	31	97	2	236	50	506	13	2	50	31	8
	2021	454	10	49	2	78	31	243	6	1	17	13	4
	2022	279	10	32	-	64	10	135	1	-	14	11	2
	2023	293	11	16	-	94	9	128	6	1	19	7	2

백두대간지역주민지원사업	소계	240	-	-	19	37	-	92	-	-	89	-	3
	2021	49	-	-	2	8	-	17	-	-	21	-	1
	2022	103	-	-	17	15	-	28	-	-	43	-	-
	2023	88	-	-	-	14	-	47	-	-	25	-	2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중요재산 보조금 통합관리망 등록 및 중요재산 현황 공시 관련하여 동일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민간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중요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등록된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대국민 공개될 수 있도록 하며, 앞으로 중요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타 지역 지원시 항공유 비용 정산방안 마련**

기 관 명 충청북도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산불 예방 및 진화역량을 강화하고 산불발생시 초동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매년 산불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을 전·후로 산불진화용 헬기(3기)를 조달청에 등록된 민간헬기 업체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임차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불진화용 헬기는 임차기간 동안 충청북도 3개 권역[북부(제천), 중부(충부), 남부(옥천)]의 헬기 계류장에 상시 계류하면서 산불예방·진화, 산림보호 활동 및 기타 자재운반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업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 및 “충청북도 산불진화 임차항공기 운영 요령(이하 “운영 요령”이라고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따르고 있다.

임차 헬기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헬기 운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부품, 소모품 등 운영 시 비용은 계약자(임대자)가 부담하고 임차(사용)시

간은 1일 1시간을 보장하며 계약(임대)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운항실적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약정된 임차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산불진화용 임차헬기 운영에 따른 최근 3년간(2021~2023년) 임차헬기 실행내역을 확인해 보면 주로 충청북도 도내에서 산불예방 계도 또는 도내에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는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2022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는 전국 동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 타 지역[(울진-삼척산불('22. 3월), 양구 산불('22. 4월), 밀양 산불('22. 5월)]까지 이동하여 <표-1>과 같이 26일간(북부 8일, 남부 4일, 중부 14일) 산불진화를 지원한 바 있다.

<표-1> 충청북도 임차헬기 타 지역 산불진화 지원현황(2022)

구분 (업체/기종)	운항일자	운항장소	운항내용	이륙시간	착륙시간	사용시간(분)
북부 (㈜/ ○○0000)	2022.3.5.	강원 강릉	산불진화	17:00	18:50	110
	2022.3.6.	강원 강릉	산불진화	7:30	9:30	120
				10:05	11:55	110
	2022.3.6.	경북 울진	산불진화	14:05	16:05	120
				16:45	18:10	85
	2022.3.7.	경북 울진	산불진화	7:15	7:55	40
	2022.3.8.	경북 울진	산불진화	8:00	9:20	80
	2022.3.9.	경북 울진	산불진화	8:00	9:30	92
				17:45	18:30	45
	2022.3.12.	강원 홍천	산불진화	16:30	18:25	115
	2022.3.14.	복귀	산불진화	9:30	10:25	55
남부 (㈜/ ○○0000)	2022.3.5.	강릉 강원 옥계	산불진화 지원	16:30	18:25	115
	2022.3.6.	강릉 강원 옥계	산불진화 지원	7:20	19:20	120
				10:00	12:00	120
	2022.3.6.	경북 울진	산불진화 지원	14:00	16:00	120
				16:40	18:10	90
	2022.3.7.	경북 울진	산불진화 지원	10:00	11:20	80
				13:30	15:30	120
				16:30	17:30	60
				17:40	18:40	60

중부 (ㄷ/ ○○0000)	2022.3.4.	경북 울진	산불진화	15:10	17:20	130
	2022.3.5.	경북 울진	산불진화	7:40	9:30	110
				14:40	12:30	110
				14:10	15:50	100
				17:00	18:20	80
	2022.3.6.	경북 울진	산불진화	7:30	9:10	100
				13:00	14:40	100
				16:00	17:40	100
	2022.3.7.	경북 울진	산불진화	10:30	12:10	100
				15:00	17:00	120
	2022.3.8.	경북 울진	산불진화	9:00	10:30	90
				15:00	16:00	60
	2022.3.9.	경북 울진	산불진화	10:00	11:40	100
				17:40	18:30	110
	2022.3.12.	강원 홍천	산불진화	16:30	18:30	120
	2022.3.14.	복귀	산불진화	9:20	10:30	50
	2022.4.10.	강원 양구	산불진화	16:30	18:40	130
	2022.4.11.	강원 양구	산불진화	12:00	13:30	90
				15:40	17:10	90
	2022.4.12.	강원 양구	산불진화	11:50	13:30	100
	2022.5.31.	경남 밀양	산불진화	14:00	16:00	120
				18:00	19:10	70
	2022.6.1.	경남 밀양	산불진화	14:00	15:00	60
				18:10	19:10	60
	2022.6.2.	경남 밀양	산불진화	11:00	12:00	60

* 자료 : 충청북도 감사자료 재구성

타 지역 산불진화 지원 시에는 “운영 요령” 제25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3조제5항에 따라 임차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등 항공기 관계자는 공중진화, 항공기의 급유·계류 또는 정비를 하는 때에는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충청북도 임차 헬기(3기)는 경북 울진, 강원 양구, 경북 밀양 산불현장에서 공중진화반장의 지시에 따라 산불진화 임무를 수행하면서 <표-2>와 같이 산림항공본부로부터 항공유 총 24,832ℓ를 지원 받았다.

<표-2> 충청북도 임차헬기 타 지역 산불진화 시 산림항공본부 항공유 급유현황(2022)

임차헬기 계약 및 운항 현황						산림항공본부에서 급유지원 받은 현황			
권역	계약업체	헬기기종	계약상 운항일수	배치일수	운항일수	급유(보급)장소	급유 횟수	급유량(ℓ)	상환여부
계	2개 업체	3기					31	24,832	
북부	㉠	○○0000	175일	175일	50일(86시간)	울진	5	1,872	미상환
남부	㉠	○○0000	226일	226일	38일(111시간)	울진	5	2,398	미상환
중부	㉡	○○0000	195일	195일	60일(114시간)	울진	12	13,334	미상환
						양구	3	2,399	미상환
						밀양	6	4,829	미상환

* 자료 : 산림항공본부 감사자료 재구성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8조[1]에 따르면 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는 현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임차 헬기 계약조건 등에 따르면 산불진화 시 사용한 연료에 대하여 헬기 운항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와 부품, 소모품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충청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는 과업지시서 및 운영요령 등에 따라 헬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계약상 대금을 취득함으로써 그 비용을 모두 보전받았으므로, 2022년도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타 지역 산불진화 지원 시 산림항공본부로부터 지원받은 항공유 총 24,832ℓ를 현물 상환하지 않을

1) 산림항공본부 민·관 헬기 항공유 급유지원 규정 제8조(상환절차)
① 급유지원기관 상호 지원한 항공유의 상환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한다.
1. 급유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항공유 물량 확인
2. 지정업체를 통한 항공유 현물상환 요구
3. 급유지원기관에 현물상환 결과 통보
② 현물 상환할 항공유는 품질보증을 위해 산림항공본부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공유 공급업체의 유류성분 분석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현물상환에 소요되는 운송비 및 기타 모든 경비는 급유지원을 받은 급유지원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④ 급유지원기관 유류 취급담당자는 급유지원 후 교부한 불출증이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항공유 수불대장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경우 임차헬기를 운영하는 민간업체에서 연료비를 '중복'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산림청의 요청에 따라 임차헬기 3대를 타 지역 산불현장에 지원하면서 산림항공본부로부터 항공유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알 수 없었으며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자에게 헬기 운항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자재, 부품, 소모품 등)이 포함된 임차비용이 지급된 바, 지원기간 동안 사용된 항공유에 대한 비용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앞으로 임차헬기 타 지역 지원시 민간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요청한 기관과 항공유 지원·정산 등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사전 약정하여 지원에 응한 민간업체와 지원을 요청한 기관간에 분쟁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하였으며, 임차계약은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으로 추진함에 따라 연료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한 계약 상 별도 정산이 지난하고 민간업체와 항공유 지원기관간의 정산 내용을 알 수 없어 당사자가 아닌 충청북도가 정산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바, 조달청·산림청 등 관련기관에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 하였다.

5. 검토결과

해당 관계기관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지자체 임차 헬기가 타 지역 산불현장 지원시 산림항공본부로부터 항공유를 지원 받은 경우 산림항공본부에서 해당 지자체에 항공유 지원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충청북도에서는 임차헬기 계약시 항공유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항을 계약조건 및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하는 등 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는**

[통보] 향후 소관 임차헬기가 타 지역 지원시 항공유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및 계약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산림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지·증진되고, 산림의 경제적 편익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청북도(㉮소, ㉯소) 및 증평군을 제외한 청주시 등 10개 시·군에서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제23조의4(2022.12.27. 신설, 2023.6.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1]를 지정하여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및 협의 등 관리업무를 대행(이하 “관리업무대행”이라 한다)을 하고 있다.

<표-1> 산림사업 범위(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1. 임도사업, 산불예방·진화시설 등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2. 조림(造林), 숲가꾸기, 벌채 등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의3. 산림복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 1.「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2.「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3.「산지관리법」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지보전협회**, 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림기술인회**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의 보전·이용, 토석채취 및 재해방지·복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4.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의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7의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의 구조개선,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및 산촌의 진흥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및 수목원의 등록·운영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0.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
10의2.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11. 그 밖에 산림자원의 조성·육성·관리 또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업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관리업무대행은 「산림자원법」에 법제회 되기 이전에는 산림청에서 2019년부터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매년 각 지자체에 시범사업 참여 의견조회를 통해 참여할 시·군을 최종 확정하고 시범사업이 성과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운영지침(이하 "시범사업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달하였다.

「시범사업 운영지침」에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으며, 2020.12.16.일자로 충청북도를 포함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에 시달한 2021년 시범사업 운영지침(마. 단위사업의 발주 및 시행)에 따르면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완료는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완료 검사처리 후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 검사 시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2021.12.30.자로 개정된 「시범사업 운영지침(개정)」을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고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 검사를 <표-2>와 같이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검사한다.”라고 개정하여 사업 성과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점검을 의무화 하였다.

<표-2>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 전·후(사업완료 현장검사)

구분	2021년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 이전)	2022년 이후 시범사업 운영지침 (개정 이후)	개정사유
5. 시범사업의 추진절차 마. 단위사업의 발주 및 시행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완료는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완료 검사처리 후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 검사 시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검사할 수 있다**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완료는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 및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의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완료 검사처리 후 사업비를 지급하며, 사업 완료에 따른 현장 검사 시 지자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검사한다**	단위사업 완료 시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확인토록 하여 사업 성과와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자료 : 산림청 민관협력형 시범사업 운영지침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조림사업의 경우

청주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조림사업 294건(청주시 67건, 충주시 34건, 제천시 15건, 보은군 18건, 옥천군 20건, 영동군 32건, 진천군 21건, 괴산군 51건, 음성군 22건, 단양군 14건)을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전체사업의 약 18%에 해당하는 조림사업 54건(보은군 2건, 영동군 4건, 괴산군 40건, 단양군 8건)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장점검을 실시 한 240건 중 49건(충주시 34건, 제

천시 4건, 옥천군 6건, 단양군 5건)의 사업은 현장검사을 실시하고 작성하는 준공검사조서 또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단위사업 관리·감독에 대해 소홀히 하였다.

<표-3> 관리업무대행 조림사업 지자체 담당자 현장점검 현황(2022년~2023년)

(단위 : 건)

시·군		조림사업 현장점검				현장점검 여부 증빙자료			비 고
		소계	실시	미실시	미실시 비율	소계	준공검사조서, 출장복명서	출장명령서, 검사사진 등	
합 계	소계	294	240	54	18%	240	191	49	
	2022	143	124	19	13%	124	98	26	
	2023	151	116	35	23%	116	93	23	
청주시	소계	67	67	-	-	67	67	-	
	2022	38	38	-	-	38	38	-	
	2023	29	29	-	-	29	29	-	
충주시	소계	34	34	-	-	34	-	34	
	2022	15	15	-	-	15	-	15	
	2023	19	19	-	-	19	-	19	
제천시	소계	15	15	-	-	15	11	4	
	2022	8	8	-	-	8	4	4	
	2023	7	7	-	-	7	7	-	
보은군	소계	18	16	2	11%	16	16	-	
	2022	8	7	1	13%	7	7	-	
	2023	10	9	1	10%	9	9	-	
옥천군	소계	20	20	-	-	20	14	6	
	2022	10	10	-	-	10	7	3	
	2023	10	10	-	-	10	7	3	
영동군	소계	32	28	4	13%	28	28	-	
	2022	18	16	2	11%	16	16	-	
	2023	14	12	2	14%	12	12	-	
진천군	소계	21	21	-	-	21	21	-	
	2022	10	10	-	-	10	10	-	
	2023	11	11	-	-	11	11	-	
괴산군	소계	51	11	40	78%	11	11	-	
	2022	23	7	16	70%	7	7	-	
	2023	28	4	24	86%	4	4	-	
음성군	소계	22	22	-	-	22	22	-	
	2022	8	8	-	-	8	8	-	
	2023	14	14	-	-	14	14	-	
단양군	소계	14	6	8	57%	6	1	5	
	2022	5	5	-	-	5	1	4	
	2023	9	1	8	89%	1	-	1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나. 숲가꾸기사업의 경우

청주시 등 10개 시·군에서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숲가꾸기사업 830건(청주시 155건, 충주시 141건, 제천시 65건, 보은군 61건, 옥천군 46건, 영동군 62건, 진천군 51건, 괴산군 147건, 음성군 63건, 단양군 39건)을 확인한 결과, <표-4>과 같이 전체사업의 약 30%에 해당하는 숲가꾸기사업 248건(보은군 28건, 영동군 58건, 진천군 6건, 괴산군 142건, 단양군 14건)에 대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검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현장점검을 실시 한 582건 중 254건(충주시 141건, 제천시 44건, 옥천군 39건, 진천군 6건, 단양군 24건)의 사업은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하는 준공검사조서 또는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아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단위사업 관리·감독에 대해 소홀히 하였다.

<표-4> 관리업무대행 숲가꾸기사업 지자체 담당자 현장점검 현황(2022년~2023년)

(단위 : 건)

시·군		숲가꾸기사업 현장점검				현장점검 여부 증빙자료			비 고
		소계	실시	미실시	미실시 비율	소계	준공검사조서, 출장복명서	출장명령서, 검사사진 등	
합 계	소계	830	582	248	30%	582	328	254	
	2022	409	274	135	33%	274	146	128	
	2023	421	308	113	27%	308	182	126	
청주시	소계	155	155	-	-	155	155	-	
	2022	74	74	-	-	74	74	-	
	2023	81	81	-	-	81	81	-	
충주시	소계	141	141	-	-	141	-	141	
	2022	64	64	-	-	64	-	64	
	2023	77	77	-	-	77	-	77	
제천시	소계	65	65	-	-	65	21	44	
	2022	40	40	-	-	40	8	32	
	2023	25	25	-	-	25	13	12	
보은군	소계	61	33	28	46%	33	33	-	
	2022	30	3	27	90%	3	3	-	
	2023	31	30	1	3%	30	30	-	

옥천군	소계	46	46	-	-	46	7	39	
	2022	21	21	-	-	21	5	16	
	2023	25	25	-	-	25	2	23	
영동군	소계	62	4	58	94%	4	4	-	
	2022	30	4	26	87%	4	4	-	
	2023	32	-	32	100%	-	-	-	
진천군	소계	51	45	6	12%	45	39	6	
	2022	24	22	2	8%	22	22	-	
	2023	27	23	4	15%	23	17	6	
괴산군	소계	147	5	142	97%	5	5	-	
	2022	75	1	74	99%	1	1	-	
	2023	72	4	68	94%	4	4	-	
음성군	소계	63	63	-	-	63	63	-	
	2022	29	29	-	-	29	29	-	
	2023	34	34	-	-	34	34	-	
단양군	소계	39	25	14	36%	25	1	24	
	2022	22	16	6	27%	16	-	16	
	2023	17	9	8	47%	9	1	8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단위사업 완료 후 현장검사 시 관리대행자와 담당자가 합동점검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단양군수**

[주의] 앞으로 산림사업을 관리업무대행으로 추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점검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보험·공제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장·㉯소장),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산림사업의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설계, 감리)을 추진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에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비용을 계상(計上)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1항에 따르며 발주청(이하 '관리업무대행자'도 포함한다)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 함에 있어 적정한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제31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이나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사업 대가에 계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대상은 엔지니어링활동에 해당하는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라고 되어 있고, 제42조제3항에 따르면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설계의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완료하는 날까지, 감리의 경우에는 해당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날까지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10조에 발주청은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산정시 언제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요율산출기관, 손해보험회사, 공제조합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공제(보험)료의 계산방법은 순계약금액[1]에 1단계, 2단계 공제요율을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야 한다.

< 공제료의 계산>

o 엔지니어링 손해배상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 1단계기간이 기술분야별 표준담보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요율만 적용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o 손해배상공제 요율

구분	산업별		공제가입금액(보상한도액)										표준 담보 기간 (년)
			5억원이하		5억원초과 10억이하		10억원초과 20억이하		20억원초과 30억이하		30억원초과 50억이하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기본 요율	가산 요율	
설계	농림부문	**농림**	**0.816**	**0.131**	**0.791**	**0.128**	**0.767**	**0.122**	**0.743**	**0.119**	**0.718**	**0.116**	**2**
		시설원예	1.633	0.260	1.585	0.252	1.534	0.245	1.487	0.237	1.436	0.230	2
감리	농림부문	**농림**	**0.833**	**0.133**	**0.807**	**0.130**	**0.781**	**0.125**	**0.757**	**0.121**	**0.731**	**0.118**	**2**
		시설원예	1.663	0.267	1.613	0.258	1.564	0.251	1.513	0.243	1.464	0.234	2

* 검측감리는 위 요율의 60%, **시공감리는 위 요율의 80% 적용**

※ 자료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재구성

공제(보험)료 산출시 발주청은「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12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가입기간, 피보험자 등이 손해배상 업무처리 요령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2조제4항에 따르면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제10조에서 발주청은 보험료 산정시 엔지니어링사업의 순계약금액에 보험요율 또는 공제요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가입 대가 미계상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직접 또는 관리업무대행으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1,450건의 엔지니어링사업(설계 687건, 감리 763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발주청에서는 산림사업의 설계·감리용역 계약체결 시 용역대가에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비(이하 “보험·공제가입비”라 한다)를 계상하여야 하는데도 <표-1>과 같이 48건(㉮소 6, ㉯소 2, 청주시 3, 충주시 3, 제천시 12, 보은군 1, 옥천군 9, 영동군 2, 진천군 4, 음성군 4, 단양군 2)의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용역대가에 보험·공제가입비를 계상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용역대가에 보험·공제가입비를 계상하지 않은 엔지니어링사업 48건 가운데 34건(㉮소 6, ㉯소 2, 청주시 3, 충주시 2, 제천시 9, 보은군 1, 옥천

1) 순계약금액 :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제외한 금액

군 8, 음성군 3)은 용역대가에 보험·공제가입비를 계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자로부터 손해배상보험가입증서를 수령하였다.

<표-1>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대가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비 미계상 현황

(단위 : 건)

시·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 현황			보험·공제가입비 미계상 현황			비 고 (증권 수령)
	합 계	설 계	감 리	합 계	설 계	감 리	
합 계	1,450	687	763	48	25	23	34
㉮소	160	44	116	6	2	4	6
㉯소	2	2	-	2	2	-	2
청주시	140	75	65	3	-	3	3
충주시	142	71	71	3	3	-	2
제천시	168	78	90	12	4	8	9
보은군	88	42	46	1	1	-	1
옥천군	75	42	33	9	5	4	8
영동군	113	60	53	2	2	-	-
증평군	28	16	12	-	-	-	-
진천군	136	67	69	4	4	-	-
괴산군	206	94	112	-	-	-	-
음성군	91	44	47	4	-	4	3
단양군	101	52	49	2	2	-	-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나. 엔지니어링사업 손해배상보험료 산출기준 적용 미흡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11개 시·군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직접 또는 관리업무대행으로 추진한 1,450건의 엔지니어링사업(설계 687건, 감리 763건)에 대하여 손해배상보험료 산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2>과 같이 672건(㉮소 154, 청주시 18, 충주시 47, 제천시 102, 보은군 30, 옥천군 39, 영동군 73, 증평군 18, 진천군 10, 괴산군 50, 음성군 50, 단양군 81)의 엔지니어링사업은 관련 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등 보험료 산출기준 적용이 미흡하다.

<표-2>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대가 손해배상보험·공제료 산출기준 적용 미흡

(단위 : 건)

시·군	엔지니어링사업 추진 현황			보험·공제료 계상시 요율 적용 부적정				비 고
	합 계	설 계	감 리	합 계	비율(%)	설 계	감 리	
합 계	1,450	684	766	672	46.3	232	440	
㉮소	160	44	116	154	96.3	42	112	
㉯소	2	2	-	-	-	-	-	
청주시	140	75	65	18	12.9	15	3	
충주시	142	71	71	47	33.1	8	39	
제천시	168	78	90	102	60.7	26	76	
보은군	88	42	46	30	34.1	9	21	
옥천군	75	41	34	39	52.0	18	21	
영동군	113	60	53	73	64.6	29	44	
증평군	28	17	11	18	64.3	8	10	
진천군	136	66	70	10	7.4	5	5	
괴산군	206	94	112	50	24.3	18	32	
음성군	91	43	48	50	54.9	16	34	
단양군	101	51	50	81	80.2	38	43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장·㉯소장),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앞으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산림기술자 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장·㉯소장),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산림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유지·증진되고, 산림의 경제적 편익과 공익적 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산림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산림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발주청(이하 ‘관리업무대행자’도 포함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산림청(㉰팀)에서는 산림기술자 및 산림업체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정보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였으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산림기술용역업·산림사업시행업체 등록·관리, 산림기술자 자격·교육훈련 및 산림기술 통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라 시범운영 기간(2022.4.25.~2022.5.13.)을 걸쳐 서비스를 전면 운영(2022.5.16.)하였으며, 산림기술자 및 작업원이 타 사업장과 중복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기술자 배치 등 사업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보 입력 대상사업 및 정보 확인방법 등을 안내(2023.1.2.) 한 바 있다.

따라서 조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은 각 규정[1]에 따라 감독관(관리업무대행자가 선임한 감독관도 포함한다)이 사업 착수 전 또는 현장대리인, 작업원 교체 시에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타지역 사업장과의 이중등록 여부 및 자격정보를 확인하여 현장대리인, 작업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11개 시·군에서는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추진 한 산림사업(조림, 숲가꾸기, 산림병해충방제, 임도, 사방사업) 742건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및 작업원의 인적사항과 자격정보를 전산시스템에 등록 여부를 확인한 결과, <표>와 같이 청주시 등 7개 시·군은 23.9%에 해당하는 177건(청주시 89, 제천시 1, 보은군 36, 옥천군 14, 영동군 33, 증평군 1, 음성군 3)을 사업이 착수한 이후에 지연하여 등록하였다.

또한 충청북도 및 청주시 등 11개 시·군은 21.6%에 해당하는 160건(㉮소

1) 근거규정 : ① 조림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14조의2), ②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제20조), ③ 임도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20조제1항), ④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세부기준(1.공통사항 아. 현장대리인배치), ⑤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제28조제5항), 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Ⅵ. 방제의시행 사.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111, ㉯소 2, 청주시 3, 충주시 4, 제천시 10, 보은군 4, 옥천군 2, 영동군 2, 증평군 1, 진천군 9, 괴산군 4, 음성군 2, 단양군 6)을 사업이 종료된 이후 2023년 12월말까지도 등록하지 않고 이번 정부합동감사 수감기간에 등록하였으며, 특히 병해충방제, 임도, 사방사업은 사업착수 전 적정하게 등록한 사업이 단 1건도 없는 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표> 2023년 산림사업 산림기술정보통합관리시스템 산림기술자 등록 미흡(2023.12월까지 입력)

(단위 : 건)

구분		합계	㉮소	㉯소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합 계	소계	742	111	2	112	100	42	45	37	48	13	47	103	50	32
	적정	405	-	-	20	96	31	5	21	13	11	38	99	45	26
	지연	177	-	-	89	-	1	36	14	33	1	-	-	3	-
	미입력	160	111	2	3	4	10	4	2	2	1	9	4	2	6
조림 사업	소계	159	4	1	29	19	7	10	10	14	3	11	28	14	9
	적정	114	-	-	16	19	6	3	7	-	2	11	27	14	9
	지연	38	-	-	12	-	1	7	3	14	1	-	-	-	-
	미입력	7	4	1	1	-	-	-	-	-	-	-	1	-	-
숲가꾸기 사업	소계	442	6	1	81	77	25	31	25	32	9	32	72	34	17
	적정	291	-	-	4	77	25	2	14	13	9	27	72	31	17
	지연	139	-	-	77	-	-	29	11	19	-	-	-	3	-
	미입력	12	6	1	-	-	-	-	-	-	-	5	-	-	-
병해충 방제 사업	소계	20	-	-	1	2	9	2	-	1	-	-	1	-	4
	적정	-	-	-	-	-	-	-	-	-	-	-	-	-	-
	지연	-	-	-	-	-	-	-	-	-	-	-	-	-	-
	미입력	20	-	-	1	2	9	2	-	1	-	-	1	-	4
임도 사업	소계	20	2	-	1	2	1	2	1	1	1	4	2	1	2
	적정	-	-	-	-	-	-	-	-	-	-	-	-	-	-
	지연	-	-	-	-	-	-	-	-	-	-	-	-	-	-
	미입력	20	2	-	1	2	1	2	1	1	1	4	2	1	2
사방 사업	소계	101	99	-	-	-	-	-	1	-	-	-	-	1	-
	적정	-	-	-	-	-	-	-	-	-	-	-	-	-	-
	지연	-	-	-	-	-	-	-	-	-	-	-	-	-	-
	미입력	101	99	-	-	-	-	-	1	-	-	-	-	1	-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 산림기술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장·㉯소장),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보은군수, 옥천군수, 영동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산림사업을 실시하면서 철저한 산림기술자 관리를 통해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제　　목 도시숲 등 조성·관리사업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기 관 명 청주시, 제천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등을 위하여 도시숲, 생활숲, 가로수 등을 조성·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복원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숲·생활숲[1]·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뜻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의2호에 따르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산림사업”에 포함하고 있다.

---

1) "생활숲"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및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가. 마을숲 :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나. 경관숲 :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다. 학교숲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학습환경 개선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021.6.10.자로 개정 이전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의2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1.6.10.자로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0의2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포함으로써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등을 위한 사업에 조경공사, 조경식재 등의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여건을 반영하여 2020.6.9.자로 제정되고 2021.6.10.자로 시행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서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다만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 종류의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

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르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위의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입찰참가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청주시 등 8개 시·군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 63건을 확인한 결과, 청주시, 제천시는 <표>와 같이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 9건(907,857천원 / 청주시 7건 630,884천원 / 제천시 2건 276,973천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정당한 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적정 내역

(단위: 천원)

연도	사업구분	개 소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계약상대자	사업비
		합 계 : 9건				907,857
		청주시 : 7건				630,884
2021	미세먼지 차단숲	흥덕구 ○○읍 ○○리 ○○○ 외 1필지	제한경쟁	조경식재	-	36,749
2021	자녀안심 그린숲	상당구 ○○동 ○○○○	제한경쟁	조경식재공사업	-	109,929
2021	자녀안심 그린숲	서원구 ○○동 ○○○-○	제한경쟁	조경식재공사업	-	69,657
2021	자녀안심 그린숲	○○읍 ○리 ○○○(ⓐ초)	제한경쟁	조경식재공사업	-	67,765
2021	자녀안심 그린숲	○○읍 ○○리 ○○○(ⓐ초)	제한경쟁	조경식재공사업	-	59,893
2022	자녀안심 그린숲	흥덕구 ○○동 ○○○○	제한경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03,895
2022	자녀안심 그린숲	흥덕구 ○○동 ○○○○	제한경쟁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182,996

		제천시 : 2건				276,973
2021	자녀안심그린숲	ⓑ초등학교	제한경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공사업	-	208,618
2021	자녀안심그린숲	ⓒ초등학교	제한경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68,355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청주시장, 제천시장은

[주의] 앞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를 위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부적정하게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산림사업 안전관리 부실**

기 관 명 충청북도(㉮소장),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산림재해로부터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산림사업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림사업시행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산림사업이 준공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안전점검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산림사업시행자는 산림사업을 착수

하기 전에 안전관리계획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을 사업착수 전에 검토 및 승인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은 산림사업시행자가 산림사업 준공에 따라 제출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림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하는 산림사업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 및 감리용역을 추진하는 산림사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산림사업, 그 밖에 발주기관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림사업이 해당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안전관리 부실

충청북도 청주시 등 8개 시·군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도시숲등조성·관리사업 60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표-1>과 같이 18건(청주시 12, 충주시 2, 제천시 3, 음성군 1)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고, 발주기관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안전관리계획 42건 중 43.3%에 해당하는 26건(청주시 2, 증평군 20, 진천군 1, 괴산군 2, 음성군 1)에 대하여는 승인 없이 사업을 실행하게 하였으며, 사업시행자는 준공된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60건 중 71.7%에 해당하는 43건(청주시 13, 충주시 2, 제천시 2, 증평군 23, 진천군 1, 음성군 2)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표-1>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 안전관리계획 미제출·미승인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제출 내역

(단위 : 건)

기 관 명	사업실행	안전관리계획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여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제출	미제출	(%)	승인	미승인	(%)		(%)
합 계	60	42	18	30.0	16	26	43.3	43	71.7
청주시	14	2	12	85.7	-	2	14.3	13	92.9
충주시	7	5	2	28.6	5	-	-	2	28.6
제천시	3	-	3	100.0	-	-	-	2	66.7
영동군	2	2	-	-	2	-	-	-	-
증평군	27	27	-	-	7	20	74.1	23	85.2
진천군	1	1	-	-	-	1	100.0	1	100.0
괴산군	3	3	-	-	1	2	66.7	-	-
음성군	3	2	1	33.3	1	1	33.3	2	66.7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나.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안전관리 부실

충청남도 및 청주시 등 4개 시·군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8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표-2>와 같이 84.2%에 해당하는 32건(㈜소 12, 청주시 2, 옥천군 9, 증평군 7, 단양군 2)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으며, 사업시행자는 준공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38건 중 전체 사업에 해당하는 38건(㈜소 12, 청주시 3, 옥천군 14, 증평군 7, 단양군 2)에 대하여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점검을 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표-2>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안전관리계획 미제출·미승인 및 안전점검종합보고서 미제출 내역

(단위 : 건)

기 관 명	사업실행	안전관리계획 제출 여부			안전관리계획 승인 여부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미제출	
		제출	미제출	(%)	승인	미승인	(%)		(%)
합 계	38	6	32	84.2	6	-	-	38	100.0
㈜소	12	-	12	100.0	-	-	-	12	100.0

청주시	3	1	2	66.7	1	-	-	3	100.0
옥천군	14	5	9	64.3	5	-	-	14	100.0
증평군	7	-	7	100.0	-	-	-	7	100.0
단양군	2	-	2	100.	-	-	-	2	100.0

※ 자료 : 충청북도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산림사업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장), 청주시장, 충주시장, 제천시장, 옥천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괴산군수, 음성군수, 단양군수는**

[주의] 산림사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식품 등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기 관 명 영동군, 음성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영동군(㉮과), 음성군(㉯과)은 「식품위생법」 제10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등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관내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생용품 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1항 제6호, 「위생용품 관리법」 제3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위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자에게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가 매년 위생교육

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1].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붙임> “위생교육 미이수 업체 내역(2021 ~ 2022년)”과 같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ㄱ” 등 총 446개소[2]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2024. 3. 18. 감사일 현재까지 합계 12,130만 원[3]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21년도부터 계속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ㄴ” 등 154개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관서들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ㄱ” 등 446개 업소 중 2021년도부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ㄴ” 등 154개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다음 연도까지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몰각시키고 있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영동군수, 음성군수는**

---

1)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1차 위반 20만원, 2차 위반 40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위생용품(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이상 위반 60만원)

2) 446개 미이수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연도별 위반현황
- 2021년 215개: 영동군 총 279개 중 59개 업체, 음성군 총 1,212개 중 156개 업체
- 2022년 231개: 영동군 총 297개 중 71개 업체, 음성군 총 1,286개 중 160개 업체

3) 예정된 처분금액: 1차 위반: 총 292개 업체, 합계 5,940만 원, 2차 위반: 총 154개 업체, 합계 6,190만 원

[통보]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 등 446개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4항 제1호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생교육 미이수 업소 내역(2021~2022년):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자 과태료 미부과

기 관 명 충청북도,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 괴산군(㉯과), 단양군(㉰과), 보은군(㉱과), 영동군(㉲과), 옥천군(㉳과), 음성군(㉴과), 증평군(㉵과), 진천군(㉶과), 청주시(㉷과)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등에 따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관내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에 따르면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는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1], 같은 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따르면 위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자에게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이하 “과태료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가 매년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2].

---

1)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도록 규정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들은 <붙임>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체 내역(2021 ~ 2022년)”과 같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ㄱ” 등 315개[3]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2024. 3. 18. 감사일 현재까지 합계 8,000만 원[4]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21년도부터 계속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ㄴ” 등 85개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관서들은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ㄱ” 등 315개 업소 중 2021년도부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ㄴ” 등 85개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다음 연도까지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도록 하는 등 과태료부과의 실효성을 몰각시키고 있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괴산군수, 단양군수, 보은군수, 영동군수, 옥천군수, 음성군수, 증평군수, 진천군수, 청주시장은**

---

2)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3) 315개 미이수 업체(식육가공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등)의 연도별 위반현황

- 2021년 144개: 충청북도 총 312개 중 17개 업체, 괴산군 총 9개 중 7개 업체,, 단양군 총 5개 중 3개 업체,, 보은군 총 61개 중 2개 업체,, 영동군 19개 중 7개 업체,, 옥천군 19개 중 4개 업체,, 음성군 79개 중 7개 업체,, 증평군 39개 중 8개 업체,, 진천군 60개 중 18개 업체,, 청주시 488개 중 71개 업체,
- 2022년 171개,: 충청북도 총 349개 중 24개 업체,, 단양군 총 5개 중 2개 업체,, 보은군 총 64개 중 2개, 업체, 영동군 20개 중 3개 업체,, 옥천군 21개 중 4개, 업체, 음성군 94개 중 10개 업체,, 증평군 40개 중 13개 업체,, 진천군 71개 중 19개 업체,, 청주시 535개 중 94개 업체,

4) 예정된 처분금액: 1차 위반: 총 230개 업체,, 합계 4,600만 원, 2차 위반: 총 85개 업체,, 합계 3,400만 원

[통보]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채 영업을 한 “□” 등 315개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위생교육 미이수 업체 내역(2021~2022년):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 처리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축산물 생산실적 미보고 업소 행정처분 등 누락

기 관 명 충청북도, 괴산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 괴산군(㉯과), 제천시(㉰과), 증평군(㉱과), 진천군(㉲과), 청주시(㉳과)는「축산물 위생관리법」제27조 등에 따라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관내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축산물의 연도별 생산실적[1]을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도지사·시장·군수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도지사·시장·군수은 같은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연도별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따

1) 수집된 축산물 가공품 및 포장육의 생산·판매 등의 자료는 국내 축산물업체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정책 수립 및 산업 육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라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2]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이상 위반 90만 원의 과태료[3]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연도별 생산실적을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 경고 처분과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는 <붙임> “축산물 생산실적 미보고 업소 내역(2020 ~ 2022년)”과 같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ㄱ” 등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103개[4] 업소의 영업자에게 2024. 3. 18. 감사일 현재까지 “경고” 처분과 과태료 합계 4,350만 원[5]도 부과하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2020년도 또는 2021년도부터 계속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ㄴ” 등 33개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위 관서는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ㄱ” 등 103개 업소 중 2020년도 및 2021년도에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ㄴ” 등 33개의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다음 연도까지 연속하여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등의 실효성을 몰각시키고 있었다.

---

2)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3)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

4) (축산물가공업) 충청북도 53개 업체 (식육포장처리업) 괴산군 3개 업체, 제천시 7개 업체, 증평군 5개 업체, 진천군 31개 업체, 청주시 4개 업체

5) 예정된 처분금액: 1차 위반: 총 71개 업체, 합계 2,130만 원, 2차 위반: 총 25개 업체, 합계 1,500만 원, 3차 위반: 총 8개 업체, 합계 720만 원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괴산군수, 제천시장, 증평군수, 진천군수, 청주시장은**

[통보]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 등 103개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에게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4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의] 앞으로 생산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축산물 생산실적미보고 업소내역(2020~2022년):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기간 미준수

기 관 명 충청북도, 옥천군, 음성군, 진천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과), 옥천군(㉯과), 음성군(㉰과), 진천군(㉱과)는 「식품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를 통해 접수한 부정·불량 식품 신고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법령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2](기

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한 곳에서 집중처리하기 위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구축하여 2013. 7. 1.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로 접수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 민원을 통합 운영(접수)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르면 기타민원이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으로 정의되어 있어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은 기타민원에 해당

타민원)에 대한 신고처리 방법과 절차, 조사·처리기간을 「식품안전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라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을 절차대로 처리하고, 그 조사결과를 처리기간(1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들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부정·불량 식품 신고민원을 처리하면서 <붙임>"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기간 미준수 내역"과 같이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이물발견, 제품변질 등 총 321건[3]의 소비자신고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15일)을 준수하지 않은 채 처리기한일로부터 최소 6일에서 최대 85일을 초과하여 처리하였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 옥천군수, 음성군수, 진천군수는**

[주의] 앞으로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부정·불량식품 신고민원을 처리기간을 넘겨 지연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3) 축산물: 충청북도 141건, 식품: 진천군 105건, 음성군 62건, 옥천군 13건 등 총 180건

<붙임> 1399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기간 미준수 내역: : 법인 등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으로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미흡**

기 관 명　괴산군, 증평군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괴산군(㉮소)과 증평군(㉯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에 따라 마약류 취급·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기한 내에 받지 않은 마약류취급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등 마약류취급자[4](이하 “마약류취급자”라 한다)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및 제6조에 따르면 시·도지사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마약류취급자로 규정
-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관리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 마약류소매업자: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로서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법정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을 시기는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로 되어 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면 해당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가 위 법령을 위반하여 이수기한 내에 법정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5]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들은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법정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수기한 내에 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경고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위 관서들은 <붙임>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내역(2021 ~ 2024년)”과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의 교육이수기한을 초과하여 이수하였으나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1차 경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마약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실시하는 법정교육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는 우려가 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

5) 행정처분의 기준(개별기준): 경고(1차), 업무정지 1개월(2차), 업무정지 2개월(3차), 업무정지 3개월(4차 이상)

조치할 사항　　괴산군수, 증평군수는

[주의] 앞으로 마약류취급자가 법정교육 이수기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없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약류 취급자 교육·관리 등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취급자 법정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내역(2021~2024년):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비공개 처리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연가가산 일수 산정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연・병가 활용현황 등을 확인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병가를 미사용하거나 연가 보상의 대상으로 미사용한 연가일수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그 다음해에 각각 1일의 연가를 가산해주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연가 일수) 제3항에는 결근·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정직·강등·직위해제된 사실 및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미사용하거나 연가보상의 대상 중 미사용한 연가일이 있을 경우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제5항에서 공무상 연가를 승인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 제16조의 2(연가사용의 권장) 제1항에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할 10일 이상의 권장연가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며 공지해야 하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직전년도에 1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였지만 병가 미사용으로 연가를 가산받거나, 직전년도에 직위해제·휴직 등의 사실이 있음에도 당해 연도에 연가를 가산받는 등 부적정하게 연가를 가산 받은 44건과 이에 따라 부적정하게 지급받은 연가보상비 등 총 5,295,294원이 <표1>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1> 연가 가산 일수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구분	연도	소속	계급	성명	부적정 사유	비고 (환수금)
1	2021	㉮	소방위	AA	직전년도 병가 사용	연가 차감
2		㉮	소방위	AB	직전년도 병가 사용	121,100
3		㉮	소방장	AC	직전년도 병가 사용	94,440
4		㉮	소방경	AD	직전년도 병가 사용	131,570
5		㉯	소방위	AE	직전년도 병가 사용	108,130
6		㉰	소방교	AF	직전년도 병가 사용	해당없음
7		㉰	소방위	AG	직전년도 병가 사용	101,460
8		㉱	소방경	AH	직전년도 병가 사용	133,290
9	2021	㉲	소방위	AI	직전년도 병가 사용	118,000
10		㉳	소방장	AJ	직전년도 병가 사용	연가차감

11		㉦	소방교	AK	직전년도 병가 사용	연가차감
12		㉦	소방위	AL	직전년도 병가 사용	119,080
13		㉦	소방장	AM	직전년도 병가 사용	해당없음
14		㉨	소방위	AN	직전년도 병가 사용	103,544
15		㉩	소방사	AO	직전년도 병가 사용	53,700
16		㉩	소방위	AP	직전년도 병가 사용	96,410
17		㉩	소방장	AQ	직전년도 병가 사용	75,500
18		㉪	소방장	AR	직위해제	해당없음
19		㉫	소방위	AS	직위해제	2,410,200[6]
20		㉩	소방사	AO	정직 3월	연가 차감
21		㉬	소방경	AT	가산일수 오류(1일→2일)	해당 없음
22		㉬	소방경	AU	가산일수 오류(1일→2일)	해당 없음
23		㉬	소방령	AW	가산일수 오류(1일→2일)	145,090
24		㉨	소방위	AX	가산일수 오류(1일→2일)	해당없음
25		본부	소방위	AY	직전년도 휴직	해당없음
26		㉯	소방위	AZ	직전년도 휴직	85,590
27		㉪	소방장	BA	직전년도 휴직	85,590
28		㉭	소방위	BB	직전년도 휴직	101,460
29		㉭	소방장	BC	직전년도 휴직	85,590
30		㉭	소방장	BD	직전년도 휴직	90,230
31		㉦	소방장	BE	직전년도 휴직	83,090
32		㉩	소방위	BF	직전년도 휴직	연가 차감
33	2022	본부	소방경	BG	직전년도 병가 사용	126,690
34		본부	소방장	BH	직전년도 병가 사용	76,250
35		본부	소방장	BI	직전년도 병가 사용	76,720
36	2022	㉯	소방장	BJ	직전년도 병가 사용	86,980
37		㉯	소방장	BK	직전년도 병가 사용	97,970
38		㉯	소방장	BL	직전년도 병가 사용	76,250
39		㉰	소방교	BM	직전년도 병가 사용	해당 없음
40		㉱	소방장	BN	직전년도 병가 사용	70,230
41		㉮	소방장	BO	직전년도 병가 사용	76,250
42		본부	소방장	BP	직전년도 휴직	91,690
43	2023	㉱	소방장	BQ	직전년도 휴직	102,350
44		㉩	소방장	BR	직전년도 휴직	70,850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6) 직위해제 기간(1개월 6일) 미반영하여 수령한 연가 9일 및 연가보상비(12일) 환수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검토결과

해당 없음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소방서장)는**

[시정] 소방위 AB 등에게 과오지급된 금원 총 5,295,294원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신임소방공무원 보직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소방공무원법 제7조」등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공채시험을 거쳐 아래 <표 1>과 같이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여 신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

<표 1> 소방공무원 채용현황(2018~2023)

(단위 : 명)

연 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전체인원		350	233	201	302	232	94	1412
공채		141	112	160	228	97	46	784
경채 (채용 구분)	구급	26	75	11	29	43	17	201
	항공 (정비·조종·운항관제)	2				1	5	8
	선박 (행해사·기관사)	4		2				6
	전기전자		7					7
	심리상담						1	1
	구급상황관리	2						2
	화학	6	2					8
	소방 관련학과	16		5	5	24	12	62
	운전				5	3		8
	건축	6	7			4		17
	정보통신	8	5			6		19
	의무소방	6		3	3	12	3	27
	구조	27	20	20	32	42	10	151
	응급구조학과	106	5					111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임용시기는 직무분야별로 상이함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가. 경력경쟁채용자 관계 법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7] 각 호 외의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된 소방공무원을 처음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실시 당시의 임용예정 직위 외의 직위에 임용할 수 없다.

또한 같은 영 제25조·26조에는 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소속 소방공무원을 보직할 때 전공분야·교육훈련·근무경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에는 「소방공무원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된 자는 해당 직무분야에 임용하여야 하며,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용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 및 정원을 초과한 경우, 그 밖에 119안전센터장 등 단위부서의 책임자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 분야로 보직을 변경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되, 단 소방업무의 특수성과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대응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최일선 외근부서에 배치하여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개채용자 관계 법령

7)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등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2항에는 신규채용을 통해 소방사로 임용된 사람은 최하급 소방기관에 보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8조 제1항에는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소지자를 해당 자격 관련부서에 보직하는 경우, 소방기관의 장이 보직관리를 위하여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5조 제2항에는 신규 임용자는 외근부서에 임용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 제4호는 소방여건과 정기인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전보시기를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경력경쟁채용자 보직관리 부적정

특정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분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전문분야의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거나 직접 접목시킬 수 있는 직위에 보직한 뒤 해당 직무분야에서 상당기간(5년간) 근무하게 하는 등 해당 직무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아래 <표 2>, <표 3>와 같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경력경쟁채용자 중 정보통신 분야 및 건축 분야에 대하여 최초 보직을 채용 분야와 관련없는 직무에 보직하거나, 관련 직무 분야가 아닌 직무를 상당기간 수행하게 하는 등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한다는 관계법령의 취지와 맞지 않게 보직 관리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2> 정보통신 분야 임용자 최초 보직 및 해당 분야 근무 현황

(단위 : 개월)

순번	계급	성명	임용일	최초보직 (담당업무)	현보직 (담당업무)	전체 근무기간	정보통신 근무기간	비율
1	소방교	AA	2019.01.25	ㅇ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ㅃ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61	8	13%
2	소방교	AB	2019.08.26	ㅊ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본부 ㉮실 (유무선통신)	54	43	80%
3	소방교	AC	2019.08.26	ㄴ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본부 ㉮실 (전산,위성)	54	29	54%
4	소방교	AD	2019.08.26	ㄹ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ㄷ소방서 ㉱119안전센터 (휴직)	54	24	44%
5	소방교	AE	2019.08.26	소방본부 (행정업무)	ㄷ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54	7	13%
6	소방교	AF	2019.08.26	ㅌ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ㅈ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	54	37	69%
7	소방교	AG	2019.08.26	ㄷ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ㅌ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	54	24	44%
8	소방교	AH	2019.11.29	ㅅ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ㅅ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51	20	39%
9	소방교	AJ	2020.02.28	ㄲ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ㄲ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	48	12	25%
10	소방교	AK	2020.02.28	ㅈ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ㄷ소방서 ㉲센터 (㉵팀)	48	25	52%
11	소방교	AL	2020.06.22	ㅁ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ㅅ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44	18	41%
12	소방사	AN	2023.06.12	ㄷ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ㄷ소방서 ㉦과 (㉱팀)	8	3	38%
13	소방사	AM	2023.11.06	ㄷ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ㄷ소방서 ㉦과 (㉱팀)	3	1	33%

14	소방사	AO	2023.01.25	ㅌ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ㅌ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	13	0	0%
15	소방사	AP	2023.06.12	ㄷ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ㄷ소방서 ㉲119안전센터 (행정업무)	8	0	13%
16	소방사	AQ	2023.06.12	ㄹ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ㄹ소방서 ㉯119안전센터 (질병휴직)	8	5	63%
17	소방사	AR	2023.09.25	ㅋ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ㅋ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5	0	0%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건축 분야 임용자 최초 임용 및 해당 분야 근무 현황

(단위 : 개월)

순번	계급	성명	임용일	최초보직 (담당업무)	현보직 (담당업무)	전체 근무기간	건축 근무기간	비율
1	소방교	BA	2019.08.26	ㅊ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본부 ㉥과 (건축)	54	31	57%
2	소방교	BB	2019.08.26	ㅇ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본부 ㉮실 (수보)	54	37	69%
3	소방교	BC	2019.08.26	ㅂ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ㅂ소방서 ㉲과 (건축)	54	20	37%
4	소방교	BD	2019.08.26	ㅅ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ㅅ소방서 ㉦과 (물품)	54	12	22%
5	소방교	BE	2019.08.26	ㅈ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ㅋ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	54	28	52%
6	소방교	BF	2019.11.29	ㄱ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ㄱ소방서 ㉴과 (화재안전조사)	51	36	71%
7	소방교	BG	2019.11.29	ㄷ소방서 ㉶과 (화재안전조사)	ㄱ소방서 ㉵119안전센터 (복지·공상)	51	26	51%
8	소방사	BH	2020.02.28	ㄴ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ㅅ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48	13	27%

9	소방교	BI	2020.02.28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48	24	50%
10	소방사	BJ	2020.02.28	㉬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관 ㉭과 (서무)	48	19	40%
11	소방교	BK	2020.06.22	㉰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44	26	59%
12	소방사	BL	2023.02.27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서 ㉯과 (완비)	12	2	17%
13	소방사	BN	2023.06.12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서 ㉡119안전센터 (운전)	8	0	0%
14	소방사	BM	2023.09.25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5	0	0%
15	소방사	BO	2023.11.06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소방서 ㉯119안전센터 (통신)	3	0	0%
16	소방교	BP	2020.02.28	㉳소방서 ㉣과 (화재안전조사)	타시도 전출(경기)	48	28	58%
17	소방사	BQ	2019.08.26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의원면직	12	8	67%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공개채용자 필수보직기간 미준수

관계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소방사로 신규채용된 경우, 119안전센터 등 최하급 소방기관에서 필수보직(1년) 기간동안 보직해야 하며 필수보직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내근부서에 근무 발령 내는 등의 보직변경은 지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표 4>와 같이 필수보직기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지원근무의 형태로 내근부서에 인사발령하는 등 신규 공개채용자 보직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되었다.

<표 4> 최초임용 후 필수보직 기간 중 보직변경(지원근무 포함)

순번	계급	성명	최 초 임용일	최초보직 (담당업무)	최초 보직변경일	보직된 변경
1	소방사	CA	2021.01.01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1.07.07.	내근 지원근무
2	소방사	CB	2021.03.23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1.07.07.	내근 지원근무
3	소방사	CC	2021.04.13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1.07.07.	내근 지원근무
4	소방사	CD	2021.07.27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2.05.11.	내근 지원근무
5	소방사	CE	2022.01.10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3.01.09.	상황요원 업무
6	소방사	CF	2022.01.10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3.01.09.	구조 내근 업무
7	소방사	CG	2022.01.10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4.04.24.	상황요원 업무
8	소방사	CH	2022.09.01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2.11.01.	내근 지원근무
9	소방사	CI	2023.09.25	㉰소방서 ㉳119안전센터 (화재진압)	2024.01.12.	위험물 민원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소방서) 특별채용된 BF의 경우 약 1달 후 정기인사 시 ㉣팀 건축동의로 전보하였고, AJ의 경우 당시 정보통신 특채로 임용중으로 최초 보직부여에 어려움이 있었고, BJ의 경우 근무 중 발생한 PTSD를 호소하여 센터로 전보하였으며, BL의 경우 해당부서에 정원이 없어 안전센터에 배치 후 금번 상반기 정기 인사시 ㉤팀 완비담당으로 전보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내 인사발령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소방사 AO의 경우 임용당시 이미 경력경쟁채용으로 채용된 직원이 관련 직위에 근무중이었고 또한 인천에서 결혼생활 및 자녀 양육을 하는 상황으로 추후에 인사 이동에 따라 정보통신으로 보직할 수 있음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였으며 추후 해당 직무에 보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AQ(정보통신)의 경우 해당부서에 정원이 없어 ㉷과 ㉸팀 통신 담당으로 지원근무를 발령하였고 G는 1년 기간 중 1일 차이로 ㉹과로 발령하였으며 향후 법령을 준수하여 서내발령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BM(건축특채)의 경우 임용당시에는 건축부서에 공석이 발생하거나 당시 부서 직원이 양해를 해줘야 가능한 상황이었고, 공석 발생시 최우선으로 건축 부서에 임용되어 한다는 점을 교육 후 임시로 본서 ㉺센터에 임용조치한 사항으로 추후 정기인사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BA(건축특채)의 경우 임용 후 외근부서에서 10개월 정도 근무 후 자격자로서 소방특별조사반원으로 1년간 근무한 뒤 ㉻팀 증축업무 담당 보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개인 가정사에 따른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년간 외근부서 근무 후 다시 ⓐ 증축 담당자로 ㉻팀에 근무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검토결과

제반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력경쟁채용자 중 채용 관련 직무에 근무한 기간의 비율이 전체근무 기간의 50% 미만인 경우가 상당수이며 필수보직기간 전에 인사발령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의 보

직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는**

[통보]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의 보직관리가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 · 시정요구

제　　목　**외부강의 신고 및 복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가·나·다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북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속 직원들은 외부기관에 출강하여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법,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알리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따라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신고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강의일시, 장소 및 주체와 사례금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제10장 3. 외부강의의 허가 및 복무관리에는 외부강의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가·외출·조퇴로 복무처리하되 담당직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해당기관의 기능수행 및 국가 정책 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 출장처리를 할 수 있으나 강의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외부강의 신고의무 미준수

한국소방안전원의 충북소방공무원 출강대장과 외부강의 신고사항을 교차검증한 결과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사례가 확인되었다.

<표 1> 외부강의 미신고 현황

순번	소속	계급	성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교과목	금액	비고
1	㉮소방서	소방사	A	2023.09.07	3	심폐소생술	200,000	
2	㉯소방서	소방장	B	2023.09.07	4	심폐소생술	250,000	

※ 자료 : 수감기관, 한국소방안전원 제출자료 재구성

나. 강의자 복무처리 부적정

일과시간에 외부강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연가, 출장 등 복무처리를 하지 않은 사례 1건이 <표 2>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2> 복무처리 부적정

순번	소속	계급	성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교과목	금액	비고
1	㉯소방서	소방장	C	2023.08.11.	3	심폐소생술	265,000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출장여비 이중수령

강의요청기관에서 지급한 사례금에 교통비 등 관련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에 출장 결재를 상신한 뒤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례 2건(총 30,000원)이 <표 3>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 3> 외부강의자 출장여비 중복수령

순번	소속	계급	성명	강의일자	강의시간	교과목	강의료	출장여비
1	소방본부	소방장	D	2023.11.02.	1	충북지역 119구급대 외상 체계	300,000	20,000
2	㈑소방서	소방장	E	2023.04.19.	1.5	화재예방 안전 및 응급처치	183,000	10,000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소방본부) 향후 외부강의시 강의료 내역을 면밀히 확인한 후 출장여비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소방장 C는 소방용수 관리실태 표본점검 및 고장 소화전 현지 확인을 위해 출장 상신 후 시간 지연(고장 소화전 조치 등)으로 외부 강의를 위한 출장 등을 상신하지 못하고 교육장소로 바로 이동하였다고 하면서 복무처리에 소홀했던 점을 반성하고 추후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소방교 B, 소방사 A는 한국소방안전원 강의를 소방청이 주관하는 교육으로 착각하여 외부강의를 미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검토결과

해당 대상자의 착각, 부주의는 상기 지적사항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소방서장)는**

[주의]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미준수한 ㉮소방서 소방장 B, ㉯소방서 소방사 A와 외부강의 복무처리를 소홀히 한 ㉮소방서 소방장 C에게 주의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이중지급된 출장여비 총 30,000원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제 운영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는「소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22. 4. 5.)을 통해 전문직위제의 운영근거가 마련된 뒤인 2022. 12 .30.부터 소방공무원 전문직위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 2(전문직위의 운영 등) 에 따라 소방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를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전문직위제는 공직 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해당 직위에 관련 근무 경력, 관련 전문 자격증 보유 등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자 중에서 전문관을 선발하여 장기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로서 일반직은 2001년부터 정보화, 재정·세재, 조직·인사 등의 분야에 대하여, 경찰은 2017년부터 현장감식, 디

지털증거분석, 외사 등의 분야에 대하여 전문직위제를 지정·운영해오고 있다.

소방의 전문직위 제도는 비선호 격무·기피 부서 또는 장기근무 필요성이 크고 높은 전문지식과 정보수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대상으로 시·도 등이 전문직위 지정을 신청하면 소방청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소방청장이 최종 선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전문직위제에 근무하는 전문관은 필수보직기간(과장급 2년, 그 외 3년)내에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고 해당 직위를 수행하는 동안은 <표1>과 같은 수당을 지급받는다.

<표-1> 계급별, 근무기간별 전문관 수당

구 분	~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
정 이상	100,000원	120,000원	180,000원	300,000원	450,000원
령 이하	70,000원	90,000원	150,000원	250,000원	400,000원

※ 자료 : 소방청 운영지침 재구성

전문직위제 전문관 제도를 통해 중장기적인 전문인력의 양성과 소방행정의 연속성, 효율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현장지휘팀장, 현장안전점검관 등 재난 현장 전문가 육성을 통해 재난 현장 대응력 및 역량 강화, 재난 현장 경험·노하우의 발전적 계승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충북 소방은 2023년 7월 현장대응단장, 현장지휘팀장,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관, 특별구급대원, 소방장비 구매·계약 등 10개 분야 69개의 전문직위를 지정한 뒤 현재(2024년 3월)까지 전문관 지정을 위한 사전 조사, 전문관 신청 접수 등 제반 검토 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문관을 선발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2> 충북소방 전문직위제 운영 현황

순번	전문직위제	직위수	전문관
1	현장대응단장	6	0
2	현장지휘팀장	9	0
3	화재조사관	2	0
4	특별구급대원	36	0
5	건축허가등 동의	2	0
6	성능위주설계	1	0
7	소방장비 구매	1	0
8	소방장비 계약	1	0
9	현장안전점검관	9	0
10	특별사법경찰	2	0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충북 소방은 전문직위제를 사실상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운영하기 위한 제반 업무추진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여 전문직위제도가 충북소방에 실효성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반 검토 과정 및 후속조치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5. 검토결과

해당없음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는**

[통보] 전문관 선발 사전 조사 등 검토 과정 및 후속조치를 진행하여 전문직위제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 의 요 구

제　　목　**경고처분 대상자 근무성적평정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 소방본부(㉮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7조(근무성적평정)는 소방정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하고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는 승진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제5조(근무성적평정표)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평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6조(근무성적의 평정자), 제7조(근무성적의 평정점)에 따라 소방위 이하의 평정은 소속 부서장(과장 등)이 1차 평정을, 소속 소방서장이 2차 평정을 하되 1차 평정자와 2차 평정자가 각각 3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정점수를 산정한 뒤 두 점수를 합산한 점수(만점 60점)를 반영한다.

또한 ‘근무성적평정표’의 평정요소 및 배점으로 근무실적 10점, 직무수행능력 10점, 직무수행태도 10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특히 직무수행태도 10점에 대하여 “직무수행태도를 평정할 때 평정대상자의 무단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장기무단이석, 징계·직위해제, 경고, 대민불친절을 반영하여 평정합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서는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근무평정(2022. 07. 01. 부터 2022. 12. 31. 까지)를 실시하였다.

그 중 2022. 10월 경 주말·공휴일 초과근무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입력한 것을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 요구된 뒤 2022. 12. 8. 「소방공무원 징계 양정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징계의 감경·가중의결) 등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이 통보된 소방장 A, 소방교 B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수행태도 평정시 징계·직위해제, 경고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소방서 ㉮과장으로 1차 근무성적평정을 진행한 소방령 C는 <표1>, <표2>와 같이 대상자(소방장 A, 소방교 B)의 직무수행태도 평점을 10점 만점에 10점으로 평정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1> 2022년 하반기 소방장 A 근무성적평정표

- 삭제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2022년 하반기 소방교 B 근무성적평정표

- 삭제 -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대상자 A와 B에 대하여 격무지인 ㉮과에서 근무한 점과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로 유관기관과의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원활하게 구축하는 등 공적사항이 참작되어 근무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향후 근무평가시 업무능력과 징계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업무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불문경고 처분자에 대하여 직무수행태도에서 10점 만점에 10점을 부여하는 것은 징계·직위해제, 경고 등의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판단 : 해당 없음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서장)는

[주의] 해당 대상자에 대한 부적정하게 근무성적을 평정한 ㉯소방서 소방령 C에 대하여 주의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경고·주의·시정 요구 및 통보

제　　목 공가 사용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는 소속 직원들에게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공가 관련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공가)의 규정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병역법」 등에 따라 훈련에 참가할 때, 공무와 관련하여 검찰 등에 소환되었을 때, 승진시험에 응시할 때, 건강검진을 받을 때, 헌혈에 참가할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하고,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정밀건강진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구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공가를 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표 1>과 같이 소방위 AA 등 8명은 비번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건강검진을 받겠다며 공가를 신청하거나 신청자가 공가 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채 공가일 이후에 건강검진을 받는 등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으며, AG 등 3명은 승진시험 응시로 인해 공가를 사용하였으나 추후 시험에 미응시하는 등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항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하여 연가보상비 등 총 537,170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확인되었다.

<표 1> 건강검진 및 시험 응시 공가 부적정 사용 현황

(단위 원)

순번	소속	계급	성명	공가 승인일자	공가사유	부적정 사유	비고 (환수금)
1	㉦	소방위	AA	2022.08.17.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후 수검 (2022.08.22.)	연가저축 차감
2	㉡	소방사	AB	2022.04.21.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후 수검 (2022.05.17.)	52,060
3	㉦	소방위	AC	2022.06.03.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전에 수검 (2022.06.02.)	121,010
4	㉣	소방위	AD	2023.06.08.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전에 수검 (2023.06.07.)	117,200
5	㉦	소방사	AE	2023.05.03.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후 수검 (2023.05.23.)	60,750
6	㉥	소방위	AF	2023.05.16.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전에 수검 (2023.05.15.)	117,190
7	㉡	소방장	AG	2021.09.04.	승진시험	시험 미응시	연가저축 차감
8	㉦	소방사	AH	2021.09.04.	승진시험	시험 미응시	연가저축 차감
9	㉦	소방교	AI	2023.11.03.	승진시험	시험 미응시	68,960

10	㉮	소방위	AJ	2022.09.21.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전에 수검 (2022.09.20.)	공무상 병가 사유
11	㉰	소방사	AK	2023.06.29.	건강검진	공가승인일 이후 수검 (2023.07.04.)	병가 사유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법적 공가 사유가 아닌 체력검정 등 연가나 출장으로 복무처리 할 사유를 공가로 사용하는 사례 15건이 <표 2>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 2> 공가 복무처리 부적정 현황

순번	소속	계급	성명	공가 승인일자	신청 사유	적정 복무처리
1	㉯	소방장	BA	2021.10.20.	체력검정	출장
2	㉯	소방장	BB	2021.10.25.	체력검정	출장
3	㉭	소방위	BC	2021.10.27.	체력검정	출장
4	㉰	소방교	BD	2022.09.23.	재난안전통신망 공모전 리허설 참가	출장
5	㉰	소방교	BE	2022.09.27.	재난안전통신망 공모전 리허설 참가	출장
6	㉱	소방경	BF	2022.10.12.	전국소방체전 참가	출장
7	㉰	소방교	BG	2022.10.12.	전국소방체전 참가	출장
8	㉯	소방장	BH	2022.10.12.	전국소방체전 참가	출장
9	㉰	소방위	BI	2022.10.12.	전국소방체전 참가	출장
10	㉮	소방위	BJ	2022.10.12.	전국소방체전 참가	출장

11	㉮	소방사	BK	2022.05.16.	도지사배 마라톤 대회 참가	출장
12	㉮	소방경	BL	2022.11.23.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	출장
13	㉯	소방교	BN	2022.12.06.	전문교육 참석을 위해 조기 퇴근	출장
14	㉰	소방위	BM	2023.04.06.	체력검정	출장
15	㉱	소방교	BO	2023.08.06.	중앙소방학교 사전입교를 위해 공가처리	출장

※ 자료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소방서) 질병관리청 공가 사용 요청 및 행위당시 관서 승인으로 공가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적정 복무처리에 관하여 오인하여 공가처리 하였으며 향후 복무관련 처리사항 확인 후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관련공무원의 복무처리가 미흡하였으며 해당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관련자 AC) 당초 예약 당시에는 21주기 근무체계로 예약일이 주간근무였으나 도중 3조 1교대로 변경되면서 비번으로 바뀐 것으로 깊이 반성하며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검토결과

관련자의 오인 및 착오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소방서장)는**

[경고] 자소방서 소방위 AC, 사소방서 소방위 AD, 바소방서 소방위 AF, 카소방서 소방위 AJ에게 경고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경고 처분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차소방서 소방위 AA, 소방사 AE, 소방사 AH, 나소방서 소방장 AG, 소방사 AB, 자소방서 소방교 AI, 라소방서 소방사 AK에게 주의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사 AB 등에게 과오 지급된 총 537,170원을 환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가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연찬 등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선금 지급 및 계약변경에 따른 채권 확보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8개 소방관서(㉮·㉯·㉰·㉱·㉲·㉳·㉴·㉵소방서)에서는 각종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계약체결 및 대가지급, 선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계약이행 보증채권 확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1] 받아야 하고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받거나 보증기간을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

1)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되,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음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소방서에서는 <표-1>과 같이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초과인 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보증서를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계약보증서가 아닌 지급각서로 제출받거나 계약금액 증액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사항에 상응하는 계약보증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하는데도 제출받지 아니한 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보증서 확보 현황

(단위: 천 원)

관서	사 업 명	계 약 상대자	계약금액 (변경금액)	계약기간 (변경기간)	계약보증서	
					1차변경	2차변경
㉮	㈜119안전센터 대기실 환경개선 공사	-	82,673 (87,065/1차)	'23.04.28.~'23.06.11.	제 출	지급각서
㉰	㈜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	-	54,798 (104,534/1차)	'21.02.22.~'21.03.23.	미제출	
㉳	본서 증축 설계용역	-	63,125	'22.04.28.~'22.07.26. ('22.04.28.~'22.09.15./1차)	미제출	
	본서 증축 건축공사	-	675,719 (807,279/1차) (820,028/2차)	'23.04.11.~'23.10.07. ('23.04.11.~'23.11.30./1차)	미제출	미제출
㉱	본서 증축 건축공사	-	503,977 (542,300/1차) (571,535/2차)	'22.01.21.~'22.07.19. ('22.01.21.~'22.08.27./1차)	미제출	미제출
	본서 증축 기계설비공사	-	51,824 (58,650/1차) (59,237/2차)	'22.02.14.~'22.08.12. ('22.02.14.~'22.08.27./1차)	미제출	미제출
	본서 증축 전기공사	-	136,564 (149,355/1차) (149,400/2차)	'22.02.14.~'22.08.12. ('22.02.14.~'22.08.27./1차)	미제출	미제출
㉯	본서 내진보강 건축공사	-	408,357 (415,142/1차)	'21.05.17.~'21.09.13. ('21.05.17.~'21.11.22./1차) ('21.05.17.~'21.12.17./2차)	제 출	미제출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계약상대자의 계약 미이행 등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보증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다. 관계기관 의견 : 없음

라. 의견에 대한 판단 : 없음

3. 선금지급에 대한 채권확보 소홀

가.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기간의 종료일은 계약이행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하며, 계약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당초 보증·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나.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소방서의 공사·용역계약체결 후 선금을 지급한 계약 건에 대하여 채권 확보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선금지급에 대한 보증기간을 잘못 산정하였거나,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선금을 지급,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연장되는 계약이행 기간을 가산한 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표-2>와 같이 선금지급에 대한 채권 확보를 소홀히 하였다.

<표-2> 선금지급 신청에 따른 선금보증서 확보 사항

(단위: 천 원)

관서	사 업 명	계약현황				선금지급		
		계 약 상대자	계 약 금 액	계약기간		지급액	보증기간	
				당초	변경		당초	변경
㈜	본서 증축 설계용역	-	66,890	'21.03.12.~ '21.06.09.	'21.03.12.~ '21.11.23.	39,666	제 출	미제출
	본서 증축 공사 폐기물처리용역	-	23,956	'21.12.13.~ '22.05.11.	'21.12.13.~ '22.09.26.	12,730	미제출	미제출
㈜	본서 증축 통신공사	-	41,688	'22.06.22.~ '22.12.03.		9,000	미제출	
㈜	㈜119안전센터 환경개선 공사	-	104,534	'21.02.22.~ '21.03.23.		83,483	**'21.03.04.~ '21.04.22.**	
㈜	본서 증축 설계용역	-	63,125	'22.04.28.~ '22.07.26.	'22.04.28.~ '22.09.15.	50,500	미제출	미제출
㈜	본서 증축 건축공사	-	820,028	'23.04.11.~ '23.10.07.	'23.04.11.~ '23.11.30.	333,800	제 출	미제출
㈜	본서 증축 전기공사	-	75,935			28,190	제 출	미제출
㈜	본서 증축공사(전기감리)	-	7,700			6,160	제 출	미제출
㈜	본서 증축공사(소방감리)	-	6,000			4,800	제 출	미제출
㈜	본서 증축(별동) 건축공사	-	571,535	'22.01.21.~ '22.07.19.	'22.01.21.~ '22.08.27.	200,000	미제출	미제출
㈜	본서 증축(별동) 전기공사	-	149,400	'22.02.14.~ '22.08.12.	'22.02.14.~ '22.08.27.	37,500	미제출	미제출
㈜	본서 내진보강 건축공사	-	408,357	'21.05.17.~ '21.09.13.	'21.05.17.~ '21.12.17.	326,000	제 출	미제출
㈜	본서 내진보강 기계설비 공사	-	15,170	'21.05.17.~ '21.09.13.	'21.05.17.~ '21.12.17.	12,000	제 출	미제출
㈜	본서 내진보강 전기공사	-	13,310	'21.05.17.~ '21.09.13.	'21.05.17.~ '21.12.17.	10,600	제 출	미제출
㈜	본서 내진보강 공사 건축감리	-	9,370	'21.05.17.~ '21.09.13.	'21.05.17.~ '21.12.17.	7,490	**'21.05.17.~ '21.09.13.**	미제출
㈜	본서 내진보강 공사 구조감리	-	6,500	'21.05.17.~ '21.09.13.	'21.05.17.~ '21.11.22.	5,200	제 출	미제출
㈜	2023년 소방용수시설 설치공사	-	190,000	'23.03.27.~ '23.05.25.	'23.03.27.~ '23.06.09.	121,000	제 출	미제출
㈜	본서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	-	37,323	'22.06.20.~ '22.07.10.	'22.06.09.~ '22.07.18.	29,859	제 출	미제출
㈜	본서 연결통로 보강공사	-	39,920	'21.03.26.~ '21.04.24.		20,845	미제출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선금 지급에 따른 채권이 확보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기간 중 부도 발생 등의 경우 선금 반환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었다.

다. 관계기관 의견

㉯소방서 본서 내진 보강공사 건축 감리용역은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선금지급 보증을 지급각서로 제출받았으며, ㉯소방서 2023년 소방용수시설 공사 선금 지급건에 대하여는 당초 제출된 선금보증서 보증기간이 7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변동된 선금보증서를 별도로 확보하지 아니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의견에 대한 판단

㉯소방서 본서 내진 보강공사 건축 감리용역의 경우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계약서류를 증빙하여 보증기관에서 선금보증서 발행이 가능하며, 2023년 소방용수시설 공사의 경우 계약연장 기간('23.3.27.~6.9.)이 선금보증서 보증기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계약업체의 계약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업체와 선금보증기관 사이의 협의가 지연되어 계약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보장을 위해 선금보증기간을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별도의 채권은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서장)는**

[통보] 추후 각종 계약체결 또는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증서(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등 채권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채권 확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수의계약 배제업체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G2B) 이용 2인이상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계약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의하면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이 부과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자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는 각종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의계약 배제 대상업체로 지정 및 해당 사실을 대상업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로 통보하여 3개월간 수의계약을 제한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표-1>과 같이 2021년 경남 양산시 소재 ㉡과 “㉠장비” 구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포기하였고, “㉡장비” 구매 건에 대해서는 2021.05.19.까지 납품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14일이 지연된 2021.06.03.에 납품이 완료된 후 위 업체에게 납품 지연일수 14일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 하였으면서도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 통보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 현황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결과			비 고
	개찰일자	낙찰금액	낙찰업체	
㉠장비 구입	2021.05.27.	50,232	ㄱ	계약포기서 제출
㉡장비 구매	2021.02.15.	30,713	ㄴ	납품지연(14일)
㉢ 설치	2022.04.25.	69,653	ㄷ	개찰 2순위 업체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의 경우 개찰 1순위업체가 참가자격에 이상이 없다면 바로 계약상대자가 되는 것이므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어 공고가 종결된 사항이지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1순위 업체가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수의계약 안내공고 개찰결과 차순위(2순위 이하) 업체는 계약체결의 의무가 없으므로 계약체결 이전에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수의계약 배제 대상업체로 지정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함으로써 동종업체와 수의계약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도록 3개월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관련 규정을 위배하여 수의계약 배제 사유가 있는 업체에게는 수의계약 제한기간 중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주고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업체에게는 3개월간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는**

[주의] 실무담당자 소방본부 소방경 A, 소방위 B, 소방교 C에게 '주의' 조치(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 하시고,

[통보] 추후 계약업무 처리시 수의계약 배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의계약 배제 대상업체로 지정하여 관련 부서로 통보하는 등 결격 업체와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통보

제　　목 전문건설업 미등록업체 시설공사 계약체결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서에서는 <표-1>과 같이 노후되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소방청사 등에 대하여 매년 시설공사를 통해 그 기능을 보전하고 직원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1> 소방청사 시설공사 시행 명세

(단위: 천 원)

연번	관서	공 사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시공업체
1	㉮	㉠공사	2022.03.03.	37,444	㉠ (여성기업)
2	㉮	㉡공사	2023.06.15.	17,259	㉠ (여성기업)
3	㉯	㉢공사	2021.04.23.	16,354	㉡
4	㉯	㉣공사	2021.04.27.	31,280	㉢ (여성기업)
5	㉯	㉤공사	2021.10.26.	15,858	㉡
6	㉯	㉥공사	2023.06.22.	34,000	㉣ (여성기업)
7	㉰	㉦공사	2021.04.08.	54,780	㉢ (여성기업)
8	㉰	㉧공사	2021.06.23.	18,238	㉢ (여성기업)
	계			**225,213**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 분야 및 업무 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 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를 제외하고는 <표-2>에 따른 업종별 해당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표-2> 건설업의 업종(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관련)

구 분	금액기준	면허종류
종합공사	5천만원 이상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전문공사	1천5백만원 이상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철도·궤도공사업, 철강구조물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

※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자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여성기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여성기업 등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건설공사가 아닌 한 건설업 등록여부 등 자격요건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소방서에서는 공사 예정금액[1]이 1천5백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함에도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여성기업법에 따른 여성기업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2건), ㉡, ㉢(3건) 및 여성기업은 아니지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2건) 등 8건의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225,213천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결과 자격미달 공사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시공의 품질하락, 시설물의 하자발생 우려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3> 건설업 무등록 업체와 수의계약 명세

공 사 명	계약방법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건설업 등록	업체명
㉠공사	1인 수의계약	786-09-01523	**미등록**	㉠
㉡공사	1인 수의계약	786-09-01523	**미등록**	㉠
㉢공사	1인 수의계약	326-10-01098	**미등록**	㉣
㉣공사	1인 수의계약	877-08-01410	**미등록**	㉢
㉤공사	1인 수의계약	326-10-01098	**미동록**	㉣
㉥공사	1인 수의계약	509-09-96253	**미등록**	㉡
㉦공사	1인 수의계약	877-08-01410	**미등록**	㉢
㉧공사	1인 수의계약	877-08-01410	**미등록**	㉢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1) 예정금액 = 공사원가(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비

4. 관계기관 의견

상기 지적된 계약 중 ㄷ(대표 F)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금54,780천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다소방서 "ㅅ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편성된 예산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품질의 근무환경 개선을 이룰 수 없고 직원복지 향상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복층 시공 및 남·여 대기실 분리 등) 여성기업이면서 시공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활용하여 공사 단가를 낮추어 해당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의견에 대한 판단

다소방서 "ㅅ공사" 2021년 당시 예산액은 계약금액 금54,780천원보다 많은 금78,000천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수의1인 계약이 아닌 수의2인이상 견적공고의 방법으로 낙찰률(87.745%)을 고려하여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으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었고, 공사 단가가 낮아진다면 시공불량 및 품질하락이 더욱 우려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 등록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점 등을 판단해 볼 때 상기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가·나·다소방서장)는**

[주의] 시설공사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 다소방서 소방위 A, 가소방서 소방장 B, 소방교 C, 나소방서 소방교 D, 소방교 E에게 '주의' 조치(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추후 관련 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개인보호장비 재고관리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소방기관의 장은 현장에 사용하는 소방장비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예측 수요량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재고관리를 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제25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在庫)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그 대상으로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에서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개인보호장비(공기호흡기 세트, 방화복,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방화두건), 가스·전기·화학·항공기·유류 화재, 수난(水難) 및 화생방(化生放)에 대응하기 위한 소모성 소방장비, 그 밖에 사용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소방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방장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고관리 기준을 정할 때 소방장비의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및 시간, 소방장비의 예측 수요량, 소방장비의 성질, 크기, 보관방법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를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4조(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재고)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적정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재고 보충에 필요한 예산, 시간 및 예측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야 하며 개인보호장비의 경우 부록 1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9조(재고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 빈도가 높거나 재고를 적정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재고관리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장비관리법」 제5조(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의 수립) 1항에서 시·도지사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환경 특성을 고려한 소방장비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2020년～2024년)을 2019년 12월에 수립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행계획중 과제별 시행계획 [전략과제 3] 소방장비관리법의 안정적 시행·정착 1-2(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재고관리)에서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소방장비 보유기준 및 재고관리를 위해 개인보호장비는 화재현장 진입여부에 따라 개인별 지급기준을 정하고 기관별로 보유기준의 10% 내외의 예비품을 확보하여 재고관리를 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이에 제1차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른 재고관리가 필요한 개인보호장비 9종에 대한 각 소방서별 재고율을 살펴보면, 5개 소방서(㉮·㉰·㉵·㉻·㉼소방서)는 모든 품목의 재고율이 기준보다 5% 내외 낮고, 4개 소방서(㉯·㉱·㉲·㉳소방서)는 보조마스크 등 일부품목에서 기준치보다 낮은 재고율을 보인 반면, 3개 소방서(㉭·㉶·㉷소방서)는 기준 재고율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개인보호장비 재고율 현황

[단위: %]

구분	기관별 재고율(%)											
	㉭	㉯	㉮	㉱	㉰	㉲	㉳	㉵	㉶	㉷	㉻	㉼
등지게	10	4	5	11	2	1	19	5	9	70	1	4
용기	28	1	1	4	0	19	29	7	8	40	1	2
면체	14	1	2	9	1	3	10	4	13	43	1	0
보조 마스크	13	2	0	4	6	4	0	7	10	18	2	1
방화복	20	1	2	24	2	5	25	4	31	31	2	2
방화헬멧	8	4	1	21	4	5	1	5	27	12	2	3
방화신발	21	7	1	15	3	13	28	5	18	31	2	1
방화장갑	16	14	2	12	2	17	7	0	61	29	8	2
방화두건	22	3	1	31	4	11	0	3	18	40	5	0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2024.02.16.기준)

또한, 각 품목별 재고수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지게 품목은 ㉲소방서 및 ㉻소방서의 재고수량이 2점(재고율 1%)인 반면, ㉶소방서는 재고수량이 80점(재고율 70%)이고, 면체 품목의 경우 ㉼소방서의 재고수량 0점(재고율 0%)인 것에 비해 ㉶소방서는 69점(재고율 43%)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화헬멧 품목은 ㉮소

방서 및 ㉦소방서의 재고수량이 2점(재고율 1%)인 반면 ㉧소방서는 보유기준 대비 27%인 55점을 재고수량으로 확보하고 있는 등 각 기관별 재고관리 장비의 보유수량 편차도 크고 재고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표-2>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2> 개인보호장비 재고수량 현황(기관별, 일부품목)

[단위: 점, %]

구분	등지게			면체			방화헬멧		
	보유기준	재고수량	재고율	보유기준	재고수량	재고율	보유기준	재고수량	재고율
㉮	234	23	10%	387	56	14%	234	19	8%
㉯	313	14	4%	473	3	1%	313	14	4%
㉰	261	14	5%	373	8	2%	261	**2**	1%
㉱	140	15	11%	231	21	9%	140	29	21%
㉲	171	4	2%	296	4	1%	171	6	4%
㉳	167	**2**	1%	296	9	3%	167	8	5%
㉴	193	36	19%	333	34	10%	193	**2**	1%
㉵	82	4	5%	122	5	4%	82	4	5%
㉶	202	19	9%	311	39	13%	202	**55**	27%
㉷	115	**80**	70%	159	**69**	43%	115	14	12%
㉸	187	**2**	1%	281	3	1%	187	4	2%
㉹	167	6	4%	288	**0**	0%	167	5	3%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2024.02.16.기준)

4. 관계기관 등 의견

재고현황과 장비관리시스템의 현황이 맞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개인보호장비 9종에 대해 전수조사 및 시스템 현행화를 실시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보관 및 재고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향후 전수조사 등을 통해 재고

관리를 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감사 지적사항 수용 의견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는**

[통보] 소방환경, 지역적 특성 등의 제반여건과 예측 수요량을 고려하여 각 소방서별 재고품목에 대한 효율적 배분을 추진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재고관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공기충전기 등 공기공급기 안전관리 미흡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제22조(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의 의무)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자동차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장비관리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소방장비를 항상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 훈령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1조(소방장비 유지·관리)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별로

정리하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13조(매뉴얼의 운영)에 따라 개인보호장비, 소방자동차의 유지·관리 및 공기충전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의 설치·운영 등 관리업무의 수행에 [부록 1]부터 [부록 3]까지의 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에서는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자, 동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하의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허가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이고 저장 능력이 3톤 이상인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대상은 동법 시행령 4조에 따라 고압가스 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로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것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안전관리자)에서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이나 특정고압가스 사용 전에 동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한 자격에 적합한 인원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고압가스 제조

허가나 신고를 한 자, 또는 등록을 한 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정기검사)의 별표4에서 정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에 운용・관리하고 있는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은 각각 53대로 소방서별 보유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 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본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공기충전기	**53**	2	7	8	9	3	3	3	3	1	4	2	6	2
안전충전함	**53**	2	7	8	9	3	3	3	3	1	4	2	6	2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청 훈령「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제11조(소방장비 유지·관리), 12조(매뉴얼의 작성), 13조(매뉴얼의 운영)에 따른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소방장비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호흡보호장비 관리 매뉴얼은「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부록3]을 적용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기한 미준수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부록3] 안전관리 규정 표준모델 제8조에서 안전관리총괄자는 공기충전기가 설치된 소방기관의 장으로 선임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소방기관에서 공기충전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 책임자로 선임하

고, 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원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별표3에서 정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적합하고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허가관청이 선임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허가관청에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공기충전기 53대에 대한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기한을 미준수(누락)한 119안전센터는 17곳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와 ㉯119안전센터의 경우 2018년, 2019년 최초 선임신고 이후 인사이동 등으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누락시키다가 4년이 경과한 2024년 2월경에 선·해임 신고를 하는 등 법정 신고기한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기한 미준수 현황

[기준일: 2024.02.28.]

구분	소방서	부서명	전임자 해임일	법정신고 기일	후임자 선임일	기한 경과일
1	㉡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선임신고 중	17일
2	㉣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선임신고 중	17일
3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선임신고 중	17일
4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선임신고 중	17일
5	㉤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선임신고 중	17일
6	㉥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선임신고 중	17일
7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선임신고 중	17일

8	ㅈ	㉦119안전센터	'23. 5. 1.	'23. 5. 30.	'23. 7. 12.	43일
9		㉦119구조대	'23. 5. 1.	'23. 5. 30.	'23. 7. 12.	43일
10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24. 2. 19.	8일
11	ㅊ	㉮119안전센터	'20. 1. 5.	'20. 2. 4.	'24. 2. 28.	**1,485일**
12		㉯119안전센터	'19. 5. 20.	'19. 6. 18.	'24. 2. 28.	**1,716일**
13	ㅋ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24. 2. 14.	3일
14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24. 2. 14.	3일
15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24. 2. 14.	3일
16		㉴119안전센터	'24. 1. 12.	'24. 2. 11.	'24. 2. 14.	3일
17		㉵119구조대	'24. 1. 12.	'24. 2. 11.	'24. 2. 14.	3일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압력계 및 안전밸브 정기검사 미실시

「소방장비관리법」 제33조(소방장비의 점검 등)에 따라 소방기관의 장은 소관 소방장비를 점검하고 소방장비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주기마다 정기점검, 정밀점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을 실시한 후 소방장비의 점검 내용 및 정비·보수 내용, 소방장비의 고장 및 사고 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소방장비를 점검하여야 하고, 호흡보호장비를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7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공기 호흡기용 용기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시설·기술·검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6조(정기검사기준)에서는 안전충전함 충전시설의 정기검사 기준으로「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4의 제3호다목1)다)항목의 시설·기술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3호다목1)다)의 정기검사는 제2호나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사항이라 규정하고 있고, 제2호나목에서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기술기준은 제1호나목의 기술수준을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정기검사)의 별표4(고압가스 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및 정밀안전검진 기준)의 제1호나목3)다) 점검기준을 살펴보면 충전용 주관의 압력계는 매월 1회 이상, 그 밖의 압력계는 1년에 1회 이상 표준이 되는 압력계로 그 기능을 검사하여야 하고, 안전밸브 중 압축기의 최종단에 설치하는 것은 1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안전밸브는 2년에 1회 이상 조정을 하여 고압가스설비가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관서에서 운용하는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의 경우에는 위 점검기준에 따라 압력계는 KOLAS 공인교정기관[1]에서 1년에 1회 이상, 안전밸브는 전문 점검 업체를 통해 1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에서 운용・관리하고 있는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최근 3년간 압력계 정기검사(압력계 검교정) 내역을 살펴보면 ㉮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총 28곳에서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확인

1) “KOLAS 공인교정기관”이란 KOLAS에서 규정한 인정기준 및 KS Q ISO/IEC 17025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KOLAS로부터 교정분야에 대한 인정을 획득한 기관을 말한다

되었다. 특히 카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 ㉳119구조대는 최근 3년간 압력계 검교정을 위한 정기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라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 ㉰119구조대, 아소방서 ㉭119구조대, 차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는 최근 3년간 정기검사를 단 1회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세부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압력계 정기검사 미실시 현황

구분	소방서	부서명	정기검사 실시 일자		
			2021년	2022년	2023년
1	가	㉲119안전센터	'21. 12. 27.	X	'23. 5. 15.
2		㉳119안전센터	'21. 12. 27.	X	'23. 5. 15.
3		㉴119안전센터	'21. 12. 27.	X	'23. 5. 15.
4		㉵119안전센터	'21. 12. 27.	X	'23. 5. 15.
5		㉶119안전센터	'21. 12. 27.	X	'23. 5. 15.
6		㉷119안전센터	'21. 12. 27.	X	'23. 5. 15.
7		㉸119구조대	'21. 12. 27.	X	'23. 5. 15.
8	라	**㉱119안전센터**	**X**	**X**	**'23. 8. 21.**
9		**㉰119구조대**	**X**	**X**	**'23. 8. 21.**
10		**㉯119안전센터**	**X**	**X**	**'23. 8. 21.**
11	마	㉮119안전센터	X	'22. 7. 22.	'23. 8. 10.
12		㉯119안전센터	X	'22. 7. 22.	'23. 8. 10.
13		㉰119안전센터	X	'22. 7. 22.	'22. 7. 22.
14	바	㉱119안전센터	X	'22. 4. 8.	'23. 5. 5.
15		㉲119안전센터	X	'22. 4. 8.	'23. 5. 5.
16		㉳119구조대	X	'22. 4. 8.	'23. 5. 5.
17	사	㉴119안전센터	'21. 12. 22.	X	'23. 1. 16.
18		㉵119안전센터	'21. 12. 22.	X	'23. 1. 16.
19		㉶119안전센터	'21. 12. 22.	X	'23. 1. 16.
20	아	**㉭119구조대**	**X**	**'22. 7. 7.**	**X**

21	차	㉮119안전센터	'21. 11. 29.	X	X
22		㉯119안전센터	'21. 11. 29.	X	X
23	카	㉰119안전센터	X	X	X
24		㉱119안전센터	X	X	X
25		㉲119안전센터	X	X	X
26		㉳119안전센터	X	X	X
27		㉴119안전센터	X	X	X
28		㉵119구조대	X	X	X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최근 3년간 안전밸브 정기검사 내역을 살펴보면 마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총 6곳에서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사실이 <표-4>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마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 ㉴119안전센터는 최근 3년간 정기검사를 단 1회만 실시하는 등 고압가스설비가 파손없이 적절한 압력 이하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점검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4>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 안전밸브 정기검사 미실시 현황

구분	소방서	부서명	정기검사 실시 일자		
			2021년	2022년	2023년
1	마	㉡119안전센터	X	'22. 7. 18.	X
2		㉦119안전센터	X	'22. 7. 18.	X
3		㉴119안전센터	X	'22. 7. 18.	X
4	아	㉶119구조대	X	'22. 10. 4.	'23. 12. 20.
5	차	㉮119안전센터	'21. 5. 31.	'22. 8. 2.	X
6		㉯119안전센터	'21. 5. 31.	'22. 8. 2.	X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해임 시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기충전기 안전충전함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정기검사에 소홀하였기에, 차후 안전관리자를 적절히 선임하고 정기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장비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기한 준수 및 정기검사 등 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감사 지적사항 수용 의견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시사(소방본부장, ㉮·㉯소방서장)는**

[주의] 감사기간 중 공기충전기 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신고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서 소방장 A, 소방장 B, ㉮소방서 소방사 C는 “주의”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주의 처분하도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권고] 현재 보유중인 공기충전기 및 안전충전함에 대한 유지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담당자 지정 후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권고 및 통보

제　　목 소방장비 불용업무 추진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내용연수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있으면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不用)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2. 사용할 수 없는 소방장비, 3. 사용할 필요가 없는 소방장비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에 대하여 상태 및 내용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불용 여부 및 적정 교

체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장비의 조기불용, 오염의 제거 또는 수리·수선된 장비의 재사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 8에 따른 소방장비 불용심의회(이하 "불용심의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충청북도 소방장비관리계획(㉮과-20143)」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시행계획중 과제별 시행계획 전략과제 3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3-4 사용특성을 고려한 내용연수·불용기준 마련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고, 그 추진내용으로 사용빈도와 강도를 고려한 불용기준·절차 마련을 위해 장비별 사용연장 기준과 불용위원회 및 불용검사 등 절차 규정을 수립하겠다고 하였으나, 문서 시행 이후 별도의 계획 수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4조(유지관리체계)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유지관리 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 소방장비의 교체·보강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소방장비 관리상태, 보유수량, 재고품 확보 및 불용품 처리에 대한 사항, 3. 장비별 관리자 및 운용자 지정 등 유지관리 운영 체계에 대한 사항 등을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시·도 소방장비 관리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수행하는 장비 관리 확인·점검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2021년·2022년·2023년)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및 조작능력 점검 시, 소방장비 불용품 처리에 관한 사항은 평가항목에 포함하지 않고 누락시켜 점검을 소홀히 추진한 것으로 <표-1>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1> 소방장비 관리실태 평가표

- 삭제 -
2021년·2022년·2023년 동일 내용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각 소방서별 운용・관리하고 있는 소방장비(화재진압·구조·구급·정보통신·측정·보호·보조장비)에 대한 불용심의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기동장비 및 공기호흡기 용기(재검사 결과 불합격할 경우 폐기) 처분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심의회를 운영한 소방서는 단 한 곳도 없었으며, 불용심의회를 단 한 차례도 운영하지 않은 소방서 또한 5곳(㉮·㉯·㉰·㉱·㉲소방서)으로 확인되는 등 충청북도 소방기관 전체적으로 불용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사실이 <표-2>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2> 최근 3년간 소방장비 불용심의회 운영 현황(기동장비 제외)

구분	연도	본부	㉮	㉯	㉰	㉱	㉲	㉳	㉴	㉵	㉶	㉷	㉸	㉹
불용심의회 운영 여부	2021년	-	-	-	-	-	-	-	-	-	-	-	-	-
	2022년	O	-	-	-	O	O	-	-	O	-	-	-	-
	2023년	O	-	-	-	-	-	O	O	O	-	O	-	O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소방장비관리법」 제38조에 따라 불용결정 할 수 있는 대상 중, 내용연수를 경과한 소방장비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측정장비 및 보조장비는 보유수량 대비 10% 이상의 장비가 내용연수를 경과하였고, 보호장비의 경우 보유수량의 41%가 내용연수를 경과한 장비로 확인되었으며, 그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소방장비 내용연수 경과율(기동장비 제외)

[단위: 점, %]

구분	화재진압	구조	구급	정보통신	측정	보호	보조
①보유수량	62종 9,475점	66종 22,175점	122종 13,152점	80종 8,220점	22종 1,636점	25종 84,973점	31종 1,878점
②내용연수 경과수량	426점	1,075점	247점	499점	178점	34,869점	286점
경과율 (②/①)	4%	4%	1%	6%	10%	**41%**	15%

※ 자료: 2024년 충청북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추출자료 재구성(2024.2.16.기준)

이에 내용연수 경과율이 가장 높은 보호장비 중, 현장대원들의 안전확보에 필수적인 개인보호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율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개인보호장비의 전체 보유수량(개인별 지급하였거나, 예비·재고품 등으로 별도 보관중인 수량 모두 포함)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율을 살펴보면 보조마스크의 경우 보유수량 3,206점 중 내용연수 경과 수량이 2,253점으로 경과율 42%이며, 방화복 또한 보유수량 대비 내용연수 경과율이 40%로 확인되는 등, 등지게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목에서 내용연수 경과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세부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경과율

[단위: 점, %]

장비명	내용연수	보유기준	①보유수량	②내용연수 경과수량	③경과율(%) (②/①)
등지게	10	2,253	3,806	12	0.3%
면체	3	3,592	5,219	2,060	39%
보조마스크	3	2,253	3,206	1,357	**42%**
방화복	3	3,592	6,748	2,758	**40%**
방화헬멧	5	2,253	4,231	1,108	26%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추출자료 재구성(2024.2.16.기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에서는 소방기관의 장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별표8에 따른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야 하며, 내용연수가 경과한 장비의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 연장사용 기한은 1년 이내로 하고, 연장사용이 결정된 소방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각 소방서별 불용심의회 운영 및 연장사용 결정 수량 현황을 파악하

여 내용연수 경과품목이 적정하게 연장사용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에서 추진한 불용심의회의 연장사용결정 수량을 <표-5>와 같이 살펴보면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서를 제외한 9개 소방서에서는 불용심의회 운영을 통한 연장사용 결정 없이 내용연수 경과 개인보호장비를 계속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기관(소방본부·㉮·㉯소방서)에서 불용심의회를 통해 연장사용 결정했다지만 그 수량 또한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전체 내용연수 경과수량의 일부에 불과하며, 특히 보조마스크의 경우 충청북도 소방기관 전체 내용연수 경과수량 1,357점 중 25%인 341점만 연장사용 결정하고, 나머지 75%는 연장사용 결정 또는 별도의 관리 기준없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표-5> 최근 3년간 개인보호장비 연장사용 결정 수량

[단위: 점]

구분	등지게			면체			보조마스크			방화헬멧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3점			562점			341점			286점		
본부	-	-	9	-	-	134	-	-	80	-	-	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	-	193	-	-	123	-	-	109
㉴	-	-	8	-	-	235	-	-	138	-	-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4조(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재고)에서 소방기관의 장은 개인보호장비를 보유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개인보호장비 지급대상을 진압대원, 준진압대원, 지원요원으로 구분하고 각 대상별 적응성에 맞는 개인장비를 <표-6>과 같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였다.

<표-6> 개인보호장비 개인별 지급기준

개인장비 종류	지급대상 및 수량		
	진압대원	준 진압대원	지원요원
용기, 면체, 방화복, 안전화, 진압장갑, 방화두건	각 2점	각 1점	
등지게, 보조마스크, 진압헬멧	각 1점	각 1점	
안전장갑, 안전헬멧	안전장갑만 1점	각 1점	각 1점
*지급대상별 구분 기준 1. 진압대원 : 화재현장에 직접 진입하여 인명검색, 구조, 화재진화 등을 수행하는 업무 2. 준진압대원 : 주 보직이 진압대원은 아니나, 시도 여건에 따라 진압업무를 병행하는 보직자 3. 지원요원 : 진압대원 및 준 진압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며 진압업무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정한 개인별 지급기준에 따른 실제 지급수량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유기준 대비 평균 59% 초과하여 개인별 지급·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방화복의 경우 보유기준 대비 76% 초과하여 과 지급된 것으로 <표-7>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7> 개인보호장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점]

구분	①보유기준	②개인지급수량	③초과지급수량 (②-①)	초과지급율(%) (③/①)
계	28,311	45,155	16,844	59%
등지게	2,253	3,587	1,334	9%
용기	3,592	5,265	1,673	47%
면체	3,592	4,968	1,376	38%
보조마스크	2,253	3,097	844	37%
방화복	3,592	6,336	2,744	76%
방화헬멧	2,253	3,769	1,516	67%
방화신발	3,592	5,416	1,824	51%
방화장갑	3,592	6,449	2,857	80%
방화두건	3,592	6,268	2,676	74%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4조(소방장비의 사용 및 보관·재고)에 보유기준을 초과한 수량은 창고 등에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는 초과 지급한 장비에 대한 보관방법을 각 소방서별 통합관리가 아닌 개인별 보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불어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4조에서 소방장비를 보관할 때에는 장비별로 제조사에서 정한 보관요령을 지켜야 하며, 소방장비를 창고 등에 보관할 때에는 사용 가능한 장비, 수리가 필요한 장비, 불용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보관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는 별도의 관리기준이나 방침없이 개인이 관리토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소방장비관리법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 내용연수 경과 품목에 대한 연장사용 및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나, 별도 운영없이 내용연수 경과 품목을 계속 사용하는 등 관리에 소홀하였기에, 차후에는 연 1회 이상 불용심의회를 운영하고 별도의 소방장비 관리기준 및 방침을 정하여 소방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불용심의회를 운영하여 내용연수 경과 품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감사 지적사항 수용 의견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는**

[권고] 보유중인 소방장비에 대한 내용연수 경과여부를 확인하여 연 1회 이상 각 기관별 불용심의회를 운영토록 지도·점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보유기준 대비 초과하여 旣 지급된 내용연수 경과 소방장비는 불용심의회를 추진하여 연장사용 또는 불용, 재고품 전환 등의 관계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미흡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대하여 기존 보유 중이거나 신규 구매, 불용 등의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변경 사항을 기록·입력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①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소방기관이 사용하는 소방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소방장비의 취득부터 불용 결정 후 처분까지 그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구축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소방장비 정보의 입력 등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시·도 시행계획 추진 실적의 세부 사항 등) 동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시·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도 시행계획의 단위 과제별 추진 실적, 2.시·도 시행계획의 추진장 문제점 및 대책, 3.소방장비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 추진 실적, 4.소방장비의 사고 현황·분석 및 예방대책, 5.「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 현황, 6.그 밖에 소방장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로 추진한 정책의 실적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시·도 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차 충청북도 소방장비관리계획(㈜과-20143)」을 수립하고 추진하였다. 시행계획중 과제별 시행계획 전략과제 3 「소방장비 생애주기별 혁신」 3-3 수요자 중심 소방장비 종합 관리시스템에서, 소방장비 구매·보급부터 관리·운용 폐기까지 유기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장비관리시스템과 이호조·온나라 연계를 통한 구매·사용·점검 등 장비 이력 전반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계획 수립하였다.

또한, 2021년·2022년·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에서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효율적인 소방장비관리 및 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충실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을 위해 해당연도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시 소방서별 시스템 입력 실태 점검을 계획하였다. 특히 2023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에서는 구조·구급장비에 대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현행화율이 미흡하다 판단하여 소방관서별 감찰부서와 협조하여 실적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더불어 2021년·2022년·2023년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관리실태 확인점검 및 조작능력 평가 계획을 살펴보면 추진개요에서 주요 확인점검 및 평가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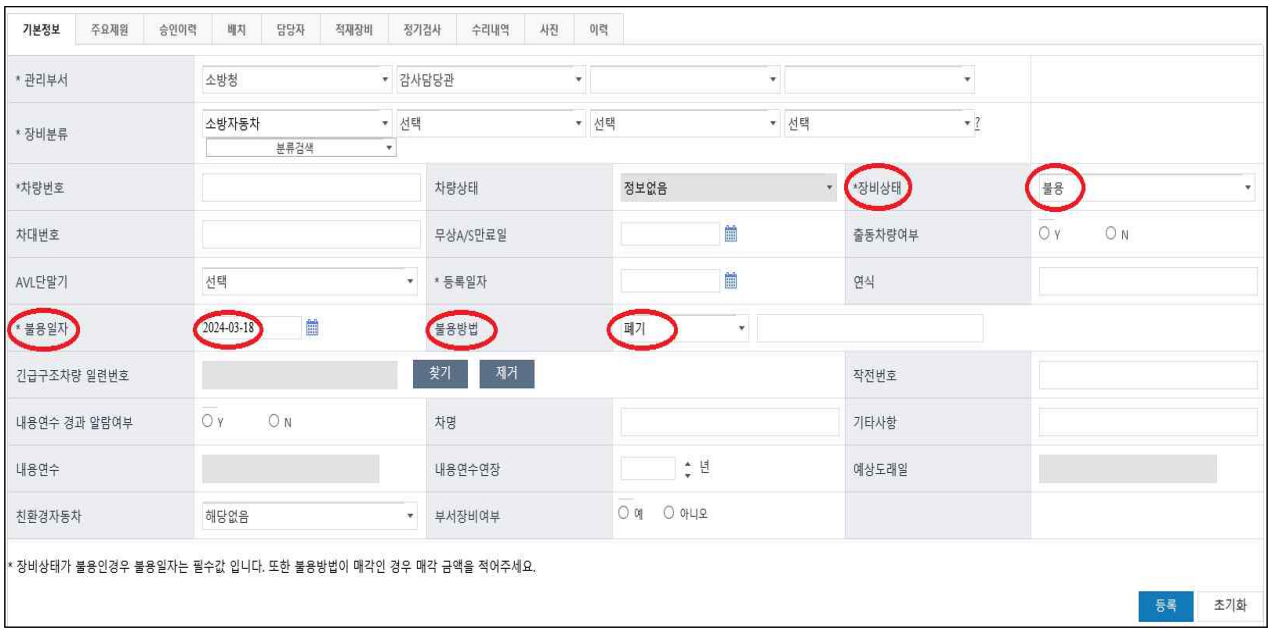
용으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 실태(충실도)를 점검하기 위해 휴대용랜턴 등 개인지급품 시스템 입력 여부를 평가표에 반영하여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 불용장비 등 처분기록사항 시스템 입력 소홀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9조(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의 입력)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구매하여 신규 배치 또는 지급하거나, 수리 및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또는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또한,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7조(기록관리)에 소방기관의 장은 동훈령 제18조(소방장비의 처분 및 폐기)에 따른 소방장비의 연장사용과 불용, 불용 폐기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소방장비의 기록·관리 확인은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불용한 소방장비를 기록·입력하는 방법은 <표-1>과 같다.

<표-1>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불용물품 등록 정보



※ 자료: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정보 입력 항목 재구성

이에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에서 운용중으로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장비상태 “사용중”으로 등록된 소방장비 중, 2004년 이전에 구매한 장비에 대한 실제 보유 및 불용 등 여부를 확인하여 처분기록 사항의 입력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단, 기동장비는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2010년 이전에 구매·등록된 장비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기동장비 및 구급장비는 조사대상 대비 시스템 등록장비 전체를 보유중으로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구조장비는 17종 46점이 旣 불용 결정되어 처분 완료된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불용 처분사항을 입력(기록)하지 않아, 부적정하게 현재까지도 사용중인(사용가능한) 물품으로 등록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화재진압장비의 경우 소방호스 등의 소모성 물품(장비) 3종 13점이 미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과거에 사용·소모가 완료되어 현재 미보유중인 물품임에도 “사용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등 소방장비의 변경사항에 대한 기록유지 관리업무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표-2>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2> 2004년 이전 구매 등록 소방장비 운영 현황(보호장비 제외)

[단위: 종, 점]

구분	기동	화재진압	구조	구급	정보통신	측정	보조
등록수량	3종 9점	6종 22점	31종 133점	1종 3점	8종 17점	18종 33점	8종 8점
실보유수량	3종 9점	5종 6점	13종 68점	1종 3점	3종 4점	18종 30점	6종 6점
旣불용수량	-	2종 3점	17종 46점	-	-	-	1종 1점
미보유수량 (확인불가)	-	3종 13점	11종 19점	-	6종 13점	3종 3점	1종 1점

※ 자료: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추출자료 및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24.03.18.기준

나. 신규 구매장비 시스템 등록 누락

「소방기본법」 제21조의3(소방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구축·운영)에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고가차, 무인방수차, 구조차,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에 대하여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하는 장치 및 기능을 갖춘 전자식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고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더불어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운행기록장치)[1]에서도 그 대상차량을 정하고 있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별표1에서는 소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간접 또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보조장비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부품목으로 기록보존장비에 촬영 및 녹음장비, 운행기록장비, 디지털이미지 프린터 등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에 따른 별표1(소방장비의 분류 및 내용연수)에서는 차량의 속도, 주행거리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비를 운행기록계로 분류하고, 내용연수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관계법령에 따라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는 2023년 보유중인 소방펌프차 등에 금206,206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총348점의 운행기록장치를 구매·설

1)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운행기록장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5제7호에서 “그 밖에 소방청장이 소방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소방자동차”란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제1호가목 중 다음 각 호의 소방자동차를 말한다. 1. 화생방 대응차 2. 소형사다리차 3. 재난지휘차 4. 구급차 5. 화재조사차 6. 조명배연차

치 완료하였고, 그 현황은 <표-3>과 같다.

<표-3> 2023년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구매·설치 현황

[단위: 점, 천원]

구분	계	본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설치대상	360	8	33	38	45	29	25	27	33	14	23	27	37	21
설치완료	348	7	33	38	45	29	22	26	30	14	23	23	37	21
소요예산	260,206	8,520	29,980	27,340	30,866	20,140	15,520	14,660	24,760	11,820	19,480	17,300	25,820	14,000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024.03.18.기준

이에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에서 2023년 신규 구매·설치한 운행기록장치의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입력률 평균 19%로 나소방서를 제외한 나머지 12곳의 기관의 시스템 입력률이 미흡(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단 1점도 입력하지 않은 기관이 8곳(소방본부, 라·마·바·사·아·자·카소방서)으로 확인되는 등,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방장비 구매·신규배치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 7일 이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 입력해야 하는 업무를 소홀히 추진 한 것으로 <표-4>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4> 2023년 소방자동차 운행기록장치 시스템 입력 현황

[단위: 점, %]

구분	계	본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①구매수량	**348**	7	33	38	45	29	22	26	30	14	23	23	37	21
②입력수량	**66**	0	4	38	18	0	0	0	0	0	0	1	0	5
입력률 (②/①)	**18%**	0%	12%	100%	40%	0%	0%	0%	0%	0%	0%	4%	0%	23%

※ 자료: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추출자료 및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 2024.03.18.기준

4. 관계기관 등 의견

소방장비관리법,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소방장비 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나, 불용장비 시스템 처분 누락 및 신규 구입장비에 대한 시스템 등록이 미흡하였고, 추후 소방장비 관리시스템 소방장비 입력을 철저히 하여 장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관계법령에 따라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하겠다는 관계기관의 의견으로 감사 지적사항 수용 의견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는**

[통보] 소방장비의 신규구매, 불용 등 관리상태가 변경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7일이내 소방장비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합동감사결과
주의·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자체점검 이행완료보고서 확인 등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2022년 12월 1일부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부터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과 이행완료 보고서를 제출받아 해당 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점 결과 소방시설 등에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이행계획을 기간 내 완료하고 그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1조(과태료)에 따라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을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행계획서를 보고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행계획의 완료기간을 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 이해완료 보고서와 이행계획 건별 전·후 사진 증명자료,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 ㉮·㉯·㉰·㉱·㉲·㉳·㉴·㉵·㉶·㉷·㉸·㉹소방서(이하 '충청북도 각 소방서')의 자체점검 등에 따른 연도별 조치명령(이행계획) 총괄 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소방서 연도별 조치명령 총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	㉰	㉱	㉲	㉳	㉴	㉵	㉶	㉷	㉸	㉹
2021년	1,232	1,479	1,606	437	106	95	90	116	570	127	876	46
2022년	976	1138	1250	489	123	94	82	120	662	115	1,010	83
2023년	**1,014**	**315**	**23**	**106**	**56**	**30**	**22**	**12**	**70**	**126**	**83**	**19**
총합	3,222	2,932	2,879	1,032	285	219	194	248	1,302	368	1,969	148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수리·교체·정비에 관한 이행계획을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이행계획 기간 내에 수리·교체·정비를 완료하여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에게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완료기간 내에 이행계획을 완료한 관계인은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자체점검 이행완료 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과태료)에 따라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에 따라 지연기간[1]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이에 충청북도 각 소방서의 자체점검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 완료 실태(<표-2> 참고)를 살펴본 결과 ① ㉮소방서의 경우 44개의 대상물에 대한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이행완료 처리(2023. 10. 26.부터 11. 28.까지 접수된 완료보고서)하였고, ② ㉰소방서는 이행완료보고서에 보고일이 기재되지 않은 완료보고서를 뒤늦게 접수(ⓐ아파트, 이행기간 : 2023. 5. 1.까지, 접수일 : 2023. 5. 19.)하거나, 완료보고일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물(ⓑ어린이집, 이행기간 : 2023. 9. 15.까지, 제출일 : 2023. 10. 5.)의 관계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하지 않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③ ㉷소방서는 완료보고일을 준수하지 않은 대상물(ⓒ마트, 이행기간 : 2023. 4. 7.까지, 제출일 : 2023. 4. 28.)의 관계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하지 않고 이행완료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④ ㉲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연기신청(㉡, 공장 전체 인테리어 공사, 전력용량 증설)에 대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계획 완료의 연기) 제1항 제4호 “사업에 부도

1) 지연 보고기간 : 10일(과태료 50만 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과태료 100만 원), 3개월 이상(200만 원)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을 적용하여 1차(2023. 10. 7. ~ 12. 22.)에 75일, 2차(2023. 12. 22. ~ 2024. 1. 22.)에 31일, 3차(2024. 1. 22. ~ 2024. 2. 29)에 39일을 허가하여 총 145일간 연장하여 주었으나, 관계인이 이행완료보고서와 함께 제출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작성일 : 2023. 12. 1)’의 착공일과 완공(예정)일을 살펴보면 착공일은 2023. 12. 1.이고 완공(예정일)은 2024. 2. 29.로 이미 1차 연기신청서의 완료기간일인 2023. 12. 22.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2차, 3차 연장신청을 한 것으로 추단됨에도, 해당 소방서는 연장신청 허가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불량에 따른 장기간 위험요소의 상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3차까지 연장신청을 허가하는 등 4개 소방서는 이행완료보고서 확인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자체점검 이행완료보고서 확인 등 소홀

구분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내용	이행완료보고서 미첨부하여 44개 대상물 일괄등록	**이행보고일 초과 대상 과태료 미처분 등**	**이행보고일 초과 대상 과태료 미처분 등**	연장신청 허가 미흡 등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119안전센터는 직할센터 제외)

4. 관계기관 등 의견

상기 대상에 대한 자체점검 이행계획은 1차 연기(2023. 10. 4.) 당시 공장 인테리어공사를 2023. 12. 6.까지 마무리 후 가동 예정이었으나, 공장내부 철거상태로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하여 연기신청을 수리하였으며, 2차 연기, 3차 연기 또한 당초 공사계획이 지연되어 검토한 결과,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할 수 없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연기신청서를 수리하였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 및 질의회신 내용을 참고하여 “그

밖에 관계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부도 또는 도산 등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여 이행계획을 완료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의견이다.

5. 검토결과

해당 관계인은 공장의 내부 인테리어를 위해 1차 연장(75일), 2차 연장(31일), 3차 연장(39일)기간 동안 소방서 업무 담당자는 현장 방문이 아닌 업체가 제출한 사진만으로 연장을 승인하였으나, 2차에 제출한 사진에서는 천장의 공사가 마무리되어 조명까지 설치되었으나 3차에 제출한 사진에서는 천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사진이 첨부되는 등 사진만으로는 연장신청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현장 확인이 필요함에도 현장 확인(1차, 2차 연장신청 관련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 내역 없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또한 관계인은 1차 연장신청한 10월이 아닌 마감기한에 속한 달인 12월 1일에서야 뒤늦게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관계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연장신청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소명되지 않았으며, 업체가 제출한 2023년 12월 1일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에서도 완공(예정)일이 1차 연장신청 마감기한(2023년 12월 22일)이 아닌 3차 연장신청 마감기한에 해당하는 2024년 2월 29일로 작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연장신청 요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연장신청		**2차 연장**		**3차 연장**	
2023. 10. 7.	2023. 12. 22.	2023. 12. 22.	2024. 1. 22.	2024. 1. 22.	2024. 2. 29.
2023. 12. 1.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작성일					2024. 2. 29. 완공(예정)일
1차 현장 미확인		**2차 현장 미확인**		3차 현장 확인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소방서장)는**

[주의] 자체점검 이행완료보고서의 보고일을 초과한 관계인에게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하지 않은 ㉲소방서 소방사 A, ㉵소방서 소방사 B에게 주의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처분하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소방서는 이행완료보고일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에 대해 관련 소방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각 소방서에서는 자체점검 이행계획 연기신청이 다 회차 및 장기간에 해당될 경우 현장확인 등을 거쳐 연장 승인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시정요구 및 통보

제　　목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정보관리 등 미흡**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재난발생 시 화재진압, 구조, 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보를 파악·관리하고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에서는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료조사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1호 및 제2호의 특급, 1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은 연 1회 이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제3호 및 제4호의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2년에 1회 이상, 그 이외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또는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필요시에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소방시설 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완공검사(감리결과보고서로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소방활동 자료조사 방법)에 따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건축물의 구조 및 위치, 화재진압 등 활동 시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방법을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최근 소방청이 발표한 경북 문경 공장화재 순직사고 관련 합동조사 결과 및 대응 문제점을 살펴보면 ① 샌드위치 패널 구조에 대한 화재진압의 어려움, ② 구획된 건물에 대한 구획화재 진압 전술 미준수, ③ 가연물로 추정되는 식용유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전달 등 현장 활동 정보 공유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충청북도 관내 소방대상물 정보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순직사고의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된 대상물 정보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을 통해 향후 순직사고(안전사고)가 저감될 수 있도록 감사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해당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순직사고에 대한 소방청 합동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 소방청 통계자료, 소방예방정보시스템, 충청북도 내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여 년간 위험직무순직[1]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최근 10여 년간 위험직무 순직 현황

연번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화재진압	13	1	1		2		1		3	3	2	2
구조	6			2		2		2 (충북1)				
구급	1					1						
기타	20	6	1	0	0	4	8 (충북1)	0	0	1	0	0

※ 자료: 소방청 통계자료 재구성

해당 순직사고를 바탕으로 작성된 "2021년 화재현장 소방활동 순직사고 조사 분석결과 및 방지대책" 에서는 현장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소방활동자료조사 사전위험분석 강화를 들고 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일 발생한 제주 서귀포시 감귤창고 화재진압 중 순직한 사고 조사 및 분석결과에서도 "활동 중 슬레이트 지붕 (일부)붕괴를 인지하지 못하였고, 화재발생 창고 상단 처마(콘크리트)의 붕괴 가능성 등 예측 어려움"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당시 제주 감귤창고의 특성(콘크리트로 구성된 처마)을 인지하였다면 창고 출입구 전면에서 활동 시 창고 상당 높이 이상 안전거리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22년 1월 5일 경기도 평택 신축공사장(물류센터) 화재 합동조사단

1) 위험직무 순직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해당 신축공사장의 규모는 축구장 28개의 면적의 크기에 달하고 샌드위치패널 구조에 따른 광범위한 발화 및 붕괴 위험을 지적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의 특성(층고는 일반 건축물에 비해 2~3배 높고, 공기유입이 용이한 구조로 화재 확산이 빠름)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소방대상물에 대한 구조의 이해와 사전 소방활동자료조사를 통한 사전위험분석이 대원 안전사고 방지에 중요한 요소임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가. 소방대상물 정보(소방안전관리자) 현행화 등 미흡

충청북도 관내에는 2023년 기준 총 32,885개소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은 9,150개소, 공장은 6,244개소, 복합건축물은 3,993개소이며 창고는 938개소를 대상별 및 관서별 세부 현황은 <표-2>와 같다.

<표-2> 대상별 및 관서별 대상물 현황

대상별	공동주택	근린생활	문화집회	종교시설	교육연구	업무시설	공장	창고	항공자동차	자원순환	복합	기타
개소	1,151	9,150	215	611	854	1,313	6,244	938	255	179	3,993	7,982
관서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개소	5,869	7,016	3,968	2,802	1,118	1,581	1,276	760	2,814	983	4,124	574
특급	4	7	0	0	0	0	0	0	2	1	0	0
1급	70	142	53	16	1	7	4	13	38	4	52	1
2급	1,540	1,776	911	473	176	244	186	193	656	193	991	111
3급	1,667	1,906	1,032	513	150	237	175	210	592	193	870	107
그 외	2,588	3,185	1,972	1,800	791	1,093	911	344	1,526	592	2,211	355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각 소방서는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소방대상물(특급~3급 대상물)

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소방활동조사를 실시하고 신규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방서는 이미 철거 및 폐업된 대상물에 대해서 특정소방대상물로 여전히 관리 중이거나,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었음에도 소방예방정보시스템에 등록을 누락하거나, 소유주가 변경된 후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사례 등이 <표-3>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3> 소방대상물 정보(소방안전관리자) 누락 현황 등

구분	㉮	㉯	㉰	㉱	㉲	㉳	㉴	㉵	㉶	㉷	㉸	㉹
대상	3,281	3,831	1,996	1,002	327	488	365	416	1,288	391	1,913	219
폐업등 유예	51	56	10	12	1	2	1	2	5	14	27	5
미선임	**12**	**4**	**8**	-	-	-	-	-	-	-	**2**	-
기타정보미흡	37	52	45	29	-	1	-	-	22	16	39	8
소방서별 안전관리자 미선임 세부대상	㉮	-										
	㉯	-										
	㉰	-										
	㉹	-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완공검사(건축물 사용승인) 후 자료조사 미흡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는 완공검사를 받고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12개

소방서에서 실시한 2023년 소방시설 완공검사 대상 수는 총 1,258개소로 확인되었고, 소방서별로 완공검사(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활동 자료조사 실시여부를 확인한 결과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소방서가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누락하거나 30일이 초과하여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표-4>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4> 완공검사(건축물 사용승인) 후 소방활동자료조사 미흡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	㉯	㉰	㉱	㉲	㉳	㉴	㉵	㉶	㉷	㉸	㉹
완공검사	253	352	134	49	22	47	29	18	114	37	178	25
미실시	5	2	5	3	3	-	2	-	-	-	4	6
30일 초과	30	72	74	7	5	2	5	5	16	18	39	17

※ 자료: 시.도행정포털 온나라(문서등록대장) 자료 추출

다. 관리 사각지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필요

충청북도 도내 수소차는 2,093대가 등록되어 있고 수소충전소는 2024년 3월 20일 기준 17곳(청주 6곳, 충주 3곳, 음성 3곳, 제천・보은・영동・진천・괴산은 각 1곳)이 설치된 것으로 <표-5>와 같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전국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충전소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수소차 충전소 등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서울	부산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충북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전북	제주
차량	3,199	2,075	7,532	1,989	2,711	1,540	1,085	418	2,800	2,093	631	1,247	1,597	2,846	423	2,366	33
충전소	10	5	30	9	12	12	6	7	17	17	4	7	9	10	2	11	0

※ 자료: 수소유통정보시스템(https://www.h2nbiz.or.kr/)자료 참고

전국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수소설비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대두되고 있기에 과거 사고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강릉 과학단지에서 수소 저장탱크 내 폭발범위(6% 이상)의 혼합 농도 이상으로 산소가 유입된 상태에서 정전기 불꽃 등 점화로 수소탱크 폭발”로 사망 2명, 부상 6명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노르웨이에서는 “2019년 수전해 + 무인셀프 방식의 수소충전소에서 화재 발생”으로 2명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대상물 정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수소충전소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화재의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피해의 우려가 현저할 경우에만 화재안전조사할 수 있을 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서 제외([별표 4]에 정한 대부분의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 등) 설치가 제외되도록 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특정소방대상물로서의 정보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충북 소방본부에서도 “주유소 부지에 설치된 수소충전소 4곳에 대해서만 현황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 감사 기간 ⓐ 수소충전소를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바 불꽃감지기, P형 수신기 및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6> 참고

<표-6> ⓐ 수소충전소 현장 사진



※ 자료: 감사기간 중 감사관이 직접 촬영

해당 수소충전소의 경우 튜브트레일러(상단 사진 5번째) 운송 방식으로 해당 튜브트레일러에서 고압압축기를 통해 저장용기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20MPa의 압력을 50MPa에서 100MPa의 가압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압축에 따른 고온 발생을 낮추기 위해 냉각장치를 <표-7>과 같이 가동하고 있다.

<표-7> 수소 충전시스템 구성 방식



※ 자료: 감사기간 중 감사관이 직접 촬영

이처럼 다른 소방대상물과 다르게 고압 압축 및 냉각 과정(냉각 고장 시 고온에 따른 폭발 등 위험 존재) 등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수소충전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재난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기에 더욱더 소방대상물 정보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 나소방서(소방교 A)

나소방서 관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3,831개로 다른 소방서보다 많은 대상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착공 및 완공검사 업무를 담당자 1명이 처리하고 있어 관계 서류 및 설계도면, 감리결과 보고서 검토 등 업무가 과중되며, 예방행정 업무 기피현상으로 업무 담당자 변경 시 미선임대상, 유예대상에 대한 현황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

이미 철거 및 폐업된 대상물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통해 특정소방대상물로 관리중인 경우 소방예방정보시스템을 현행화하여 철거 처리 등을 통해 특성소방대상물에서 삭제 조치 예정이다.

소유주가 변경되었으나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 민원인 안내 등을 통해 선임예정이며 향후 미선임 대상의 경우 적발 후 사법처리 등 의법 조치하고, 폐업 등 유예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처별 현장 확인 및 별도 관리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가 미선임 된 상태로 운영치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소방서(소방장 B)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처 2건에 대하여 향후 소방관계법령 법률 위반 사실 적발처리하고 폐업이나 철거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 검토결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의견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소방서장)는**

[주의] 안전관리자 선임 업무를 소홀히 한 ㉮소방서 소방장 C, 소방교 D, 소방사 E, ㉯소방서 소방장 F, ㉰소방서 소방위 G, 소방장 H, 소방사 I, ㉷소방서 소방장 B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

기관이 처분하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지 않은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완공검사 후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소방대상물 및 수소충천소와 같이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역에 있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활동자료조사(화재안전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상물 정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권고 및 통보

제　　목　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 소홀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에서는 소방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4조(소방관서의 장의 의무)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활동재해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 각종 안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며,「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에 따라 소방공무원은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실태점검)에 따라 소방청장 및 소방관서장 등은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는 대원에게 필요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대원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동 규정 제30조(실태점검 방법

등)에 따라 실태점검을 위한 점검지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 등이 각각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에서는 안전관리 일상화와 지속적 피드백 제공을 통해 현장에서의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과-1561(2021. 2. 25.)호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였고, 위 대책을 관련근거로 충청북도 소방본부 ㉮과에서 ㉮과-5276(2021. 3. 24.)호 「현장 안전관리 점검·컨설팅 강화 시행계획 알림」(이하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현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각 소방관서에 통보하였다.

또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8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매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이하 ‘보건안전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현장안건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해오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본부 안전관리 점검 소홀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 따르면 소방본부는 도내 119안전센터 중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불시 확인점검을 월 1회 이상(소방본부 주관 적의 선정 가능) 실시하며, 이 때 점검방법은 <표1>의 안전관리 점검표에 따른다. 이는 형식적이고 자의적인 점검을 방지하고 내실있는 점검을 위해 점검표에 명시된 사항(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이행, 사고·사례 전파 교육, 준사고·이차사고 발굴, 현장안전 판단 훈련 등)들을 반드시 점검하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표-1> 안전관리 점검표

점검자 소속				점검일시		(요일)	
점검대상	시도			소방서		센터	
119안전센터장 (팀장)	구분	소방서	교대팀	계급	성명	비 고	
	센터장						
	팀장						

점검항목	점검내용(개선 필요사항)	비고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이행		
사고사례 전파 교육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현장안전판단 훈련		
안전관리 수범사례		
안전관리 컨설팅		
점검자 종합의견		

또한 2021년~2023년 보건안전 집행계획에는 매년 <표2>와 같이 본부 주관 실태점검이 포함되어 있다.

<표 2> 보건안건 집행계획 중 안전관리 실태점검 사항

□ 안전분야

추진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안전분야	안전관리 지정 및 현장소방활동 안전교육	연중 상시 (현장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분야별 교육 실시)											
	현장대원사고 등의 조사 및 사례 전파	연중 상시 (인명피해 발생 시 사례전파 및 교육관리)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실태점검			본부 주관 실태점검				서 자체 실태점검					

※ 2023년도에는 추진일정을 소방본부 및 소방서 -- (연중) 으로 표기

이와 같은 본부의 실태 점검은 소방서 자체점검을 보완하여 각 소방서별 실태점검 현황을 점검·검증하는 효과와 함께 안전관리정책 총괄부서인 본부에서 현장 상황을 확인하여 관련 정책을 적시에 수정·보완할 수 있게 하여 현장 안전관리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는 <표 3>과 같이 2021년도 이후 2022년도 1건, 2023년 2건의 현장 확인 점검을 진행한 것에 그쳤고, 해당 3건 또한 소방청 합동점검(1건), 서별 자체 점검 사항 표본 확인·점검(2건)인 것으로 확인되어 본부 차원의 실태점검은 2022년도부터 사실상 진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본부 실태점검 6건 중 점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실태점검을 시행한 것은 최초 1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3> 본부 현장 안전관리 점검 현황

연번	년 도	일시	점검 대상	주요 내용	점검표 활용
1	2021	4. 2.	㉮소방서	소방청 합동 점검	O
2		5. 31.	㉰소방서 ㉯119안전센터	본부 실태점검	O
3		7. 16. ~ 7. 19.	12개 소방서	여름철 안전관리 특별점검	X
4		8. 31.	㉮소방서 ㉱119안전센터	본부 실태점검	X
5		9. 28.	㉰소방서 ㉲119안전센터	본부 실태점검	X
6		10. 8.	㉰소방서 ㉳119안전센터	본부 실태점검	X
7		10. 28.	㉱소방서 ㉴119안전센터	본부 실태점검	X
8	2022	6월~7월	12개 소방서	여름철 안전관리 특별점검 (서별 점검 사항 표본 확인)	
9	2023	6. 19. ~7. 5.	12개 소방서	여름철 안전관리 특별점검 (서별 점검 사항 표본 점검)	
10		6. 26.	㉮소방서	소방청 합동점검	O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나. 소방서별 안전관리 자체점검 미흡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는 2021. 4. 1.부터 소방서별 자체로 <표 5>에 따른 점검표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각 소방서에서는 매년 소방서별로 현장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점검 일정과 자체점검 점검표를 정하여 자체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방서별 자율적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점검표를 통해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5> 안전관리 점검표

일련번호	2021-	점검일시	(　요일)
시도		소방서	

점검항목	점검내용(개선 필요사항)	비고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계획 이행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사고조사팀 운영		
사고사례 전파 교육		
현장 안전관리 체계 (권한위임, 인원·장비 확인 등)		
준사고·아차사고 발굴		
현장안전판단 훈련		
안전영향평가 운영		
안전관리 수범사례		
안전관리 개선대책		

그런데 일부 소방서에서 <표 6>과 같이 자체점검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 6> 소방서 현장 안전관리 자체점검 누락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	㉮, ㉰	없음
2분기	없음(여름철 안전관리 특별점검 시행)		
3분기	㉯	없음	없음
4분기	㉮, ㉰, ㉯	없음	없음

※ 자료: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① ㉠소방서의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현장대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관련업무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나 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점검표 항목 중 상당수(안전영향 평가 운영, 안전관리 개선대책 검토 등)가 개별점검에서 각각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② ㉡소방서의 경우,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보은소방서 산하 3개 119안전센터와 1개 구조대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하루만에 시행하고 각 점검항목에 대하여 “운영중에 있음”, “적정 시행되고 있음” 등으로 표기했을 뿐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적은 없어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단되는 등 소방서별 자체안점 시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단 현장 안전관리 점검 소홀

충청북도 ㉣단은 ㉡대와 ㉢대로 구성되어 있어 119안전센터·구조대와 동일하게 현장 소방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 현재(2024년 3월)까지 자체 안전관리 점검 및 본부를 포함하는 외부기관의 안전관리 점검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6조(훈련계획

수립 및 포함사항)에 따라 현장 소방활동과 관련된 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계획수립부서가 안전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현장안전점검관에게 제출하면 현장안전점검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안전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계획수립부서에 통보하고, 이후 계획수립부서에서는 결과보고서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여 관련 훈련을 최종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단의 경우 2021년부터 현재(2024년 3월)까지 훈련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안전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릴레이 자율안전컨설팅 시행 미흡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에는 도내 소방관서별로 릴레이 방식으로 다른 소방서의 현장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상호 컨설팅 실시가 명시되어 있다. 위 릴레이 자율안전컨설팅을 통해 소방서별 현장안전 점검 상태를 상호 검증하고 소방서간 소통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발전적 소통과 수범사례 확산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북 소방은 2022년도부터는 해당 릴레이 자율안전컨설팅을 시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본부) 향후 매월 도내 안전센터를 선정 안전관리 점검표에 의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단) 향후 안전영향평가 시행 등 현장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21년부터 ’24년도까지 분기 1회보다 많은 월 1회 각 3팀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나 점검표에 관련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작성미흡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향후 종합계획 수립 시 소방청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소방서) 성격이 유사한 다수의 실태점검으로 인해 릴레이 자율안전컨설팅을 미시행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5. 검토결과

지적사항의 취지에 따라 향후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는**

[권고] ㉮단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자체점검 및 안전영향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 수립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본부 실태점검, 소방서별 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현장 안전관리 점검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주의요구 및 권고

제　　목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등 부적정**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는 재난발생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 긴급구조 대응활동 및 다른 기관과의 대응활동 연계를 위해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능력평가와 자원조사 등 실시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은 대응계획을 수립하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4조(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시·도 긴급구조기관이 장은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시·군·구 긴급구조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7인 이상 11인 이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긴급구조대응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고,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 제66조의4(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에 대한 평가 절차), 제66조의5(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평가 제외 기간)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① 전문인력, ② 시설이나 장비, ③ 물자, ④ 운영체계에 대한 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 기준 및 능력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세부 사항은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에서는 긴급구조기관을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해양의 경우는 해양경찰청 등)로 정하고 있으며, 긴급구조지원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1]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2]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로 정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보강)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긴급구조에 관한 교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구조의 교육) 등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는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1) 교육부 등 중앙정부기관 12곳, 군부대, 대한적십자사, 종합병원,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정보센터, 구급차등의 운용자, 전국재해구호협회,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2)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보건소, 지하철공사(도시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기간통신사업자

가.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미흡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12개 소방서의 2023년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구성현황

구분	소방본부	㉮	㉯	㉰	㉱	㉲	㉳	㉴	㉵	㉶	㉷	㉸	㉹
지원기관	16개	14개	15개	17개	14개	22개	7개	21개	12개	15개	14개	20개	19개
심의회 위원	10명	8명	9명	9명	8명	7명	7명	7명	7명	8명	7명	9명	8명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이에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긴급구조기관장을 위원장으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에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이 실제 참여하는지 확인하였고, <표-2>와 같이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경우 일부 해당 기관의 장이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 긴급구조지원기관 기관장 미참여 현황

구분	소방본부	㉯	㉱	㉳	㉸	㉹
지원기관	16개	15개	14개	21개	20개	19개
심의회 위원	**10명**	**9명**	**8명**	**7명**	**9명**	**8명**
기관장 참여	**1명**	**8명**	**7명**	**6명**	**8명**	**7명**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12개 소방서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중 응급의료 분야을 살펴보면 “재난에 따른 다수 사상자 발생 시 효율적 응급의료서비스를

위한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고 있고, 해당 계획에 따라 보건소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서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여 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의료자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응급의료소장(보건소장)의 부재 시에는 그 역할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지역응급의료센터장, 지역응급의료기관장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의 재난은 과거와 다르게 양상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재난에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소방의 인력만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재난 대응에 있어서 각 지역의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에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지역응급의료센터장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장(표-3 참고)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3>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에 응급의료기관 참여 여부

구분	소방본부	㉮	㉯	㉰	㉰	㉱	㉲	㉳	㉴
권역응급의료센터	1곳 (ⓐ)								
지역응급의료센터		3곳 (ⓑ,ⓒ,ⓓ)	1곳 (ⓔ)	1곳 (ⓕ)	2곳 (ⓖ,ⓗ)				
지역응급의료기관			2곳 (ⓘ,ⓙ)	1곳 (ⓚ)		1곳 (①)	1곳 (ⓜ)	1곳 (ⓝ)	1곳 (ⓞ)
심의위원회 참여여부	미참여	미참여	미참여	**참여 (ⓕ)**	미참여	미참여	미참여	미참여	미참여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부적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3,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소방본부, 소방서)은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해 긴급구조에 필요한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1차 : 4명, 2차(종합검토 및 등급결정) : 1명]의 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항목은 ① 일반현황, ② 운영체계, ③ 긴급구조대응활동 분야, ④ 인적자원 분야, ⑤ 물적자원 분야로 구분되고 세부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항목

연번	내용	점수
일반현황 분야	① 긴급대응협력관 직책, 연락처 등 정확성	20
	② 긴급구조통제단파견 연락관 연락처 등 정확성	20
	③ 상황실 부서면, 연락처 등 정확성	20
	④ 재난대응부서 성명, 연락처 등 정확성	40
운영체계 분야	① 긴급구조대응세부계획 수립 적정성	20
	② 재난대응체계 조직도 및 대응운영 구축	20
	③ 인적, 물적자원 등의 상황파악과 관리체계 등 구축	20
	④ 현장연락관 파견 사전지정,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20
	⑤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	20
긴급구조대응활동 분야	① 긴급구조지원 참가 실적	20
	② 긴급구조훈련지원 인적, 물적자원 지원 내역 평가	20
	③ 긴급구조지원훈련 활동내역 평가	20
	④ 연락관 파견 등 긴급구조지원 활동내역 평가	20
	⑤ 재난현장 인적, 물적자원 지원 내역 평가	20
인적자원 분야	**① 재난대응 관련 부서 근무인원 대비 긴급구조교육 이수율**	**40**
	② 전년도 대비 긴급구조교육 이수자 증가율	20
	③ 재난대응 관련 부서 근무인원 대비 3년 이상 종사자 비율	20
	④ 재난대응 부서 인원 대비 자격보유자 비율	20
물적자원 분야	① 긴급구조지원 요청 접수, 처리 가능 상시 운영시설 보유 및 관리	20
	② 긴급구조기관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통신 시설, 장비의 보유 및 관리	20
	③ 긴급구조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비 및 물품의 보유 및 관리	20
	④ 전문인력의 안전 확보 및 휴식, 대기 등을 위한 물자 보유 및 관리	20
	⑤ 시설 및 장비의 운영과 유지, 보수 및 정비에 필요한 물자 보유 및 관리	20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해당 긴급구조기관인 소방본부와 12개 소방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같은 법 제55조제3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66조,「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2 등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의 교육 실시 여부를 파악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에 '2023년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 중 인적자원분야의 최대 배점 항목인 "재난대응 관련 부서 근무인원 대비 긴급구조교육 이수율" 평가부분을 살펴본 결과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자 및 관리자가 실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40점(만점)을 부여하거나, 반대로 교육을 이수하였음에도 20점을 부여하는 등 능력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표-5>와 같이 나타났다.

<표-5>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인적자원 분야 - ①번**) 부적정 현황

배점 : 40점(우수), 30점(보통), 20점(미흡)

구분	부적정하게 평가한 내용	정정 점수
㉮	㉮공사(ⓟ지사) 재난관련부서 직원 5명 중 3명 교육 현황 없음에도 40점 부여	20점(미흡)
㉯	㉯시보건소 재난 관련 부서 직원(3명) 중 2명만 교육 이수하였으나 40점 부여	30점(보통)
㉰	㉰공사(ⓠ지사) 재난관련부서 직원(3명) 중 1명만 교육 이수하였으나 40점 부여	20점(미흡)
㉱	㉱**보건소 재난관련부서 직원(3명) 중 1명만 교육 이수하였으나 38점 부여** ※ 교육점수 배점기준도 미준수(**40점(우수), 30점(보통), 20점(미흡)**)	20점(미흡)
㉲	㉲경찰서 재난관련부서 직원(3명) 중 1명만 교육 이수하였으나 40점 부여	20점(미흡)
㉳	㉳공사 ⓡ지사 재난관련부서 직원(2명) 교육 실시하였음에도 20점 부여 ※ 평가점수를 부적정하게 부여하여 미흡기관으로 선정됨(40점 부여 시 보통기관으로 평가됨)	40점(우수)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 긴급구조지원기관 구성 미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로 긴급구조지원기관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충청북도 ㉮소방서 등 8개 소방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시청, 군청) 및 응원 협정되지 않은 민간단체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구성한 것으로 <표-6>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6> 책임기관 및 응원협정되지 않은 단체와 긴급구조지원기관 구성 현황

구분	㉮	㉯	㉰	㉱	㉲	㉳	㉴	㉵
책임기관	㉮ 시청	㉯ 시청	㉰ 군청	㉱ 미포함		㉳ 군청	㉴ 군청	㉵ 군청
응원협정되지 않은민간단체					㉠ 등		㉡ 등	㉢ 등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더욱이 각 소방서(긴급구조기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등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을 구성하여야 하나, ㉱소방서는 2022년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포함된 ㉪(ⓢ지구협의회)를 2023년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제외시켰으며, ㉲소방서의 경우에도 2022년에 0000부대, 0000부대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23년에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참여를 위한 업무 추진 부적정

소방청에서는 매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리자와 담당자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각 시·도 소방본부에 교육 알림 문서를 시달해 왔다.

이에 각 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해당 교육일정을 통보하여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관리업무 부서의 관리자와 담당자 등이 긴급구조대응활동에 필요한 재난 대응 행정실무, 긴급재난대응 이론 및 기술, 긴급구조세부 대응계획 수립능력 등을 배울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2023년 2기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교육 개설 알림”(소방청 ㉮과-8141, 2023.11.17.) 공문에 대해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일부 소방서에서는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 해당 교육일정을 통보하지 않거나, 일부 긴급구조지원기관에게만 통보한 것으로 <표-7>과 같이 확인되었다.

<표-7> 교육 알림 미알림 및 누락 현황

구분	소방본부	㉰	㉱	㉲	㉳	㉴
지원기관	16개소	17개소	14개소	15개소	14개소	20개소
내용	교육청 누락	보건소 등 16개소 알림 누락	미알림	미알림	보건소 등 9개소 알림 누락	미알림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4. 관계기관 등 의견

긴급구조대응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2017년 이전까지는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재난관리 책임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기관별 (부)기관장으로 심의 위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여 왔다.

앞으로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9조(심의위원의 구성 및 운영)의 규정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다.

또한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 참여를 위한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각 긴급구조지원 기관에 해당 교육 일정을 통보하는 과정 중 수신처 지정이 누락된 사실이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구조지원기관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의견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소방서장)는**

[주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소방서 소방위 A, ㉹소방서 소방사 B에게 주의 처분(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하여는 현 소속기관이 처분하도록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 긴급구조지원기관에 대한 자원조사 및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긴급구조지원기관 구성 등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권고 및 통보

제　　목 현장소방활동 안전관리 추진 미흡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는 현장대원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현장활동기준 설정으로 안전관리대책을 구축하고 현장지휘체계 강화 등을 통해 대원의 안전사고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등)에 따라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안전사고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안전사고의 방지)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의2(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계획), 제6조(소방관서의 현장 안전관리 조직), 제7조(보건안전관리 책임자 직무 등), 제8조(현장안전담당의 지정 등), 제9조(현장안전담당의 지정 확인), 제10조(현장안전담당에 대한 교육 등), 제13조(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

한 전문교육), 제37조(방지대책의 수립), 제38조(사고조사보고서의활용 등) 등에 따라 소방관서장 등은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를 위해 조직의 구성, 안전교육, 안전관리, 대책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충청북도 소방관서의 장은「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의2(소방관서의 현장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매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12개 소방서에 대해 현장안전관리 계획 수립 여부를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소방서를 제외하고 감사 기간중인 2024. 3. 13.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 계획 수립 현황[1)]

구분	㉮	㉯	㉰	㉱	㉲	㉳	㉴	㉵	㉶	㉷	㉸	㉹
수립 여부	**미 수립**	**미 수립**	수립	**미 수립**	**미 수립**	**미 수립**	**미 수립**	**미 수립**	**미 수립**	**미 수립**	수립	**미 수립**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나. 현장안전점검관 및 보건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미흡

충청북도 12개 소방서는 현장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과 3개 팀별(㉯팀)로 각 1명씩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지정하고,「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안전관리총괄책임자를 보조하기 위해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소방서 등 7개 소방서는 확인서 제출일(2024.3.13.)전 안전관리계획 수립 완료

이에 소방관서의 장은 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안전점검관[2]에 대하여 현장소방활동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보건안전책임자는 4개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은 12개 소방서 36명 중 3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교육받지 않은 것으로 <표 - 2>와 같이 확인되었다.

<표-2> 보건안전관리책임자와 현장안전점검관 교육 이수 여부[3]

구분	㉮	㉯	㉰	㉱	㉲	㉳	㉴	㉵	㉶	㉷	㉸	㉹
보건안전관리책임자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1명
	이수	이수	이수	이수	이수	이수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이수	이수
현장안전점검관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3명
	미이수	**미이수**	1명이수	**미이수**	**미이수**	1명이수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미이수**	1명이수	**미이수**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다.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미흡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2024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 계획” 등을 살펴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아차사고, 준사고 포함) 현황은 ’21년에 16건, ’22년 15건, ’23년 16건으로 조사되었고, 교통사고는 ’21년 41건, ’22년 12건, ’23년 8건으로 구급차가 22건, 펌프차는 7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내역은 <표-3>과 같다.

<표-3> 사고 발생 세부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현장 소방활동 안전사고	16건 (16명: 중상8, 경상6, 부상2)	15건 (25명: 중상9, 경상6, 단순10)	16건 (16명: 중상8, 경상8)
소방차량 교통사고	39건 (펌프차7, 구급차14, 그외18)	57건 (펌프차19, 구급차27, 그외11)	51건 (펌프차10, 구급차18, 그외 23)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2) 충청북도 12개 소방서에서는 보건안전관리책임자를 소방서 ㉱팀장으로, 현장안전점검관은 ○○○○팀의 소방경 또는 소방위 중에 팀별로 각 1명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운영중

3)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 3월 중에 사이버 교육(3명) 이수 완료

충청북도 각 소방서에서 현장소방활동 안전사고 및 소방차량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사고 47건, 교통사고 147건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안전사고의 경우 사고조사보고서는 모두 작성되었으나 5건(10.6%)이 전파되지 않았고, 교통사고에서는 25건(17.0%)의 사고조사보고서가 미작성 및 28건(19.0%)이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통사고 보고서 미작성 및 미전파 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소방서의 경우 2022년 7월과 8월에 구급차(000○0000) 후진 및 차선변경 중 교통사고가 발생, ② ㉯소방서의 경우 2023년 7월, 9월 16일과 17일에 고가차량(000○0000) 조수석 문 개방된 채 운행 중 버스 충돌,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고, ③ ㉰소방서의 경우 2021년 1월과 4월에 구급차(00○0000) 후진 및 우회전 중 교통사고, ④ ㉱소방서의 경우 2022년 1월과 11월에 구급차(000○0000) 교차로 통과 및 차선 변경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4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제38조(사고조사보고서의 활용 등)에 따라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전파 및 공유하여 소방활동 안전관리 교육에 활용하여야 함에도 반복적이고 비슷한 유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사례 전파,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등을 실시하지 않았고, ㉮·㉯·㉱소방서의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 교육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대원의 안전사고는 중첩적인 수많은 단계의 안전요소를 갖추더라도 발생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안전요소의 결합이 우연히 또는 필연히 동시에 노출될 때 발생하므로, 이런 안전사고를 제어하고 예방하기 위해 결함요소를 제거하

고 방지하기 위해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여야 한다.

‘하인리히 재해연쇄 이론의 사고예방 원리’에 따르면 5개의 도미노 각각을 사고 발생 요소라고 보고 도미노를 세워 놓았을 때 그중 하나의 도미노가 넘어지면 나머지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재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도미노가 연쇄적으로 넘어지려 할 때 불안전한 상태나 불안전한 행동의 도미노를 중간에 차단하면 사고발생의 연쇄성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안전사고(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조사보고서 작성과 전파 및 교육하여 사고 발생의 연쇄성을 끊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 관련

㉮·㉱·㉲·㉳·㉶소방서에서는 안전관리계획이 상급기관에서 시달이 늦어지는 이유 등으로 2월까지 마무리되진 못하였으나, 3월 중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하였다는 의견이다.

나.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미흡

㉶소방서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33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에 정한 “교통사고의 경우 인명피해 인원(소방공무원에 한정한다)마다 각각 작성”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미흡 관련

충북소방본부는 2024. 02. 01. “2024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각 소방서에 시달하였으나 일부 소방서에서는 2월 말까지 계획수립이 되지 않아 소방공무원의 안전대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해 필요성을 언급한 사항이며, 2개 소방서의 경우는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사기간 중(2. 26., 3. 13.)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을 살펴볼 때 안전관리에 있어서 각 소방서에서는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판단된다.

나.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미흡

「소방공무원 현장 소방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33조(사고조사보고서의 작성기준)은 사고조사보고서 작성 시 소방공무원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 각각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내용으로, 인명피해가 없다고 해서 사고조사보고서를 생략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 소방청 ㉱담당관(업무 담당자)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인명피해 유무가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의 기준이 아님을 밝혀왔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소방서장)는**

[권고] 안전사고(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 및 전파(교육)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현장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고, 현장안전점검관 및 보건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통 보

제 목 다수사상자 단독 대응훈련에 따른 사전 준비 등 필요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본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12개 소방서는 다수사상재난 발생 대비 상시 교육·훈련 및 점검 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 대응 활동을 통한 다수사상재난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훈련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 훈련 등)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대응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에 따라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비하여 환자발생의 원인 및 규모에 따라 응급의료활동 훈련 등이 포함된 적정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현장응급의료소의 설치 등), 제21조(지역통제단장 및 보건소방의 사전대비 업무), 제25조(의료소에 대

한 지원) 등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응급의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의료소의 설치 운영 및 지역별 응급의료체계의 가동연습 또는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2024년부터는 구급 대응훈련이 기존의 긴급구조대응훈련과 분리되어 단독으로 실시됨에 따라 119구급대응 중심의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능력을 고도화하고 대규모 사상자 발생에 대비한 구급 단독 훈련으로 다수사상자 처지에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중에 있다.

이에 각 소방서별 단독 훈련에 따른 예산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에 단독 훈련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표-1>과 같이 나타났다.

<표-1> 다수사상자 대응훈련 단독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현황

연번	2023년 (긴급구조대응훈련)	2024년(훈련 분리 실시)	
		긴급구조대응훈련	다수사상자 대응 훈련
금액	9,750천원 (소방서별)	10,750천원 ~ 9,750천원 (소방서별)	**0천원 (소방서별)**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아울러 감사기간(2024. 3. 12.) 중 각 소방서별 1개의 119안전센터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펌뷸런스 대원과 <표-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전화 설문을 실시하였다.

<표-2> 12개 119안전센터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내용

1. 과거 긴급구조훈련과 병행했던 "다수사상자 구급대응 훈련"이 2024년부터 단독으로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나요?
2. 현장에서 사용되는 중증도 분류법 2가지 있습니다. 어떤 분류법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3. (MASS 분류법을 설명하고) MASS 분류법에 따라 다음 환자가 '비응급', '응급', '긴급', '지연'인지 분류하여 주세요?

가. 붕괴사고
나. 50대 남성, 홍길동
다. 의식있고, 개방성 다리골절(거동불가)과, 팔 골절 및 출혈, 반응 및 의사소통 불가

4. 다수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에 사상자 정보를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 다. 다수사상자 관리시스템이 운영 중인 것을 알고 있었나요? (알고 있다면 사용한 경험은?)

5. 관내 광역응급의료소와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 자료: 감사관 설문 작성 자료

설문 결과는 1번의 설문에 대해 12개 119안전센터 직원 중 7개 센터 직원은 2024년에 단독으로 실시되는 것을 모른다고 답변하였고, 2번 설문에서는 12개 119안전센터 직원 중 12명 모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3번 설문에서는 긴급 6명, 응급 5명, 비응급 1명, 모름 1명으로 나타났으며, 4번 설문에서는 2명이 모른다고 답변하였고(사용경험은 모두 없다고 답변), 5번 설문에서는 5명이 광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가 정확히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표-3>과 같이 나타났다.

<표-3> 설문조사 취합 결과

단위 : 명

1번 설문		2번 설문		3번 설문		4번 설문		5번 설문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정답	오답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5	7	0	12	6	6	10	2	7	5

※ 자료: 12개 119안전센터 펌뷸런스 대원 답변 결과(소방사 3, 소방교 4, 소방장 5)

아울러 각 소방서(안전센터별)로 다수사상자 교육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체 44개 센터 중 16개 센터(36.3%)가 아직 <표-4>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4> 다수사상자 교육 실시 현황 등

단위 : 개소

관서명	㉮	㉯	㉰	㉱	㉲	㉳	㉴	㉵	㉶	㉷	㉸	㉹	합계
안전센터	6	7	7	3	4	2	2	1	3	2	5	2	44
실시센터	4	7	4	-	3	2	2	-	3	2	-	1	28
미실시센터	2	-	3	3	-	-	1	1	-	-	5	1	16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

무엇보다 다수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환자의 인적사항, 상태, 이송병원 등을 기록·관리할 수 있는 다수사상자시스템(현재 : 구급스마트시스템)에 사용자 계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소방서는 구급대원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거나, 일부 소방서는 1명 또는 2명의 담당자만 다수사상자시스템에 계정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설문에서 나타나듯이 설문에 참여한 12명 모두 해당 다수사상자시스템을 단 한 명도 사용(훈련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동안 다수사상자시스템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소방청으로부터 「2024년 다수사상자 구급대응훈련 평가계획 알림」과 관련하여 다수사상자 훈련 단독 진행이 2024년에 추진됨에 따라 2024년 예산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추경예산 편성 시 요구할 예정이란 의견을 제시하였다.

5. 검토결과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수용의견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본부장, ㉮·㉯·㉰·㉱·㉲·㉳·㉴·㉵·㉶·㉷·㉸·㉹소방서장)는**

[통보] 내실 있는 다수사상자 대응훈련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지원) 노력과 직원에 대한 교육(중증도 분류 등)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권 고

제 목 소방청사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 미흡

기 관 명 충청북도(㉮·㉰·㉱·㉲·㉳·㉴소방서)

내 용

1. 업무개요

충청북도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소방청사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 또는 업무수행으로 인한 사고발생에 대비하기 위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물, 선박 및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기계 및 기구에 대해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도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에 따라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장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충청북도(소방본부)는 관내에 119특구조단, 충북안전체험관, 12개소의 소방

서, 32개소의 119안전센터(직할 119안전센터 제외) 및 24개소의 지역대의 건물을 관리 또는 소유하고 있다.

해당 건물에 대한 건물 재해에 따른 복구 및 영조물 배상책임 공제(보험)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에 소방본부 통합청사 등 66개소, 영조물 배상 공제에 182개소가 가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119안전센터, 119지역대 건물에 대해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및 영조물 배상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지 현황을 살펴본 결과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는 32개소의 119안전센터 중 3개소, 24개소의 지역대 중 3개소가 가입되지 않았고, 영조물 배상 공제의 경우에는 119안전센터 8개소, 지역대 12개소가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부 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공제 미가입 현황[1)]

구분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119안전센터		5	6	6	2	2	1	2	-	2	1	4	1
119지역대		1	-	3	2	1	3	3	-	3	4	1	3
재해복구 공제 **미가입**	센터	**2**	-	-	**1**	-	-	-	-	-	-	-	-
	지역대	-	-	**1**	**2**	-	-	-	-	-	-	-	-
영조물 배상 공제 **미가입**	센터	-	-	**4**	**2**	-	**1**	**1**	-	-	-	-	-
	지역대	-	-	**3**	**2**	-	**3**	**3**	-	-	-	-	**1**

※ 자료: 충청북도 소방본부 제출자료 재구성(119안전센터는 직할센터 제외)

1) 119안전센터 및 지역대 공제 미가입 현황
① 재해복구공제 미가입 : 가(센터 -㉮, ㉯), 다(지역대 - ㉰), 라(센터 -㉱, 지역대 - ㉲, ㉳)
② 영조물배상공제 미가입 : 다(센터 -㉴, ㉵, ㉶, ㉷ / 지역대 - ㉸, ㉹, ㉺), 라(센터 - ㉻, ㉼ / 지역대 - ㉽, ㉾), 바(센터 - ㉿, 지역대 - ㉮, ㉯, ㉰), 사(센터 - ㉱, 지역대 - ㉲, ㉳, ㉴), 타(지역대 - ㉵)

무엇보다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의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소방차량, 소방장비 점검 및 훈련(수관전개, 방수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는 등 위험요소가 높은 곳이며, 주기적으로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안전교육 및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서 해당 시설 및 관리 하자로 인하여 제3자에게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킬 경우 보상해야 할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관계기관 등 의견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충청북도지사(㉮·㉰·㉱·㉲·㉳·㉴소방서장)는**

[권고]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등에 대해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 공제(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